2022

The Institute for Democracy

Inequality

# 민주연구원

Report

# 불평등 보고서

## 현황과 쟁점

강병익
채은동
이진수
신영민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 CONTENTS


발간사: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서론: 불평등과 정당정치 ····· 1

1. 다양한 불평등 척도 ····· 4
2. 정당정치와 불평등: 정책과 유권자선호 ····· 5
   1) 유권자의 선택지로서의 정당 ····· 5
   2) 불평등과 중도전략 ····· 6
   3) 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 7
   4) 민주당의 불평등 대응전략 비전 ····· 8
3. 본문의 구성과 요지 ····· 10

## 1부. 지역별 소득·자산 불평등 현황 / 15

제1장 소득불평등 현황 ····· 17

1. 왜 지역별 불평등인가 ····· 19
   1) 개요 ····· 19
   2)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방법 ····· 21
   3) 미시조사자료를 이용한 방법 ····· 22
2. 지역별 근로소득 격차 ····· 23
3. 지역별 종합소득 격차 ····· 29
4. 지역별 양도소득 격차 ····· 35
5. 지역별 가구소득 불평등 ····· 38
6. 지역별 가구원소득 불평등 ····· 43
7. 향후 통계 구축 방향 ····· 48

제2장 자산불평등 현황 ····· 49

1. 분위별 가구 자산의 구성 ····· 51
2. 지역 간 자산격차 ····· 56
3. 토지 소유의 불평등 ····· 57
   1) 지역별 토지소유자 비율 ····· 57

# CONTENTS

2) 실사용 이외 목적의 토지 소유 ····· 59
3) 지역별 토지 가격격차, 자산격차 ····· 61
4) 연령대별/지역별 토지소유 현황 ····· 65
5) 부동산소득의 지역 간 격차 ····· 71
6) 주택 소유의 불평등 ····· 73

## 2부 쟁점과 정책 / 77

제3장 성별 임금격차: 원인과 추세 ····· 79
**1. 왜 성별 임금격차인가?** ····· **81**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임금격차** ····· **83**
1) 임금 및 소득불평등, 성별 임금격차 추세 ····· 83
2) 한국 임금격차의 특성 ····· 85
**3. 성별 임금격차의 추세와 원인** ····· **102**
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추세 ····· 102
2)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 ····· 107
**4. 정책개선 방향** ····· **112**
1) 기존 경력단절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 112
2) 선택적 시간제 확대를 위한 복지·조세개혁 ····· 115
3) 고용보증수표제 도입 ····· 116

제4장 노후 시기 소득불평등: 근로시기 불평등의 전이 ····· 119
**1. 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상황** ····· **122**
1) 한국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국제비교 ····· 122
2) 현 노인세대의 노후 소득보장 실태 ····· 129
**2. 현재 근로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 **134**
1) 소득수준, 성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 ····· 134
2) 국민연금 가입 특성의 결정요인 ····· 141
**3. 정책개선 방향** ····· **145**
1) 근로시기 남녀의 가입기간 격차 해소 ····· 145
2)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방안 ····· 147

# CONTENTS

제5장 자산불평등의 소득불평등 강화 효과 ····· 155
1.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추이 ····· 158
2. 자산 유형별 자산불평등 기여도 ····· 159
3. 분위별 자산 점유율 추이 ····· 161
4. 가계 부채의 분포 ····· 162
5.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163
1)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163
2)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 164
3) 분석방법 및 사용 데이터 ····· 165
4) 지니계수 분해 결과(2020년도) ····· 166
5)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20) ····· 167
6. 정책개선 방향 ····· 170

제6장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 시간불평등 ····· 171
1. 개념: 자유시간, 재량시간, 시간주권, 시간빈곤 ····· 174
2. 한국의 노동시간 추이: 고용형태, 직종, 기업규모, 시간당 임금을 중심으로 ····· 176
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 176
2) 직종-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 179
3) 사업체 규모-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 181
4) 노동시간과 생산성 ····· 181
5) 근로시간 단축의 외국사례 ····· 182
3. 일과 생활균형 측면의 시간빈곤과 불평등 ····· 185
1) 한국인의 시간빈곤 ····· 185
2) 시간빈곤의 확산과 시간불평등의 심화 ····· 186
3) 삶의 질과 시간역량 ····· 187
4. 정책개선 방향: 쉼과 여가, 시간역량 강화 ····· 188
1) 휴식과 충전을 위한 개인휴가제도 도입 ····· 188
2) 표준계약서: 장시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제 ····· 189
3) 휴가저축제도 ····· 190

# CONTENTS

결론: 정치의 쓸모, 문제는 정치다 ····· 191

참고문헌 ····· 195

부 록 ····· 205

색 인 ····· 247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 CONTENTS


**[표 I-1]** 국세통계연보에서 이용가능한 기초자치단체별 소득불평등 자료 ····· 22
**[표 I-2]** 노동패널의 광역자치단체별 가구분포(2020) ····· 23
**[표 I-3]**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2020) ····· 24
**[표 I-4]**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2020) ····· 25
**[표 I-5]**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2016-2020) ····· 27
**[표 I-6]**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 및 주소지(2020) ····· 28
**[표 I-7]** 광역자치단체별 종합소득 격차(2020) ····· 29
**[표 I-8]** 기초자치단체별 종합소득 격차(2020) ····· 30
**[표 I-9]** 광역자치단체별 종합소득 격차(2020) ····· 32
**[표 I-10]**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순위(2020) ····· 33
**[표 I-11]** 직업별 및 지역별 소득순위(2020) ····· 34
**[표 I-12]** 광역자치단체별 양도소득 격차(2020) ····· 35
**[표 I-13]** 광역자치단체별·양도항목별 양도소득 격차(2020) ····· 36
**[표 I-14]** 광역자치단체별 가구별 소득 격차(2020) ····· 38
**[표 I-15]** 광역자치단체별 가구별 전국평균 대비 소득 비중(2020) ····· 39
**[표 I-16]** 전국단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 추이(2018-2020) ····· 41
**[표 I-17]**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원의 소득 관련 통계(2018-2020) ····· 43
**[표 I-18]**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원의 소득 관련 통계(2020) ····· 45
**[표 I-19]** 광역자치단체별 가구별 소득 격차(2020) ····· 47
**[표 I-20]** 지역별 불평등 통계 이용 자료의 장단점 ····· 48
**[표 II-1]** 순자산 10분위별 평균 자산(2021) ····· 52
**[표 II-2]** 가구 자산 세부 유형별 평균가액 및 비중(2021) ····· 53
**[표 II-3]** 100분위별 가구 순자산(2021) ····· 54
**[표 II-4]** 수도권/비수도권 가구 평균자산 격차(2010-2021) ····· 56
**[표 II-5]** 토지소유세대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58
**[표 II-6]** 토지소유인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59
**[표 II-7]** 외지인 토지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0
**[표 II-8]** 거주자의 관외토지 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1
**[표 II-9]** 인구 1인당 토지가격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2
**[표 II-10]** 시군구별 총 토지가격(공시가격)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3
**[표 II-11]** 토지소유자 1인당 평균소유가액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4
**[표 II-12]** 50억원 이상 토지소유세대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5
**[표 II-13]** 미성년자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6
**[표 II-14]** 2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7

# CONTENTS

**[표 II-15]** 3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8
**[표 II-16]** 4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69
**[표 II-17]** 5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70
**[표 II-18]** 60대 이상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71
**[표 II-19]**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17-2021) ····· 72
**[표 II-20]** 무주택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73
**[표 II-21]** 1주택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74
**[표 II-22]** 다주택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75
**[표 III-1]** 분석 변수의 정의 ····· 87
**[표 III-2]** 비교대상 국가의 인적자본 변수 기술통계 ····· 89
**[표 III-3]** 인적자본변수의 남녀 비교 ····· 89
**[표 III-4]** 비교대상 국가의 일자리특성 변수 기술통계 ····· 91
**[표 III-5]**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 ····· 112
**[표 IV-1]** 현재 노인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특성 ····· 130
**[표 IV-2]** 현재 노인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생애 노동시장 지위 특성 ····· 132
**[표 IV-3]** 분석 변수의 설명(노동패널 23차년도) ····· 135
**[표 IV-4]** 연령대·소득계층별 국민연금 가입특성 ····· 137
**[표 IV-5]** 성별·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특성 ····· 138
**[표 IV-6]** 연령대·종사상 지위별 가입특성 및 남녀 상용직 비율(%) ····· 139
**[표 IV-7]** 소득수준·성별·종사상 지위 별 최소기여기간 충족률(%) ····· 140
**[표 IV-8]** 국민연금 가입특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40-59세) ····· 141
**[표 IV-9]** 국민연금 가입특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40-59세), 상호작용항 포함 ····· 142
**[표 IV-10]** 성별·연령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 144
**[표 IV-11]** 유형별·성별·연령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 145
**[표 IV-12]** 사각지대 유형별 미납 사유(%) ····· 145
**[표 IV-13]**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 ····· 148
**[표 V-1]** 자산유형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 ····· 159
**[표 V-2]** 자산유형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 (구분 단순화) ····· 160
**[표 V-3]**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2010-2021) ····· 161
**[표 V-4]** 소득계층별 부채보유 비율(2021) ····· 162
**[표 V-5]**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생계부담정도(2021) ····· 162
**[표 V-6]** 가구주 연령대별 원리금 상환액(2021) ····· 163
**[표 V-7]**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2020) ····· 167
**[표 V-8]** 소득원천별 불평등 상대기여도 추이(2008-2020) ····· 168

# CONTENTS

**[그림 I-1]** 수준별 불평등 지표 ····· 19
**[그림 I-2]**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근로소득 분포지도(2020) ····· 26
**[그림 I-3]**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종합소득 분포지도(2020) ····· 31
**[그림 I-4]**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평균양도소득 분포지도(2020) ····· 37
**[그림 I-5]**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소득 분포지도(2020) ····· 40
**[그림 I-6]**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소득 증가율(2018-2020) ····· 41
**[그림 I-7]**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2020) ····· 42
**[그림 I-8]**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원의 소득 관련 불평등지도(2020) ····· 46
**[그림 II-1]** 순자산 10분위별 평균 자산(2021) ····· 52
**[그림 II-2]** 순자산 분위별 부동산 자산 비율(2021) ····· 53
**[그림 II-3]** 순자산 100분위별 평균 자산 (2021) ····· 55
**[그림 II-4]** 수도권/비수도권 평균자산 격차 추이(2010-2021) ····· 56
**[그림 II-5]** 토지소유세대 비율(2021) ····· 57
**[그림 II-6]** 토지소유인구 비율(2021) ····· 58
**[그림 II-7]** 외지인 토지 비율(2021) ····· 59
**[그림 II-8]** 거주자의 관외토지 소유가액 비율(2021) ····· 60
**[그림 II-9]** 인구 1인당 토지가격(2021) ····· 61
**[그림 II-10]** 시군구별 총 토지가격(2021, 공시가격) ····· 62
**[그림 II-11]** 토지소유자 1인당 평균소유가액(2021) ····· 63
**[그림 II-12]** 50억원 이상 토지소유세대 비율(2021) ····· 64
**[그림 II-13]** 미성년자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 65
**[그림 II-14]** 2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 66
**[그림 II-15]** 3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 67
**[그림 II-16]** 4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 68
**[그림 II-17]** 5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 69
**[그림 II-18]** 60대 이상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 70
**[그림 II-19]** 5년간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액(2021) ····· 71
**[그림 II-20]** 무주택 가구 비율(2021) ····· 73
**[그림 II-21]** 1주택 가구 비율(2021) ····· 74
**[그림 II-22]** 다주택 가구 비율(2021) ····· 75
**[그림 III-1]**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및 D90/D10비율(2011-2013, 2018) ····· 83
**[그림 III-2]**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추이(2008-2021) ····· 84
**[그림 III-3]** 비교대상 국가의 시간당 임금 추정 결과 ····· 93
**[그림 III-4]** 비교대상 국가 남성의 시간당 임금 추정 결과 ····· 96

# CONTENTS

**[그림 Ⅲ-5]** 비교대상 국가 여성의 시간당 임금 추정 결과 ····· 97
**[그림 Ⅲ-6]** 국가별 남녀 임금격차 분해 결과(전체) ····· 99
**[그림 Ⅲ-7]** 국가별 남녀임금 분해의 요인별 생산성 차이 ····· 100
**[그림 Ⅲ-8]** 국가별 남녀임금 분해의 요인별 설명되지 않는 차이(차별) ····· 101
**[그림 Ⅲ-9]** 연도별 남녀 임금격차 추세 ····· 104
**[그림 Ⅲ-10]** 연도별 남녀 임금격차 요인의 생산성 격차 추세 ····· 105
**[그림 Ⅲ-11]** 연도별 남녀 임금격차 요인의 설명되지 않는 격차(차별에 의한 격차) 추세 ·· 106
**[그림 Ⅲ-12]** 한국 여성의 출산 전후 노동시장 참여 유형 ····· 110
**[그림 Ⅳ-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122
**[그림 Ⅳ-2]** OECD국가의 지니 비율(Gini rate) 및 노인빈곤율(2016-2019)1) ····· 124
**[그림 Ⅳ-3]** 평균 대비 노인소득의 비중과 노인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 125
**[그림 Ⅳ-4]**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125
**[그림 Ⅳ-5]** 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기여자 비율(%) ····· 128
**[그림 Ⅳ-6]** 공적연금의 제도적 기여기간 대비 실제 기여기간의 비율 ····· 128
**[그림 Ⅳ-7]** 노동패널 및 행정자료의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기간 ····· 136
**[그림 Ⅳ-8]** 국민연금 가입현황 및 사각지대(2020. 12. 기준) ····· 143
**[그림 Ⅳ-9]**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방안 ····· 151
**[그림 Ⅴ-1]** 순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추이 ····· 158
**[그림 Ⅴ-2]** OECD 국가의 GDP 대비 토지가격 추이 (1965-2020) ····· 164
**[그림 Ⅴ-3]**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20) ····· 168
**[그림 Ⅴ-4]**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천별 상대적 한계효과 추이 ····· 169
**[그림 Ⅵ-1]** 주요국가의 연간 1인 노동시간 추이 ····· 176
**[그림 Ⅵ-2]** 고용형태별 월간 총근로일수 추이(2006-2021) ····· 177
**[그림 Ⅵ-3]** 고용형태별 월간 실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추이(2006-2021) ····· 177
**[그림 Ⅵ-4]** 근로형태별/주당평균취업시간 및 증감 추이(2004-2021) ····· 178
**[그림 Ⅵ-5]**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임금총액과 시간당정액급여 격차 추이(2009-2021) ··· 179
**[그림 Ⅵ-6]** 직종별-고용형태별 월간 총 근로일수 추이(2009-2021) ····· 180
**[그림 Ⅵ-7]** 사업장 규모-고용형태별 근로일수 추이(2009-2021) ····· 181
**[그림 Ⅵ-8]**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변화(1980년 vs. 2019년) ····· 182

# 발 간 사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첫 문장입니다. 이는 인간행복에 관한 통찰이기도 하지만 불평등을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점점 행복해지고 불행한 가정은 점점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불평등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신분,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상위층에 도달해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재각각의 이유로 어떤 삶의 한 부분이 하층을 이루고 그것이 다른 영역까지 전이되어 모든 가족의 삶을 하층으로 끌어내려 함께 불행해집니다.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이지만, 그 해법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라집니다. 혹자는 불평등이 과거 시대에도 늘 있어왔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한다고 말하며, 혹자는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또 다른 이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엇갈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 때문입니다. 불평등은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 시점부터 존재했고 다양한 불평등 분야에서 어디서부터 문제해결을 시작할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해결가능한 문제인가에 대한 명쾌한 철학과 해법이 부재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고차방정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민주연구원의 불평등 보고서는 불평등의 현황과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의사의 탁월한 수술능력, 환자의 강력한 의지, 우호적인 외부환경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불평등, 연령별 소득불평등, 부동산과 소득불평등 등 현재 제기되는 불평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며 시간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 문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평등 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연구진과 불평등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외부 전문가들이 협력해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 작업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신영민, 이진수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고서가 지역별 불평등, 성별 불평등, 연령별 불평등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의 출발이 되고 불평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월

민주연구원장 **정 태 호**

# 서론

## 불평등과 정당정치

# 서론: 불평등과 정당정치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얼마나 격차가 벌어져야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나? 오히려 어느 정도의 불평등과 격차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개인이 성장하는데, 자극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가 원래 불평등을 전제로 굴러가는 체제라는 걸 인정하고 시장에서 탈락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힘쓰는 것이 현실적인 것 아닌가?

불평등이 야기하는 문제 중에서 빈곤의 문제에 천착한다면, 네 번째 문제제기가 타당하게 보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소득불평등의 특징을 최상위 소득보다 최하위 소득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은데 있다(김창환 2022)고 본다면,-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좀 살만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인 재분배 정책을 두는 것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책우선순위를 고민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의 중요성은 시장경제가 원래 불평등을 전제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시장경제는 참여자들에 의해 어떻게 견제되고 조정되느냐에 따라, 즉 가치배분의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작동방식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를 테면 시장경제체제를 영미식의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와 유럽식의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로 분류하는 이유도 모든 시장경제가 불평등의 기초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이 무당한 전제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Hall and Soskice 2001). 공정한 시장, 시장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의 어떤 상보적 관계를 통해 생산과 분배는 친화적이 될 수도, 적대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복지국가하면 떠올리는 대부분의 국가는 각 시장주체와 생산, 복지, 정치제도들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톱니바퀴가 잘 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핵심적 가치는 공정과 평등이었다. 이렇듯 불평등 문제는 자원의 배분에 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복지, 노동, 산업, 그리고 정치체제를 아우르는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빈곤문제와 동일하지 않다. 빈곤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빈민구제에 초점을 두는 불평등 정책은 가장 소극적인 복지국가의 정책목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불평등과 격차가 개인과 국가가 성장하는데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공정과 정의가 사회적 우선 가치

로 꼽히는 오늘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체계가 분배다. 불평등과 격차가 개인과 국가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배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역량과 국가의 번영이 좌우된다. 시장도 사회적 가치들이 교환되는 하나의 거대한 분배체제이지만, 역사적으로 어디를 막론하고 완벽하게 작동한 적이 없다(왈쩌 1999, 31).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정책은 시장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작동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신만의 고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Hall and Soskice 2001). 복지국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특히 노르딕 국가가 대륙유럽국가나 미국보다 평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정책경쟁은 이들 나라에서도 언제나 사회정책의 중요한 화두다.

따라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 간 조화와 공존을 방해하는 위계적인 사회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르보른(2014, 35)은 불평등이 사회분열, 경제적 낭비, 정책 왜곡과 독재 등의 문제를 낳는다고 까지 했는데, 이는 불평등이 개인과 집단 수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 여부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다양한 불평등 척도

불평등이라고 할 때는 보통 경제적 불평등, 즉 소득의 분배양상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수량으로 측정되는 전체 사회의 물질적 재화가 개인 혹은 가구단위로 고르게 분포된, 혹은 분포되지 않은 정도로서, 대표적으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Corrado Gini)가 1912년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지니계수는 이전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었다. 1905년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생이었던 로렌츠(Max O. Lorenz)는 전체 n명의 소득을 저소득(0이상)부터 고소득까지 배열(누적 인원 비율)하고 각 소득자의 소득 비중(누적 소득 비율)의 접점을 연결하는 로렌츠 곡선을 제시했다. 이 연결선이 45도선을 보인다면, 완전평등한 상태, 연결선이 45선에서 아래쪽으로 늘어질수록 불평등한 상태다. 로렌츠 곡선의 장점은 누적 인원 비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직관적인 불평등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혹은 시기별로 비교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각 사례 중 어떤 사례가 더 불평등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로렌츠 스스로가 언급한 것이기도 했다(신광영 2022, 24-25).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지니계수인데, 지니는 로렌츠 곡선과 45도 선이 차지하는 면

적에 45도(완전평등상태)가 차지하는 면적(45도선과 곡선 간 면적과 삼각형 나머지 면적의 합)을 나눔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45도선이 일치하는 0은 완전평등상태, 로렌츠 곡선이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가 같아지는 경우. 즉 최저소득자의 소득이 0이고 최고소득자의 소득이 누적 소득의 전부를 차지하는 1일 때 완전불평등상태가 된다.

하지만 지니계수도 불평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지니계수만으로는 다양한 소득원천 중 어느 부분에서 소득불평등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소득불평등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요인분해(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 소득불평등에 기여했는가를 분류해보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소득원천(factor)별, 하위집단 혹은 가구특성(가구구성원수, 소득자의 수 등) 등이 소득원천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요인분해 방식에 따라, 쇼록스(Shorrocks), 샤플리(Shapley) 분해법 등을 사용한다(정준호 외 2022, 102-105).[1)]

그런데 같은 지니계수를 가진 사회라도 소득분포가 어느 계층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완화되었는지의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지니계수를 불평등의 수평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의 집중도와 격차는 불평등의 수직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앳킨슨 2015, 62-64). 총소득과 총자산에서 상위분위의 점유율과 소득분배율 등이 대표적이다. 피케티가 주도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2년마다 전 세계 각국의 상위 1%, 10%, 하위 50%의 개인소득 점유율을 발표하고 있다. 자본이익에서 근로자의 임금비율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도 근로소득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보여준다.

## 2. 정당정치와 불평등: 정책과 유권자선호

### 1) 유권자의 선택지로서의 정당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얻는가"(who gets what)의 문제로 본다면, 소득의 분배는 유권자, 정당, 정치인의 선호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권자의 상대적인 소득정도와 그들의 재분배 선호 간 관계는 정치행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경제불평등과 정당정치의 관계연구는 주로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소득과 자산을 독립변수로 하는 투표경향연구는 첫째, 소득과 자산 격차와 투표율과의 상관

1) 참고로 제3장에서는 임금격차의 요인분해를 위해 오하키-블린더 분해법을, 제5장에서는 자산불평등에 어떤 자산 유형이 많이, 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러만과 이자키 분해법을 각각 분석도구로 사용했다.

관계를 분석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분포가 불평등할수록 투표참여자들의 소득격차도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되고, 저소득층이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권혁용·한서빈 2018). 둘째, 이념적 투표경향(계급투표냐? 계급배반투표냐?)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한 연구에 의하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는 소득보다는 자산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자산이 적을수록 진보후보에 투표경향 높다는 것이다(이지은·강원택 2020).

이 같은 연구경향은 유권자의 경제적 지위가 어떤 정치적 반응을 일으키는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행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당정치의 관점에서는 역으로 경제의제(경제성장, 실업, 불평등, 국가부채 등)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반응성, 즉 경제적 불평등 관련 분배와 재분배에 대해 정당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계층, 계급에 반응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정당정치에 대해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정치참여의 능동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다.

### 2) 불평등과 중도전략

이러한 관점에서 흔히 중원(中原)확보를 의미하는 중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재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속에 중도'전략'과 지지층 확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패배의 근인(根因)은 유사한 정책들의 남발속에서 전개된 전략없는 중도경쟁에 경도되어 주어진 선거구도(정권재창출 대 정권교체)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만이 유일한 유권자의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는 중도, 경제적 지위로는 중산층,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의미하는 이른바 중도전략은 중위투표자 이론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 선호는 변화한다. 만약 중위투표자 이론이 선거를 규정한다면, 정당 특유의 정책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데, 멜쩌와 리차드의 중위투표이론(MR이론)[2]에 대한 비판의 핵심도 이것에 있다. 또한 중위투표자 이론에는 제도가 없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간 갈등을 생성하고 이를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장기간 수립된 정치제도를 무시한다. 유권자의 선호는 정치제도(선거제도, 정부형태, 코포라티즘 등)를 통해 투영되고 여과되어 정치적 결과

2) 멜쩌와 리처드의 중위투표자 모델은 호텔링과 다운즈의 작업을 확장한 로버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서 결정적인 투표자들을 중위투표자들이라고 본다. 이들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아지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고 이는 정부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관련이 있다(Meltzer and Richard 1981).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Beramendi and Anderson 2008, 6-9).

카라코취는 남부유럽과 동유럽의 민주주의 이행 이후 불평등 증대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정당과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이외에도 중위투표자 이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투표율 혹은 투표불참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위투표자 이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즉 빈곤층일수록 정치효능감이 낮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유권자 지형에서 중위투표자들의 위치는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집단으로 경도된다. 둘째, 약하고 불안정한, 혹은 제도화 수준이 낮은 정당체계에서 정당들은 조직화된 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지출의 증가가 반드시 불평등의 완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Karakoç 2018, 5-6). 정당체계의 안정화 여부는 남부 및 동부유럽과 우리 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사회지출 증가의 성격, 즉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는 정부의 재량지출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와 불평등 완화와는 밀접하게 연동하지 않는다.

### 3) 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정당의 선거전략은 그 사회적 기반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중도전략에 앞서 누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선언에 어울리는 중산층 연구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화의 고착화, 불안정노동과 근로빈곤의 확대, 자산에 의한 사회적 지위 획득 및 그것의 세습 등 경제환경과 소득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간범위의 안정적 소득생활자의 의미를 갖는 중산층의 정치적 의미가 많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통계상 소득수준에서 OECD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 구간에 속한 사람 혹은 가구원들이다. 가계동향조사를 처음 시작한 1990년 중산층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75.4%이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동일 기준 중산층 가구는 61.1%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회원국의 중산층 평균 가구 비율이 64%에서 61%로 떨어졌으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중간계층 비율은 빠르게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 소득분배에 기초한 위치보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른바 체감 중산층 인식의 감소는 1989년 75.5%에서 2019년 42.2%로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구해근 2022, 50-51). 이러한 차이는 중산층에 관한 인식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소유 및 문화와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급격한 사회변동 및 불평등과 격차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3)]

우리는 시장자본주의체제의 지배적 개념으로서 중산층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에 익숙해 있다. 부유한 사회가 빈곤한 사회보다 더 평등한 경향이 있다는 견해의 근거는 부유한 사회에서는 거대한 중산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Galbraith 2016, 9). 다원주의 이론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달은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면, 교육과 자율성, 개인의 자유, 소유권, 법치, 그리고 정치참여를 추구하는 대규모의 중간소유층을 양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친화적이라고 주장한다(Dahl 1971, 168, 59). 하지만 이러한 중산층이 평등 혹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민주주의에 한결같이 친화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참여와 (시민)교육,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재산권)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즉 정치적 평등이 반드시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정치행동과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세계적 수준에서 전통적인 중간계급이었던 관리자계급의 지배계급화(뒤메닐·레비 2016, 51), 미국사례 연구(Temin 2017, 8)에서 중간계급의 이중경제-금융·기술·전자(FTE) 부문과 중간숙련(semi-skilled) 노동자들의 저임금 부문-로의 분화속에서 중간층 대부분의 생활수준이 하향평준화되었다는 경향도 중도전략이 단순히 이념적 좌우와 계층적 상하의 교집합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4) 민주당의 불평등 대응전략 비전

이제 왜 정당이 불평등 대응에 중요한가를 얘기를 할 대목이다. 정치는 정책과 국가비전이라는 도구와 전망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꾀한다. 그 길목마다 선거라는 전국적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그 중심에 정당이 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정당정치는 책임성과 반응성이 최적의 조합을 이룰 때 유능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책임성(responsibility)이란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 필요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으로 세대 간 공정, 공공지출의 지속가능성, 안보와 교육에 대한 장기투자 정책을 일컫는다(Bardi et. al. 2015, 3).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책임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는 힘들다. 그렇기에 반응성의 문제가 요구된다. 반응성(responsiveness)은 정당과 정치리더가 유권자, 여론, 이익집단, 언론의 단기적 요구에 공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 측면의 책임성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현재의 정치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하는 반응성의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3)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직업·문화·사회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어왔던 서구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과 달리 한국의 중산층은 거의 전적으로 경제력과 소비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인식되어왔다(구해근 2022, 43-48). 이는 개발국가의 유산과 성장담론으로 통해 형성된 중산층의 역사 때문이다.

유능한 정당, 역량있는 정당의 실체다. 유럽의 대표적인 정당연구자인 메이어(Peter Mair)가 유럽정당의 위기를 논할 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책임성과 반응성이 조화되거나 양립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자 간의 긴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불평등이 문제라고 하면서 분배문제를 쟁점화하고 빈곤문제를 의제화하는데 소홀하거나, 분배친화적 정책수립과 비전속에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예외적용을 하거나, 법적용시기의 지연을 통해 제시한 정책과는 다른 메시지나 정책효과를 의도하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일치시키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이 정당의 이념이나, 제도의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제약, 유권자들의 복합적 지위에 따른 선호의 변화 가능성 등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불평등과 빈곤문제 대응과 그 결과의 차이는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개된 '정치'의 차이였다.

무엇보다 불평등에 관한 정부와 정당정책의 난제는 불평등의 복합성, 다중성에 있다. 기회균등 정책으로는 해소될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의 양상은 복잡하다(Franzini and Pianta 2016).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통한 소득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지위나 인정(recognition)와 같은 비경제적(사회적) 측면도 존재한다.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동했던 교육도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소득과 자산불평등에 의해 세대이전되고, 세대로 이전된 교육불평등이 다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복합성과 다중성에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단일정책(single policy)이 아니라 정책패키지(policy package)를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조세나 소득이전과 같은 재분배 영역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임금소득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임금정책, 노동자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실업(재훈련)과 (재)취업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 질수 있는 이행노동시장정책의 강화, 계층이동사다리가 아니라 불평등 세습의 수단이 되어버린 교육의 정상화 등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묶이는 종합적인 정책수립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기존 정책과의 과감한 단절이다. 얽히고 설킨 불평등의 견고함은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과 같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감한 과세, 체계적인 증세 추진 혹은 국가부채 관리를 통한 사회정책예산의 과감한 증액, 대학입학 추첨제 도입 등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경로의존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현실가능성과 과격함 속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림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 3. 본문의 구성과 요지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이하 보고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세계적인 화두이자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큰 쟁점인 불평등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정책수립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데 쓰일 기초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1장과 2장의 지역별 소득과 자산불평등 현황은 '한국의 불평등 지도'로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지역내 불평등도를 측정해서 제시하고 있다. 지역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소득과 자산(부동산)격차의 심각성과 상황을 알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개선으로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한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당원과 국민께 드리는 정책서비스의 일환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자료를 넘쳐난다. 한 대형서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평등"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국내도서만 약 500 여건수가 나왔다. 다양한 시각과 주제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훌륭한 관련 서적이 주는 유용함도 있지만, 이 보고서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불평등 현황과 정책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보고서는 앞서 얘기한 전국 불평등지도와 선별한 불평등 쟁점을 통해 지금 현재 필요한 불평등 대응정책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본문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지역별 불평등 현황을 다루고 있고, 이를 불평등 지도화하여 제시한다. 2부는 불평등 쟁점으로 성별임금격차, 노후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의 소득불평등 강화 효과, 그리고 시간불평등을 다룬다.

**제1장**에서는 지역별 소득불평등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와 노동패널조사를 각각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와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 각각의 지역 간 그리고 지역내 소득불평등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두 자료 간 공통점은 광역보다는 기초내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세통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나타낸 광역은 세종시였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였는데, 이 두 곳의 근로소득 격차는 약 1.38배(38%)였다. 기초로 내려가면 2.89배로 늘어난다. 가장 근로소득이 높은 자치구는 서울의 강남구(7,469만원), 가장 낮은 자치구는 부산 중구(2,581만원)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경우, 광역기준으로는 1.8배(서울이 4,407만원, 경북이 2.449만원), 기초기준으로는 7.23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양도소득의 경우, 광역에서 평균 양도소득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는 3.7배

였고, 기초별 비교에서는 11.3배였다. 주로 개발지역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대도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방 간 차이가 격차를 키웠다.[4)]

다음으로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구소득의 지역별 지니계수다. 2020년 기준으로, 세종, 전남, 경북, 광주 순으로 불평등도가 높았으며, 인천, 강원, 울산, 경기 등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적은 표본수와 특이치(특정가구의 비대한 소득)의 존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불평등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전남의 경우 금융소득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4.8배 높다는 점, 광주의 경우 가구원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볼 때, 소득하위가구의 소득감소가 높은 지니계수의 원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제2장**은 지역별 부동산(토지)소유 현황을 중심으로 자산격차를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자산격차는 자산지니계수 증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2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다음으로 시군구별로 자산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구별 자료접근이 가능한 토지소유현황 및 주택소유 현황 자료를 사용한 불평등 지도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 간 세대별 토지소유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높았으며 지방 중에선 남부지역의 군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토지소유세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시 관악구로 39.2%였다. 기초 중 외지인 토지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였고,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진주시였다. 반면 다른 지역의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충남 계룡시로 관외소유가액의 63.5%를 차지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밀양으로 18.2%를 차지했다. 이어서 지역별 토지가격의 격차를 살펴보면, 인구 1인당 토지가격 기준으로는 서울 중구가, 토지소유자 1인당 평균소유가액은 서울 강남구가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과의 차이는 전자가 32.4배, 후자가 287배였다.

세대별 토지소유비율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으나, 미성년자와 20대 소유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은 0.65%~1.8%를 차지했다. 20대 미만 소유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을 통한 증여 또는

4) 한국의 지역별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국제비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유럽연합 국가내 지역별 가구소득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때 소득이란 혼합소득(mixed income)으로 근로소득과 순자산소득의 합을 말한다. 2018년 기준 벨기에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주는 블람스 바란트(Vlaams-Brabant)주로 유럽연합 평균소득보다 1.48배 높았으며, 가장 낮은 주는 에노(Hainaut)주로 0.91배로, 두 지방의 격차는 1.62배였다. 독일은 바이에른주가 1.91배로 가장 높았고,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가 0.97배로 가장 낮았다(두 지방의 격차는 1.96배).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가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주가 가장 높았고(1.45배), 가장 낮은 지역은 랑그도르쿠시용(Languedoc-Roussillon)으로 0.85배였다. 두 곳의 격차는 1.7배였다(Eurostat 2021). 동유럽을 제외하면 유럽연합 국가내 지역 간 격차는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고소득지역보다는 저소득지역의 유로 평균소득과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Eurostat 2021).

자녀 명의의 부동산 소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다음으로 서울 용산구, 송파구였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 격차를 살펴보자. 서울의 경우 관악구는 전체 가구 중 65%가 무주택 가구였으며, 도봉·노원·성북·은평·송파·양천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서 다주택 가구의 비율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3장**은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과 추세를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임금격차의 요인 중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별에 따른 차이였다.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성은 연령과 경력, 근속년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금도 다른 국가에 못지않게 증가하지만, 여성은 연령이 높아져도 임금이 높아지지 않고 경력과 근속 프리미엄이 컸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을 잇지 못하는 '경력단절'에 의한 패널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 여성은 비교국가 여성 중 유일하게 역량이 높아도 임금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성별 임금격차를 요인분해한 결과도 연령과 역량에 의한 차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노동패널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 추세를 분석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을 분류한 기존연구를 검토하면서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성별 임금 격차 추세는 2010년대 이후, 특히 2016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효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의 연령과 전일제 여부에 의한 격차는 개선이 미비하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노동 이력이 없다. 근로활동 경력이 있는 나머지 절반의 여성 중 출산과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15%정도이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진입과 재퇴장을 반복하는 유형, 불안정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유형이 20% 정도를 차지한다. 생애주기 내내 출산과 육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상용직 지위를 유지하는 여성은 1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이상으로 남녀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돌봄지원에 있어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의무제, 가족돌봄휴가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수급권을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무급가사

노동의 부담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걸림돌 중 하나로, 이에 대해서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제도인 프랑스의 고용보증수표제(CSEU)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노후시기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취약한 원인은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성숙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짧은 가입기간, 그리고 성별,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별로 가입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노후시기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근로시기의 노동시장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연금 개혁 논의의 주된 의견인 기초연금 확대론과 소득대체율 조정론의 한계를 검토하고, 대안으로서 보충적 소득보장제(GIS)의 도입과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로의 전환, 이를 위한 전제로 모든 국민의 최소가입기간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자산불평등의 현황과 구조 추이를 살펴본다. 가구 자산의 약 8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가구자산의 크기는 부동산 자산과 비례했다. 가구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자가거주자의 귀속임대소득과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소득에 포함하여 부동산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원천별 소득지니계수 분해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53.4%로 나타나 임금소득(35.9%)보다 더 크게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은 시간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는 자연자원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회구성원의 지위와 직업, 그리고 젠더에 따라 일상의 시간경험이 달리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시간이 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를 제기하고, 시간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과 개인의 재량시간(시간통제권)이 노동시간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서론, 제6장, 결론은 강병익, 제1장은 채은동, 제2장과 제5장은 이진수, 제3장과 제4장은 신영민이 집필했음을 밝힌다.

# 제 1 부

# 지역별 소득·자산 불평등 현황

제1장 소득불평등 현황
제2장 자산불평등 현황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 2022
# 민주연구원
# 불평등 보고서

# 제1장

## 소득불평등 현황

# 제1장 소득불평등 현황

## 1. 왜 지역별 불평등인가

### 1) 개요

불평등은 상대적이다. 비교대상의 층위에 따라 불평등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불평등을 조사할 수도 있고,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불평등을 조사할 수도 있다. 우리 동네는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평등도가 작을 것이다(다만 우리 집 옆에 대부호가 산다면 불평등은 커질 것이다). [그림 Ⅰ-1]의 (a) 그래프는 전 세계의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소득 성장률을 조사한 것으로, 코끼리 곡선으로 유명하다. (b) 그래프는 국가별로 소득불평도(지니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했으며, (c) 그래프는 미국의 50개 주별로 지니계수를, (d) 그래프는 유로지역의 주 단위별 가구소득 격차를 각각 나타냈다.

[그림 Ⅰ-1] 수준별 불평등 지표

(a) 글로벌 소득 성장률 : 1988~2008년

(b) OECD국가의 국가별 지니계수 비교: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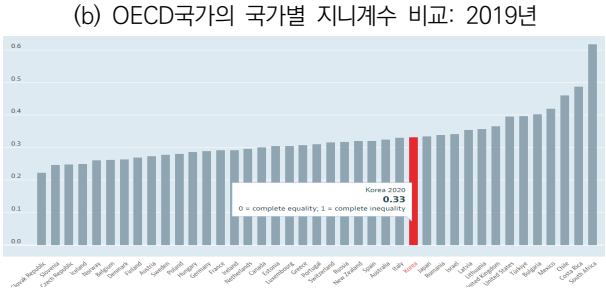


(c) 미국의 주별 지니계수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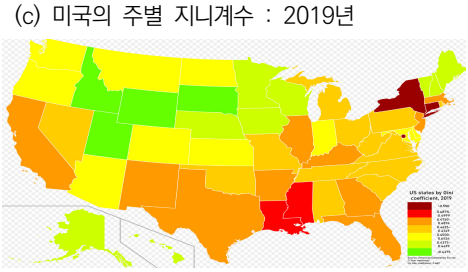

(d) 유럽 주 단위의 주요 가구소득 비교: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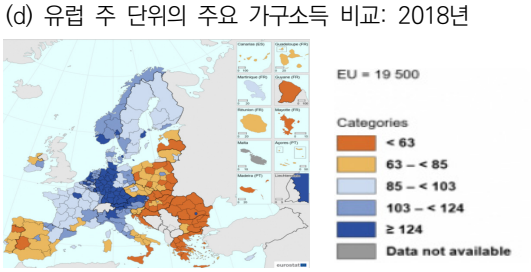


자료: (a) The American Prospect, using data provided by Branko Milanovic, (b) OECD DB, Income inequality, (c) American Community Survey conducted by the US Census Bureau, (d) Eurostat, Regional household income statistics(유로지역 평균 19,500유로).

우리나라 또한 불평등 연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분위별 소득분포, 상위 1% 점유율, 지니계수, 테일 엔트로피 지수, 앳킨슨 지수(Atkinson's measure), 팔마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하나의 수치가 발표되며, 이는 국가 간 비교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 간에도 불평등은 존재한다. 그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일 수도 있지만,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소규모 공동체 간 격차일 수 있다. 만약 부동산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한다면,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한 자산 불평등 지수는 상승할 수 있지만 지역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 지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불평등 지수는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과 보유하지 못한 인원 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불평등 지수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별 소득불평등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는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표본조사를 활용한 방법과 세금징수자료를 활용한 기술통계분석 방법 등 2가지로 진행했다.

먼저 표본조사를 이용한 불평등 연구는 선별된 표본의 상세한 소득 및 자산 내역을 바탕으로 지니계수, 분위별 평균소득, 분위별 소득점유율, 분위별·가구형태별 평균소득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재정패널조사 등이 표본조사에 해당된다.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국제비교에 많이 이용되는 반면 표본조사에 따라 지니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지니계수는 2015년 이전 지수까지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했으나 2016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 바 있다. 표본수가 적게는 4천 가구에서 많게는 2만 가구에 해당하다보니, 가구별 자료는 상세할 수 있으나 전체 가구의 소득·자산을 대표하지 못하거나 임대소득·양도소득 등이 과소보고되는 등의 통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다만 상위 1%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현상이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비교는 가능하다.

반면 전체적인 집계자료를 활용한 방법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세청 세금자료는 소득이 집계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의 누락이 없는 반면, 가구구성·주택유형·가구형태 등의 가구의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다양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실 보도자료[5]을 중심으로 국세청에 100분위 혹은 1,000분위별 소득자료(통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를 활용하여 소득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 지니계수 등의 분석이

5) 용혜인의원실 보도자료(2021.2.26.), 심상정의원실 보도자료(2018.9.2.) 등.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분석이 일회성에 그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공식 지니계수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지니계수의 비교 등 용도가 제한적이다.

여기에서는 공개된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평균소득을 계산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별 평균소득, 소득분포, 지니계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방법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노동자는 월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이외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상의 소득 자료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공식시장을 통해 얻은 소득에 가장 근접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세수실적을 조사하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 약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세수실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6년 근로소득세부터 시군구별 과세실적으로 원천징수지, 주소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했으며, 2018년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까지 그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1,950만명의 근로소득자, 785만명의 종합소득자[6], 101만건[7]의 양도소득세 신고자 등 주요 소득세 항목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별, 22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소득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전체 현황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 세부적인 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6)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모두 있는 인원이 포함되며, 1,950만명 근로소득자와 중복되며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함.

7)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예정신고), 해당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함. 이런 이유로 인원이 아닌 건수로 표시.

[표 I-1] 국세통계연보에서 이용가능한 기초자치단체별 소득불평등 자료

| 세목 | 세부 분류 | 통계 명칭 | 통계 기간 | 과세인원수 (2020년) |
|---|---|---|---|---|
| 근로 소득세[1] | 원천징수지 | 4-2-14.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원천징수지) | 2016~2020 | 19,410,638 |
| | 주소지 | 4-2-15.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주소지) | 〃 | 19,410,638 |
| 종합 소득세 | 납세지 (주소지) | 3-2-1-2.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납세지별, 시·군·구) | 2018~2020 | 7,850,913 |
| 양도 소득세[2] | 전체 (예정신고) | 5-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시·군·구) | 〃 | 854,121 |
| | 전체 (확정신고) | 5-2-4-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V(시·군·구) | 〃 | 152,323 |
| | 주식 (예정신고) | 5-1-8-2. 시·군·구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 〃 | 57,232 |
| | 주식 (확정신고) | 5-2-7-3. 시·군·구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 〃 | 237,036 |
| | 파생상품 (확정신고) | 5-2-8-3.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납세지) | 〃 | 5,532 |
| 종합 부동산세 | 과세항목별 (주택,토지) | 7-1-1-2.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지역, 시·군·구, 결정세액) | 〃 | 미공개[3] |

주: 1) 근로소득세 원정징수지는 노동자의 직장이 위치한 지역을 의미하며, 주소지는 노동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
2) 양도소득세는 예전신고와 확정신고를 합하면 연간 과세실적을 계산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대상자에게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알려줌.
3) 종합부동산세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과세항목별 과세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지역별 세액만 공개. 대신 광역자치단체별로 과세실적은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미시조사자료를 이용한 방법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의 미시자료는 면접조사 설문지를 통해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며, 가계의 상세정보를 활용하여 불평등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공식 소득지니계수는 약 2만 가구에 대해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지만, 조사대상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주거지역이 조사되나 공개되는 자료는 수도권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미시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불평등 분석은 시·도로 자료를 공개하고 1998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했다. 다만, 전체적인 불평등 통계가 가구단위로 조사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별 통계를 먼저 살펴본 후에 국세통계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가구원별 통계를 분석했다.

노동패널자료는 가장 최근인 23차년도 가구용 자료는 11,669가구가 응답했으며,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통계를 분석했다. 다만, 제주(131가구), 세종(65가구) 등은 표본가구가 작아서 특이치 영향이 컸으며, 특히 세종은 2020년 70억원의 기타소득(상속·증여 등)이 발생한 가구로 인해 전체 분석이 왜곡됐다.

[표 I-2] 노동패널의 광역자치단체별 가구분포(2020)

(단위: 가구, %)

|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충북 |
|---|---|---|---|---|---|---|
| 표본가구수 | 2,207 | 652 | 2807 | 359 | 343 | 382 |
| 전국가구수 | 3,850,210 | 1,116,613 | 4,940,014 | 640,230 | 609,797 | 658,515 |
| 비율 | 18.9 | 5.5 | 24.3 | 3.1 | 3.0 | 3.2 |
| | **충남** | **세종** | **광주** | **전북** | **전남** | **대구** |
| 표본가구수 | 480 | 65 | 340 | 432 | 451 | 550 |
| 전국가구수 | 889,101 | 118,630 | 590,213 | 737,144 | 740,947 | 962,605 |
| 비율 | 4.4 | 0.6 | 2.9 | 3.6 | 3.6 | 4.7 |
|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제주** | **전국** |
| 표본가구수 | 630 | 809 | 262 | 769 | 131 | 11,669 |
| 전국가구수 | 1,107,779 | 1,366,424 | 434,462 | 1,329,286 | 257,597 | 20,349,567 |
| 비율 | 5.4 | 6.7 | 2.1 | 6.5 | 1.3 | 100.0 |

주: 전국 가구수는 표본가수에 2018년 가중치(h_weight18)를 적용.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 2. 지역별 근로소득 격차

1,950만명 노동자[8]는 전국 평균 3,848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수도권인 서울·경기, 공무원 도시 세종, 고연봉 숙련사업이 많은 울산 등의 경우에만 전국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근로소득이 전국평균을 하회하였다.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세종시 주민은 전국 평균보다 약 700만원 많은 연봉을 받는 반면, 가장 급여가 낮은 제주도 주민은 전국평균보다 560만원 적은 연봉을 받는 등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이상 소득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최대 18.2%, 최소 -14.6% 등 범위(range)가 32.8% 정도이며, 전국 최저 근로소득지역인 제주(3,287만원) 대비 최고 근로소득지역 세종시(4,550만원)의 임금은 1.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에도 포함되는 점 유의.

[표 I-3]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2020)

(단위: 명, 만원, 위)

| | 노동자 인원수 | 평균 근로소득 | 순위 (총 17개)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비율 |
|---|---|---|---|---|---|
| 전국 | 19,495,359 | 3,848 | - | - | - |
| 서울 | 3,871,889 | 4,400 | 2 | 552 | 14.3% |
| 인천 | 1,162,209 | 3,432 | 15 | -416 | -10.8% |
| 경기 | 5,513,037 | 3,903 | 4 | 55 | 1.4% |
| 강원 | 518,644 | 3,458 | 14 | -390 | -10.1% |
| 대전 | 551,733 | 3,735 | 6 | -114 | -3.0% |
| 충북 | 611,921 | 3,594 | 10 | -255 | -6.6% |
| 충남 | 773,718 | 3,744 | 5 | -104 | -2.7% |
| 세종 | 155,557 | 4,550 | 1 | 701 | 18.2% |
| 광주 | 533,009 | 3,613 | 7 | -236 | -6.1% |
| 전북 | 580,604 | 3,414 | 16 | -434 | -11.3% |
| 전남 | 555,960 | 3,608 | 8 | -241 | -6.3% |
| 대구 | 822,566 | 3,517 | 13 | -332 | -8.6% |
| 경북 | 841,063 | 3,580 | 11 | -268 | -7.0% |
| 부산 | 1,178,358 | 3,557 | 12 | -292 | -7.6% |
| 울산 | 427,794 | 4,356 | 3 | 507 | 13.2% |
| 경남 | 1,163,454 | 3,603 | 9 | -245 | -6.4% |
| 제주 | 228,717 | 3,287 | 17 | -561 | -14.6% |
| 기타 | 5,126 | 1,722 | - | -2,126 | -55.2% |

주: 1. 근로소득자 주거지 기준으로 18개 지역으로 분류. 기타는 순위에서 제외.
2. 기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주민등록번호 신고분, 외국인 등)로 구분함.
3. 최저소득지역(3,287만원) 대비 최고소득지역(4,550만원) 근로소득 비율은 138.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지역별 소득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장 근로소득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7,469만원)였고 최저소득을 받는 지역은 부산 중구(2,581만원)로 나타났으며, 양 자 간의 소득격차는 2.89배 차이였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가 6,131만원으로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은 반면, 구리시는 3,601만원으로 중간 소득을, 동두천시가 2,813만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를 받았으며, 최고소득지역과 최저소득지역의 임금격차는 2.18배로 나타났다. 최저평균소득 대비 최고평균소득 비율은 소속 시군구가 많거나 지역별 격차가 큰 경우 높았는데, 서울 2.53배, 경기 2.18배, 대구 1.81배, 부산 1.72배 등의 지역이 시군구별 지역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낮은 도 지역은 강원 1.20배, 충북 1.25배, 전북 1.28배 경남 1.27배 등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크지 않았다. 특히, 7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주광역시는 자치구별 소득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표 I-4]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2020)

(단위: 개, 만원, 배)

| | 소속 시군구 수 | 소속 시군구 분포 | | | | | | |
|---|---|---|---|---|---|---|---|---|
| | | 최고소득 | | 중위소득 | | 최저소득 | | 최저소득 대비 최고소득 비율 |
| 전국 | 229 | 서울 강남구 | 7,469 | 충남 태안군 | 3,368 | 부산 중구 | 2,581 | 2.89 |
| 서울 | 25 | 강남구 | 7,469 | 강동구 | 4,160 | 강북구 | 2,953 | 2.53 |
| 인천 | 10 | 연수구 | 4,543 | 남동구 | 3,318 | 미추홀구 | 2,939 | 1.55 |
| 경기 | 31 | 과천시 | 6,131 | 구리시 | 3,601 | 동두천시 | 2,813 | 2.18 |
| 강원 | 18 | 동해시 | 3,681 | 화천군 | 3,486 | 횡성군 | 3,070 | 1.20 |
| 대전 | 5 | 유성구 | 4,653 | 중구 | 3,319 | 동구 | 3,046 | 1.53 |
| 충북 | 11 | 청주시 | 3,825 | 음성군 | 3,197 | 괴산군 | 3,051 | 1.25 |
| 충남 | 15 | 계룡시 | 4,504 | 보령시 | 3,339 | 부여군 | 2,985 | 1.51 |
| 세종 | 1 | | | | | | | 1.00 |
| 광주 | 5 | 남구 | 3,803 | 동구 | 3,718 | 북구 | 3,414 | 1.11 |
| 전북 | 14 | 전주시 | 3,664 | 임실군 | 3,192 | 부안군 | 2,871 | 1.28 |
| 전남 | 22 | 광양시 | 4,254 | 장흥군 | 3,242 | 해남군 | 2,999 | 1.42 |
| 대구 | 8 | 수성구 | 4,722 | 달성군 | 3,329 | 서구 | 2,611 | 1.81 |
| 경북 | 23 | 포항시 | 4,051 | 영양군 | 3,232 | 의성군 | 2,843 | 1.42 |
| 부산 | 16 | 해운대구 | 4,449 | 수영구 | 3,534 | 중구 | 2,581 | 1.72 |
| 울산 | 5 | 남구 | 4,608 | 중구 | 4,314 | 울주군 | 4,029 | 1.14 |
| 경남 | 18 | 창원시 | 3,860 | 합천군 | 3,248 | 고성군 | 3,037 | 1.27 |
| 제주 | 2 | 제주시 | 3,310 | | | 서귀포시 | 3,215 | 1.03 |

주: 1. 근로소득자 주거지 기준으로 229개 지역으로 분류. 기타(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불분명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순위에서 제외.
2. 중간소득 시군구는 소속 자치구수가 홀수인 경우 중간값을, 짝수인 경우 중간값에 해당하는 2개 시군구 중 소득이 높은 쪽을 표기.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아래 [그림 Ⅰ-2]와 [그림 Ⅰ-3]은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를 표시한 것으로, 근로소득 상위 20% 이상 도시가 수도권과 동남부 해양권에 위치한 반면, 상위 80% 이하 도시가 주로 중앙의 농촌 지역에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Ⅰ-2]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근로소득 분포지도(2020)

(a) 전국 기초자치단체 :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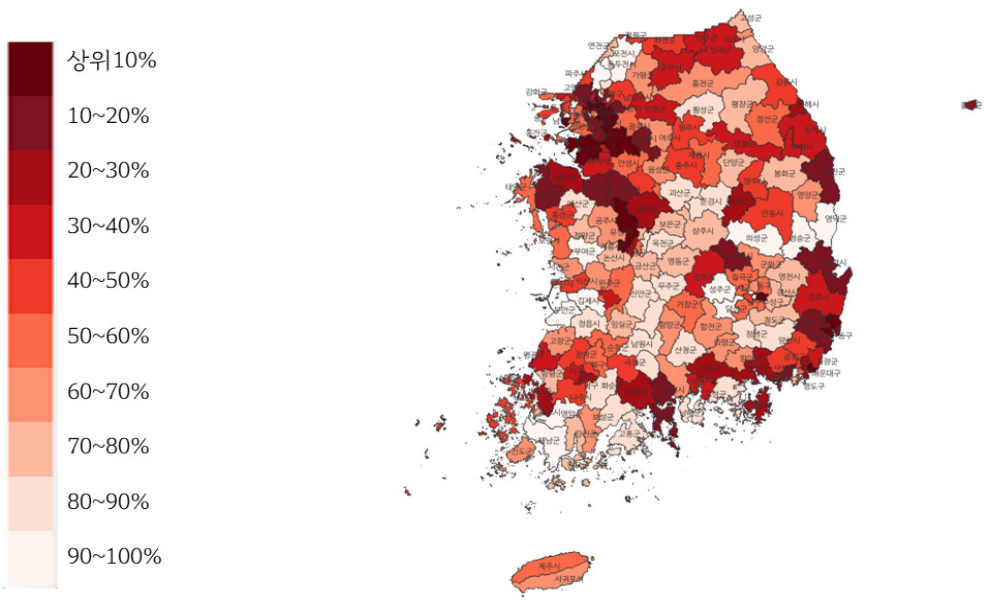


(b) 수도권 : 소득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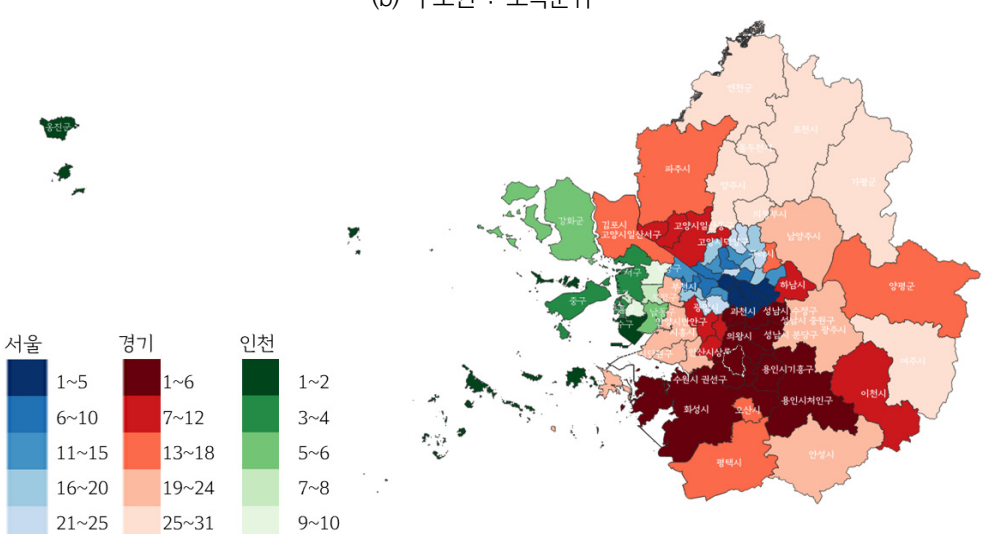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4, 4-2-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자료는 2016년부터 공개됐으며, 2016년과 2020년 평균 근로소득금액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전국 근로소득자의 전체평균은 2016년 3,383만원에서 2020년 3,848만원으로 4년 동안 466만원 증가했으며,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4년 총합 13.8%, 연평균 3.3%로 계산된다. 4년간 소득증가율 상위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충북 진천국, 서울 성동구, 전북 순창군, 광주 동구, 경기 포천시 등이 평균임금이 20% 이상 증가한 반면, 경남 거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임금이 감소했고 조선업 침체 영향으로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등이 소득증가율이 낮은 하위 10개 그룹에 포함됐다.

[표 I-5]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2016-2020)

(단위: 만원, %, 위)

| | | 평균근로소득 | | | | 증가율 순위 |
|---|---|---|---|---|---|---|
| | | 2016년 | 2020년 | 차이 | 증가율 | |
| 전국 | | 3,383 | 3,848 | 466 | 13.8 | |
| 상위 1위 | 서울 용산구 | 5,352 | 6,492 | 1,140 | 21.3 | 1 |
| 상위 2위 | 충북 진천군 | 2,789 | 3,380 | 591 | 21.2 | 2 |
| 상위 3위 | 서울 성동구 | 3,976 | 4,817 | 841 | 21.1 | 3 |
| 상위 4위 | 전북 순창군 | 2,715 | 3,282 | 566 | 20.9 | 4 |
| 상위 5위 | 광주 동구 | 3,096 | 3,718 | 622 | 20.1 | 5 |
| 상위 6위 | 경기 포천시 | 2,368 | 2,843 | 475 | 20.1 | 6 |
| 상위 7위 | 서울 강동구 | 3,469 | 4,160 | 690 | 19.9 | 7 |
| 상위 8위 | 경기 과천시 | 5,124 | 6,131 | 1,007 | 19.7 | 8 |
| 상위 9위 | 충북 음성군 | 2,672 | 3,197 | 525 | 19.6 | 9 |
| 상위 10위 | 대구 중구 | 3,017 | 3,607 | 590 | 19.6 | 10 |
| … | … | … | … | … | … | … |
| 하위 10위 | 울산 남구 | 4,299 | 4,608 | 309 | 7.2 | 220 |
| 하위 9위 | 충남 서산시 | 3,839 | 4,112 | 272 | 7.1 | 221 |
| 하위 8위 | 경북 문경시 | 2,899 | 3,102 | 203 | 7.0 | 222 |
| 하위 7위 | 울산 중구 | 4,043 | 4,314 | 271 | 6.7 | 223 |
| 하위 6위 | 강원 태백시 | 3,395 | 3,614 | 219 | 6.5 | 224 |
| 하위 5위 | 대전 유성구 | 4,377 | 4,653 | 276 | 6.3 | 225 |
| 하위 4위 | 대구 칠곡군 | 3,071 | 3,253 | 183 | 5.9 | 226 |
| 하위 3위 | 울산 동구 | 4,022 | 4,082 | 61 | 1.5 | 227 |
| 하위 2위 | 울산 북구 | 4,476 | 4,540 | 64 | 1.4 | 228 |
| 하위 1위 | 경남 거제시 | 4,020 | 3,844 | -175 | -4.4 | 229 |

주: 근로소득자 주거지 기준으로 229개 지역으로 분류. 기타는 순위에서 제외.
자료: 연도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BOX 1] 근로소득자의 이동

국세청 자료는 거주지와 원천지(직장)로 통계가 집계되어, 노동자의 거주지와 직장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서울은 205만명의 직장인이 순유입되는 반면[9] 대부분 지역은 타 지역 직장으로 이동하는 등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석하면, 서울은 강남구가 노동자 71만명[10]이 순유입되는 도심인 반면 관악구는 노동자 14만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베드타운으로 볼 수 있다. 순유입되는 대표지역은 경기 성남시, 부산 강서구, 전남 나주시 등이며, 순유출되는 지역은 경기 고양시, 부산 북구, 충북 청주시 등이다.

[표 I-6]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 및 주소지(2020)

(단위: 명)

| | 원천징수지 (직장지, A) | 주소지 (주거지, B) | 순직장유입 (A-B) | 직장인 순유입 최대 시군구 | | 직장인 순유출 최대 시군구 | |
|---|---|---|---|---|---|---|---|
| 전국 | 19,495,359 | 19,495,359 | 0 | 강남구 | 710,058 | 고양시 | -180,744 |
| 서울 | 5,926,113 | 3,871,889 | 2,054,224 | 강남구 | 710,058 | 관악구 | -137,262 |
| 인천 | 901,068 | 1,162,209 | -261,141 | 중구 | 24,167 | 부평구 | -78,492 |
| 경기 | 4,521,285 | 5,513,037 | -991,752 | 성남시 | 72,636 | 고양시 | -180,744 |
| 강원 | 431,812 | 518,644 | -86,832 | 정선군 | 3,618 | 원주시 | -28,111 |
| 대전 | 551,354 | 551,733 | -379 | 대덕구 | 20,525 | 서구 | -24,987 |
| 충북 | 557,215 | 611,921 | -54,706 | 음성군 | 29,933 | 청주시 | -74,106 |
| 충남 | 739,423 | 773,718 | -34,295 | 금산군 | 9,724 | 천안시 | -43,069 |
| 세종 | 151,361 | 155,557 | -4,196 | | | | |
| 광주 | 431,788 | 533,009 | -101,221 | 동구 | 6,994 | 북구 | -38,665 |
| 전북 | 512,321 | 580,604 | -68,283 | 완주군 | 20,196 | 전주시 | -65,799 |
| 전남 | 566,612 | 555,960 | 10,652 | 나주시 | 46,482 | 순천시 | -35,573 |
| 대구 | 672,462 | 822,566 | -150,104 | 중구 | 32,325 | 북구 | -46,586 |
| 경북 | 835,173 | 841,063 | -5,890 | 경주시 | 10,552 | 구미시 | -21,846 |
| 부산 | 1,036,112 | 1,178,358 | -142,246 | 강서구 | 58,345 | 북구 | -60,692 |
| 울산 | 400,397 | 427,794 | -27,397 | 울주군 | 6,646 | 중구 | -24,364 |
| 경남 | 1,055,157 | 1,163,454 | -108,297 | 함안군 | 13,965 | 창원시 | -51,690 |
| 제주 | 205,214 | 228,717 | -23,503 | 서귀포시 | -10,270 | 제주시 | -13,233 |
| 기타 | 492 | 5,126 | -4,634 | | | | |

주: 1. 원천징수지(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위치)와 주소지(노동자의 주거지)로 구분하여 집계.
2. 기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구분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4, 4-2-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지역별 종합소득 격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자,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등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020년 기준 785만명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으며, 평균 종합소득(3,169만원)은 평균 근로소득 3,848만원보다 약 700만원 작았다. 지자체별로, 서울(1위)·대구(2위)·부산(3위)·세종(4위)·광주(5위)·대전(6위) 순으로, 서울은 평균종합소득이 평균근로소득보다 높은 유일한 도시였다. 대구(근로소득 13위)·부산(근로소득 12위) 지역은 근로소득은 전국 하위권이나 종합소득은 상위권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낮으나 대도시로서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서울지역의 종합소득은 1,238만원(39.1%) 많은 반면 경북지역은 전국평균보다 720만원(-22.7%) 적었다.

[표 I-7] 광역자치단체별 종합소득 격차(2020)

(단위: 명, 만원, 위)

| | 신고 인원수 | 평균 종합소득 | 순위 (총 17개)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비율 |
|---|---|---|---|---|---|
| 전국 | 7,850,913 | 3,169 | | | |
| 서울 | 1,815,959 | 4,407 | 1 | 1,238 | 39.1% |
| 인천 | 485,089 | 2,514 | 12 | -655 | -20.7% |
| 경기 | 2,291,251 | 2,864 | 9 | -305 | -9.6% |
| 강원 | 192,958 | 2,454 | 16 | -715 | -22.6% |
| 대전 | 207,696 | 2,891 | 6 | -278 | -8.8% |
| 충북 | 201,422 | 2,591 | 11 | -578 | -18.2% |
| 충남 | 274,829 | 2,474 | 14 | -695 | -21.9% |
| 세종 | 47,366 | 3,140 | 4 | -29 | -0.9% |
| 광주 | 195,737 | 2,993 | 5 | -176 | -5.6% |
| 전북 | 210,932 | 2,480 | 13 | -689 | -21.7% |
| 전남 | 198,174 | 2,468 | 15 | -701 | -22.1% |
| 대구 | 323,630 | 3,401 | 2 | 231 | 7.3% |
| 경북 | 290,220 | 2,449 | 17 | -720 | -22.7% |
| 부산 | 470,834 | 3,203 | 3 | 34 | 1.1% |
| 울산 | 140,140 | 2,872 | 8 | -298 | -9.4% |
| 경남 | 413,434 | 2,627 | 10 | -542 | -17.1% |
| 제주 | 91,242 | 2,889 | 7 | -280 | -8.8% |

주: 1. 종합소득자 납세지 기준으로 17개 지역으로 분류.
2. 지역은 종합소득세 납부 지역을 말함(거주자: 주소지 / 비거주자: 주된 사업자 소재지).
3.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275만명은 근로소득이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9)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지역의 주소지역을 둔 인원은 387만 1,889명이지만 서울지역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인원은 592만 6,113명으로, 경기도 등 서울 이외 직역에서 205만명 4,224명이 순유입.

10) 강남구 외 중구(464,893명), 영등포구(386,977명), 용산구(335,465명), 서초구(316,498명) 등 순.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의 지역별 격차는 크게 확대된다. 종합소득의 최고소득 대비 최고소득 비율은 전국 7.23배로, 근로소득의 동 비율 2.89배를 크게 초과하는 등 종합소득의 지역별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7.00배), 경기(3.59배), 대구(3.00배), 부산(2.91배), 인천(2.48배) 등이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동 비율이 2배를 넘지 않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용산구(전국 1위)·강남구(2위)·서초구(3위) 지역은 평균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반면, 강북구(전국 227위)·중랑구(215위)·금천구(208위) 지역은 평균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못했다.

[표 I-8] 기초자치단체별 종합소득 격차(2020)

(단위: 명, 만원, 배)

| | 소속 시군구 수 | 소속 시군구 분포 | | | | | | |
|---|---|---|---|---|---|---|---|---|
| | | 최고소득 | | 중위소득 | | 최저소득 | | 최저소득 대비 최고소득 비율 |
| 전국 | 229 | 서울 용산구 | 12,561 | 인천 남동구 | 2,377 | 인천 동구 | 1,738 | 7.23 |
| 서울 | 25 | 용산구 | 12,561 | 동작구 | 3,057 | 강북구 | 1,795 | 7.00 |
| 인천 | 10 | 연수구 | 4,316 | 옹진군 | 2,328 | 동구 | 1,738 | 2.48 |
| 경기 | 31 | 과천시 | 6,621 | 가평군 | 2,470 | 동두천시 | 1,846 | 3.59 |
| 강원 | 18 | 속초시 | 2,783 | 동해시 | 2,365 | 정선군 | 1,889 | 1.47 |
| 대전 | 5 | 유성구 | 3,966 | 중구 | 2,493 | 동구 | 2,035 | 1.95 |
| 충북 | 11 | 청주시 | 2,808 | 옥천군 | 2,180 | 단양군 | 1,884 | 1.49 |
| 충남 | 15 | 계룡시 | 2,855 | 보령시 | 2,299 | 청양군 | 2,001 | 1.43 |
| 세종 | 1 | 세종 | 3,140 | 세종 | 3,140 | 세종 | 3,140 | 1.00 |
| 광주 | 5 | 남구 | 3,792 | 동구 | 3,108 | 북구 | 2,577 | 1.47 |
| 전북 | 14 | 전주시 | 2,883 | 김제시 | 2,085 | 장수군 | 1,820 | 1.58 |
| 전남 | 22 | 여수시 | 3,049 | 나주시 | 2,155 | 진도군 | 1,863 | 1.64 |
| 대구 | 8 | 수성구 | 6,081 | 북구 | 2,655 | 서구 | 2,026 | 3.00 |
| 경북 | 23 | 성주군 | 2,732 | 영천시 | 2,301 | 청송군 | 1,758 | 1.55 |
| 부산 | 16 | 해운대구 | 5,482 | 서구 | 2,836 | 중구 | 1,885 | 2.91 |
| 울산 | 5 | 남구 | 3,370 | 북구 | 2,697 | 동구 | 2,299 | 1.47 |
| 경남 | 18 | 진주시 | 3,015 | 양산시 | 2,290 | 고성군 | 1,952 | 1.54 |
| 제주 | 2 | 제주시 | 3,028 | 제주시 | 3,028 | 서귀포시 | 2,840 | 1.07 |

주: 1. 종합소득자 납세지 기준으로 17개 지역으로 분류.
2. 중간소득 시군구는 소속 자치구수가 홀수인 경우 중간값을, 짝수인 경우 중간값에 해당하는 2개 시군구 중 소득이 높은 쪽을 표기.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I-3]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종합소득 분포지도(2020)

(a) 전국 기초자치단체 :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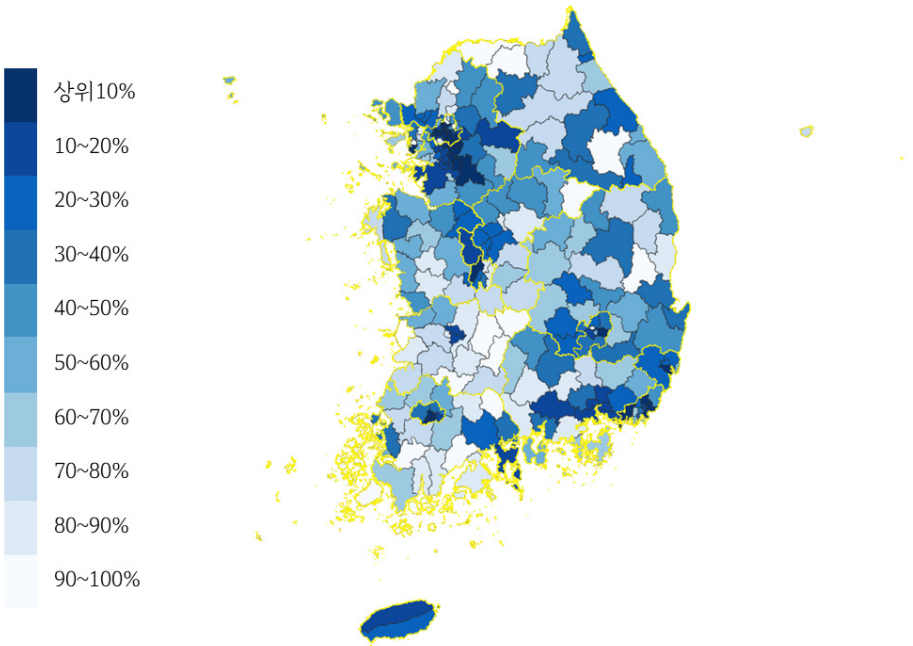


(b) 수도권 : 소득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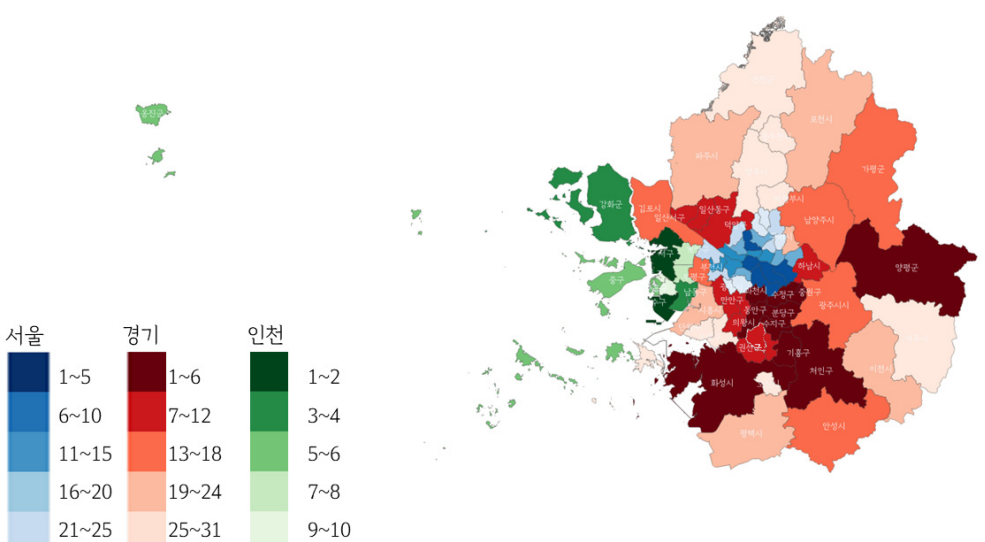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 785만명 중에는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이 모두 있는 275만명[11]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임금분포를 검토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순수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대구 지역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2위)·부산(3위)·제주(4위)·광주(5위)·대전(6위) 등 대도시와 관광도시의 순위가 높았다. 다만, 순수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전국 임금격차는 최대 600만원, 최소 -200만원 내외 규모로 근로소득에 비해 크지 않았고 평균 소득 또한 2천만원 내외 규모를 보였다.

[표 I-9] 광역자치단체별 종합소득 격차(2020)

(단위: 명, 만원, 위)

| | 근로소득 있는 종합소득자 | |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 | |
|---|---|---|---|---|---|---|
| | 인원수 | 평균소득 | 순위 | 인원수 | 평균소득 | 순위 |
| 전국 | 2,746,742 | 4,865 | | 5,104,171 | 2,256 | |
| 서울 | 696,201 | 7,043 | 1 | 1,119,758 | 2,768 | 2 |
| 인천 | 165,765 | 3,659 | 11 | 319,324 | 1,919 | 17 |
| 경기 | 820,263 | 4,356 | 4 | 1,470,988 | 2,033 | 11 |
| 강원 | 62,319 | 3,506 | 16 | 130,639 | 1,952 | 15 |
| 대전 | 75,905 | 4,029 | 8 | 131,791 | 2,235 | 6 |
| 충북 | 69,098 | 3,603 | 13 | 132,324 | 2,063 | 10 |
| 충남 | 90,024 | 3,539 | 15 | 184,805 | 1,956 | 14 |
| 세종 | 20,794 | 4,312 | 6 | 26,572 | 2,223 | 7 |
| 광주 | 72,004 | 4,255 | 7 | 123,733 | 2,259 | 5 |
| 전북 | 71,115 | 3,389 | 17 | 139,817 | 2,018 | 12 |
| 전남 | 60,868 | 3,601 | 14 | 137,306 | 1,966 | 13 |
| 대구 | 101,421 | 4,643 | 3 | 222,209 | 2,833 | 1 |
| 경북 | 86,449 | 3,632 | 12 | 203,771 | 1,947 | 16 |
| 부산 | 148,347 | 4,967 | 2 | 322,487 | 2,392 | 3 |
| 울산 | 47,938 | 4,329 | 5 | 92,202 | 2,114 | 8 |
| 경남 | 128,681 | 3,769 | 10 | 284,753 | 2,111 | 9 |
| 제주 | 29,550 | 4,024 | 9 | 61,692 | 2,346 | 4 |

주: 1. 종합소득자 납세지 기준으로 17개 지역으로 분류.
2. 지역은 종합소득세 납부 지역을 말함(거주자: 주소지 / 비거주자: 주된 사업자 소재지).
3.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785만명을 근로소득 있는 인원 275만명과 근로소득 없는 인원 510만명으로 구분하여 분석.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3-1-8, 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1)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6%인 3,187만원,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은 전체 소득의 34%인 1,678만원을 차지했다.

종합하면, 지역별로 소득의 원천(근로소득, 근로소득 이외[12])에 따라 소득격차 또한 달랐다.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 1,675만명의 경우, 세종·울산·서울이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제주·전북·인천은 임금이 낮았다.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의 경우, 대구·서울·부산 순으로 평균소득이 높은 반면, 강원·경북·인천은 평균소득이 낮았다. 특히, 인천은 양 주요 소득이 모두 전국 하위권이며, 대신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인원의 총 소득은 전국 11위로 나타났다. 대구와 부산은 임금은 전국 평균 이하였지만 순수 사업자의 소득이 전국 최상위권이었으며, 제주 또한 임금은 전국 최하 수준이지만 관광업에 따라 사업소득은 전국 상위권으로 집계됐다.

[표 I-10]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순위(2020)

| |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소득자 | 둘 다 발생한 종합소득자 |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만 발생한 종합소득자 |
|---|---|---|---|
| 인원수 | 16,748,617명 | 2,746,742명 | 5,104,171명 |
| 평균소득금액 | 3,957만원 | 4,865만원 | 2,256만원 |
| 1위 | 세종 | 서울 | 대구 |
| 2위 | 울산 | 부산 | 서울 |
| 3위 | 서울 | 대구 | 부산 |
| 4위 | 경기 | 경기 | 제주 |
| 5위 | 충남 | 울산 | 광주 |
| 6위 | 대전 | 세종 | 대전 |
| 7위 | 전남 | 광주 | 세종 |
| 8위 | 광주 | 대전 | 울산 |
| 9위 | 충북 | 제주 | 경남 |
| 10위 | 경남 | 경남 | 충북 |
| 11위 | 경북 | 인천 | 경기 |
| 12위 | 부산 | 경북 | 전북 |
| 13위 | 강원 | 충북 | 전남 |
| 14위 | 대구 | 전남 | 충남 |
| 15위 | 인천 | 충남 | 강원 |
| 16위 | 전북 | 강원 | 경북 |
| 17위 | 제주 | 전북 | 인천 |

주: 1. 근로소득세는 주소지 기준, 종합소득자는 납세지 기준으로 각각 17개 지역으로 분류.
2.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1,950만명에서 근로소득과 이외 종합소득 모두 있는 인원 275만명을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 1,675만명으로 계산. 소득은 근로소득만 제외.
3.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785만명을 근로소득 있는 인원 275만명과 근로소득 없는 인원 510만명으로 구분하여 분석.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5, 3-1-8, 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소득은 3개 직업군(근로자, 사업자, 양 소득 모두 보유)과 17개 지역 등 51개로 구분하여 평균소득 순위를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직업군은 양 소득 모두 보유자(전국평균: 4,865만원, 근로자(평균 3,957만원), 사업자(평균 2,256만원) 순이며, 주로 상위권에 양 소득 보유자(서울, 부산, 대구, 경기, 울산, 세종 등) 및 세종 근로자, 울산 근로자, 서울 근로자 등이 분포했다. 반대로, 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평균소득이 3천만원보다 낮았으며, 사업자 중 가장 소득이 높은 대구 사업자가 근로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제주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았다.

[표 I-11] 직업별 및 지역별 소득순위(2020)

(단위: 만명, 만원)

| # | 구분 | 인원수 | 평균소득 | # | 구분 | 인원수 | 평균소득 |
|---|---|---|---|---|---|---|---|
| 1 | 서울: 근로+사업 | 69.6 | 7,043 | 27 | 전남: 근로+사업 | 6.1 | 3,601 |
| 2 | 부산: 근로+사업 | 14.8 | 4,967 | 28 | 대구: 근로자 | 72.1 | 3,599 |
| 3 | 세종: 근로자 | 13.5 | 4,747 | 29 | 인천: 근로자 | 99.6 | 3,597 |
| 4 | 대구: 근로+사업 | 10.1 | 4,643 | 30 | 전북: 근로자 | 50.9 | 3,555 |
| 5 | 울산: 근로자 | 38.0 | 4,488 | 31 | 충남: 근로+사업 | 9.0 | 3,539 |
| 6 | 서울: 근로자 | 317.6 | 4,429 | 32 | 강원: 근로+사업 | 6.2 | 3,506 |
| 7 | 경기: 근로+사업 | 82.0 | 4,356 | 33 | 전북: 근로+사업 | 7.1 | 3,389 |
| 8 | 울산: 근로+사업 | 4.8 | 4,329 | 34 | 제주: 근로자 | 19.9 | 3,385 |
| 9 | 세종: 근로+사업 | 2.1 | 4,312 | 35 | 대구: 사업자 | 22.2 | 2,833 |
| 10 | 광주: 근로+사업 | 7.2 | 4,255 | 36 | 서울: 사업자 | 112.0 | 2,768 |
| 11 | 경기: 근로자 | 469.3 | 4,061 | 37 | 부산: 사업자 | 32.2 | 2,392 |
| 12 | 대전: 근로+사업 | 7.6 | 4,029 | 38 | 제주: 사업자 | 6.2 | 2,346 |
| 13 | 제주: 근로+사업 | 3.0 | 4,024 | 39 | 광주: 사업자 | 12.4 | 2,259 |
| 14 | 충남: 근로자 | 68.4 | 3,901 | 40 | 대전: 사업자 | 13.2 | 2,235 |
| 15 | 대전: 근로자 | 47.6 | 3,879 | 41 | 세종: 사업자 | 2.7 | 2,223 |
| 16 | 경남: 근로+사업 | 12.9 | 3,769 | 42 | 울산: 사업자 | 9.2 | 2,114 |
| 17 | 전남: 근로자 | 49.5 | 3,744 | 43 | 경남: 사업자 | 28.5 | 2,111 |
| 18 | 광주: 근로자 | 46.1 | 3,740 | 44 | 충북: 사업자 | 13.2 | 2,063 |
| 19 | 충북: 근로자 | 54.3 | 3,727 | 45 | 경기: 사업자 | 147.1 | 2,033 |
| 20 | 경남: 근로자 | 103.5 | 3,722 | 46 | 전북: 사업자 | 14.0 | 2,018 |
| 21 | 경북: 근로자 | 75.5 | 3,703 | 47 | 전남: 사업자 | 13.7 | 1,966 |
| 22 | 인천: 근로+사업 | 16.6 | 3,659 | 48 | 충남: 사업자 | 18.5 | 1,956 |
| 23 | 경북: 근로+사업 | 8.6 | 3,632 | 49 | 강원: 사업자 | 13.1 | 1,952 |
| 24 | 부산: 근로자 | 103.0 | 3,616 | 50 | 경북: 사업자 | 20.4 | 1,947 |
| 25 | 강원: 근로자 | 45.6 | 3,608 | 51 | 인천: 사업자 | 31.9 | 1,919 |
| 26 | 충북: 근로+사업 | 6.9 | 3,603 | | | | |

주: 직업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 종합소득만 있는 인원, 둘 다 있는 인원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지역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5, 3-1-8, 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4. 지역별 양도소득 격차

양도소득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을 양도할 때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하며, 누적된 자사가치의 상승분이 일정 시점에 실현하는 자본소득 성격이 짙다. 양도소득(1억 3천만원)은 근로소득(4천만원), 종합소득(3천만원) 등과 비교하여 편차가 컸으며, 주로 대도시 지역과 제주[13]·세종 등 개발이 집중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의 양도소득 규모가 컸고 개발이 더딘 도 지역은 하위권을 맴돌았다.

[표 I-12] 광역자치단체별 양도소득 격차(2020)

(단위: 명, 만원, 위)

| | 건수 | 평균 양도가액 | 평균 양도소득 | 양도소득 순위 | 평균대비 소득격차 | 소득격차 비율 |
|---|---|---|---|---|---|---|
| 전국 | 1,006,444 | 103,656 | 12,929 | | | |
| 서울 | 212,240 | 201,236 | 22,762 | 1 | 9,833 | 76.0% |
| 인천 | 47,528 | 63,924 | 8,458 | 8 | -4,471 | -34.6% |
| 경기 | 255,156 | 109,629 | 13,996 | 3 | 1,067 | 8.3% |
| 강원 | 29,198 | 43,369 | 7,715 | 13 | -5,215 | -40.3% |
| 대전 | 28,625 | 60,891 | 9,185 | 7 | -3,744 | -29.0% |
| 충북 | 30,811 | 38,683 | 8,013 | 12 | -4,916 | -38.0% |
| 충남 | 41,251 | 52,386 | 8,102 | 10 | -4,827 | -37.3% |
| 세종 | 9,302 | 61,821 | 10,076 | 6 | -2,853 | -22.1% |
| 광주 | 29,439 | 45,932 | 8,054 | 11 | -4,875 | -37.7% |
| 전북 | 34,591 | 54,336 | 6,160 | 17 | -6,769 | -52.4% |
| 전남 | 39,429 | 43,141 | 6,655 | 16 | -6,274 | -48.5% |
| 대구 | 50,845 | 73,049 | 11,117 | 4 | -1,813 | -14.0% |
| 경북 | 47,928 | 57,771 | 7,306 | 14 | -5,624 | -43.5% |
| 부산 | 66,403 | 62,768 | 10,567 | 5 | -2,362 | -18.3% |
| 울산 | 19,002 | 60,406 | 8,263 | 9 | -4,666 | -36.1% |
| 경남 | 54,128 | 38,070 | 7,211 | 15 | -5,719 | -44.2% |
| 제주 | 10,568 | 461,187 | 15,934 | 2 | 3,004 | 23.2% |

주: 1. 양도소득 납세지 기준으로 17개 지역으로 분류.
2.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하고 계산.
3.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통해 과세되며, 연간 양도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3-1-8, 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3) 제주는 자산의 평균 양도가액이 46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액의 금융상품이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지는 파생상품에 기안한다. 제주의 전체 양도가액은 49조원이며 이중 대부분인 46조원이 과세인원 54명에 의한 파생금융상품 양도가액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의 과세물건별로 양도소득을 살펴보면, 평균 양도소득은 주식 6,354만원, 파생금융상품 1억 1,980만원, 이외 부동산 등 자산 1억 5,675만원으로 계산된다.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은 세율이 달라 자료가 따로 집계되고 1년 단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되지만[14], 부동산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오랜 기간 누적된 자본이익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서울은 주식, 부동산 등의 평균양도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며, 전북은 주식과 부동산 등의 평균양도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평균양도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13] 광역자치단체별·양도항목별 양도소득 격차(2020)

(단위: 명, 만원, 위)

| | 주식 | | 파생금융상품 | | 부동산 등 이외 자산 | |
|---|---|---|---|---|---|---|
| | 건수 | 평균 양도소득 | 건수 | 평균 양도소득 | 건수 | 평균 양도소득 |
| 전국 | 294,268 | 6,354 | 5,532 | 11,980 | 706,644 | 15,675 |
| 서울 | 94,895 | 11,479 | 1,900 | 17,427 | 115,445 | 32,124 |
| 인천 | 8,398 | 3,816 | 209 | 6,302 | 38,921 | 9,471 |
| 경기 | 65,160 | 5,791 | 1,517 | 12,942 | 188,479 | 16,841 |
| 강원 | 6,835 | 1,629 | 123 | 6,028 | 22,240 | 9,594 |
| 대전 | 7,853 | 5,784 | 159 | 4,940 | 20,613 | 10,514 |
| 충북 | 9,682 | 1,480 | 100 | 4,760 | 21,029 | 11,036 |
| 충남 | 10,809 | 2,009 | 137 | 6,659 | 30,305 | 10,282 |
| 세종 | 2,449 | 3,042 | 65 | 5,060 | 6,788 | 12,662 |
| 광주 | 11,753 | 2,443 | 118 | 4,747 | 17,568 | 11,830 |
| 전북 | 9,069 | 1,081 | 129 | 18,809 | 25,393 | 7,910 |
| 전남 | 9,949 | 1,690 | 101 | 4,799 | 29,379 | 8,343 |
| 대구 | 11,663 | 3,128 | 213 | 5,586 | 38,969 | 13,538 |
| 경북 | 10,008 | 2,616 | 142 | 5,435 | 37,778 | 8,555 |
| 부산 | 12,829 | 6,502 | 270 | 5,412 | 53,304 | 11,572 |
| 울산 | 5,606 | 3,016 | 102 | 5,486 | 13,294 | 10,498 |
| 경남 | 12,847 | 2,705 | 193 | 3,772 | 41,088 | 8,636 |
| 제주 | 4,463 | 4,045 | 54 | 14,519 | 6,051 | 24,715 |

주: 1. 양도소득 납세지 기준으로 17개 지역으로 분류.
2.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하고 계산.
3.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통해 과세되며, 연간 양도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결정.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3-1-8, 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4) 다만, 상장주식은 대주주 기준(코스피 기준 : 항목별 보유비율 1% 초과 또는 보유액 1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만족하는 인원만 과세되고, 나머지 소액주주는 비과세.

[그림 I-4]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평균양도소득 분포지도(2020)

(a) 전국 기초자치단체 :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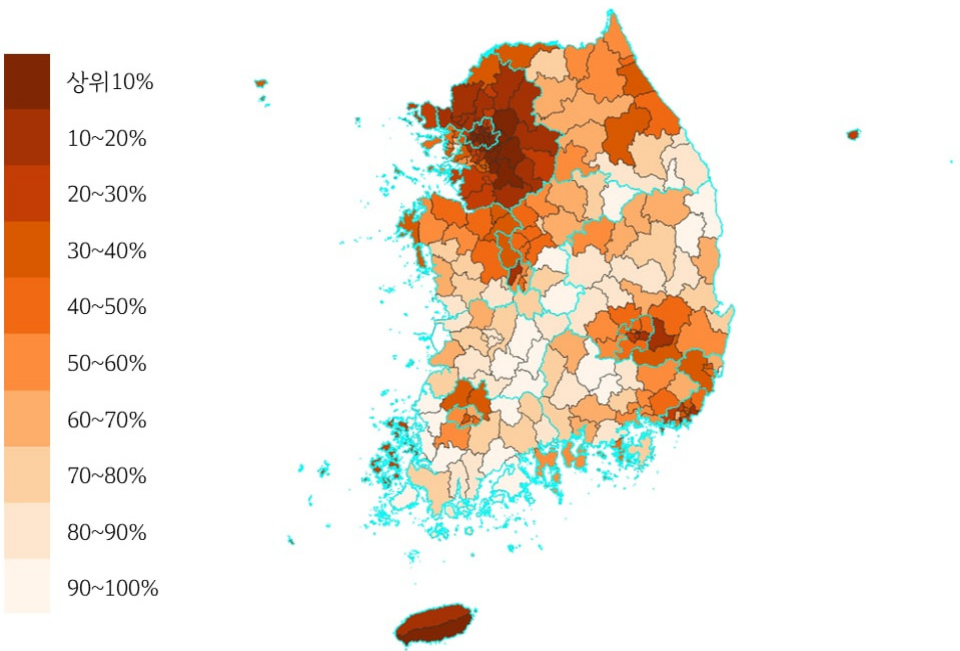


(b) 수도권 : 소득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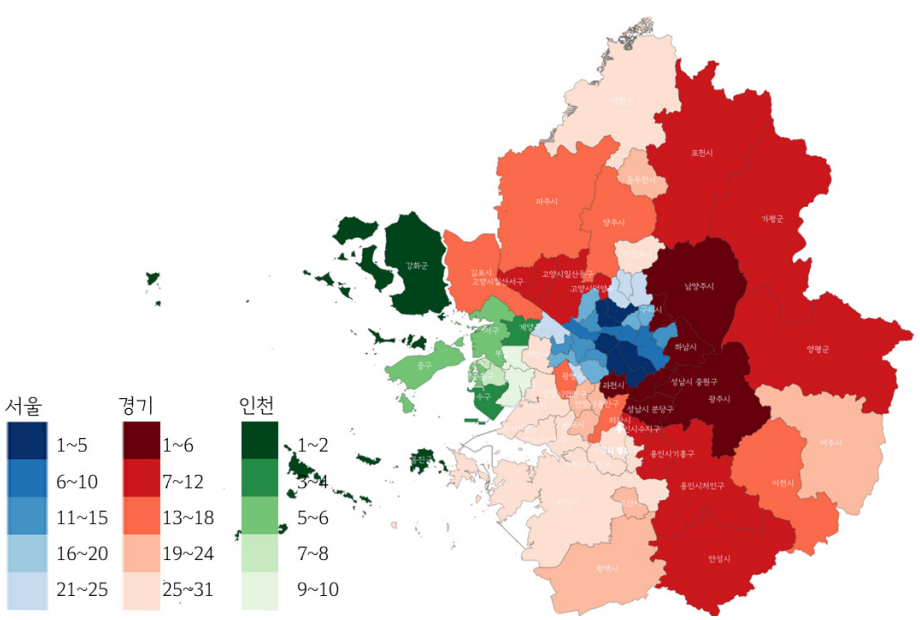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3-1-8, 3-2-1-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5. 지역별 가구소득 불평등

전국 가구의 2020년 평균소득은 5,179만원이며, 이중 근로소득 4,214만원이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이외 기타소득(277만원)·이전소득(275만원)·사회보험소득(211만원)·부동산소득(167만원)·금융소득(36만원)이 18.6%를 구성했다. 총소득은 세종시(3억 3,857억원, 우발소득 제외 시 6,548만원), 울산(5,443만원), 인천(4,956만원), 경기(4,703만원), 충남(4,411만원) 순으로 높은 반면, 강원(3,411만원), 제주(3,984만원), 전북(3,488만원) 순으로 낮았다. 인천의 총소득은 전국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국세통계연보 분석에서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도 지역 소득은 국세통계연보 통계와 같이 낮았다. 전남은 금융소득 2억원 가구가 포함돼 금융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전소득이 높게 나타나(2018~2020년 모두 전국평균 크게 상회) 광주·전북보다 소득이 높았으며, 세종은 표본수가 적지만 기타소득 17억원 가구, 부동산소득 1억원 초과 2가구 등의 영향이 컸다.

[표 I-14] 광역자치단체별 가구별 소득 격차(2020)

(단위: 만원, 위)

| | 근로소득 | 사회보험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이전소득 | 기타 소득 | 총소득 | 총소득 순위 |
|---|---|---|---|---|---|---|---|---|
| 전국 | 4,214 | 211 | 36 | 167 | 275 | 277 | 5,179 | |
| (비율) | (81.4%) | (4.1%) | (0.7%) | (3.2%) | (5.3%) | (5.3%) | (100%) | |
| 서울 | 3,968 | 178 | 26 | 236 | 245 | 104 | 4,757 | 10 |
| 인천 | 4,956 | 149 | 25 | 115 | 267 | 206 | 5,717 | 3 |
| 경기 | 4,703 | 196 | 47 | 175 | 185 | 140 | 5,446 | 4 |
| 강원 | 3,411 | 334 | 3 | 97 | 342 | 18 | 4,204 | 17 |
| 대전 | 3,858 | 269 | 21 | 175 | 330 | 96 | 4,750 | 11 |
| 충북 | 3,578 | 268 | 42 | 199 | 399 | 217 | 4,704 | 13 |
| 충남 | 4,411 | 169 | 22 | 143 | 371 | 141 | 5,257 | 5 |
| 세종 | 5,220 | 222 | 14 | 569 | 400 | 27,432 | 33,857 | 1 |
| 광주 | 4,029 | 210 | 9 | 242 | 280 | 114 | 4,885 | 9 |
| 전북 | 3,488 | 246 | 42 | 161 | 377 | 105 | 4,420 | 15 |
| 전남 | 3,883 | 202 | 172 | 117 | 539 | 160 | 5,073 | 6 |
| 대구 | 3,897 | 246 | 15 | 214 | 277 | 67 | 4,716 | 12 |
| 경북 | 3,733 | 281 | 22 | 92 | 269 | 66 | 4,463 | 14 |
| 부산 | 4,129 | 222 | 33 | 91 | 317 | 97 | 4,890 | 8 |
| 울산 | 5,443 | 202 | 31 | 141 | 166 | 250 | 6,233 | 2 |
| 경남 | 4,156 | 245 | 34 | 92 | 321 | 53 | 4,900 | 7 |
| 제주 | 3,984 | 67 | 3 | 147 | 119 | 8 | 4,328 | 16 |

주: 1. 소득이 없는 가구는 0원으로 처리하여 평균을 계산.
2. 세종시는 특이치(기타소득 70억원 발생)로 인해 총소득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우발적 소득(상속·증여 등) 제외하더라도 총소득(6,548만원)이 가장 높았음.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지역별 가구소득이 전국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분석하면, 총소득은 최대 126%(세종, 우발소득 제외)에서 최소 81%(강원)로, 그 범위가 45%포인트에 이른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지역별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나머지 소득은 지역별로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 지역 대비 최대소득 지역 비율은 2020년 1.56배로 나타났는데, 2018년 1.67배, 2019년 1.69배로와 비교하면 소득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세종의 17억원 기타소득, 전남의 1억원·3억원 금융소득, 대구의 3억원 부동산소득 등 표본가구수가 적은 지역의 우발소득으로 인해 전체 평균소득 비교가 어려워지는 등 미시자료분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표 I-15] 광역자치단체별 가구별 전국평균 대비 소득 비중(2020)

(단위: %)

| | 근로소득 | 사회보험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이전소득 | 기타소득 | 전체소득 |
|---|---|---|---|---|---|---|---|
| 전국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서울 | 94 | 85 | 72 | 141 | 89 | 38 | 92 |
| 인천 | 118 | 71 | 69 | 69 | 97 | 74 | 110 |
| 경기 | 112 | 93 | 130 | 105 | 67 | 51 | 105 |
| 강원 | 81 | 158 | 9 | 58 | 125 | 6 | 81 |
| 대전 | 92 | 128 | 59 | 105 | 120 | 35 | 92 |
| 충북 | 85 | 127 | 118 | 119 | 145 | 78 | 91 |
| 충남 | 105 | 80 | 61 | 85 | 135 | 51 | 102 |
| 세종 | 124 | 105 | 39 | 341 | 146 | 9,908<br>(46) | 654<br>(126) |
| 광주 | 96 | 100 | 26 | 145 | 102 | 41 | 94 |
| 전북 | 83 | 117 | 118 | 97 | 137 | 38 | 85 |
| 전남 | 92 | 96 | 481 | 70 | 196 | 58 | 98 |
| 대구 | 92 | 117 | 41 | 128 | 101 | 24 | 91 |
| 경북 | 89 | 134 | 61 | 55 | 98 | 24 | 86 |
| 부산 | 98 | 105 | 93 | 55 | 115 | 35 | 94 |
| 울산 | 129 | 96 | 88 | 85 | 60 | 90 | 120 |
| 경남 | 99 | 116 | 95 | 55 | 117 | 19 | 95 |
| 제주 | 95 | 32 | 9 | 88 | 43 | 3 | 84 |
| 최대 | 129 | 158 | 481 | 341 | 196 | 9,908 | 126 |
| 최소 | 81 | 71 | 9 | 55 | 60 | 6 | 81 |
| 범위 | 48 | 88 | 471 | 286 | 136 | 9,901 | 45 |

주: 1. 소득이 없는 가구는 0원으로 처리하여 평균을 계산.
2. 세종시의 괄호( ) 안 수치는 우발소득(기타소득 70억원)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며, 전체 소득을 지방별로 비교할 때는 세종시 우발소득 제외하고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그림 I-5]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소득 분포지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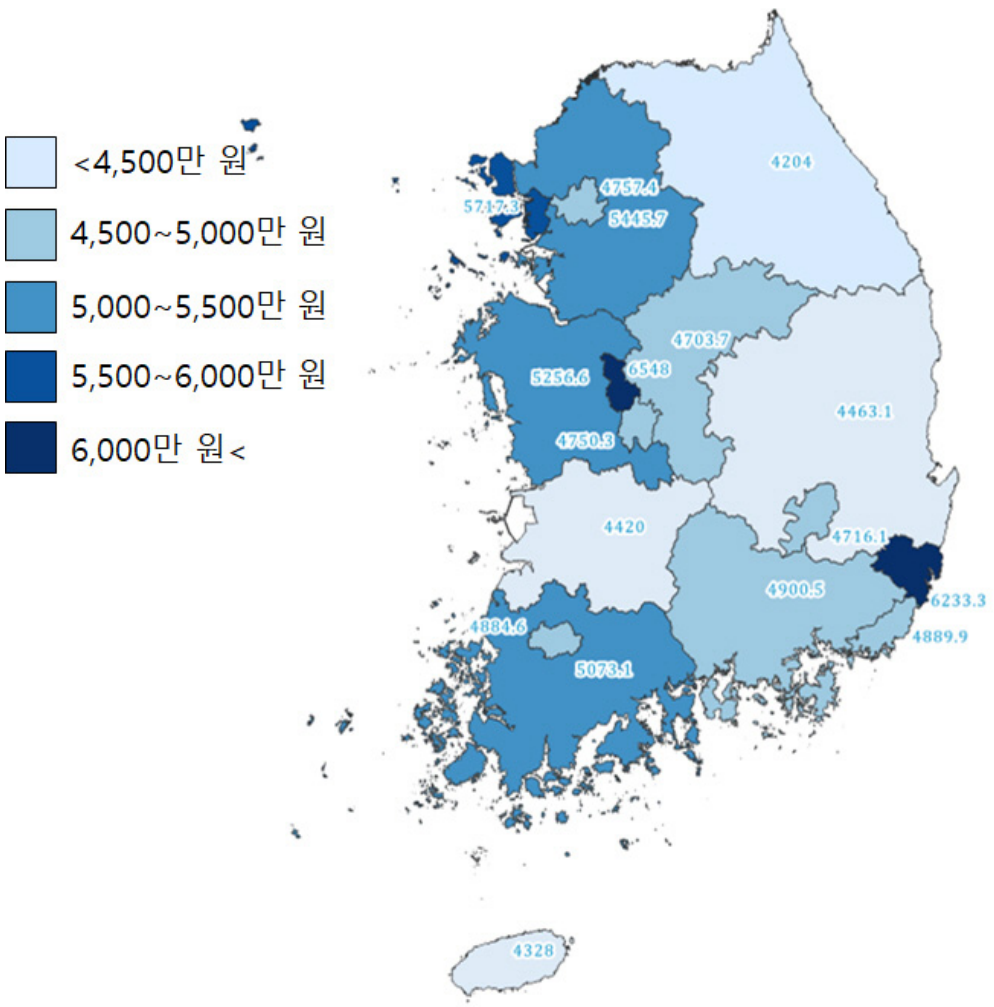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2018~2020년 동안 가구소득의 증가율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전북(18.6%), 광주(17.6%), 경북(17.5%) 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반면 대전(-8.3%), 울산(-1.6%), 부산(0.9%), 대구(1.2%) 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광주 지역은 견고한 소득 증가세를 보이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 I-6]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소득 증가율(201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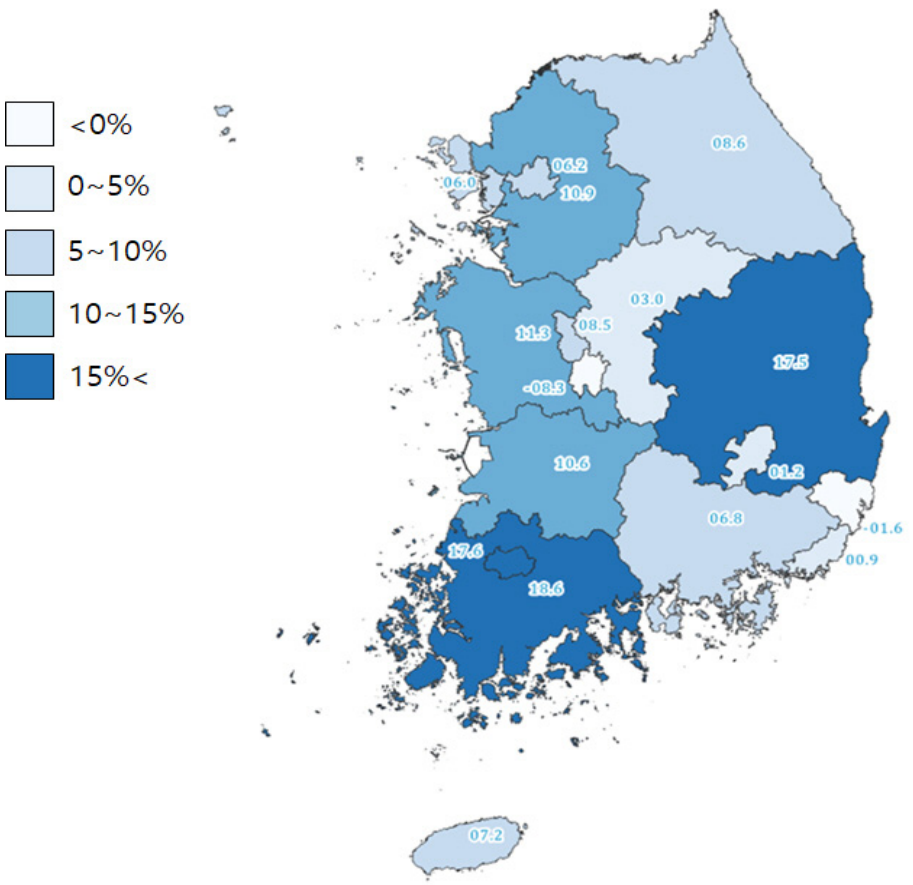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한편, 노동패널을 이용한 전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2018년 0.415에서 2019년 0.407로 불평등 지수가 소폭 감소했다가, 2020년 0.421로 증가했다. 이는 공식 지니계수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20년 시장소득 지니계수 0.405와 유사했다.

[표 I-16] 전국단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 추이(2018-2020)

| | 2018 | 2019 | 2020 |
|---|---|---|---|
| 지니계수 | 0.415 | 0.407 | 0.421 |
| 지니계수 변화분 | - | -0.008 | 0.013 |
| 지니계수 변화율 | - | -1.9% | 3.3%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2020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세종, 전남, 경북, 광주 순으로 불평등도가 높았으며, 인천, 강원, 울산, 경기 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시는 표본 가구수가 많지 않고 특이치가 존재하는 관계로 불평등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전남·경북·광주 등은 전국 지니계수보다 불평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득 3위, 소득평등 1위)·경기(소득 4위, 소득평등 4위)는 가구소득이 높고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이상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국세통계연보에서 인천지역 개인 근로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점과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서울의 경우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소득이 평등하고 도시 지역은 소득이 불평등할 것이라는 관념과 달리, 전남·경북 등의 도 지역은 불평등도가 높았고 인천·울산·경기 등은 불평등도가 낮았다.

[그림 I-7]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2020)

| | 지니계수 | 전국대비 차이 | 불평등 순위(위) | 표본 가구수 (가구) |
|---|---|---|---|---|
| 전국 | 0.421 | | | 11,669 |
| 세종 | 0.838 | 0.418 | 1 | 65 |
| 전남 | 0.482 | 0.061 | 2 | 451 |
| 경북 | 0.430 | 0.010 | 3 | 630 |
| 광주 | 0.426 | 0.005 | 4 | 340 |
| 부산 | 0.418 | -0.003 | 5 | 809 |
| 서울 | 0.416 | -0.005 | 6 | 2,207 |
| 대전 | 0.412 | -0.008 | 7 | 343 |
| 전북 | 0.402 | -0.019 | 8 | 432 |
| 대구 | 0.401 | -0.020 | 9 | 550 |
| 충북 | 0.395 | -0.026 | 10 | 382 |
| 제주 | 0.391 | -0.030 | 11 | 131 |
| 경남 | 0.385 | -0.035 | 12 | 769 |
| 충남 | 0.383 | -0.037 | 13 | 480 |
| 경기 | 0.382 | -0.039 | 14 | 2,807 |
| 울산 | 0.370 | -0.051 | 15 | 262 |
| 강원 | 0.368 | -0.052 | 16 | 359 |
| 인천 | 0.359 | -0.062 | 17 | 6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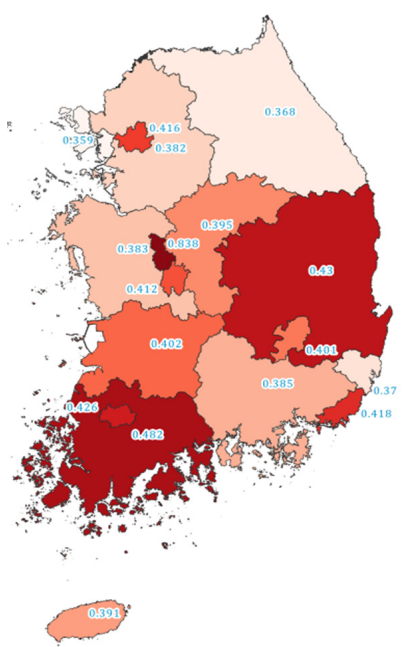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 6. 지역별 가구원소득 불평등

노동패널자료의 표본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은 22,964명이며, 이를 전국인원수로 환산(가중치 이용 계산)하면 4,548만명을 대표했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월소득은 전국평균 기준으로 2018년 275만원, 2019년 283만원, 2020년 293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전북·대구·경북·경남 등 상당수 지역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은 소득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순위는 울산 지역이 전국에서 소득순위가 3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일반적으로 일정한 순위를 보였지만, 강원지역은 월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1위, 2019년 15위, 2020년 17위로 순위가 급감했고 광주 또한 2018년 3위에서 2020년 13위로 급감했다. 이는 지역별 월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은 소폭의 소득 변화만으로도 전국순위가 크게 변동하는 형태를 보였다.

[표 I-17]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원의 소득 관련 통계(2018-2020)

(단위: 만원, 위)

| | 인구통계 | | 평균월소득 | | | 전국순위 | | |
|---|---|---|---|---|---|---|---|---|
| | 표본수 | 전국인원수 | 2018 | 2019 | 2020 | 2018 | 2019 | 2020 |
| 전국 | 22,964 | 45,483,741 | 275 | 283 | 293 | | | |
| 서울 | 4,112 | 8,627,825 | 269 | 278 | 283 | 10 | 9 | 8 |
| 인천 | 1,342 | 2,584,356 | 286 | 296 | 290 | 5 | 4 | 6 |
| 경기 | 5,660 | 11,606,562 | 288 | 296 | 317 | 4 | 5 | 3 |
| 강원 | 646 | 1,347,316 | 267 | 259 | 249 | 11 | 15 | 17 |
| 대전 | 678 | 1,312,576 | 241 | 265 | 266 | 16 | 12 | 14 |
| 충북 | 758 | 1,433,003 | 248 | 258 | 274 | 14 | 16 | 12 |
| 충남 | 927 | 1,943,639 | 273 | 287 | 298 | 9 | 6 | 4 |
| 세종 | 128 | 258,016 | 337 | 322 | 352 | 2 | 2 | 2 |
| 광주 | 626 | 1,289,962 | 291 | 272 | 271 | 3 | 10 | 13 |
| 전북 | 841 | 1,580,467 | 255 | 263 | 264 | 13 | 13 | 15 |
| 전남 | 836 | 1,556,386 | 277 | 304 | 297 | 8 | 3 | 5 |
| 대구 | 1,160 | 2,131,636 | 277 | 284 | 286 | 7 | 7 | 7 |
| 경북 | 1,245 | 2,354,436 | 246 | 260 | 275 | 15 | 14 | 11 |
| 부산 | 1,616 | 2,986,852 | 280 | 284 | 282 | 6 | 8 | 9 |
| 울산 | 587 | 983,249 | 366 | 346 | 401 | 1 | 1 | 1 |
| 경남 | 1,565 | 2,913,732 | 263 | 268 | 277 | 12 | 11 | 10 |
| 제주 | 237 | 573,728 | 223 | 233 | 262 | 17 | 17 | 16 |

주: 소득이 없는 가구원은 제외하고 평균소득 계산.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노동패널자료의 표본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22,964명을 기준으로 지역별 개인소득(월급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인원의 비율은 54.5%였고, 나머지 소득이 없는 인원의 비율은 45.5%였다. 소득이 있는 인원의 평균소득은 월 293만원이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1.1시간으로 시간당 평균임금은 약 8,939원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소득자비율은 세종(64.4%), 충남(61.9%), 대전(59.5%) 등 충청권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50.7%), 경북(51.2%), 강원(51.5%) 등이 가장 낮았다. 다만, 소득자비율은 최대 118%(세종)에서 최소 93%(대구)로서 그 범위가 25%포인트 수준이었으며, 지역별 차이는 산업특성, 고용상황 등에 기인하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인상은 노동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며 참여율이 지역별로 소폭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소득자의 평균월급은 소득자비율보다 지역별 격차가 한층 커진다. 지역별 평균소득은 울산(401만원), 세종(352만원), 경기(317만원) 순으로 높았고, 강원(249만원), 제주(262만원), 전북(264만원) 등 도 지역이 가장 낮았다. 노동패널조사는 가구원의 평균 근로시간, 업종, 근로형태(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 성별 등의 조사를 병행하는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강원(45.2시간), 경북(43.7시간) 지역이 가장 길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40~42시간 범주에 분포했으며, 제주지역은 36.6시간으로 전국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짧았다.

소득자의 평균소득과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시간당 평균임금을 추산하면, 세종(12,926원/시간), 울산(12,608원/시간) ,충남(10,453원/시간) 지역의 평균시급이 1만원을 초과했으며, 인천·경기·전남·제주 지역이 9천원대, 서울·대전·충북·광주·대구·부산·경남 지역이 8천원대, 경북·전북 지역이 7천원대, 강원 지역이 유일하게 6천원대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지역은 주당 근로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었으나 시간당 이금이 가장 낮아 평균 월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시급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소득 차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됐다.

노동패널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를 중심으로 패널이 구성됐으며, 가구에 소속된 가구원 통계 또한 전국 구성원 상당히 대변하지만 노동패널조사 가중치를 이용한 전국 인원수 수치가 실제 인구수와 차이가 있는 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신, 1998년부터 자료가 집계되어 지역별 평균소득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표 I-18]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원의 소득 관련 통계(2020)

(단위: %, 위, 만원, 시간/주, 원/시간)

| | 소득자 비율 | 전국 평균 대비 비율 | 전국 순위 | 소득자 평균소득[1] | 전국 평균 대비 비율 | 전국 순위 |
|---|---|---|---|---|---|---|
| 전국 | 54.5 | 100 | - | 293 | 100 | 8,939 |
| 서울 | 53.3 | 98 | 13 | 283 | 97 | 8 |
| 인천 | 58.6 | 108 | 4 | 290 | 99 | 6 |
| 경기 | 53.8 | 99 | 11 | 317 | 108 | 3 |
| 강원 | 51.5 | 95 | 15 | 249 | 85 | 17 |
| 대전 | 59.5 | 109 | 3 | 266 | 91 | 14 |
| 충북 | 55.7 | 102 | 8 | 274 | 94 | 12 |
| 충남 | 61.9 | 114 | 2 | 298 | 102 | 4 |
| 세종 | 64.4 | 118 | 1 | 352 | 120 | 2 |
| 광주 | 54.2 | 100 | 10 | 271 | 93 | 13 |
| 전북 | 52.4 | 96 | 14 | 264 | 90 | 15 |
| 전남 | 56.4 | 103 | 7 | 297 | 102 | 5 |
| 대구 | 50.7 | 93 | 17 | 286 | 98 | 7 |
| 경북 | 51.2 | 94 | 16 | 275 | 94 | 11 |
| 부산 | 53.4 | 98 | 12 | 282 | 96 | 9 |
| 울산 | 57.2 | 105 | 6 | 401 | 137 | 1 |
| 경남 | 54.7 | 100 | 9 | 277 | 95 | 10 |
| 제주 | 58.5 | 107 | 5 | 262 | 90 | 16 |
| | 주당 평균근로시간 | 전국 평균 대비 비율 | 전국 순위 | 시간당 평균임금2 | 전국 평균 대비 비율 | 전국 순위 |
| 전국 | 41.1 | 100 | - | 8,939 | 100 | |
| 서울 | 40.6 | 99 | 13 | 8,555 | 96 | 11 |
| 인천 | 41.2 | 100 | 8 | 9,487 | 106 | 7 |
| 경기 | 40.6 | 99 | 12 | 9,677 | 108 | 4 |
| 강원 | 45.2 | 110 | 1 | 6,544 | 73 | 17 |
| 대전 | 41.7 | 102 | 5 | 8,732 | 98 | 8 |
| 충북 | 40.5 | 99 | 14 | 8,654 | 97 | 9 |
| 충남 | 40.6 | 99 | 10 | 10,453 | 117 | 3 |
| 세종 | 40.3 | 98 | 15 | 12,926 | 145 | 1 |
| 광주 | 41.2 | 100 | 7 | 8,205 | 92 | 13 |
| 전북 | 41.8 | 102 | 4 | 7,628 | 85 | 15 |
| 전남 | 40.1 | 98 | 16 | 9,631 | 108 | 6 |
| 대구 | 41.2 | 100 | 9 | 8,092 | 91 | 14 |
| 경북 | 43.7 | 106 | 2 | 7,419 | 83 | 16 |
| 부산 | 41.6 | 101 | 6 | 8,326 | 93 | 12 |
| 울산 | 41.9 | 102 | 3 | 12,608 | 141 | 2 |
| 경남 | 40.6 | 99 | 11 | 8,603 | 96 | 10 |
| 제주 | 36.6 | 89 | 17 | 9,672 | 108 | 5 |

주: 1. 소득이 없는 가구원은 제외하고 평균소득 계산.
2. 월 평균소득을 연봉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연평균 근로시간으로 각각 환산한 후, 시간당 평균임금을 추정.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그림 I-8] 광역자치단체별 가구원의 소득 관련 불평등지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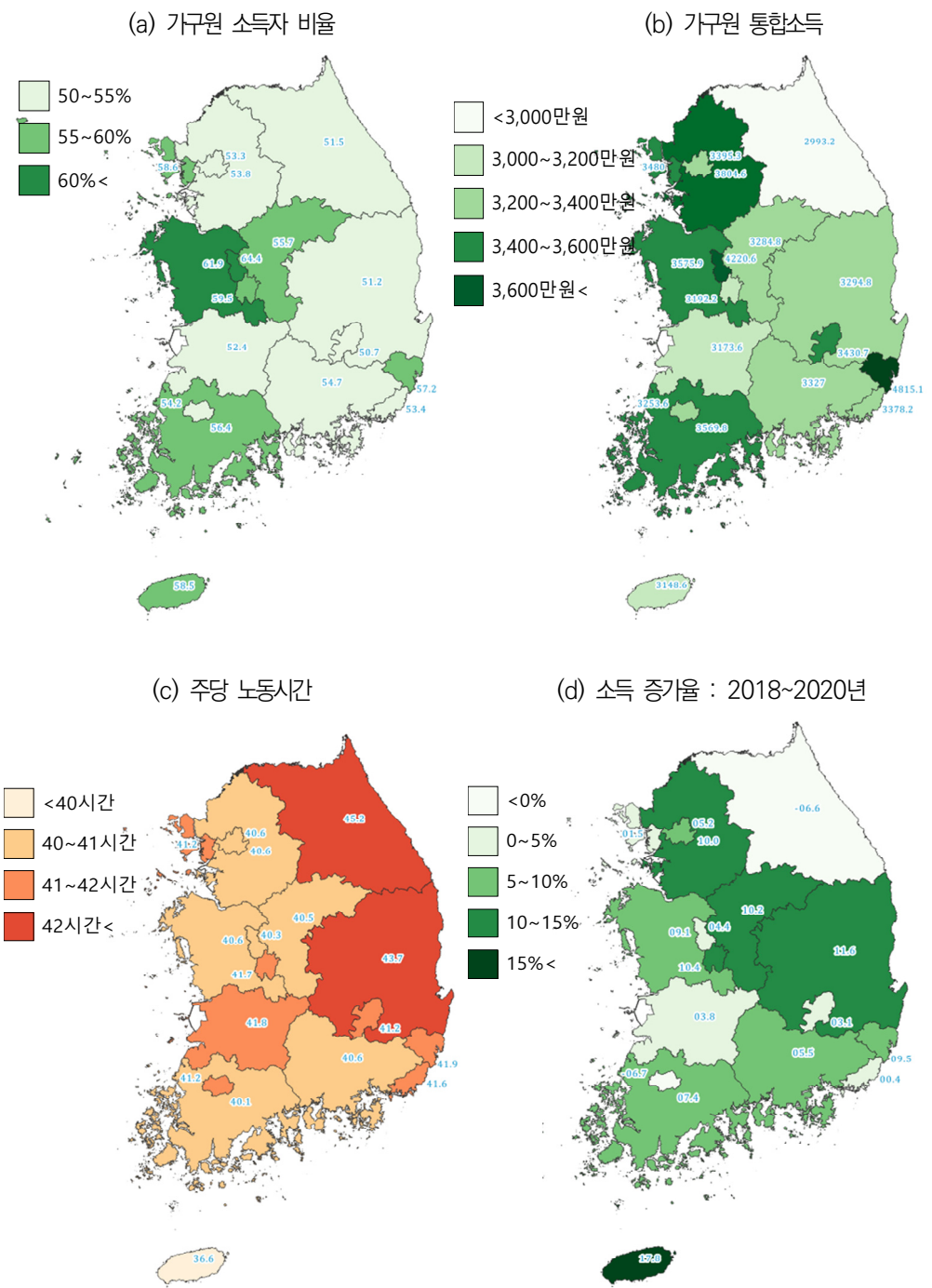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지역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면, 양 소득의 전국단위 순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원지역을 예로 들면, 가구원의 평균 월급은 249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가구의 근로소득과 총소득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였다. 이는 가구원의 평균 월급이 높은 지역이 가구소득 또한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며, 가구 안 소득이 있는 가구원수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비슷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과 노동패널조사의 가구원 월급 간의 괴리가 전국평균뿐만 아니라 전국순위 또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 상당한 지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패널조사의 가구원 평균월급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한 통합소득으로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과 차이가 있으나, 전국평균 통합소득이 국세청 근로소득보다 작은 점, 지역별 통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가구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지역별 통계로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표 I-19] 광역자치단체별 가구별 소득 격차(2020)

(단위: 만원, 위)

| | 노동패널조사 | | | | | 국세통계연보 | | 개인 근로소득 차이 (A-B) |
|---|---|---|---|---|---|---|---|---|
| | 가구단위 | | 개인(가구원)단위 | | | 개인단위 | | |
| | 총 소득 | 전국 순위 | 평균 월급 | 연봉 환산(A) | 전국 순위 | 근로소득(B) | 전국 순위 | |
| 전국 | 5,179 | - | 293 | 3,512 | - | 3,848 | - | -336 |
| 서울 | 4,757 | 10 | 283 | 3,395 | 8 | 4,400 | 2 | -1,005 |
| 인천 | 5,717 | 3 | 290 | 3,480 | 6 | 3,432 | 15 | 48 |
| 경기 | 5,446 | 4 | 317 | 3,805 | 3 | 3,903 | 4 | -98 |
| 강원 | 4,204 | 17 | 249 | 2,993 | 17 | 3,458 | 14 | -465 |
| 대전 | 4,750 | 11 | 266 | 3,192 | 14 | 3,735 | 6 | -543 |
| 충북 | 4,704 | 13 | 274 | 3,285 | 12 | 3,594 | 10 | -309 |
| 충남 | 5,257 | 5 | 298 | 3,576 | 4 | 3,744 | 5 | -168 |
| 세종 | 6,548 | 1 | 352 | 4,221 | 2 | 4,550 | 1 | -329 |
| 광주 | 4,885 | 9 | 271 | 3,254 | 13 | 3,613 | 7 | -359 |
| 전북 | 4,420 | 15 | 264 | 3,174 | 15 | 3,414 | 16 | -240 |
| 전남 | 5,073 | 6 | 297 | 3,570 | 5 | 3,608 | 8 | -38 |
| 대구 | 4,716 | 12 | 286 | 3,431 | 7 | 3,517 | 13 | -86 |
| 경북 | 4,463 | 14 | 275 | 3,295 | 11 | 3,580 | 11 | -285 |
| 부산 | 4,890 | 8 | 282 | 3,378 | 9 | 3,557 | 12 | -179 |
| 울산 | 6,233 | 2 | 401 | 4,815 | 1 | 4,356 | 3 | 459 |
| 경남 | 4,900 | 7 | 277 | 3,327 | 10 | 3,603 | 9 | -276 |
| 제주 | 4,328 | 16 | 262 | 3,149 | 16 | 3,287 | 17 | -138 |

자료: 국세통계연보,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 7. 향후 통계 구축 방향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총계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불평등 통계와 미시자료를 이용한 불평등 통계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국세통계연보 총계자료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성, 229개 기초자치단체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점, 양도소득 등 정확한 자산소득 자료가 집계되는 점 등이 장점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조사가 이루어진 진 시기가 짧은 점, 지역 내 소득분포를 알 수 없고 다양한 분석이 불가능한 점, 가구소득을 알 수 없는 점, 총 소득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향후 통계는 기존과 같이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소득을 축적하되, 국세청 총계자료와 미시자료의 장점을 극대화한 국세청 과세미시자료 또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제공받는 '건강보험공단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 5분위비율 등 불평등 지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청 세금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산 자료를 융합할 경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며, 긴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거나 서울·경기 등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서베이자료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행정미시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 사업소득 등의 과소신고 문제,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은 한계로 남는다.

[표 I-20] 지역별 불평등 통계 이용 자료의 장단점

| | 장점 | 단점 |
|---|---|---|
| 국세통계연보 총계자료 | 전수조사(모집단)<br>229개 기초자치단체 분류<br>정확한 소득 파악 | 통계가 최고 2016년으로 짧음<br>지역내 분포 파악 불가능<br>다양한 분석 불가능<br>가구소득 파악 불가능 |
| 미시조사자료 | 통계가 최고 1998년으로 길게 구축<br>지역내 소득 및 자산 분포 파악<br>다양한 분석 가능<br>가구소득, 가구원소득 파악 가능 | 17개 광역자치단체 분류<br>지역별 분석 시 표본가구수 부족<br>설문에 의한 소득 파악 |
| 국세청 미시자료<br>(건강보험공단<br>미시자료) | 충분한 표본가구수<br>229개 기초자치단체 분류<br>정확한 소득 파악<br>통합소득 분석 가능<br>지역내 소득분포 파악 가능<br>다양한 분석 가능 | 통계 시계열이 짧음<br>자산분포 파악 불가능<br>가구소득 파악 불가능<br>(저소득 근로가구는 EITC를 통해 소득,<br>자산 파악 가능)<br>자산소득 포함 총소득 파악 어려움 |

출처: 저자 작성.

# 제2장

## 자산불평등 현황

# 제2장 자산불평등 현황

자산은 소득의 누적[15]이기도 하면서 가구 경제에서 경제적 완충장치 또는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여유 자산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길 경우에도 소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 등에 더 투자하여 소득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은 주거의 질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자산이 적을수록 집은 좁아지고 출퇴근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나라에 비해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자산불평등에 있어서 부동산의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가계자산의 구성과 분포를 살펴보고, 시군구 단위별로 접근 가능한 자산통계인 토지소유현황을 중심으로 지도를 통해 지역별 자산 불평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분위별 가구 자산의 구성

가구 자산의 불평등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구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먼저 분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살펴볼 가구자산의 구성은 통계청의 2021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는 평균적으로 4억1천만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 평균적인 아파트(약 12억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순자산의 3배의 가진 가구라야 한다.

하위 10%(1분위)의 평균 순자산은 약 마이너스 8백만원,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18억원이다. 가구 평균 금융자산은 1억1천만원, 대부분이 부동산인 실물자산은 3억9천만원, 금융부채는 6천5백만원,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평균 2천3백만원이다. 순자산이 클수록 부채도 큰 경향을 보이고 자산유형별 분위간 차이는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15)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누적된 것.

[표 Ⅱ-1] 순자산 10분위별 평균 자산(2021)

(단위: 만원)

| 순자산 분위 | 자산 | | 부채 | | 순자산 |
|---|---|---|---|---|---|
| | 금융자산 | 실물자산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
| 1 | 1,324 | 1,262 | 3,309 | 94 | -817 |
| 2 | 3,493 | 2,000 | 2,338 | 286 | 2,869 |
| 3 | 5,930 | 5,457 | 3,863 | 289 | 7,235 |
| 4 | 6,875 | 10,317 | 4,296 | 326 | 12,569 |
| 5 | 8,386 | 16,822 | 5,496 | 637 | 19,075 |
| 6 | 9,640 | 23,920 | 5,970 | 910 | 26,679 |
| 7 | 11,048 | 35,401 | 7,455 | 1,683 | 37,311 |
| 8 | 12,851 | 50,819 | 8,587 | 2,486 | 52,596 |
| 9 | 16,752 | 74,616 | 9,418 | 4,261 | 77,688 |
| 10 | 36,916 | 168,840 | 14,454 | 11,870 | 179,432 |
| 평균 | 11,319 | 38,934 | 6,518 | 2,283 | 41,452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그림 Ⅱ-1] 순자산 10분위별 평균 자산(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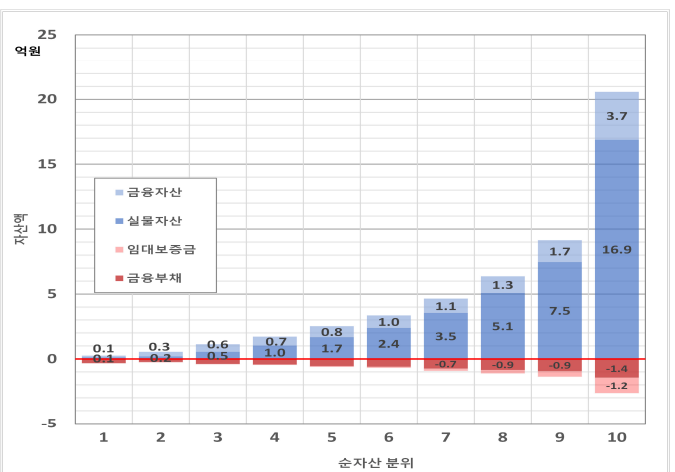


가구의 자산을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거주주택의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약 절반 (45.5%, 2300만원)를 차지한다.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금액이 1억 3천만원으로 27%를 차지한다. 이 둘을 합한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다. 현 거주지 전월세보증금 6.4%까지 더하면 가구 자산의 80% 가량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저축이 4천만원으로 8%,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금액은 2,400만원으로 5%, 주식/채권/펀드가 1,400만원으로 2.8%, 자동차는 평균 1,200만원으로 2.4%를 차지한다.

[표 II-2] 가구 자산 세부 유형별 평균가액 및 비중(2021)

| 가구 자산 구성 항목 | | | 평균(만원) | 비중 | |
|---|---|---|---|---|---|
| 금융자산 | 저축 | 수시적립예치식저축금액 | 3,955 | 7.9% | 16.1% |
| | | 저축성보장성보험금액 | 2,392 | 4.8% | |
| | | 주식채권펀드금액 | 1,401 | 2.8% | |
| | | 기타저축금액 | 351 | 0.7% | |
| |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 | 3,220 | **6.4%** | 6.4% |
| 실물자산 | **부동산** | **거주주택금액** | **22,876** | **45.5%** | **73.0%** |
| | | **거주주택이외부동산금액** | **13,430** | **26.7%** | |
| | | **계약금중도금납입금액** | 402 | 0.8% | |
| | 자동차 | | 1,218 | 2.4% | 4.4% |
| | 자동차이외 기타실물자산 | | 733 | 1.5% | |
| | 권리금 등 | | 275 | 0.5% | |
| **합계** | | | **50,253** | **100.0%** | **100.0%**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부동산 자산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하고는 자산이 클수록 부동산자산의 비중도 크다. 순자산이 높을수록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큰 이유는 자산이 많을수록 자가 소유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순자산 1분위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큰 이유는 부채도 많기 때문이다.

[그림 II-2] 순자산 분위별 부동산 자산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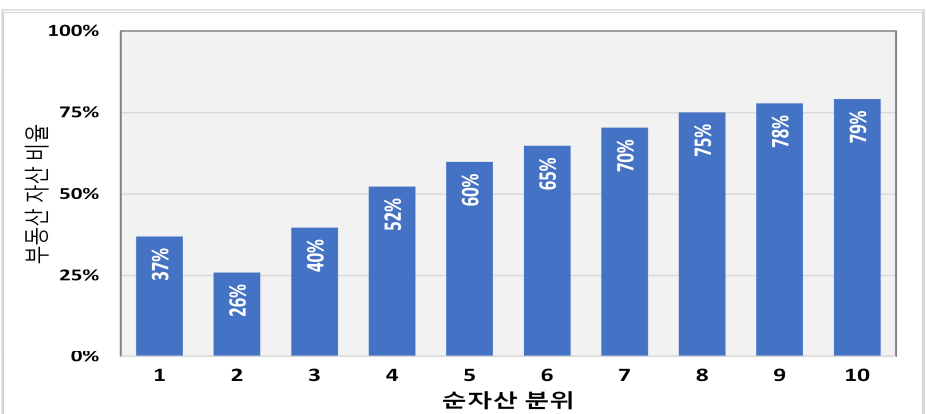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순자산 100분위별로 가구 자산을 살펴보면 하위 3% 가량의 가구(약 60만 가구)는 가구 재정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순자산이 1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구가 10%나 된다. 20%의 가

구는 순자산이 5천만원 이하이다. 30%의 가구는 순자산이 1억 이하, 50%의 가구는 2억 2천만원 이하, 60%의 가구는 3억 이하, 75%의 가구는 5억 이하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표 II-3] 100분위별 가구 순자산(2021)

(단위: 만원)

| 분위 | 평균순자산 | 분위 | 평균순자산 | 분위 | 평균순자산 |
|---|---|---|---|---|---|
| 1 | -9,180 | 34 | 11,623 | 67 | 39,043 |
| 2 | -1,914 | 35 | 12,255 | 68 | 40,501 |
| 3 | -460 | 36 | 12,804 | 69 | 41,758 |
| 4 | 34 | 37 | 13,397 | 70 | 43,151 |
| 5 | 148 | 38 | 14,012 | 71 | 44,692 |
| 6 | 285 | 39 | 14,672 | 72 | 46,150 |
| 7 | 453 | 40 | 15,325 | 73 | 47,526 |
| 8 | 618 | 41 | 16,007 | 74 | 49,273 |
| 9 | 859 | 42 | 16,653 | 75 | 51,228 |
| 10 | 1,071 | 43 | 17,292 | 76 | 53,085 |
| 11 | 1,310 | 44 | 17,972 | 77 | 55,184 |
| 12 | 1,615 | 45 | 18,649 | 78 | 57,293 |
| 13 | 1,970 | 46 | 19,429 | 79 | 59,514 |
| 14 | 2,301 | 47 | 20,161 | 80 | 61,905 |
| 15 | 2,646 | 48 | 20,833 | 81 | 64,422 |
| 16 | 3,010 | 49 | 21,540 | 82 | 66,871 |
| 17 | 3,360 | 50 | 22,236 | 83 | 69,278 |
| 18 | 3,749 | 51 | 22,980 | 84 | 71,994 |
| 19 | 4,158 | 52 | 23,739 | 85 | 74,724 |
| 20 | 4,588 | 53 | 24,459 | 86 | 77,957 |
| 21 | 5,060 | 54 | 25,188 | 87 | 81,582 |
| 22 | 5,532 | 55 | 26,001 | 88 | 85,473 |
| 23 | 6,027 | 56 | 26,949 | 89 | 89,809 |
| 24 | 6,459 | 57 | 27,963 | 90 | 94,687 |
| 25 | 6,922 | 58 | 28,875 | 91 | 99,628 |
| 26 | 7,406 | 59 | 29,799 | 92 | 105,666 |
| 27 | 7,955 | 60 | 30,862 | 93 | 112,924 |
| 28 | 8,472 | 61 | 31,946 | 94 | 122,564 |
| 29 | 8,985 | 62 | 33,040 | 95 | 134,237 |
| 30 | 9,552 | 63 | 34,109 | 96 | 149,581 |
| 31 | 10,061 | 64 | 35,294 | 97 | 169,664 |
| 32 | 10,520 | 65 | 36,489 | 98 | 199,258 |
| 33 | 11,064 | 66 | 37,751 | 99 | 249,524 |
| | | | | 100 | 452,194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10억이 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위 약 10%에 속한다. 상위 5%는 13억 이상, 상위 3% 가구는 20억 이상, 상위 1%가구는 평균 45억원의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Ⅱ-3] 순자산 100분위별 평균 자산(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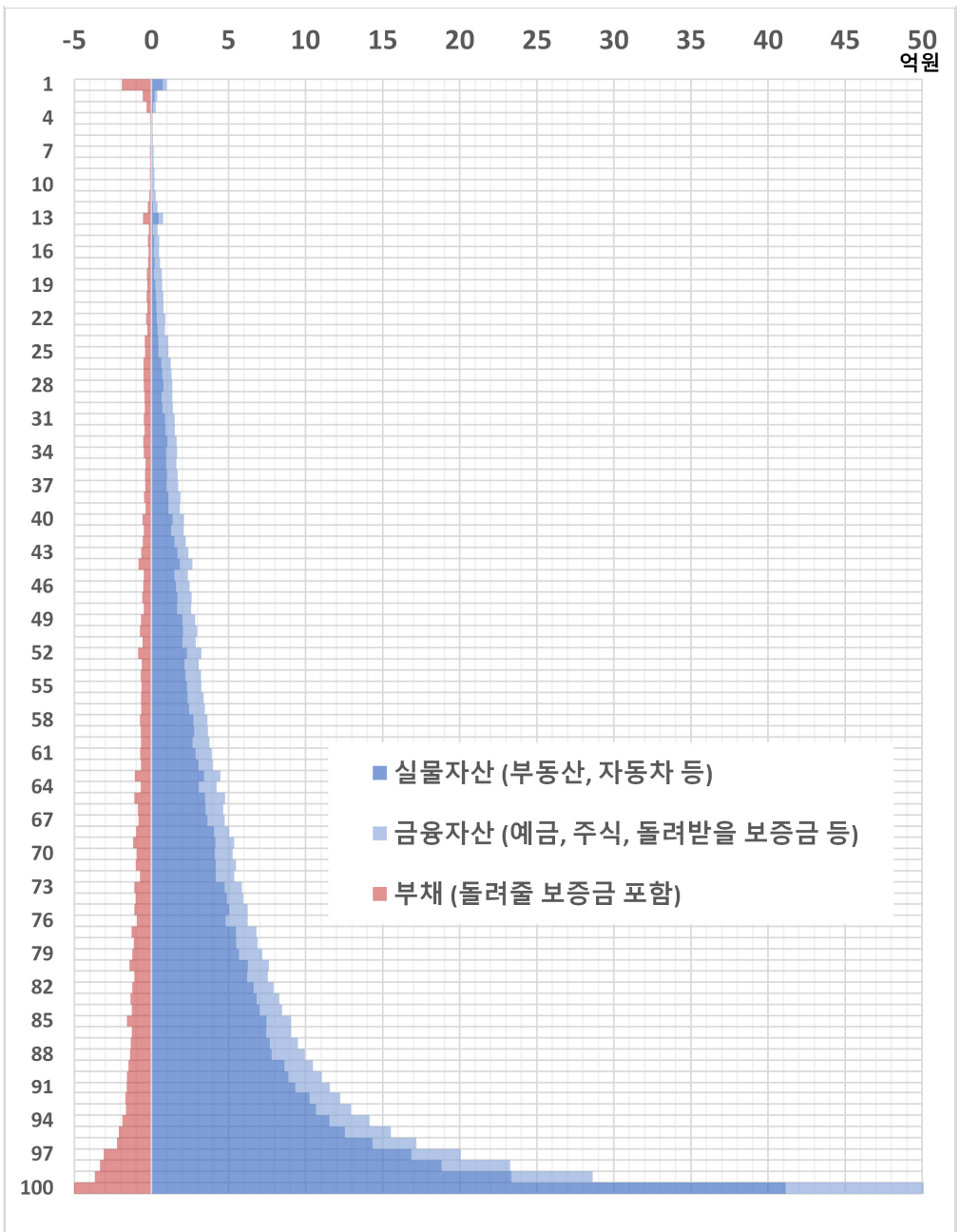

## 2. 지역 간 자산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평균자산의 변화와 그 격차를 보면, 2016년까지는 수도권과 지방간 가구 자산격차가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2016년 수도권 가구와 비수도권 가구의 자산격차는 8천5백만원이었으나 2021년엔 2억 이상으로 그 격차가 증가하였다.

[그림 Ⅱ-4] 수도권/비수도권 평균자산 격차 추이(2010-2021)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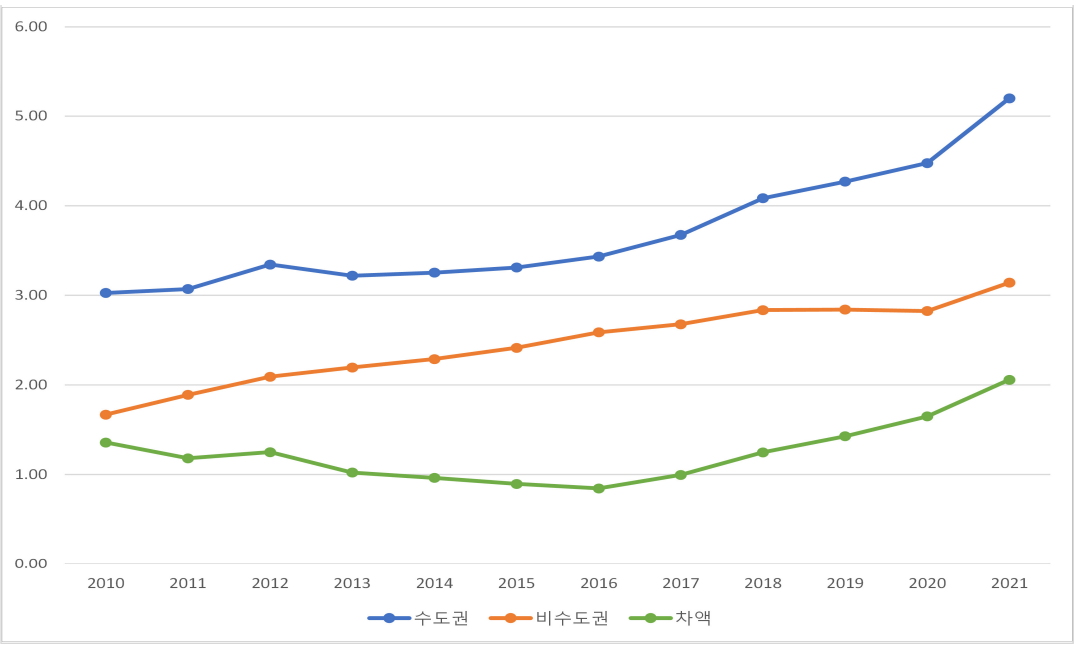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Ⅱ-4] 수도권/비수도권 가구 평균자산 격차(2010-2021)

(단위: 억원)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수도권 | 3.03 | 3.07 | 3.34 | 3.22 | 3.25 | 3.31 | 3.43 | 3.67 | 4.08 | 4.27 | 4.48 | 5.20 |
| 비수도권 | 1.67 | 1.89 | 2.09 | 2.20 | 2.29 | 2.41 | 2.59 | 2.68 | 2.84 | 2.84 | 2.83 | 3.14 |
| 전체 | 2.31 | 2.46 | 2.69 | 2.68 | 2.75 | 2.84 | 2.99 | 3.16 | 3.44 | 3.53 | 3.63 | 4.15 |
| 비율(수도권 대비) | 55% | 62% | 63% | 68% | 70% | 73% | 75% | 73% | 69% | 67% | 63% | 60% |
| 지방대비 | 181% | 163% | 160% | 147% | 142% | 137% | 133% | 137% | 144% | 150% | 158% | 166% |
| 차액 | 1.36 | 1.18 | 1.25 | 1.02 | 0.96 | 0.90 | 0.85 | 1.00 | 1.25 | 1.43 | 1.65 | 2.06 |

## 3. 토지 소유의 불평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 자산의 72%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이다. 그렇다면 가계 자산의 45%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소유가액은 가계 순자산의 크기와 상당한 상관성을 가지므로 토지소유가액을 가구의 자산의 크기를 어느정도 대표하는 변수로 보아 시군구 자료 획득이 가능한 토지소유 현황 2021년 자료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가격엔 토지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소유자는 모두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

### 1) 지역별 토지소유자 비율

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비율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높으며 지방 중에선 남부지역의 군 지역이 높게 나타난다. 토지소유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강진군[16]으로 95.4%의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시 관악구로 39.2%의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림 Ⅱ-5] 토지소유세대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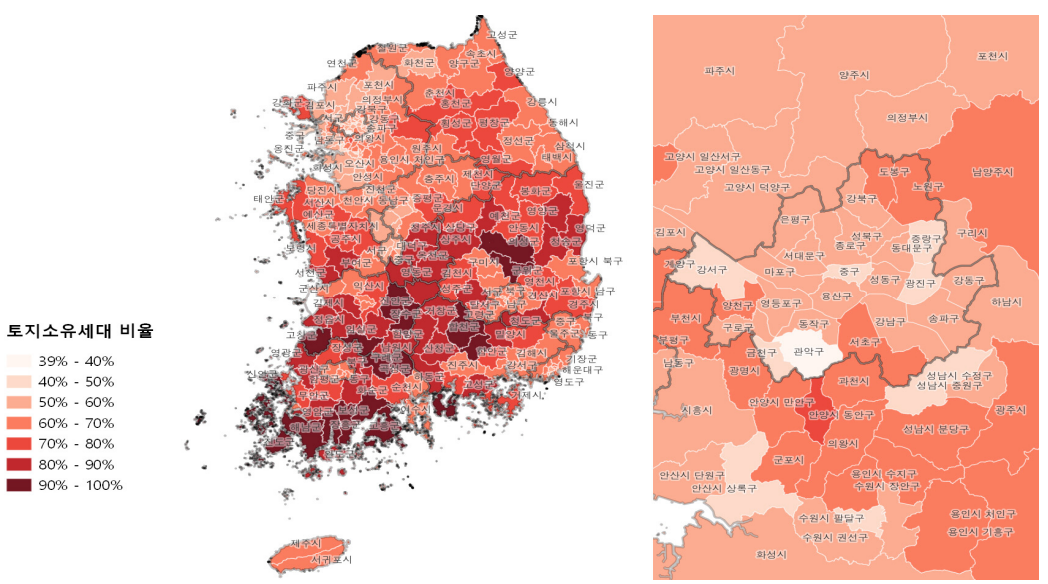


주: 주택소유세대도 주택의 대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세대에 해당함.

16) 순창군의 경우 토지소유세대 비율이 100.01%로 나타나 통계수치의 신뢰성의 문제로 제외함. 순창군의 경우 국토교통부 2021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상 토지소유 세대 수는 13,997세대이고, 행정안전부의 2021년 12월 주민등록 세대 수는 13,996세대로 토지소유 세대 수가 주민등록 세대보다 1세대 더 많아 토지소유세대 비율이 100.01%로 계산되었는데, 양 통계 모두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통계임.

[표 II-5] 토지소유세대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전라남도 | 강진군 | 95.4%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39.2% |
| 전라남도 | 고흥군 | 94.7% | 서울특별시 | 중구 | 47.2% |
| 전라남도 | 보성군 | 94.2%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47.2% |
| 전라북도 | 고창군 | 94.1%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47.3% |
| 경상북도 | 의성군 | 93.9%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47.7% |
| 전라남도 | 곡성군 | 93.8% | 경기도 | 수원시 팔달구 | 48.2% |
| 경상남도 | 합천군 | 93.8% | 인천광역시 | 중구 | 48.4% |
| 전라북도 | 장수군 | 93.1%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49.0% |
| 전라북도 | 진안군 | 93.0%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49.7% |
| 전라남도 | 진도군 | 92.1%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 | 49.8% |

[그림 II-6] 토지소유인구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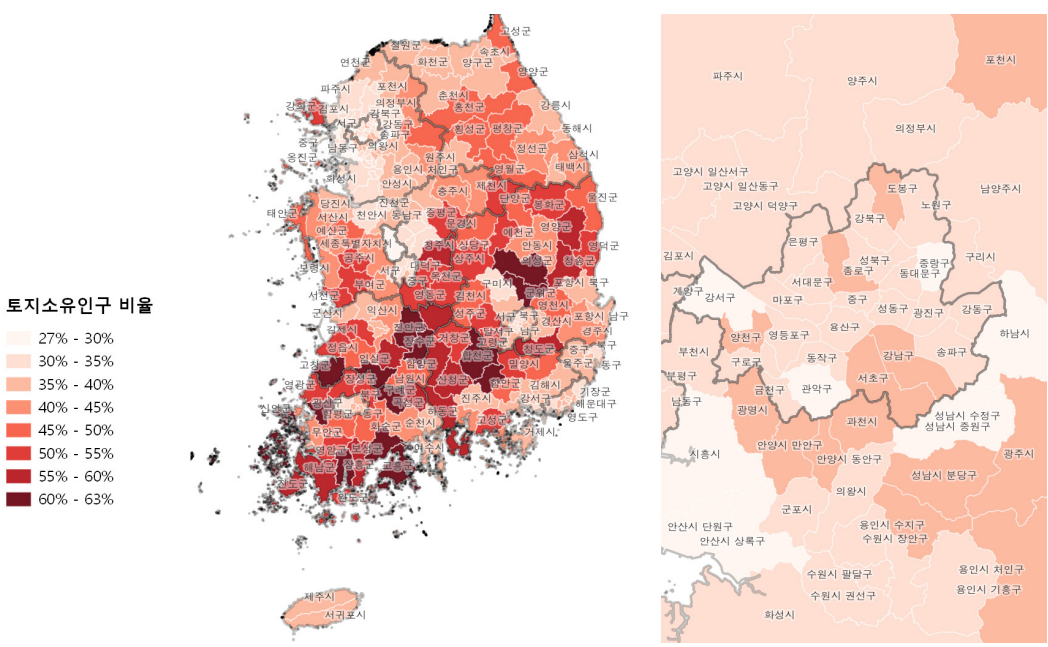

[표 Ⅱ-6] 토지소유인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전라남도 | 곡성군 | 63.5% | 인천광역시 | 서구 | 27.1% |
| 전라북도 | 순창군 | 63.3%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 | 27.6% |
| 경상북도 | 의성군 | 63.2%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27.7% |
| 전라남도 | 보성군 | 63.2% | 경기도 | 시흥시 | 28.2% |
| 전라남도 | 강진군 | 63.0%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28.3% |
| 전라남도 | 신안군 | 62.7% | 인천광역시 | 중구 | 29.5% |
| 경상남도 | 합천군 | 62.5% | 경기도 | 안산시 단원구 | 29.6% |
| 경상북도 | 군위군 | 62.5%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29.7% |
| 전라남도 | 고흥군 | 62.1% | 경기도 | 하남시 | 29.7% |
| 전라북도 | 진안군 | 61.1%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29.7% |

## 2) 실사용 이외 목적의 토지 소유

아래 외지인 토지 비율은 해당 자치단체의 민유지(개인 소유 토지) 중 해당 시군구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의 비율이다. 대도시의 도심에 해당하는 중구 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군 지역에서는 옹진군, 연천군, 고성군이 특히 높다. 제주시는 예상과는 달리 외지인 토지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다.

[그림 Ⅱ-7] 외지인 토지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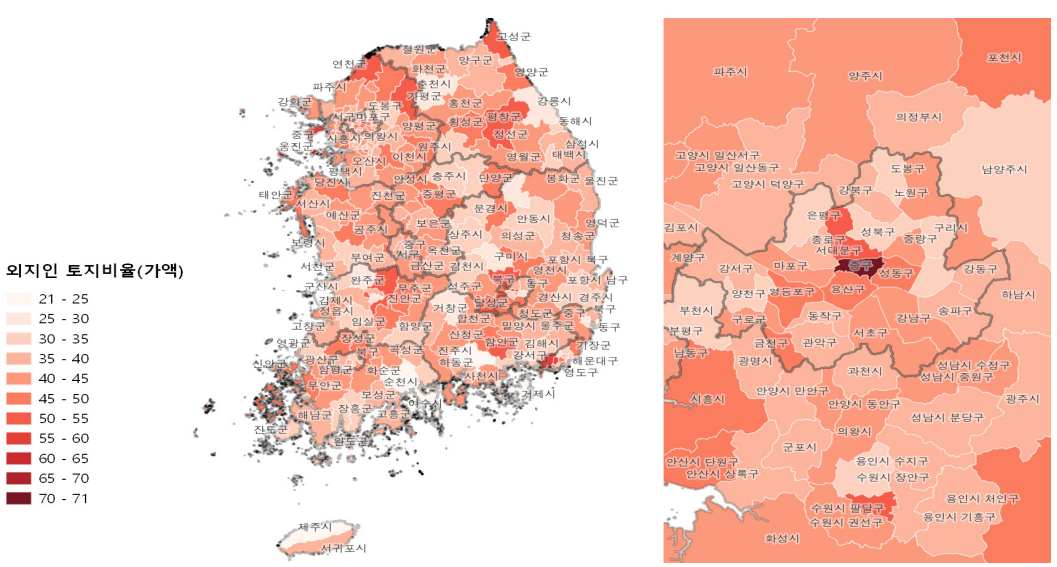

[표 Ⅱ-7] 외지인 토지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서울특별시 | 중구 | 71.2% | 경상남도 | 진주시 | 20.6% |
| 부산광역시 | 중구 | 68.5% | 전라남도 | 여수시 | 20.9% |
| 대구광역시 | 중구 | 63.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21.7% |
| 인천광역시 | 옹진군 | 60.4% | 전라남도 | 순천시 | 22.3% |
| 인천광역시 | 중구 | 57.6% | 울산광역시 | 동구 | 23.9% |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56.4% | 경상남도 | 거제시 | 24.6%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56.0% | 강원도 | 강릉시 | 25.1% |
| 경기도 | 연천군 | 54.7%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25.1%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53.4% | 전라북도 | 익산시 | 25.3% |
| 강원도 | 고성군 | 52.9% | 경상남도 | 통영시 | 25.7% |

아래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총 소유 토지가액 중 관외(해당 시군구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의 비율이다.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타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 주황색 지역은 거주자의 관외토지 소유가액 비율이 절반을 넘는 지역이다. 관외 소유가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계룡시로, 계룡시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가액 중 63.5%는 계룡시 이외 지역의 토지이다.

[그림 Ⅱ-8] 거주자의 관외토지 소유가액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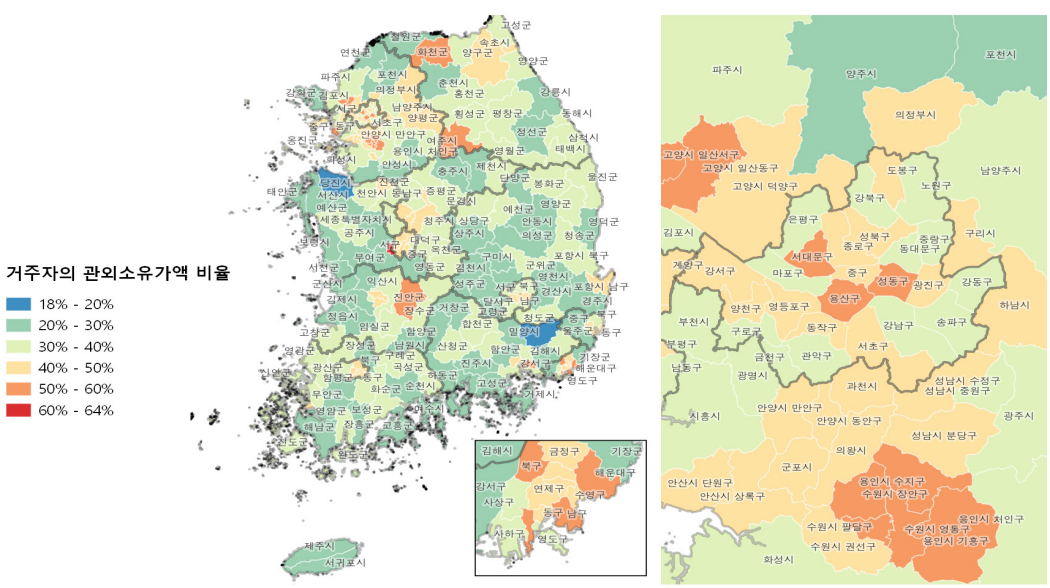

[표 Ⅱ-8] 거주자의 관외토지 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충청남도 | 계룡시 | 63.5% | 경상남도 | 밀양시 | 18.2% |
| 경기도 | 용인시 수지구 | 59.8% | 충청남도 | 당진시 | 20.0% |
| 강원도 | 원주시 | 56.0% | 전라북도 | 부안군 | 20.3% |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55.7% | 전라남도 | 여수시 | 20.6% |
| 부산광역시 | 북구 | 54.5% | 강원도 | 철원군 | 20.7%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53.7% | 경상남도 | 함안군 | 21.1%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53.5% | 경상남도 | 고성군 | 21.2% |
| 경기도 | 용인시 기흥구 | 52.9% | 경상북도 | 경주시 | 21.2% |
| 부산광역시 | 서구 | 52.4% | 전라남도 | 해남군 | 21.3% |
| 전라북도 | 진안군 | 52.1% | 경상북도 | 영천시 | 21.5% |

### 3) 지역별 토지 가격격차, 자산격차

아래는 해당 지자체 내 민유지, 법인토지, 국공유지 등 모든 토지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해당 지자체의 토지가액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대비 토지가격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가격은 공시지가(토지소유현황 통계) 기준으로 시가보다 낮음을 고려해야 한다. 중구의 토지가격은 인구 1인당 8.1억이고, 인구 1인당 토지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원주시로 2,500만원이다.

[그림 Ⅱ-9] 인구 1인당 토지가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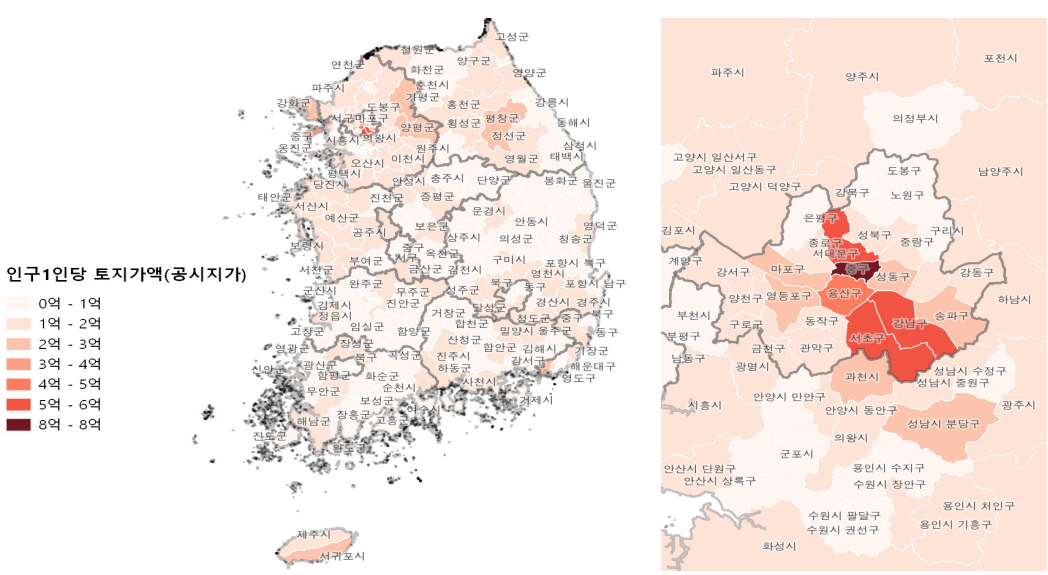

[표 Ⅱ-9] 인구 1인당 토지가격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단위: 억원)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서울특별시 | 중구 | 8.1 | 강원도 | 원주시 | 0.25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5.9 | 전라남도 | 완도군 | 0.36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5.7 | 전라남도 | 목포시 | 0.40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5.2 | 강원도 | 태백시 | 0.45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4.5 | 강원도 | 동해시 | 0.45 |
| 인천광역시 | 중구 | 3.3 | 부산광역시 | 북구 | 0.46 |
| 경기도 | 과천시 | 2.8 | 전라남도 | 진도군 | 0.48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2.8 | 전라북도 | 전주시완산구 | 0.49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2.8 | 광주광역시 | 북구 | 0.52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2.5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회원구 | 0.54 |

아래는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2021년 시군구별 총 토지가액이다. 강남구가 316조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초구, 송파구이다. 총 토지가액이 가장 높은 곳(강남구)과 가장 낮은 곳(울릉군)의 차이는 287배이다.

[그림 Ⅱ-10] 시군구별 총 토지가격(2021, 공시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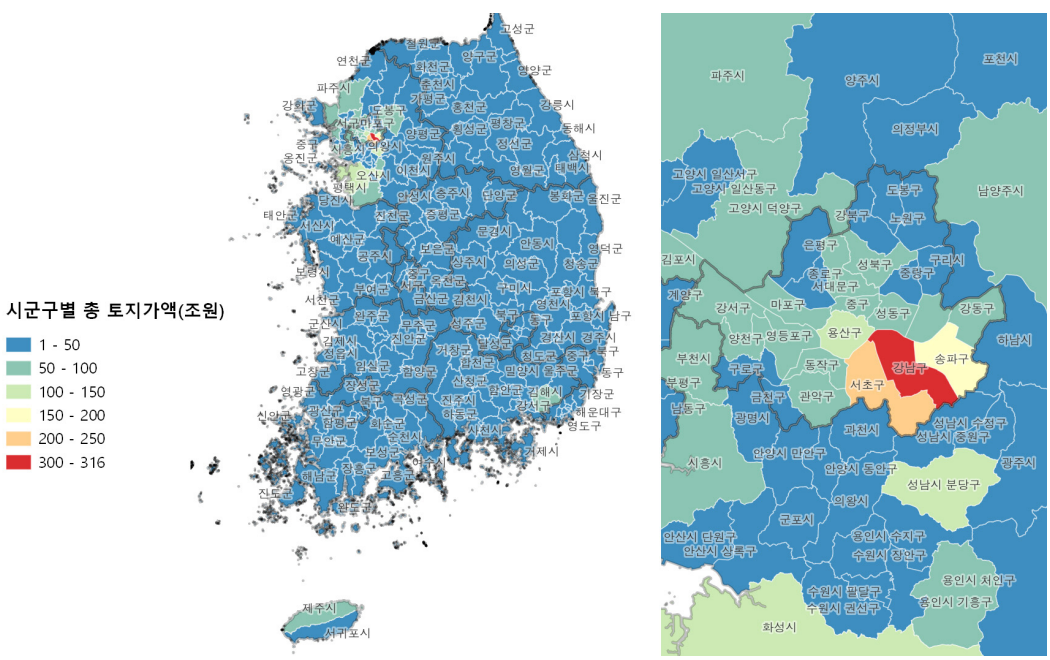

[표 Ⅱ-10] 시군구별 총 토지가격(공시가격)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단위: 조원)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316.1 | 경상북도 | 울릉군 | 1.1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213.7 | 경상북도 | 영양군 | 1.2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183.2 | 전라남도 | 진도군 | 1.4 |
| 경기도 | 화성시 | 125.8 | 전라북도 | 장수군 | 1.6 |
|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 101.8 | 전라북도 | 순창군 | 1.7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100.4 | 전라남도 | 완도군 | 1.7 |
| 서울특별시 | 중구 | 99.7 | 강원도 | 태백시 | 1.8 |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93.9 | 강원도 | 양구군 | 1.9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92.6 | 전라북도 | 진안군 | 2.0 |
| 경기도 | 평택시 | 86.1 | 경상북도 | 청송군 | 2.0 |

토지소유자 1인당 평균소유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소유자 1인당 10.4억원(공시지가 기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토지소유지 1인당 평균 4천8백만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강남구와는 22배 차이가 난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의 평균 토지소유가액이 높다.

[그림 Ⅱ-11] 토지소유자 1인당 평균소유가액(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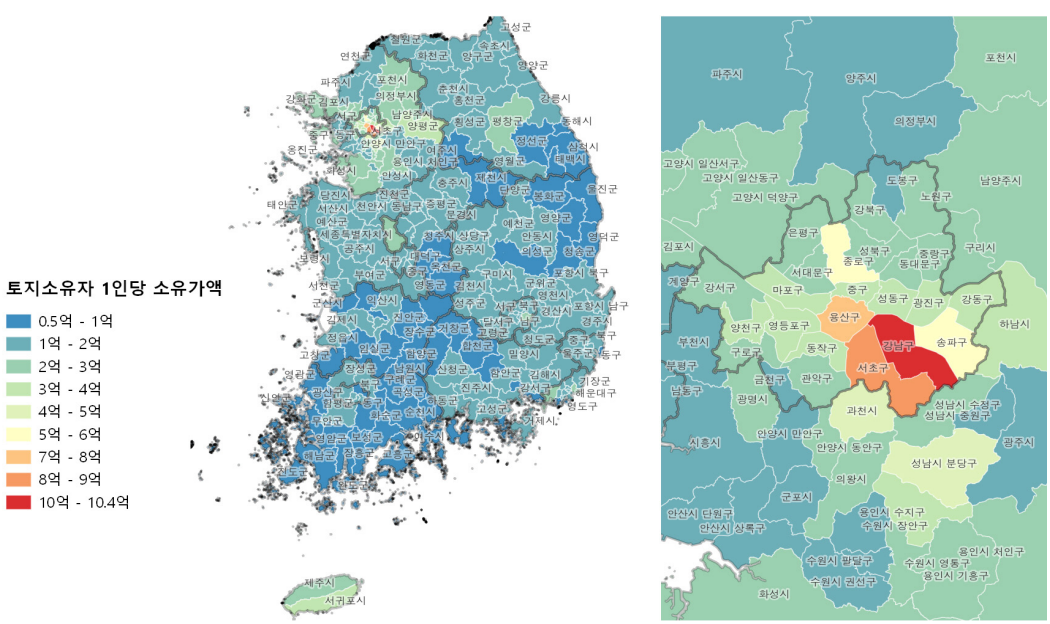

[표 II-11] 토지소유자 1인당 평균소유가액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단위: 억원)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10.4 | 전라남도 | 완도군 | 0.48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9.0 | 전라남도 | 진도군 | 0.51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7.0 | 전라남도 | 고흥군 | 0.53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5.7 | 강원도 | 태백시 | 0.61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5.3 | 강원도 | 원주시 | 0.64 |
| 경기도 | 과천시 | 5.0 | 강원도 | 동해시 | 0.65 |
|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 4.7 | 전라남도 | 목포시 | 0.65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4.0 | 전라남도 | 신안군 | 0.67 |
| 서울특별시 | 중구 | 3.9 | 전라남도 | 보성군 | 0.67 |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3.8 | 전라남도 | 장흥군 | 0.67 |

아래는 시군구별로 전체세대 중 50억원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50억 이상 땅부자는 강남, 중구, 용산, 서초구에 많으며 경기도 화성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II-12] 50억원 이상 토지소유세대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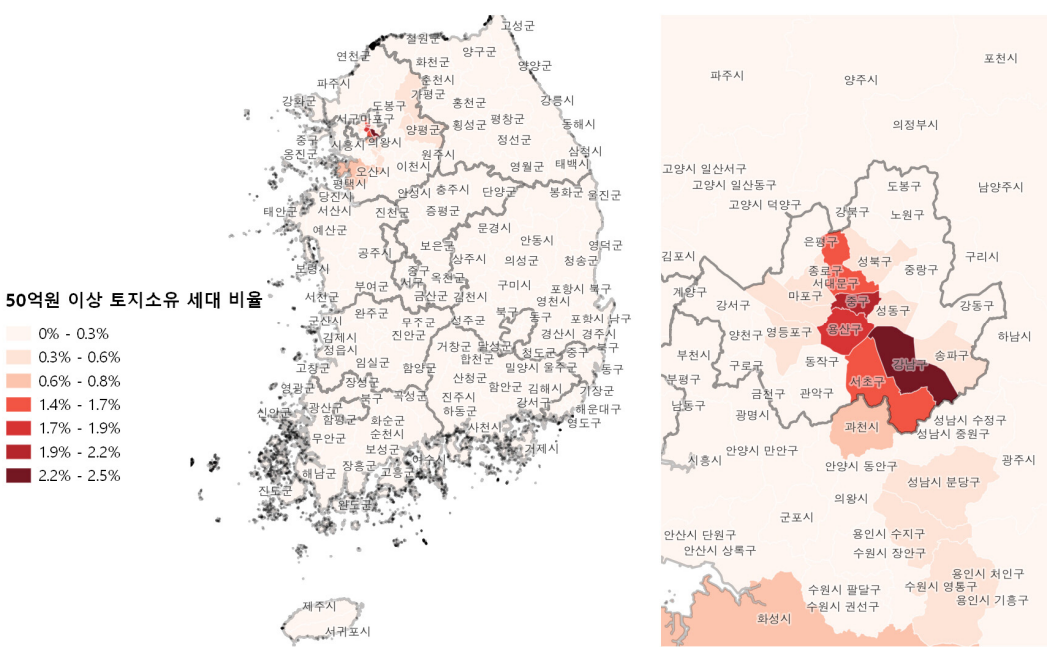

[표 Ⅱ-12] 50억원 이상 토지소유세대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2.49% | 경상북도 | 의성군 | 0.007% |
| 서울특별시 | 중구 | 2.15% | 강원도 | 동해시 | 0.009%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1.87% | 전라남도 | 목포시 | 0.010%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1.56% | 경상북도 | 영양군 | 0.011%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1.44% | 전라남도 | 고흥군 | 0.011% |
| 경기도 | 화성시 | 0.82% | 충청남도 | 부여군 | 0.012% |
| 경기도 | 과천시 | 0.66% | 강원도 | 삼척시 | 0.012%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0.51% | 전라남도 | 곡성군 | 0.013% |
|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 0.45% | 전라북도 | 임실군 | 0.013%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0.43% | 경상북도 | 청송군 | 0.014% |

### 4) 연령대별/지역별 토지소유 현황

민유지 중 미성년자(20세 미만)의 토지소유가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중구이며, 서울이 대체로 높다. 서울에서는 중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의 순으로 높다. 한편 진도군, 양구군과 같이 미성년자 토지소유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그림 Ⅱ-13] 미성년자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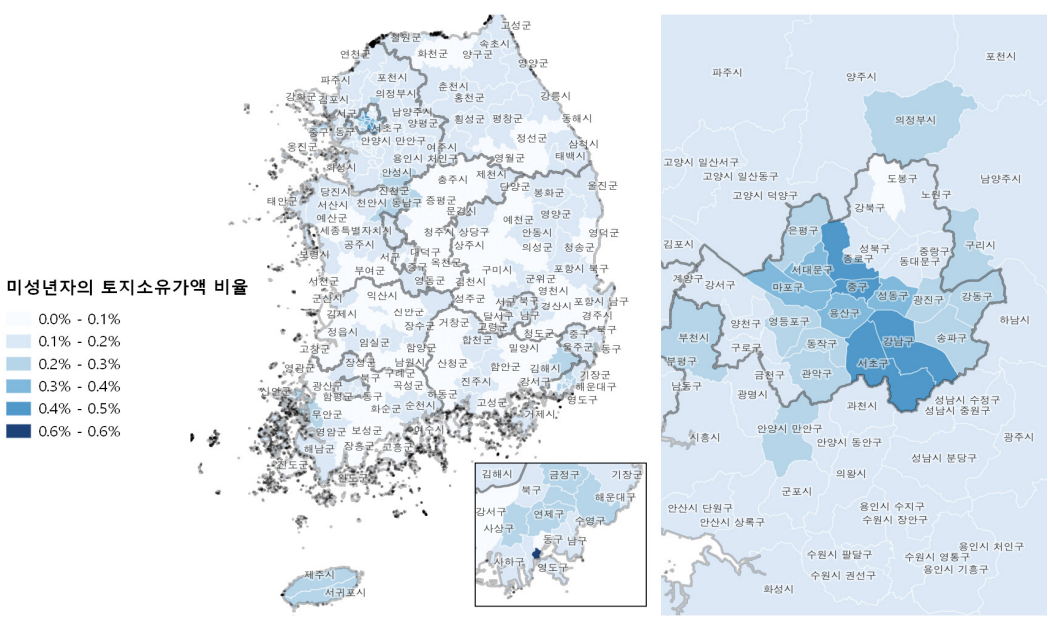

[표 II-13] 미성년자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부산광역시 | 중구 | 0.65% | 전라남도 | 진도군 | 0.000%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0.46% | 경상북도 | 울릉군 | 0.000%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0.43% | 강원도 | 양구군 | 0.000%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0.43% | 전라남도 | 구례군 | 0.000% |
| 서울특별시 | 중구 | 0.42% | 강원도 | 화천군 | 0.000%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0.39% | 경상남도 | 남해군 | 0.034%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0.35% | 경상남도 | 통영시 | 0.042%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0.31% | 경상북도 | 영덕군 | 0.044% |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0.30% | 인천광역시 | 동구 | 0.045% |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0.29% | 충청북도 | 보은군 | 0.048% |

20대가 소유한 토지가액의 비율은 수도권 및 대도시가 높은 편이다. 20대 미만 소유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을 통한 증여 또는 자녀 명의의 부동산 소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다음으로 서울 용산구, 송파구이다.

[그림 II-14] 2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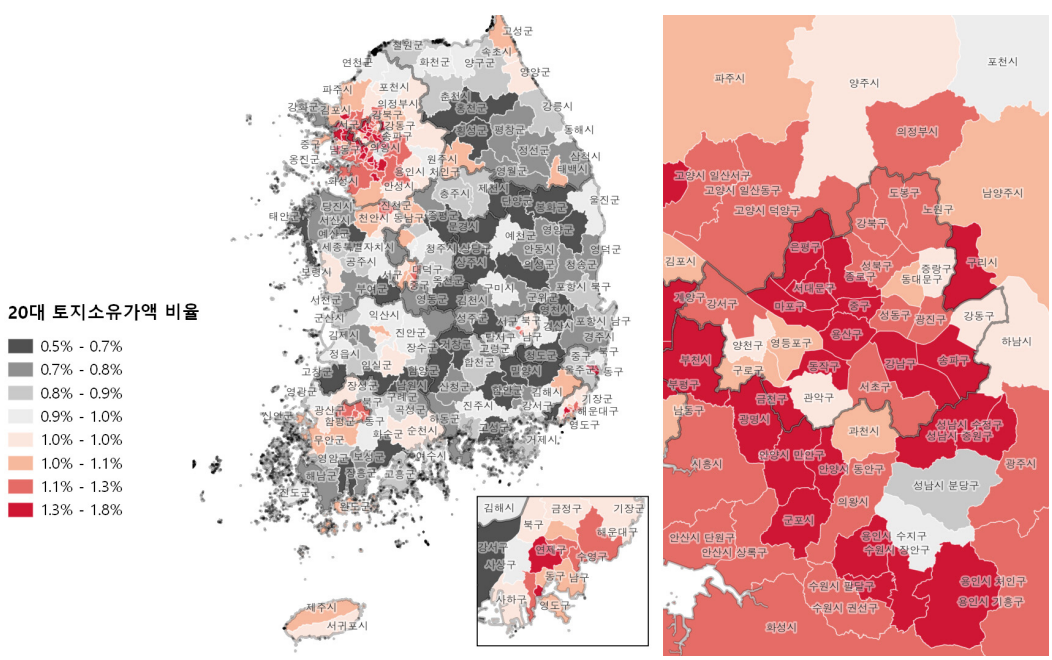

[표 II-14] 2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울산광역시 | 남구 | 1.84% | 경상남도 | 함안군 | 0.54%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1.74% | 전라북도 | 순창군 | 0.55%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1.72% | 경상북도 | 상주시 | 0.57% |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1.70% | 충청북도 | 단양군 | 0.59% |
| 경기도 | 안양시 만안구 | 1.61% | 경상북도 | 영주시 | 0.60% |
| 경기도 | 성남시 중원구 | 1.59% | 경상남도 | 함양군 | 0.60%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1.57% | 충청북도 | 괴산군 | 0.61% |
| 서울특별시 | 중구 | 1.57% | 경상북도 | 울릉군 | 0.61% |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1.56% | 전라남도 | 보성군 | 0.62% |
| 경기도 | 광명시 | 1.53% | 경상북도 | 영양군 | 0.63% |

3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서울과 서울 남쪽의 경기 지역, 대도시이며 가장 높은 곳은 수원시 영통구, 인천 연수구, 서울 서대문구 순이다. 30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른바 '영끌'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15] 3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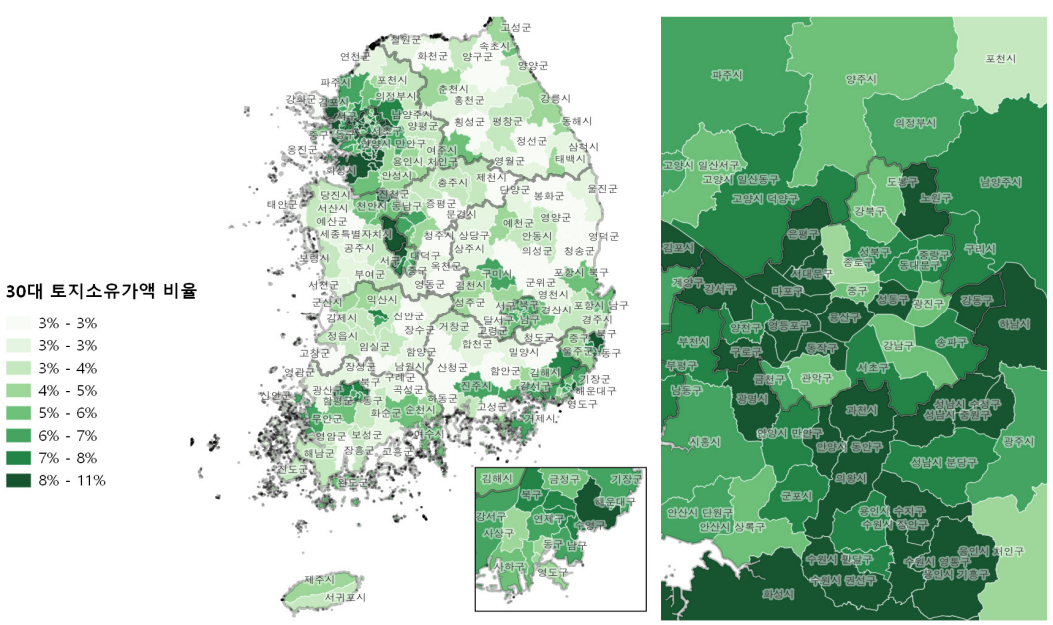

[표 II-15] 3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11.4% | 경상남도 | 함양군 | 2.6%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11.3% | 경상북도 | 봉화군 | 2.7%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11.0% | 경상남도 | 하동군 | 2.7% |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9.9% | 경상북도 | 의성군 | 2.7% |
| 인천광역시 | 서구 | 9.5% | 충청북도 | 영동군 | 2.8% |
| 충청남도 | 천안시서북구 | 9.3% | 전라북도 | 순창군 | 2.8% |
| 경기도 | 용인시 수지구 | 9.1% | 충청북도 | 괴산군 | 2.9% |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9.0% | 경상북도 | 청송군 | 2.9% |
| 경기도 | 화성시 | 9.0% | 충청북도 | 보은군 | 2.9% |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9.0% | 경상남도 | 남해군 | 2.9% |

40대까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30대와 다른 점은 강남 3구 등 서울에서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 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점이다.

[그림 II-16] 4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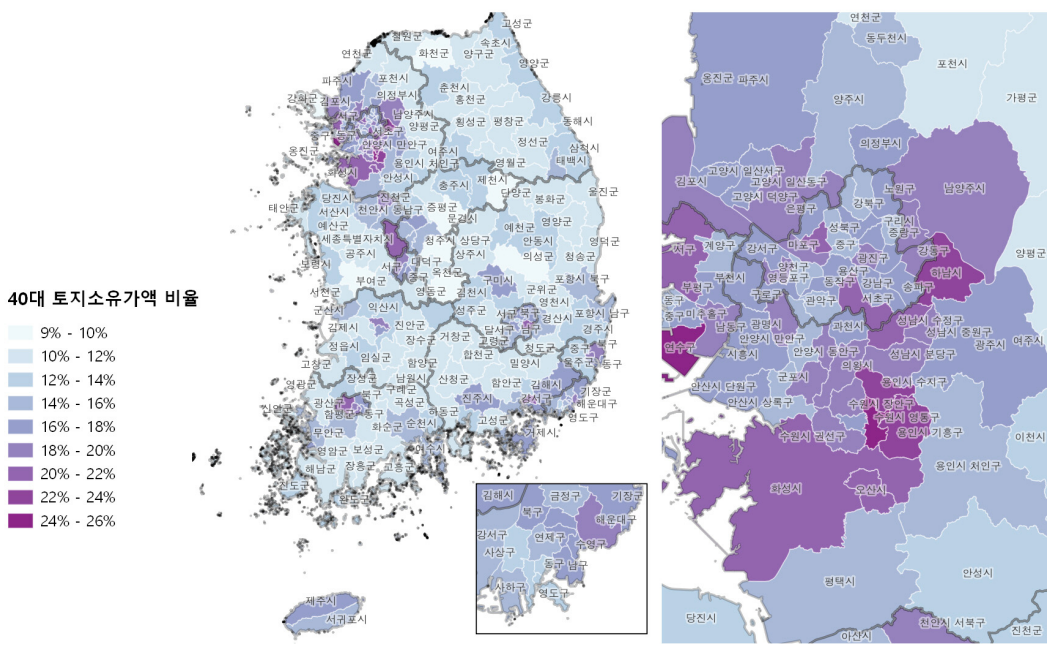

[표 II-16] 4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26.0% | 경상북도 | 의성군 | 9.0%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24.2% | 충청북도 | 보은군 | 9.2% |
| 경기도 | 용인시 수지구 | 23.7% | 충청남도 | 부여군 | 9.5% |
| 경기도 | 용인시 기흥구 | 23.1% | 충청북도 | 괴산군 | 9.6% |
| 경기도 | 하남시 | 22.9% | 강원도 | 화천군 | 9.8% |
| 경기도 | 오산시 | 21.9% | 충청북도 | 단양군 | 9.9% |
| 경기도 | 화성시 | 21.5% | 충청북도 | 영동군 | 9.9%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21.4%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9.9% |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21.4% | 전라남도 | 보성군 | 10.0% |
| 인천광역시 | 서구 | 21.3% | 강원도 | 횡성군 | 10.0% |

50대부터는 지방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50대 토지가액 점유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다. 50대 토지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광산구, 수원 영통구 전남 광양시, 경기 시흥시, 울산 북구 순이다.

[그림 II-17] 5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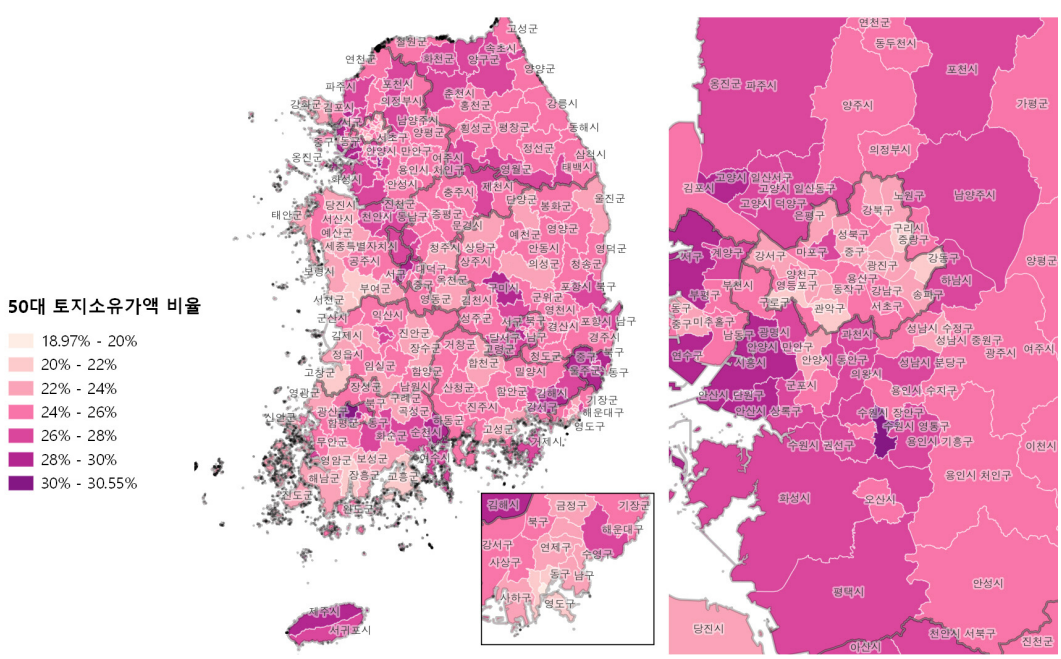

[표 II-17] 50대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30.6% | 부산광역시 | 중구 | 19.0% |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30.0%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20.2% |
| 전라남도 | 광양시 | 29.5% | 충청남도 | 부여군 | 20.8% |
| 경기도 | 시흥시 | 29.0% | 충청남도 | 서천군 | 21.2% |
| 울산광역시 | 북구 | 28.7% | 전라남도 | 고흥군 | 21.4% |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28.7% | 전라남도 | 강진군 | 21.4% |
| 경기도 | 안산시 단원구 | 28.7%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21.5%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28.7% | 부산광역시 | 영도구 | 21.6%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28.7% | 전라북도 | 고창군 | 21.7% |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28.6% | 부산광역시 | 동구 | 21.7% |

60대이상의 토지비율은 확연히 지방에서 높으며 서울의 경우 관악구가 가장 높다. 전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주로 군 지역에서 60대 이상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젊은 곳은 수원 영통구, 인천 연수구/서구, 서울 서대문구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I-18] 60대 이상 토지소유가액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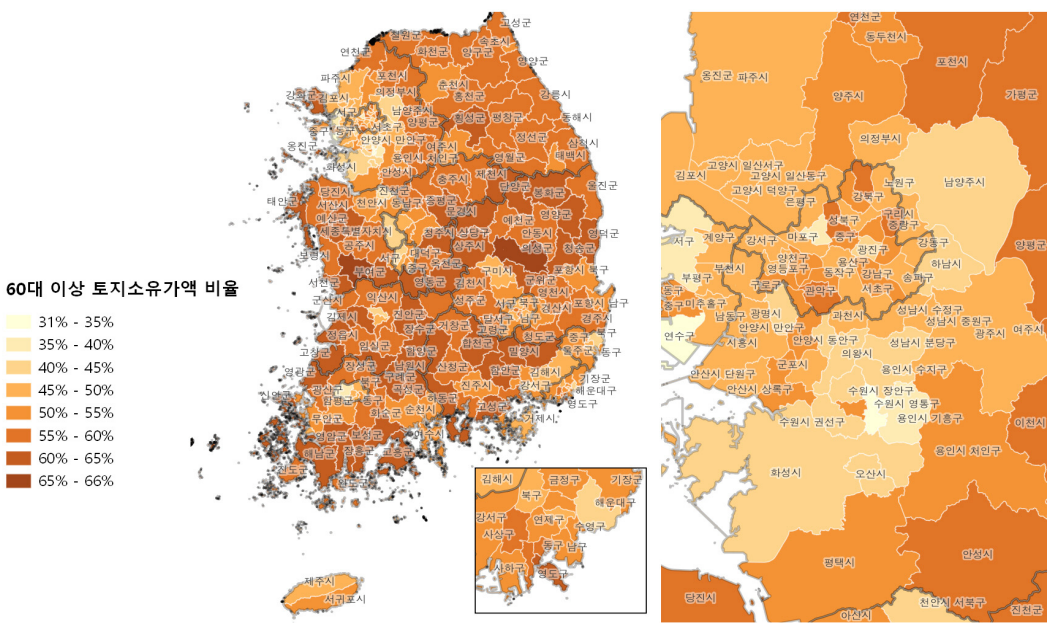

[표 Ⅱ-18] 60대 이상 토지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충청남도 | 부여군 | 65.6%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30.8% |
| 경상북도 | 의성군 | 65.5%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34.3% |
| 충청남도 | 서천군 | 64.7% | 인천광역시 | 서구 | 39.3% |
| 전라남도 | 강진군 | 64.3%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39.3% |
| 전라북도 | 고창군 | 64.3%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39.7% |
| 전라남도 | 고흥군 | 64.2% | 경기도 | 용인시 기흥구 | 39.8% |
| 전라남도 | 보성군 | 63.8% | 경기도 | 용인시 수지구 | 40.4% |
| 전라북도 | 순창군 | 63.6% | 경기도 | 하남시 | 40.7% |
| 충청남도 | 예산군 | 63.5% | 경기도 | 화성시 | 41.1%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63.1%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41.7% |

## 5) 부동산소득의 지역 간 격차

[그림 Ⅱ-19] 5년간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액(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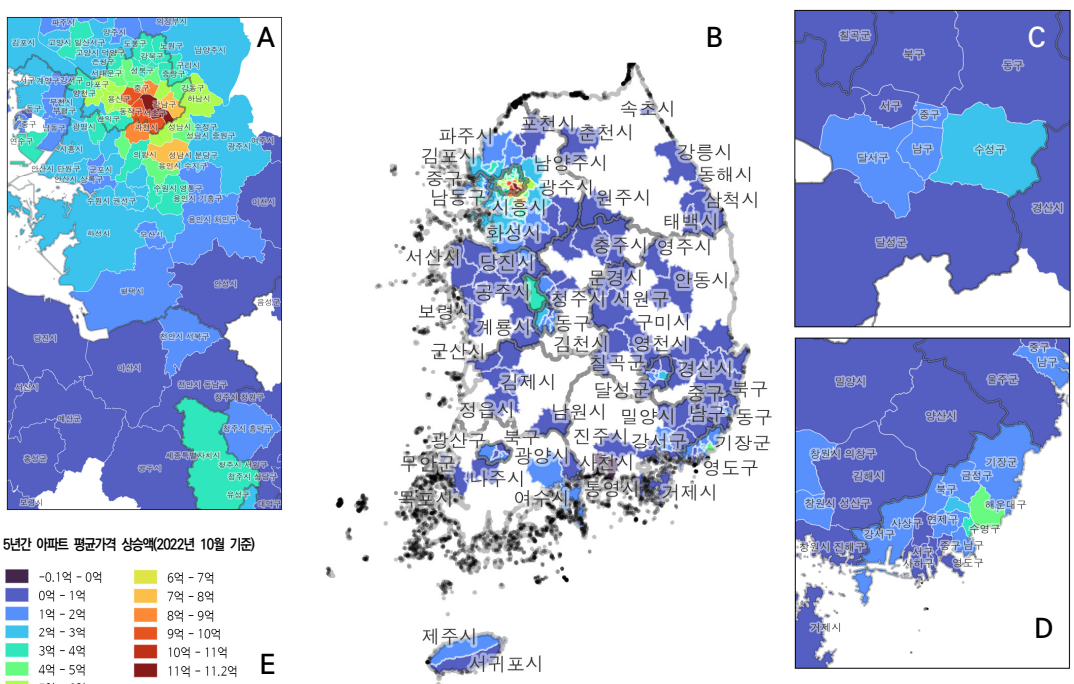


주: 흰색은 자료가 없는 곳(월간주택가격동향의 평균아파트가격은 한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만 생산하고 있음).
자료: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

[표 Ⅱ-20]는 최근 5년간 지역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억 미만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선 3억 이상 증가하였으며 강남구의 경우 평균 11억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 강남구의 아파트에 거주한 경우 5년간 연평균 2억 이상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표 Ⅱ-20]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17-2022)

|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2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서울 | 강남구 | 11.2억 | 경남 | 사천시 | -0.08억 |
| 서울 | 서초구 | 9.2억 | 경북 | 영천시 | 0.00억 |
| 서울 | 용산구 | 9.1억 | 경남 | 거제시 | 0.02억 |
| 경기 | 과천시 | 8.4억 | 경기 | 여주시 | 0.11억 |
| 서울 | 성동구 | 8.4억 | 충남 | 당진시 | 0.13억 |
| 서울 | 송파구 | 7.6억 | 전남 | 무안군 | 0.14억 |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 7.4억 | 강원 | 동해시 | 0.15억 |
| 서울 | 영등포구 | 5.9억 | 강원 | 삼척시 | 0.19억 |
| 서울 | 마포구 | 5.7억 | 경북 | 칠곡군 | 0.19억 |
| 경기 | 하남시 | 5.7억 | 전남 | 목포시 | 0.20억 |
| 서울 | 양천구 | 5.6억 | 전남 | 광양시 | 0.21억 |
| 경기 | 성남시 수정구 | 5.6억 | 경북 | 영주시 | 0.22억 |
| 서울 | 광진구 | 5.5억 | 강원 | 태백시 | 0.23억 |
| 서울 | 동작구 | 5.5억 | 경북 | 경주시 | 0.25억 |
| 서울 | 서대문구 | 5.0억 | 경남 | 창원시 진해구 | 0.25억 |
| 서울 | 강동구 | 4.8억 | 경남 | 창원시 마산회원구 | 0.27억 |
| 서울 | 중구 | 4.8억 | 충북 | 청주시서원구 | 0.27억 |
| 서울 | 종로구 | 4.5억 | 경남 | 통영시 | 0.27억 |
| 경기 | 용인시 수지구 | 4.5억 | 충남 | 예산군 | 0.28억 |
| 서울 | 동대문구 | 4.5억 | 경북 | 경산시 | 0.29억 |

### 6) 주택 소유의 불평등

무주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서울시 관악구로 65%의 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다. 한편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무주택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강화군이다. 지도상에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상당수의 지역에서 무주택 가구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Ⅱ-20] 무주택 가구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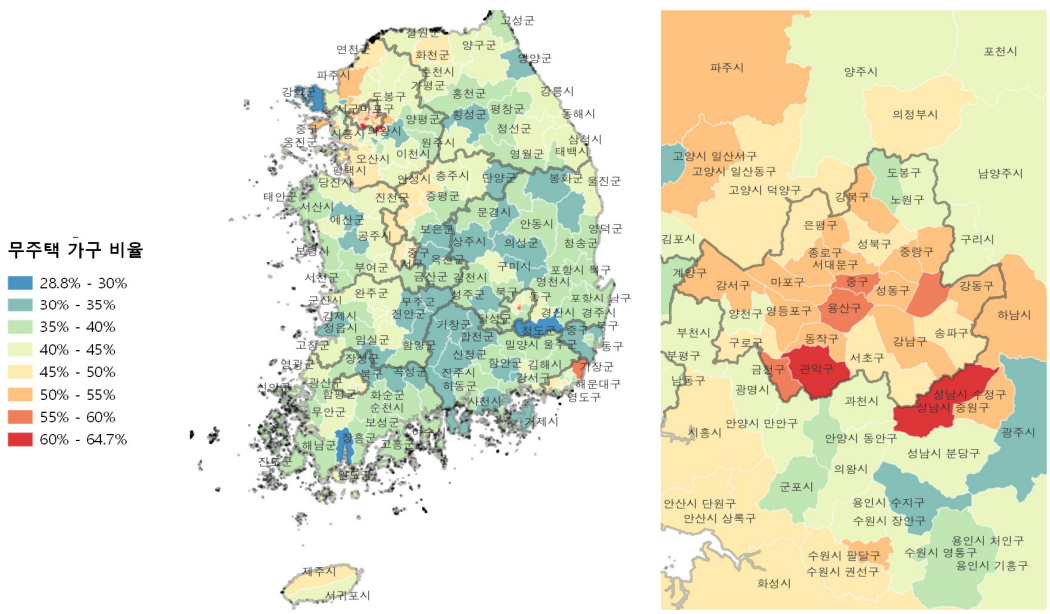


[표 Ⅱ-21] 무주택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64.7%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28.8% |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60.5% | 전라남도 | 강진군 | 29.2% |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59.0% | 경상북도 | 청도군 | 29.4% |
| 서울특별시 | 중구 | 58.0% | 울산광역시 | 북구 | 30.1% |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57.9% | 경상남도 | 남해군 | 30.2% |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55.8% | 전라남도 | 구례군 | 30.4% |
| 대구광역시 | 남구 | 55.2% | 충청북도 | 옥천군 | 30.6%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55.0% | 전라북도 | 진안군 | 30.8%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54.8% | 경상북도 | 의성군 | 31.7% |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54.7% | 경기도 | 수지구 | 31.7% |

1주택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북구, 인천 동구, 경기 광주시 순이며 1주택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27%이다. 강남, 용산, 마포의 경우도 1주택 가구의 비율이 낮은 10곳에 속한다.

[그림 Ⅱ-21] 1주택 가구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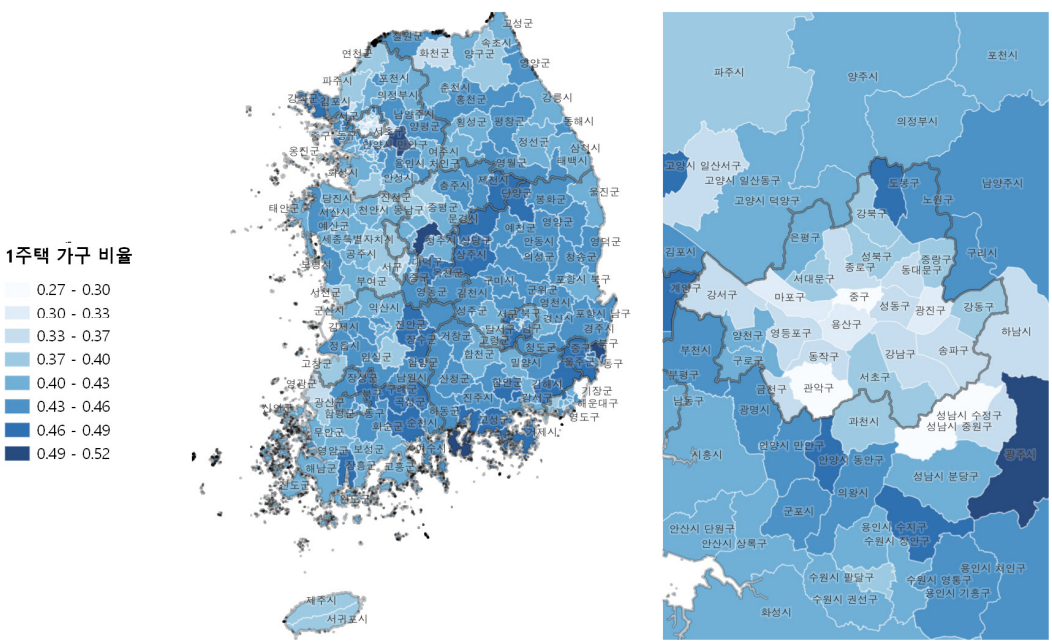


[표 Ⅱ-22] 1주택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울산광역시 | 북구 | 52.5%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27.1% |
| 인천광역시 | 동구 | 50.5%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29.4% |
| 경기도 | 광주시 | 50.5% | 서울특별시 | 중구 | 30.2% |
| 경상남도 | 남해군 | 49.5% | 경기도 | 수정구 | 30.2% |
| 충청북도 | 상당구 | 49.3% | 경상북도 | 울릉군 | 30.9% |
| 경기도 | 일산서구 | 49.1%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31.5%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48.9%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31.8% |
| 전라남도 | 구례군 | 48.8%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33.0% |
| 경기도 | 성남시 수지구 | 48.5% | 부산광역시 | 중구 | 33.3% |
| 경상남도 | 마산회원구 | 48.4%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33.9% |

다주택 가구의 비율은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지방이 높다. 다주택 가구의 비율 상위 10곳은 모두 군 지역이며 서울에서 다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주택 가구의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서울시 관악구이다.

[그림 Ⅱ-22] 다주택 가구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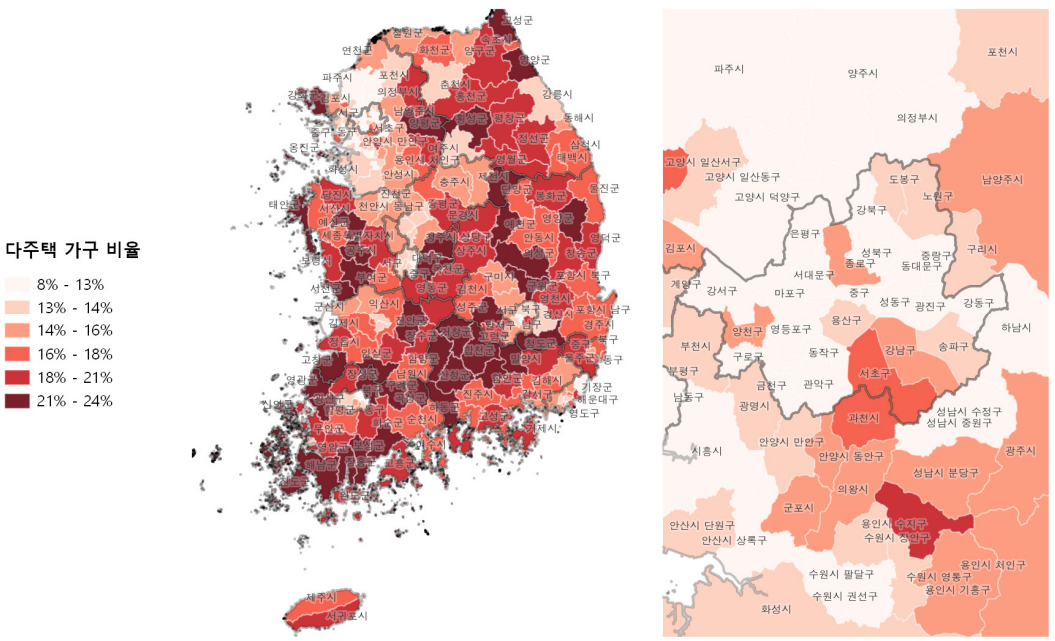


[표 Ⅱ-23] 다주택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1)

|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 | |
|---|---|---|---|---|---|
| 광역 | 기초 | 값 | 광역 | 기초 | 값 |
| 경상북도 | 청도군 | 24.5%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8.2% |
| 충청북도 | 보은군 | 24.2%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9.3% |
| 충청남도 | 서천군 | 24.1% | 경기도 | 하남시 | 9.4% |
| 경상남도 | 합천군 | 24.1%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9.7% |
| 전라남도 | 강진군 | 23.9% | 경기도 | 중원구 | 9.7% |
| 전라남도 | 신안군 | 23.5% | 대구광역시 | 남구 | 9.9% |
| 충청남도 | 예산군 | 23.3%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10.0% |
| 전라북도 | 순창군 | 23.3%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10.3% |
| 경상남도 | 산청군 | 23.2% | 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 10.4% |
| 강원도 | 횡성군 | 23.0% | 대구광역시 | 서구 | 10.5% |

# 제2부

# 쟁점과 정책

제3장 성별 임금격차: 원인과 추세

제4장 노후 시기 소득불평등: 근로시기 불평등의 전이

제5장 자산불평등의 소득불평등 강화 효과

제6장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 시간불평등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 2022
# 민주연구원
# 불평등 보고서

# 제3장

## 성별 임금격차: 원인과 추세

# 제3장 성별 임금격차: 원인과 추세*

## 1. 왜 성별 임금격차인가?

이 장의 목적은 성별 임금 격차의 추세와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크고 그 원인 역시 비정규직 문제,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 기업 규모 등 다양하다. 그러함에도 성별 임금격차를 다루는 이유는 임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격차요인을 국제 비교할 때 다른 나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성별이면서, 동시에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인 여성의 경력단절이 출산율 저하와 성별 갈등 등 다른 주요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임금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 수준이 크고 원인 역시 다양하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장하성 2012; 전병유·신진욱 편 2016; 장지연 외 2016 등). 연공서열(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한국노동연구원 2015), 성별 임금격차(금재호 2011; 신광영 2011; 김태홍 2013 등),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김유선 2009; 김복순 2017; 금재호·최재문 2021), 학벌 프리미엄(장수명 2002; 최강식·정진호 2002) 등 많은 차별 요인이 한국의 큰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다만 임금불평등과 격차요인은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국가든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에는 정당한 격차, 즉 업무능력(생산성)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와 정당하지 못한 차이, 차별이 섞여 있다. 국내의 임금격차에 관한 주요 연구는 개별 격차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서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어떠한 격차 요인이 큰 것인지, 이 중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차별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정준호·전병유·장지연(2017)의 연구나 이우진·최은영(2020)의 연구는 다양한 임금격차 요인을 비교하였는데 이 경우 분석자료와 산업,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차이를 생산성의 차이와 차별로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의 업무 역량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렵다. 전자의 경우 임금추정함수에

* 본 장의 내용은 신영민·김태일(2021)과 신영민(2022)의 연구를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서 생산성 격차와 설명되지 않는 격차를 분해하는 오하카 분해(Oaxaca decomposition)나 회귀분석 기반의 샤플리 값 분해(regression-bas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등을 활용해 추정하고 있으나 후자, 즉 개인의 업무 역량은 정규교육년수나 학력, 경력 등을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를 감안할 수밖에 없고, 역량이 높기 때문에 학력도 높고 업무능력도 좋아진 것인지, 학력이 높기 때문에 역량이 높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Hanushek et al 2015).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일정한 오차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기존의 임금격차 요인 비교 연구는 과연 이것이 한국의 두드러지는 문제인 것인지 알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특정한 격차요인이 한국에서 가장 크다 해도 이것이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는 노동시장이나 제도, 정책의 문제이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나 이러한 격차 요인의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개인의 업무 역량을 대리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임금 격차를 국제 비교해 임금격차의 한국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밝힌다. 국제비교를 통해 임금 격차의 한국적 특성을 분석한 뒤 국내의 패널자료를 활용, 이러한 격차의 추세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가급적 동일한 시점과 조사 지침을 통해 수행된 조사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소득 불평등 비교에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urg Income Study)가 비교적 많이 활용되지만 LIS의 경우 동일한 조사 차수여도 국가 간 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미시 자료의 분석을 위한 접근에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s for International Adults Assessments of Competencies)를 활용한다. PIAAC의 경우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가 수행되어 비교의 일관성이 있다. 무엇보다 PIAAC은 개인의 인지적 역량을 직접 측정함으로서, 업무 역량을 대리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정규직-비정규직과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지만 무엇보다도 성별의 영향이 크며, 동시에 3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남녀의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에 차이가 있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이 재진입할 때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재취업하는 일자리도 숙련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임금격차

### 1) 임금 및 소득불평등, 성별 임금격차 추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전반적인 소득과 임금의 불평등 수준 및 추세를 살펴보자. OECD는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국제비교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분위별 비율(decile ratio) 등이 있다. 지니계수는 인구누적비율에 따른 소득의 누적비율을 도출한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누적소득분포와 인구분포가 일치하는 완전평등선의 면적비를 통해 계산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이면 완전평등이며,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증가한다. 분위별 비율은 소득 10분위에서 특정 분위 간의 소득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D90/D10이 4.5라면 소득 하위 10%의 소득 대비 상위 10%의 소득이 4.5배라는 의미이다. 그 외에도 상위 10%와 하위 40%간의 비율을 다룬 팔마 비율(Palma ratio) 등이 있다.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주요 지표로 제공된다. OECD의 노동통계나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서는 노동력 및 고용률, 실업률, 비정형 노동비율, 노동시간 등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성별 격차만이 대표지표로 제공된다.

[그림 Ⅲ-1]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및 D90/D10비율(2011-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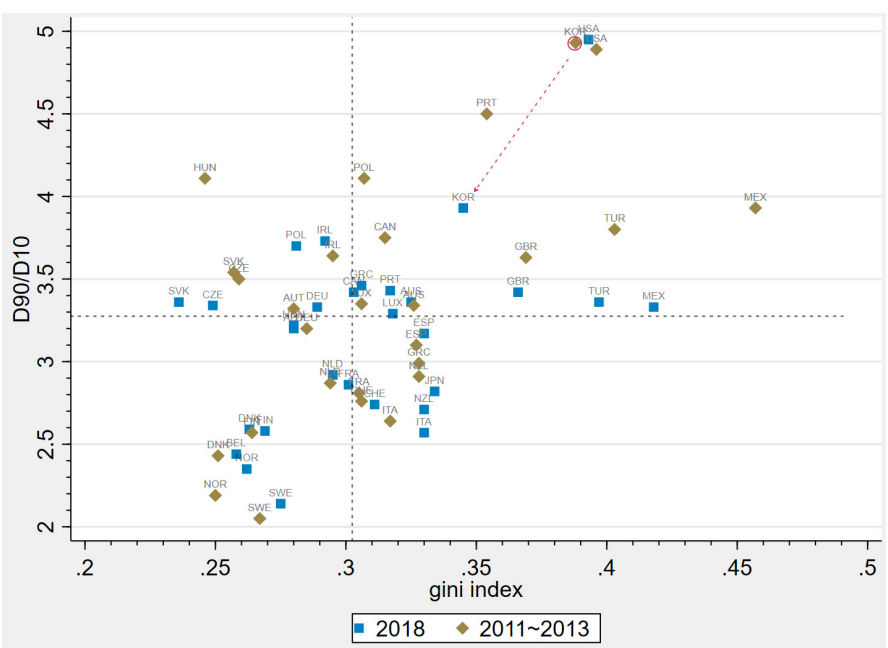


자료: OECD 2022a, LFS,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검색일: 2022.10.28.); OECD 2022b, Income inequality (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검색일: 2022.10.27.)로 작성.

[그림 Ⅲ-1]은 2010년대 초반과 2010년대 후반(2018년) OECD 국가의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로축) 및 임금 하위 10%대비 상위 90%의 비율(세로축)을 보여준다. 2011년부터 OECD에서는 균등화소득에 맞춰 지니계수를 측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2010년대 초반에는 국가별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최근의 경우 많은 국가가 2018년이 최신이기에 2018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1년과 2018년의 값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8년 0.345로 낮아졌으며, D90/D10 비율도 2008년 4.93에서 3.93으로 낮아져, 소득 및 임금불평등 수준은 지난 몇 년간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시 소득 및 임금불평등 수준은 다른 국가 보다 여전히 높다. 2011년 기준 OECD국가 중 지니계수는 멕시코, 튀르키예,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고, D90/D10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18년에는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아졌지만 앞선 네 국가 및 영국에 이어 5번째로 높고, 임금불평등 수준은 여전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물론 미국과 함께 압도적으로 높던 임금불평등 수준은 OECD주요 국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임금불평등이 개선된 데에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이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김유선 2019; 문지선 2020; 박나리·김교성 2022 등).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임금 종사자의 실질 임금이 크게 개선된 동시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로 장시간 일하는 중위소득 이상 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낮아져 전반적인 임금불평등 수준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임금불평등의 개선에 비해 소득불평등의 개선 정도는 미비한 편인데 이는 공적 이전을 통한 재분배가 취약한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윤홍식 편 2020; 전병유·신진욱 편 2016).

[그림 Ⅲ-2]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추이(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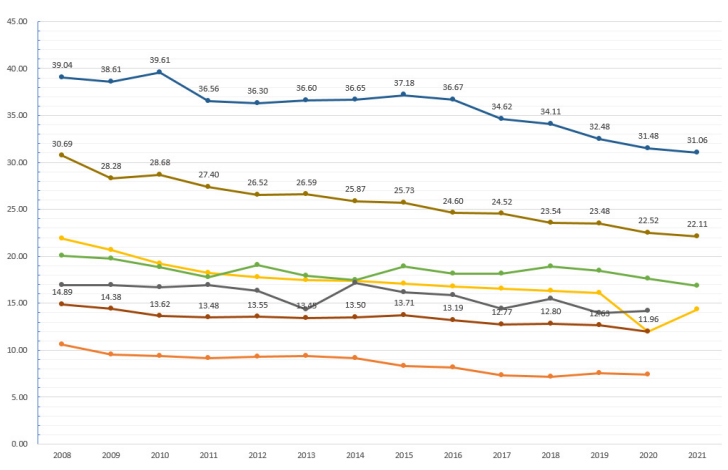


자료: OECD 2022c, Gender wage gap (indicator). doi: 10.1787/7cee77aa-en (검색일: 2022.10.28.).

[그림 Ⅲ-2]는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추세이다. 이는 남성 중위 임금 대비 여성 중위 임금의 차이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2008년 39.04%이던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31.6%로 지난 10여 년간 8%P가까이 낮아져 개선되었다. 이는 앞서 밝혔듯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큰 임금격차를 보이며, 두 번째로 임금 격차가 큰 일본보다도 10%P이상 격차가 크고, OECD 평균보다는 3배가량 높다.

### 2) 한국 임금격차의 특성

####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앞서의 논의를 통해 지난 10년간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 성별 임금격차가 낮아졌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불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이만 확인한 것이기에 남녀 간의 교육수준이나 업무능력 차이, 비정규직 및 시간제 비율과 같은 다른 격차 요인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격차 요인들을 통제한 후 임금 격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PIAAC은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 및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미시자료를 확인가능하며, 특히 개인의 인지적 역량을 직접 측정하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비교자료와 차이가 있다.

[BOX 2]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관하여

PIAAC은 응답자의 문해력(literacy)과 수리력(numeracy), ICT 활용능력을 평가함으로서 개인의 인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동시에 직무에서 인지적 역량의 활용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문해력은 “사회 참여, 개인의 목표 달성, 개인의 지식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문서화 된 글을 이해, 평가, 활용, 소통하는 능력”이며, 수리력은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수학적 요구에 참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적 정보 및 아이디어에 접근하여 활용 및 해석, 소통하는 능력”이다(OECD 2013). 즉 문서화, 수치화된 정보를 해석 및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나 추론을 획득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인지 능력인데, 이는 일반적인 업무능력(general skill)의 지표이면서 정규교육이 아닌 현

장에서의 실무를 통해 길러지거나 비정규교육을 통해 길러진 업무능력을 나타낸다(Hanushek etl al 2015; OECD 2013; Paccagnella 2016; Borgonovi et al. 2017).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는 컴퓨터를 통해 테스트에 응시하는데 응답 수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의 수준별 특징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예시) [문해력 1단계] 노동조합 선거 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함께 세 명의 선거 후보 이름과 득표수가 적힌 표가 나타나며, 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자를 찾는 것이 과제이다. 이를 수행하려면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찾고, 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자의 이름을 찾아야 하는 비교적 단순한 풀이를 거친다. [문해력 4단계] 도서관 웹사이트의 도서 검색 목록이 제시된 후,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이 모두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이를 위해 도서 검색 목록에서 제목을 통해 관련 도서를 유추하고, 책 소개를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찬반 양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수리력 3단계] 종이도면을 접어 조립된 상자 그림과 네 개의 도면이 있고, 조립된 상자 밑면에 치수가 제시되는데 제시된 도면 중 조립된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이와 같이 문제 풀이를 통해 문서, 수치 정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파악한다.

역량값은 실제 측정값이 아닌 가능값(plausible value)으로 기록된다. 일반적인 시험과 달리 응답자는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응답속도와 오답률에 따라 다른 순서로 문제를 풀고, 모든 문제를 풀지 않은 채 테스트가 종료된다. 역량점수는 응답자가 기록한 점수를 토대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해당 특성을 가진 응답자가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값의 범위를 문항반응이론과 다중대체법을 통해 10개가 생성된다. 즉, 특정한 성별과 정규교육년수, 현재 직업과 일자리에서의 근무기간 등을 통해 볼 때 해당 응답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점수의 범위가 10개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PIAAC은 OECD 35개 국가에서 조사되었으며 첫 주기(1st cycle)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가 수행되었다. 첫 주기는 3라운드로 구분되는데 1라운드는 2011~2012년, 2라운드는 2014~2015년, 3라운드는 2017년이며 한국은 1라운드에 조사되었다. 본 연구서에서는 PIAAC의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영국 10개 국가를 비교분석한다. 주요국가 중 미국, 독일, 스웨덴은 고용계약형태나 근속년수가 조사되지

않거나 임금이 분위로만 조사되었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국가는 모두 1라운드 조사 국가이다. 역량 외에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으로서 학력(정규교육년수)과 연령, 성별, 경력, 근속년수를, 일자리 특성으로서 노동시간과 종사상 지위, 전일제 여부, 기업규모를 포함한다. 인적자본과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고 임금 함수를 추정하여 가장 큰 격차요인을 분석한다. 여기서 성별은 성별 임금격차를, 연령과 근속년수는 연공서열 및 호봉의 영향을, 정규직 여부와 기업규모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파악하는 지표다.

[표 Ⅲ-1] 분석 변수의 정의

| 구분 | 사용변수 | 변수설명 | 비고 |
|---|---|---|---|
| | 국가 | OECD주요국가 10개국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영국 |
| 종속변수 | 임금 | 시간당 임금 자연대수[17] | 수당포함, 국가별 통화 |
| 인적자본 특성 | 역량 | 수리력, 문해력 개연값의 평균 | 국가별 표준화 점수 |
| | 성별 | 응답자 성별 | 1=남성, 0=여성 |
| | 학력 | 정규교육년수 | |
| | 연령/연령2 | 응답자 연령 | 18-65세 |
| | 경력 | 전일제/시간제로 6개월 이상 일한 년도의 합 | |
| | 근속년수 | 현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 | |
| 일자리 특성 | 정규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 | 1=정규직, 0=비정규직 |
| | 노동시간 | 현재 일자리의 주당노동시간 | |
| | 전일제 | 전일제 및 시간제 여부 | 1=전일제, 0=시간제 |
| | 기업규모 | 종사 사업체의 규모 | 1=10인 이하, 2=11~50인, 3=50~200인, 4=200인 이상 |

분석은 임금, 역량과 다른 인적자본특성, 일자리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비교하며 임금함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중요한 격차요인을 식별한다. 또한 주요한 격차요인에 대한 오하카-블린더 분해를 통해 생산성 차이와 차별을 구분한다. 오하카-블린더 분해는 두 집단 간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며, 임금격차 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된다(Oaxaca 1973; Jann 2008). 예를 들어 남성을 m, 여성을 f, 각 집단의 평균 임금을 $\overline{Y}_i$라 할 때 두 집단의 임금 차이($\overline{Y}_m - \overline{Y}_f$)는 $\beta^*(\overline{X}'_m - \overline{X}'_f)' + \overline{X}'_f(\beta^* - \hat{\beta}_f) + \overline{X}'_m(\hat{\beta}_m - \beta^*)$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항($\beta^*(\overline{X}_m - \overline{X}_f)$)은 두 집단의 분포 차이에 의하여 임금 차이가 설명되는 부분으로

17) 임금은 국가별 통화를 사용하기에 일부 국가는 로그 변환시 다른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값을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시간당 임금)/10을, 일본은 (시간당 임금)/100을, 한국은 (시간당 임금)/1,000을 한 값을 자연대수로 변환하였다.

생산성에 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계수 차이를 보여주는 ($\overline{X}'_f(\beta^*-\hat{\beta}_f)+\overline{X}'_m(\hat{\beta}_m-\beta^*)$)은 각 집단에서 변수 X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로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Jann 2008).[18] 즉 임금함수 추정 결과를 국가 간 비교하여 한국의 가장 특징적인 격차 요인을 분석한 후, 해당 요인에 대한 오하카-블린더 분해를 통해 해당 요인 중 생산성 차이에 의한 정도와 차별에 의한 격차를 비교함으로서 임금 격차의 한국적 특성을 도출한다.

### (2) 분석결과

[표 Ⅲ-2]는 비교대상 국가의 로그 시간당 임금과 인적자본 특성을 보여준다. 비교대상 국가 18-65세 노동자 평균 연령은 39.81세로 국가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한국은 이보다 근소하게 높은 39.95세로 비교적 평균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높은 자영업 비율이 한 원인일 것이다. 스페인과 영국이 각각 39.82세와 39.90세로 가장 젊고, 대부분 국가는 40세 이상인데 비교 대상 국가 중에는 덴마크의 평균 연령이 43.49세로 가장 높다. 이어서 노동자 중 남성 비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와 한국, 스페인이 각각 51.68%, 51.60%, 50.79%로 남성이 더 많고 그 외 국가는 여성 노동자가 더 많다. 영국과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덴마크 순으로 여성 노동자가 많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남성 비율이 48~49%로 성비가 거의 비슷하다.

역량을 살펴보면 평균 역량점수는 273.33점인데 한국은 270.94점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는 역량점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차이가 크지는 않다. 일본과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역량점수가 높은 편에 속하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의 역량 점수가 낮고 덴마크와 영국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다. 정규교육년수는 비교대상 국가 평균이 12.72년으로 한국은 평균보다 높은 13.49년인데 이는 노르웨이(14.5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값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평균 13년가량의 정규교육년수를 보이며 프랑스(12.03년)와 이탈리아(12.41년), 스페인(12.20년)의 정규교육년수가 낮다.

18) 오하카에 의해 처음 제안된 분해분석에서 쟁점은 $\beta^*$, 즉 가중행렬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였다. 오하카는 이를 1 또는 0으로 보았는데 이는 차별이 양 집단 중 한쪽에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므로 이는 생략하고 여기서는 합동모형에 집단 지표(group indicator)를 추가 공변량으로 포함하는 Jann(2008)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Ⅲ-2] 비교대상 국가의 인적자본 변수 기술통계

|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페인 | 영국 | 총계 |
|---|---|---|---|---|---|---|---|---|---|---|---|
| obs. | 2,833 | 2,238 | 3,202 | 1,573 | 2,383 | 2,341 | 3,157 | 1,723 | 2,268 | 4,234 | 25,952 |
| 시간당 임금 | 2.88 | 2.83 | 2.55 | 2.48 | 2.66 | 2.45 | 2.79 | 3.01 | 2.25 | 2.38 | 2.16 |
| | (0.52) | (0.40) | (0.47) | (0.55) | (0.77) | (0.76) | (0.68) | (0.49) | (0.57) | (0.58) | (0.77) |
| 연령 | 43.49 | 41.75 | 41.33 | 41.54 | 41.67 | 39.95 | 40.02 | 40.23 | 39.82 | 39.90 | 39.81 |
| | (13.36) | (12.38) | (11.49) | (10.24) | (12.59) | (11.41) | (13.13) | (12.94) | (10.83) | (12.11) | (12.53) |
| 남성 비율(%) | 44.69 | 41.91 | 48.72 | 51.68 | 43.14 | 51.60 | 49.68 | 41.67 | 50.79 | 39.75 | 45.99 |
| 역량 | 279.47 | 296.26 | 265.92 | 260.30 | 297.10 | 270.94 | 289.97 | 287.11 | 257.87 | 276.20 | 273.33 |
| | (43.89) | (40.89) | (47.57) | (42.26) | (36.35) | (39.52) | (40.67) | (43.05) | (44.31) | (43.23) | (44.10) |
| 정규교육 년수 | 13.26 | 13.23 | 12.03 | 12.41 | 13.43 | 13.49 | 13.46 | 14.58 | 12.20 | 13.44 | 12.72 |
| | (2.72) | (2.91) | (3.47) | (3.75) | (2.33) | (3.09) | (2.55) | (2.43) | (3.49) | (2.31) | (2.86) |
| 경력 년수 | 23.23 | 19.00 | 19.41 | 17.61 | 18.61 | 13.14 | 19.25 | 18.84 | 16.80 | 19.60 | 17.76 |
| | (13.34) | (12.32) | (11.98) | (10.59) | (11.95) | (10.10) | (12.00) | (12.21) | (11.04) | (11.86) | (12.23) |
| 근속 년수 | 9.04 | 10.27 | 11.37 | 11.54 | 10.92 | 5.71 | 9.67 | 8.45 | 9.88 | 8.57 | 8.54 |
| | (10.18) | (10.73) | (10.76) | (9.94) | (10.79) | (7.65) | (10.12) | (9.52) | (9.74) | (8.88) | (9.52) |

비교적 높은 정규교육년수와 평균보다 근소하게 낮은 역량점수에 비해 한국 노동자의 경력과 근속년수는 매우 짧다. 비교대상 국가의 평균 경력년수는 17.76년인데 한국은 13.14년으로 가장 짧으며, 근속년수는 5.71년으로 평균의 2/3 수준이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는 덴마크의 경력년수가 23.23년으로 가장 길고 이어서 영국(19.6년)과 프랑스(19.41년), 네덜란드(19.25년), 핀란드(19.0년)의 순으로 길다. 이어서 노르웨이(18.84년)와 일본(18.61년), 이탈리아(17.61년), 스페인(16.8년) 순으로 길다. 근속년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11.54년과 11.37년으로 길고 일본과 핀란드는 10년 이상이며 한국을 제외한 그 외 국가는 대체로 8~9년을 보인다.

[표 Ⅲ-3] 인적자본변수의 남녀 비교

|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페인 | 영국 | 총계 |
|---|---|---|---|---|---|---|---|---|---|---|---|
| 역량(남) | 269.46 | 288.95 | 262.01 | 257.93 | 293.23 | 269.37 | 294.17 | 270.61 | 259.12 | 275.00 | 274.37 |
| | (47.04) | (42.95) | (48.30) | (43.04) | (37.74) | (40.03) | (41.84) | (48.23) | (44.69) | (44.97) | (45.91) |
| 역량(여) | 270.17 | 288.24 | 260.68 | 257.90 | 290.62 | 267.14 | 286.06 | 273.24 | 252.03 | 270.47 | 272.43 |
| | (41.21) | (39.11) | (46.65) | (41.11) | (33.99) | (38.29) | (39.03) | (42.37) | (43.22) | (41.09) | (42.49) |
| 역량(%) | 100.27 | 99.76 | 99.49 | 99.99 | 99.11 | 99.17 | 97.24 | 100.97 | 97.26 | 98.35 | 99.29 |
| 교육(남) | 12.11 | 11.78 | 11.34 | 11.37 | 13.11 | 13.30 | 13.44 | 13.30 | 11.46 | 13.03 | 12.44 |
| | (2.45) | (2.43) | (3.36) | (3.45) | (2.44) | (2.90) | (2.62) | (2.36) | (3.47) | (2.25) | (2.94) |

|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페인 | 영국 | 총계 |
|---|---|---|---|---|---|---|---|---|---|---|---|
| 교육(여) | 12.77 | 12.93 | 11.90 | 12.76 | 13.00 | 13.01 | 13.49 | 13.76 | 12.42 | 13.35 | 12.95 |
| | (2.48) | (2.60) | (3.37) | (3.66) | (1.94) | (3.07) | (2.47) | (2.30) | (3.32) | (2.30) | (2.77) |
| 교육(%) | 105.44 | 109.74 | 104.90 | 112.25 | 99.17 | 97.88 | 100.38 | 103.45 | 108.36 | 102.43 | 104.05 |
| 경력(남) | 21.56 | 17.53 | 19.65 | 17.68 | 18.37 | 14.48 | 20.73 | 15.81 | 18.54 | 20.39 | 18.83 |
| | (14.43) | (13.20) | (12.47) | (10.67) | (13.81) | (10.89) | (12.84) | (13.83) | (11.64) | (12.79) | (12.88) |
| 경력(여) | 20.80 | 18.04 | 17.77 | 16.22 | 15.39 | 9.92 | 17.76 | 15.19 | 14.35 | 18.47 | 16.85 |
| | (13.48) | (12.53) | (11.63) | (10.23) | (10.33) | (7.91) | (10.90) | (11.64) | (9.97) | (11.42) | (11.57) |
| 경력(%) | 96.51 | 102.91 | 90.43 | 91.74 | 83.79 | 68.51 | 85.65 | 96.07 | 77.43 | 90.58 | 89.52 |
| 근속(남) | 7.35 | 8.41 | 10.86 | 11.02 | 9.44 | 5.23 | 10.58 | 5.82 | 9.84 | 8.31 | 8.82 |
| | (9.61) | (10.10) | (10.48) | (9.38) | (10.65) | (6.83) | (10.94) | (8.06) | (9.86) | (9.03) | (9.83) |
| 근속(여) | 7.95 | 10.20 | 10.35 | 10.55 | 7.24 | 3.65 | 8.78 | 6.75 | 9.01 | 8.20 | 8.30 |
| | (9.65) | (10.96) | (10.30) | (9.72) | (7.98) | (5.40) | (9.15) | (8.81) | (9.14) | (8.47) | (9.25) |
| 근속(%) | 108.13 | 121.20 | 95.34 | 95.72 | 76.74 | 69.78 | 82.97 | 115.99 | 91.57 | 98.67 | 94.18 |

한국의 근속과 경력이 이처럼 짧은 데에는 남녀격차가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은 역량과 정규교육년수, 경력과 근속년수의 국가별 남녀 차이를 보여준다. 각 변수의 (%)는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 수준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남녀의 역량 격차는 거의 없으며 한국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 역량은 99.1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규교육년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의 정규교육년수가 남성보다 긴데 반하여 한국은 여성의 정규교육년수가 짧지만 이 역시도 상대 수준이 97.88%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다.[19]

반면 경력과 근속년수의 남녀격차는 한국이 가장 크다. 한국 여성의 경력년수는 평균 9.92년으로 남성보다 4.6년가량 짧고 근속년수는 1.6년가량 짧다. 상대수준은 경력이 68.5%, 근속이 69.8%수준인데 이는 비교대상 국가 평균보다 각각 21.0%P, 24.4%P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의 경력 및 근속이 남성보다 짧기는 하지만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경력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면 스페인이 짧고 남녀의 상대수준도 77.4%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보다는 9%P가량 높다. 근속년수의 상대격차는 한국에 이어 일본이 큰 편이데, 일본도 한국보다는 7%P가량 높다.

한국은 근속과 경력의 남녀격차도 크지만 남녀 모두 짧은 것 역시 문제이다. 한국 남성의 경력 수준은 비교대상 국가 평균(18.83년)의 76.9%수준이고 근속년수는 60%수준이다. 한국 여성의 경력은 비교대상 국가 평균의 58.9%, 근속년수는 44.0%수준으로 채 절반이 되지 않

19) 본문에는 생략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여성 정규교육년수가 남성보다 짧은 것은 고령층 여성의 교육년수가 고령층 남성보다 크게 짧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는다. 이처럼 근속과 경력이 짧은 주요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40대 중반 이후에 자영업과 같은 비임금 근로로의 전환이 높고 이에 더해 여성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Ⅲ-4] 비교대상 국가의 일자리특성 변수 기술통계

| |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페인 | 영국 | 총계 |
|---|---|---|---|---|---|---|---|---|---|---|---|---|
| obs | | 2,833 | 2,238 | 3,202 | 1,573 | 2,383 | 2,341 | 3,157 | 1,723 | 2,268 | 4,234 | 25,952 |
| 주당 노동시간 | | 33.67 | 36.47 | 36.11 | 37.56 | 38.94 | 46.40 | 30.97 | 32.28 | 37.62 | 34.31 | 36.11 |
| | | (11.70) | (9.82) | (8.99) | (9.84) | (14.71) | (13.31) | (12.63) | (12.84) | (10.60) | (12.56) | (12.52) |
| 정규직(%) | | 82.39 | 81.14 | 83.60 | 78.19 | 73.31 | 47.54 | 75.96 | 77.31 | 69.66 | 78.29 | 75.30 |
| 전일제(%) | | 67.45 | 80.38 | 80.79 | 78.58 | 70.29 | 89.28 | 48.84 | 62.33 | 79.63 | 64.74 | 71.14 |
| 기업 규모 | 10인 이하 | 23.98 | 32.23 | 27.87 | 38.10 | 27.96 | 37.32 | 19.49 | 26.86 | 37.83 | 20.44 | 27.87 |
| | 11-50인 | 37.34 | 36.94 | 30.30 | 27.57 | 37.54 | 29.13 | 32.42 | 39.73 | 31.82 | 30.91 | 33.15 |
| | 50-200인 | 25.79 | 19.97 | 22.67 | 19.27 | 22.38 | 18.34 | 26.76 | 20.01 | 17.72 | 23.09 | 22.11 |
| | 200인 이상 | 12.89 | 10.86 | 19.16 | 15.06 | 12.12 | 15.21 | 21.33 | 13.40 | 12.64 | 25.56 | 16.86 |

[표 Ⅲ-4]는 비교대상 국가의 일자리 특성을 보여준다. 주당 노동시간의 경우 비교국가 평균은 36.11시간이고 대부분 국가가 33~36시간 정도를 보이는데 비해 한국의 주당노동시간은 평균 46.4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길고, 두 번째로 긴 일본의 38.94시간에 비해서도 약 7.5시간이 길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는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이 높고 전일제와 시간제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30.97시간으로 가장 짧으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영국의 노동시간이 짧은 편이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노동시간이 북유럽 및 영국보다는 근소하게 길다. 한편 정규직 비율에서도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 중 현저하게 낮고, 그럼에도 전일제 비율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규직 비율은 47.54%로 비교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절반을 넘지 못한다. 평균보다 약 27.7%P가량 낮다. 그럼에도 전일제 비율은 89.28%로 대부분이 전일제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대부분 시간제인데, 한국은 비정규직 전일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비교대상 국가 중 정규직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핀란드, 프랑스로, 80%이상의 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영국(78.29%)과 이탈리아(78.19%), 노르웨이(77.31%), 네덜란드(75.96%)가 비교적 높다. 한국에 이어서는 일본(73.31%)과 스페인(69.66%)이 낮은 편이다. 전일제 고용은 한국을 제외하면 핀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남부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높은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영국은 상대적으로 전일제 고

용이 낮고 네덜란드는 전일제 비율이 48.84%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다. 즉 노동시간과 고용형 태에 있어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한국과 네덜란드인데 전자는 장시간 노동, 낮은 정규직 비율과 높은 전일제 비율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단시간, 높은 정규직과 낮은 전일제가 특징이다. 기업 규모에 있어 2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한국이 15.21%로 비교 국가 평균보다 근소하게 낮지만 상대적으로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의 비율이 37.32%로 스페인(37.83%)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50인 이상 200인 이하 중견 사업체의 비율은 18.34%로 가장 낮다.

현재까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한국은 역량과 정규교육년수 등 인적자본에서의 차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남녀 간 차이도 크지 않지만 경력과 근속년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짧고 동시에 남녀 격차도 가장 크다. 일자리 특성에 있어서는 노동시간은 가장 길고 정규직 비율은 가장 적으며, 전일제 고용이 높고 중간 규모 사업체는 적은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Ⅲ-3]은 비교대상 국가의 국가별 시간당 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1]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록 Ⅲ-1]을 보면 한국은 우선 다른 국가에 비해 조정된 R2값이 0.504로 상당히 크며, 이는 모형에 포함된 격차요인이 임금격차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3]에서 역량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영향이 크지는 않고, 국가 별 차이도 크지 않다. 이는 역량이 실제 업무적인 역량이나 비정규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임금에 크게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이 가장 크다. 한국 남성은 여성보다 시간당 임금이 32.9% 높은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일본(28.7%)에 비해서도 4.2%P가량 높은 수준이고 비교대상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15.1%P 높다. 앞서 [그림 Ⅲ-2]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의 영향은 비교국가 평균보다는 높으나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한국의 시간당 임금 증가분은 5%인데 덴마크와 네덜란드, 영국은 5.7~6.6%로 한국보다 높다. 대신 근속과 경력의 영향이 큰데 근속년수의 영향은 비교국가 중 가장 크고, 경력의 영향도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한국 임금체계에 관한 특징으로 연공서열체계를 논의할 때 연령의 영향보다는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 비교대상 국가의 시간당 임금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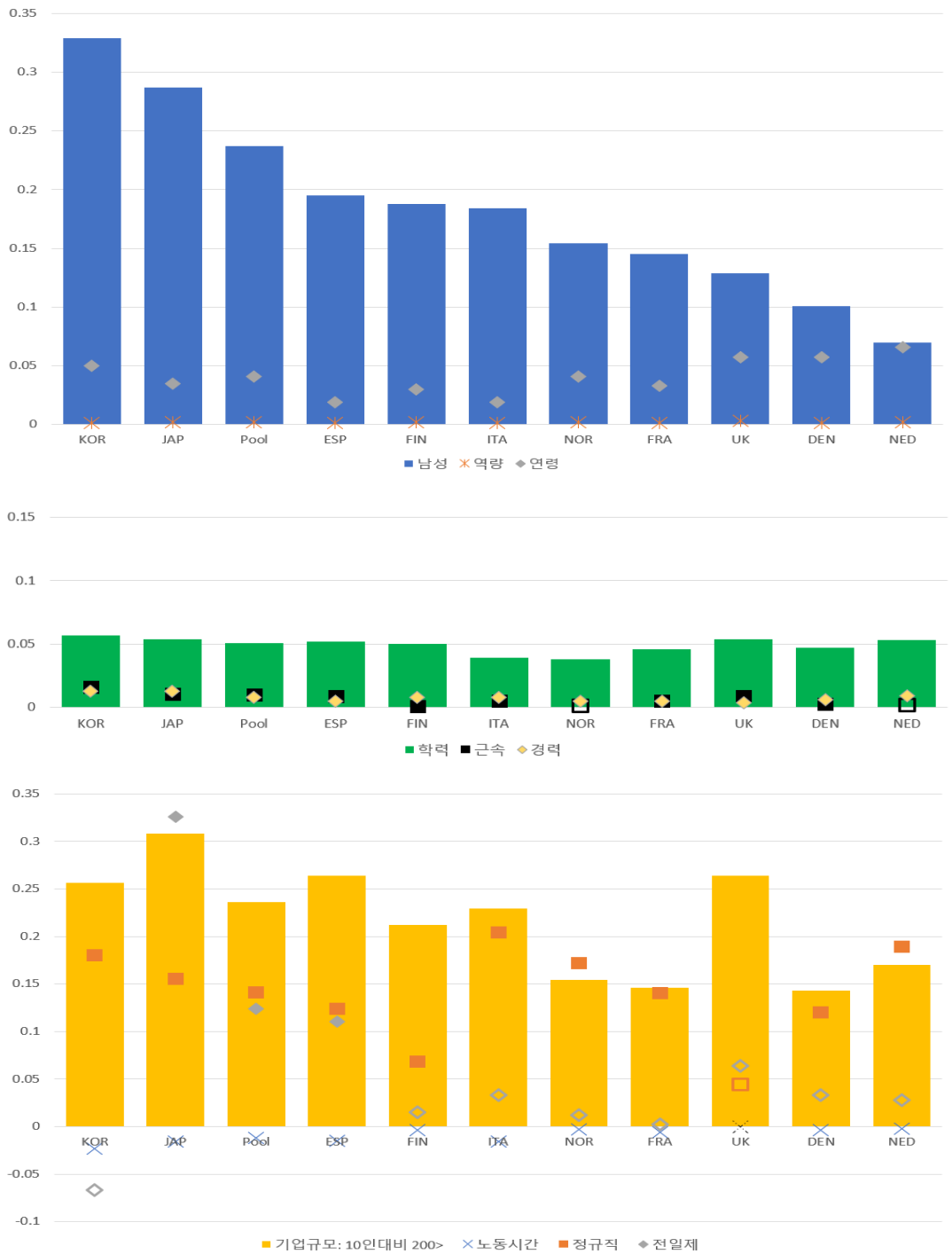


주: 국가별 시간당 임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계수(coefficient)를 정리한 것임. 색이 채워지지 않은 심볼은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1] 참조.

한편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시간이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낮지만 한국의 영향이 가장 크고, 반대로 전일제와 시간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전반적인 노동시간이 길고 전일제 고용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18%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는 크긴 하지만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차이가 더 크고, 노르웨이와 일본의 차이도 적지 않아 한국만의 특성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정규직이 전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는 정규직의 업무를 전일제가 대부분 담당하는 반면, 한국은 비정규직 전일제도 많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의 큰 차이일 것이다. 기업규모의 영향도 적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10인 미만 영세업체와 2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25.6%인데 일본(30.8%)과 영국, 스페인(26.4%)보다는 작은 편이다.

요컨대 한국의 임금 격차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 크고, 격차요인 역시 다양하다. 성별과 학력, 근속년수와 경력, 노동시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규모 등의 요인에서 비교대상 국가 보다 높은 격차 수준을 보인다. 다만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격차요인은 성별이다. 근속년수와 경력을 통제하였음에도 성별 임금 격차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크다. 근속과 경력년수의 격차도 비교국가 중 가장 큰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성별만큼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고, 무엇보다 근속과 경력 차이에는 [표 Ⅲ-3]에서 살펴보았듯 성별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확연히 크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임금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 근속과 경력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그림 Ⅲ-4]와 [그림 Ⅲ-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4]와 [그림 Ⅲ-5]는 국가별 임금 함수를 성별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이다(상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2]를 참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역량의 경우 국가별 편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역량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다. 그런데 이탈리아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경우만 역량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이탈리아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경우에만 업무 역량이 높아도 이에 따른 보상이 높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와 일본, 한국, 스페인 여성은 연령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연령 여성이어도 임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네 나라 남성의 연령 계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0.097로 가장 높고 일본이 0.074로 두 번째, 이탈리아(0.036)와 스페인(0.029) 순이다. 한국 남성의 연령이 1살 높아질 때 평균적으로 시간당 임금은 9.7%증가한다. 국가별 전체 분석에서 한국보다 연령의 계수가 높았던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을 살펴보

면 덴마크의 연령 계수는 남녀가 각각 0.057, 0.059로 거의 비슷하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남성의 계수가 각각 0.076, 0.073으로 여성의 0.060, 0.045보다 조금 더 크다. 하지만 모두 한국 남성보다는 낮다. 즉 [그림 Ⅲ-3]에서 한국의 연령계수가 비교적 높았던 것은 남성의 효과로, 성별에 따라 연령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근속년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 여성은 0.023으로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가 1년 증가할 때 시간당 임금은 2.3%가량 증가한다. 이는 비교국가 남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월등히 큰 격차이다. 근속년수의 영향이 두 번째로 큰 영국 여성의 0.012와 비교해도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둘 때의 패널티가 한국 여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패널티는 남성도 큰데, 한국 남성의 근속년수 영향은 0.013으로 한국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남녀 모두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지 못할 때의 임금 패널티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남성의 경우 40대 중후반에 첫 일자리에서 퇴직해 이전보다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 상실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림 Ⅲ-4] 비교대상 국가 남성의 시간당 임금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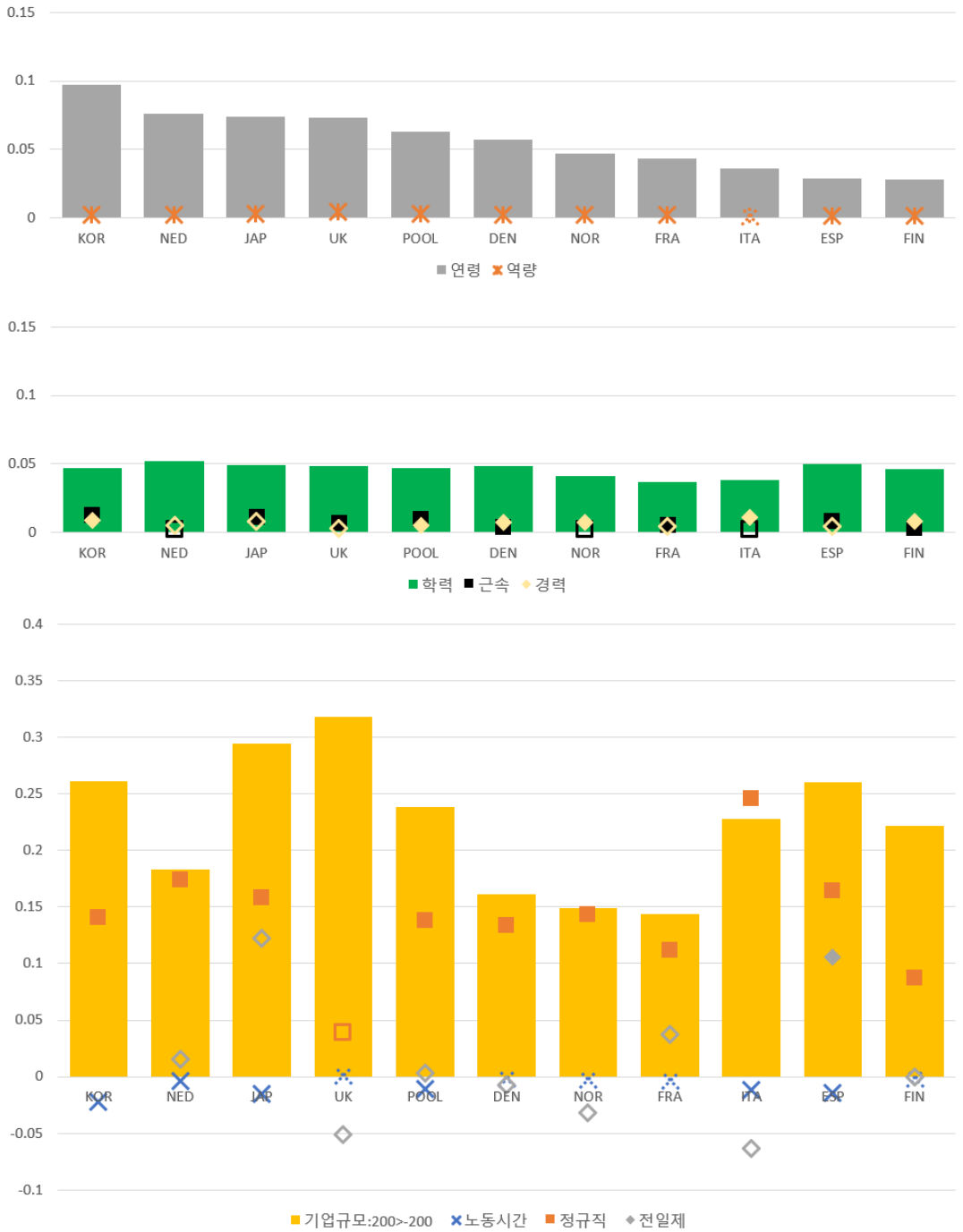


주: 국가별 시간당 임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계수(coefficient)를 정리한 것임. 색이 채워지지 않은 심볼은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2] 참조.

[그림 Ⅲ-5] 비교대상 국가 여성의 시간당 임금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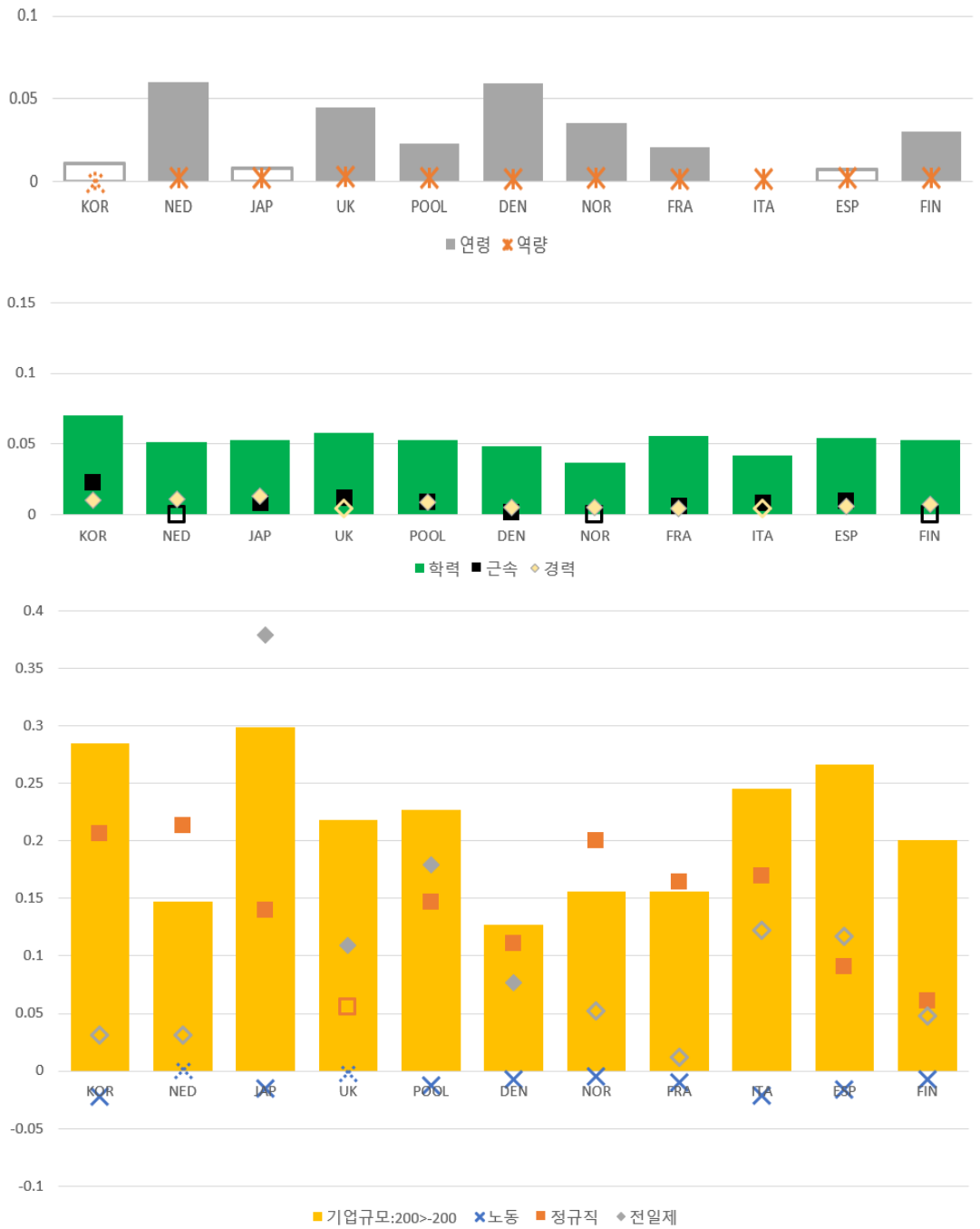


주: 국가별 시간당 임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계수(coefficient)를 정리한 것임. 색이 채워지지 않은 심볼은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2] 참조.

또한 경력년수의 영향도 한국 여성은 0.010으로 일본(0.013), 네덜란드 여성(0.011)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남성의 경우 이탈리아 남성(0.01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0.010이다. 종합적으로 생애 근로시기 중간에 일이 단절되었을 때의 임금 손실이 한국이 가장 큰데 여성은 연령이 증가해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성보다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다른 특징으로 한국 여성의 경우 학력(정규교육년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0.07로 비교국가 남녀 중 가장 큰데 이는 여성 내의 학력 격차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0]

노동시간의 영향은 남녀 모두 동일하다. 한국과 일본은 성별에 따른 노동시간의 영향에 차이가 없고 스페인과 영국도 큰 차이는 없다. 반면 핀란드와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는 노동시간이 짧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여성에게 중요한 선택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규직 여부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 여성이 0.206으로 남성의 0.141보다 크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유사한 양상이며 기업규모에 의한 격차는 일본보다는 낮고, 스페인, 영국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그림 Ⅲ-6]과 [그림 Ⅲ-7], [그림 Ⅲ-8]은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오하카-블린더 분해 결과이다(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3]을 참조). [그림 Ⅲ-6]은 남녀의 총임금 격차 중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차별에 의한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며, [그림 Ⅲ-7]은 인적자본 요인 및 노동조건 각 요인별로 남녀의 생산성에 의한 차이를, [그림 Ⅲ-8]은 각 요인 중 설명되지 않는 요인에 의한 차이(차별에 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임금분해 방법상 [그림 Ⅲ-3]([부록 Ⅲ-1])의 국가별 임금함수 추정과 [그림 Ⅲ-4], [그림 Ⅲ-5]([부록 Ⅲ-2])의 성별 분리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이다. [그림 Ⅲ-6]에서 [그림 Ⅲ-8]은 이러한 성별 분리분석의 차이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각 격차요인 별 생산성에 따른 차이와 차별에 의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임금 대비 남성임금 수준은 약 1.16으로 일본의 1.18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이 중 생산성 차이, 즉 남녀의 분포 특성에 의한 차이는 0.141로 한국의 0.028보다 월등히 큰 반면, 차별에 의한 격차, 즉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잔여 격차는 한국이 0.329, 일본이 0.287로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크고

20) 본문의 분석에서는 벗어나지만 각주3)의 설명대로 세대별 교육년수의 차이는 한국이 가장 크고 역량 격차 역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크며, 남성보다 여성의 격차가 더 크다. 이는 과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국 여성의 경우 역량과 교육수준이 비교대상 국가 중 세대를 거치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신영민(2022)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청년세대의 성별 역량 격차가 가장 적으며 여성의 이공계 진학률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여성의 역량과 교육수준은 남성보다 빠르게 높아졌고 현재는 남성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지만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은 현재 청년세대의 불공정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OLS 추정 결과와 동일하다. 이 중 먼저 역량을 살펴보면, 어느 국가든 남성의 역량이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대체로 0.004(프랑스)에서 0.024(영국)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한국은 0.006으로 비교적 남녀의 역량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역량의 차별계수(D)는 0.529로 비교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유의하다. 즉 다른 나라의 경우 역량으로 인한 임금 격차는 남성의 역량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차이도 있지만 동일한 역량을 가진 남녀를 비교할 때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Ⅲ-6] 국가별 남녀 임금격차 분해 결과(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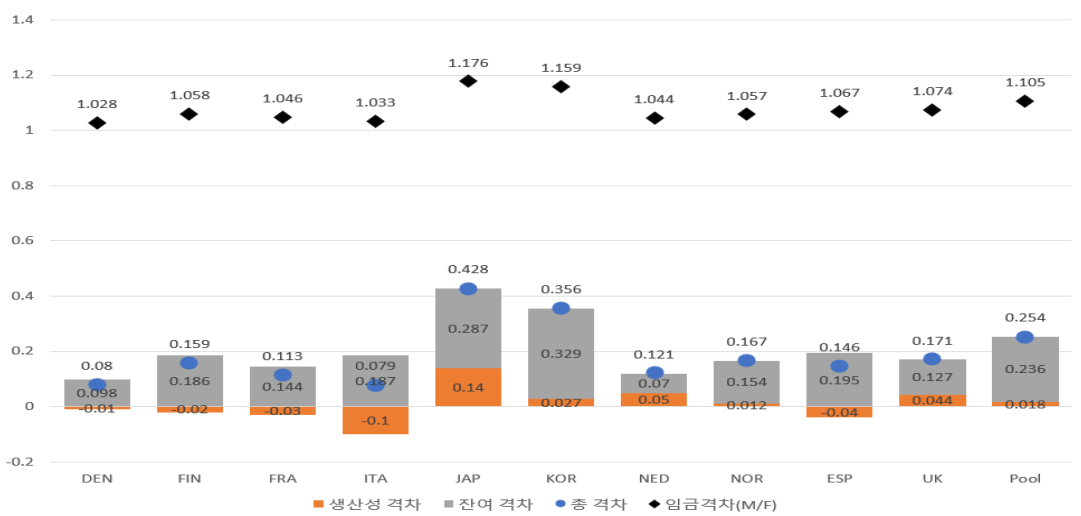


주: 국가별 임금분해에 대한 계수(coefficient)를 정리한 것임.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3] 참조.

이는 연령에서도 유사한데 남성의 연령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는 0.063인 반면, 동일한 연령 임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정도는 3.397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크고, 이는 일본의 2.728보다도 현격하게 큰 수치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이탈리아가 1.468, 영국이 1.114, 프랑스가 0.903으로 연령의 차별계수가 크고 그 외 국가에서는 연령의 차별계수가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한 원인은 출산과 육아 이후,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시기의 연령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대 중후반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에는 남녀의 임금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만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기에 이전 일자리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특히나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21)]

그 외에 다른 요인인 학력과 근속년수, 경력,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에 있어서는 남성의 값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대체로 유의한 반면 설명되지 않는 차이는 많지 않다. 오히려 동일 학력, 동일 근속년수, 전일제일 때 여성이 갖는 프리미엄도 존재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임금 격차가 생산성 차이로 설명되고, 차별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영국 정도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일정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과 유사한 경력단절 문제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한국보다는 크지 않다.

[그림 Ⅲ-7] 국가별 남녀임금 분해의 요인별 생산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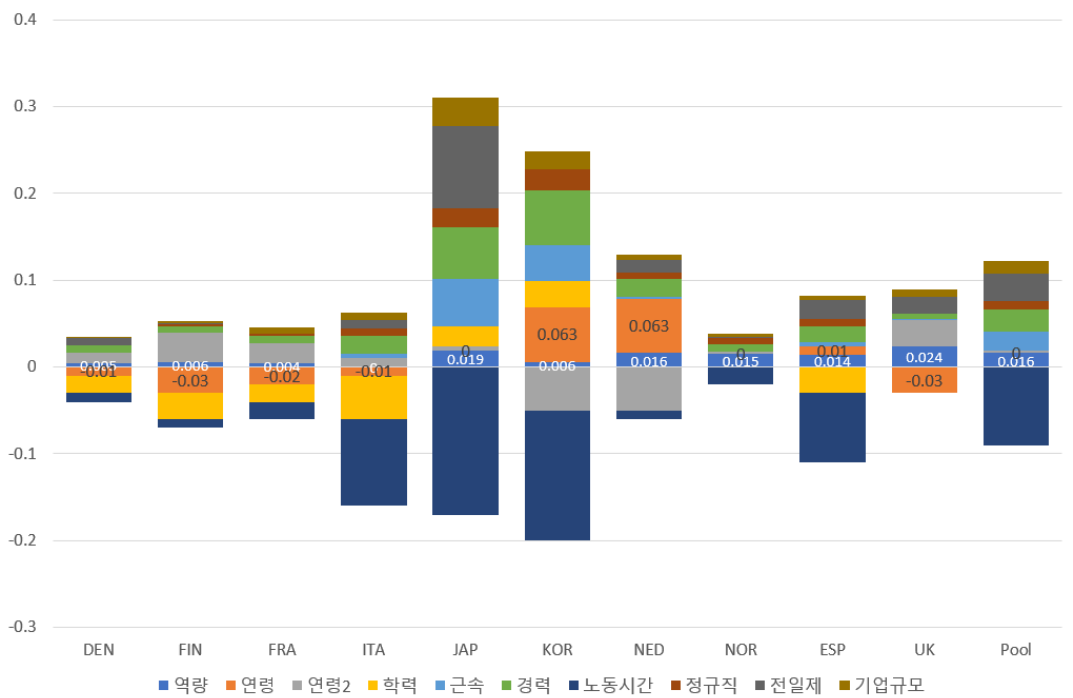


주: 국가별 임금분해에 대한 계수(coefficient)를 정리한 것임.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3] 참조.

21) 물론 남성의 경우도 40대 중후반에 첫 직장에서 퇴직하고 이전보다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할 때의 패널티가 크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 증가분이 낮아질 위험이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그림 Ⅲ-8] 국가별 남녀임금 분해의 요인별 설명되지 않는 차이(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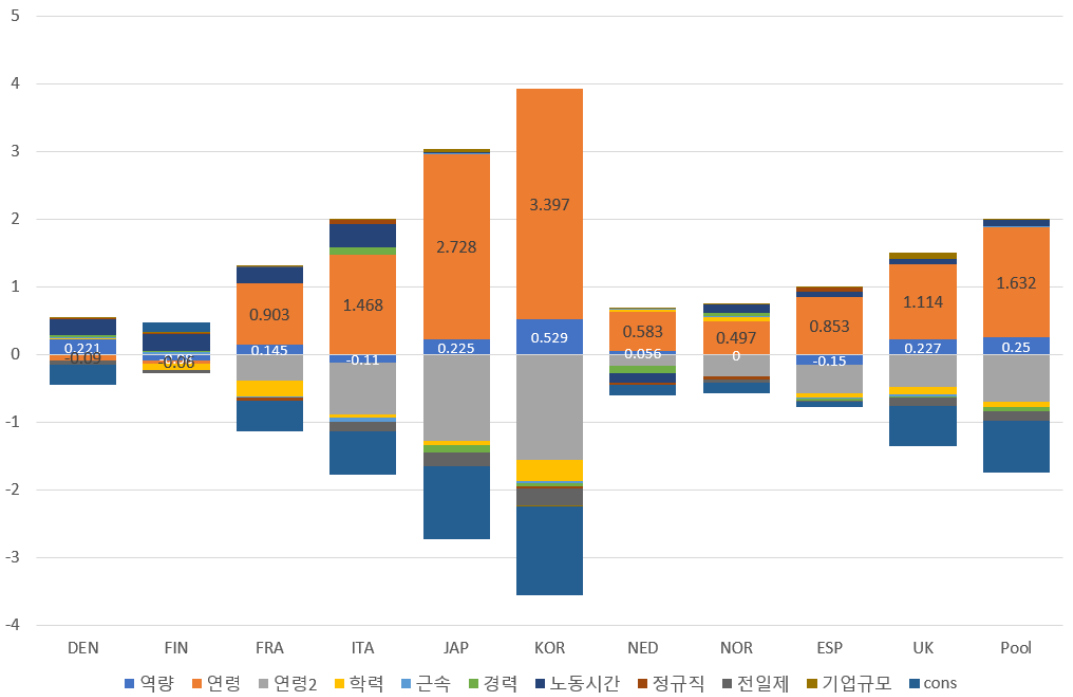


주: 국가별 임금분해에 대한 계수(coefficient)를 정리한 것임.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Ⅲ-3] 참조.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자의 정규교육년수와 역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유독 짧은 근속년수와 경력,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전일제 비율이 특징적이다. 특히 근속년수와 경력의 경우 전체 평균도 짧은 동시에 남녀의 격차도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이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비교 대상 10개 국가 중 가장 크고, 남녀의 인적자본 차이보다 설명되지 않는 차이, 즉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크다. 한국 여성은 남성과 달리 연령이 높아져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으며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따라서 재취업시의 임금 패널티가 가장 크고, 이는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임금분해 결과 비교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남녀의 역량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즉 동일한 역량의 남녀를 비교할 때 남성의 임금이 더 높은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별이 가장 크다.

다른 임금 차별 요인들, 특히 정규직 여부도 한국에서는 중요한 임금차별 요인이며 전반적인 장시간 노동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성별 격차의 양상과 원인은 다른 나라보다 그 차이가 더 크고, 출산과 돌봄에도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중요하다. 이 점

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3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격차 추세와 생애주기에 따른 일자리 이동을 분석한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 곡선이 M자형으로 남성과 다르다는 점은 기존에도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다만 아래에서는 개인의 일자리 이동을 추적하고 유형화하여 결혼과 출산, 육아에 따른 패널티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3. 성별 임금격차의 추세와 원인

### 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추세

앞 절의 분석은 한국의 임금결정 특성을 밝히는데 유용하였지만 특정 시점, 정확히는 2010년대 초반에 국한된 분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어왔는지, 아니면 감소하였는지 추세적 경향을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3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임금격차 추세를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은 국내의 조사자료 중 가장 긴 시점에 걸쳐 조사되었기에 개인의 시간에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데 적합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논의는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혹은 재진입한 사람에 한정한 분석인데, 3절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사람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이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이하 GBTS)을 적용한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여 살펴본다. GBTS는 노동시장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의 양상, 즉 경로를 살펴보는 분석 방법으로 종단자료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Johns and Nagin 2001).[22]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여성, 빠르게 복귀하여 출산 이전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여성, 느리게 복귀하여 이전의 지위와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는 여성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생애 평균 소득과 주된 종사상의 지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Ⅲ-9]는 한국 노동패널의 각연도별로 임금분해를 실시한 결과이며, 임금분해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2절과 거의 동일하다. 노동패널에서는 알 수 없는 역량을 제외한 연령(및 연령제곱), 정규교육년수, 경력년수, 노동시간, 정규직 여부, 전일제 여부, 기업규모 변수가 포함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임금 격차 추세는 앞서 [그림 Ⅲ-2]와 거의 동

22) GBTS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Nagin 1999; Johns and Nagin 2001을, 이를 적용한 국내의 주요 연구로는 김혜연 2010; 박미희·홍백의 2014; 윤미례 2022 등을 참조.

일하며 2010~2012년의 임금 격차는 2절의 PIAAC 분석 결과와도 거의 비슷하다. PIAAC은 2011~2015년 사이에 조사되었는데 [그림 Ⅲ-6]의 분석 결과 남녀의 차별에 의한 격차는 약 32.9%로 노동패널의 2011~2015년 기간의 37%보다는 근소하게 적은 수준이다. [그림 Ⅲ-2]에서 2010년 한국의 여성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약 40%가량이 적은데 [그림 Ⅲ-9]의 노동패널 분석 결과에서도 2010년 차별에 의한 격차는 37.5%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Ⅲ-2]에서 지난 10년간 임금 격차는 39.61%P에서 31.06%P로 줄어 약 10%P가량이 감소했다. [그림 Ⅲ-9]에서도 2010년 38%P였던 차별에 의한 격차는 2020년 29.7%P로 약 10%P정도 감소했다. 특히 두 자료 모두 2016년 이후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밝혔듯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Ⅲ-10]과 [그림 Ⅲ-11]은 각 연도별 임금 분해 분석 결과의 각 요소별 생산성 격차와 설명되지 않는 격차를 도식화 한 결과이다. 앞서 설명하였듯 생산성 격차는 남녀의 인적자본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격차를, 설명되지 않는 격차, 즉 차별에 의한 격차는 동일한 인적자본 요소일 때의 격차를 의미한다. 생산성 격차를 먼저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0년대 말까지 생산성 격차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1998년 11.7%이던 생산성 격차는 2009년 16.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전체 임금 격차의 11.1%가 남녀의 인적자본 수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소 폭은 크지 않아, 남녀의 인적자본 수준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 차이는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9] 연도별 남녀 임금격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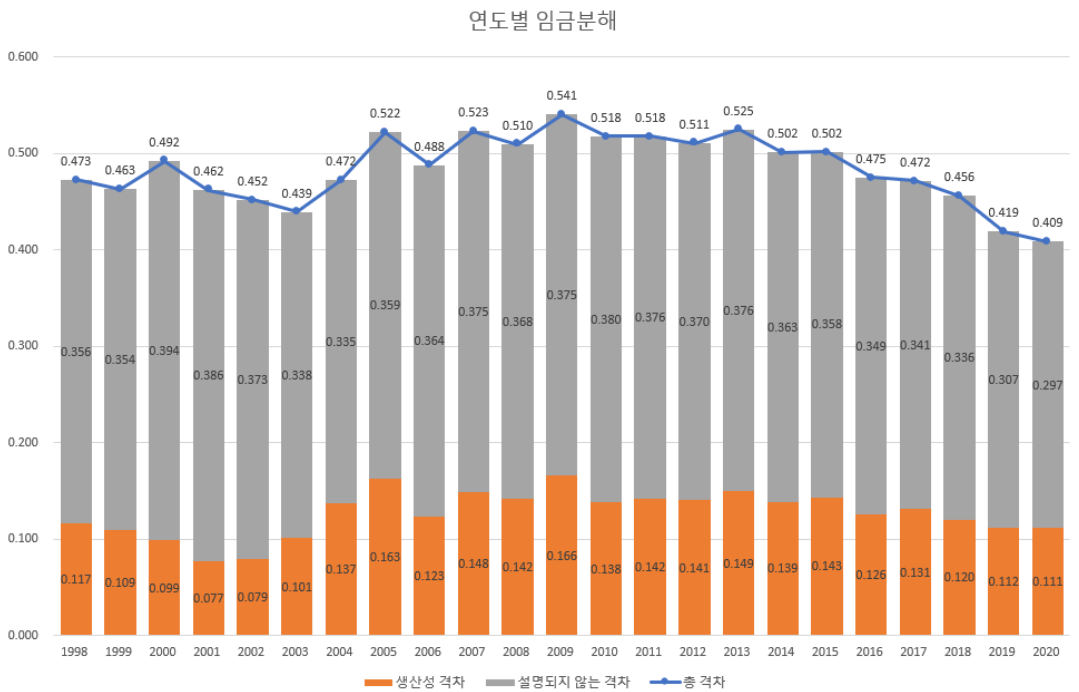


자료: 한국 노동패널 1-23차년도.

[그림 Ⅲ-10]을 참조하면 이러한 생산성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연령이다. 그런데 연령의 생산성 계수는 2010년대에 들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남성의 평균 연령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적자본 요소의 차이가 2010년대에 들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와 달리 출산이나 육아를 마친 이후 노동시장에 여성이 복귀하거나,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의 비율이 늘어 남녀의 평균 연령 격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결혼 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취업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여성의 자기계발이나 인적자본 활용 등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연령 계수가 크게 감소한 시점이 외환위기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위기로 인해 배우자의 수입만으로는 가구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복귀하는 생계형 재취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여성의 재취업 유형을 분류한 한 연구에 의하면 생계형 재취업일수록 40대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며, 가사와 시장노동을 병행하고 임금수준과 종사상 지위가 낮은 동시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기간도 길다(김혜연 2010).

[그림 Ⅲ-10] 연도별 남녀 임금격차 요인의 생산성 격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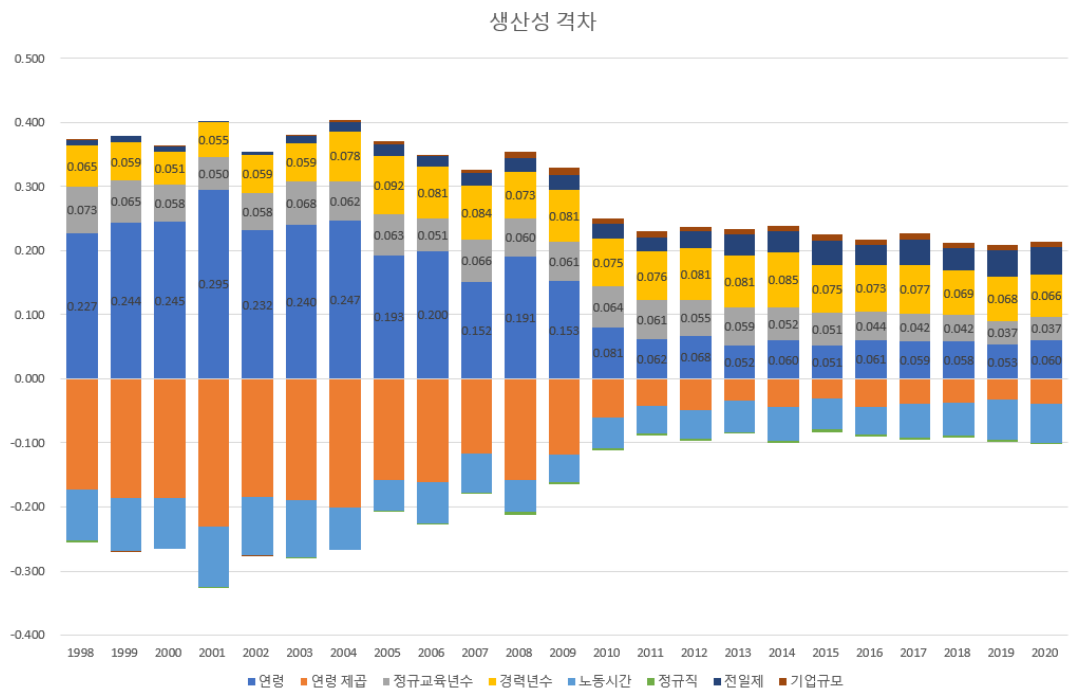


자료: 한국 노동패널 1-23차년도.

연령에 이어서는 노동시간과 정규교육년수와 경력년수, 전일제 규모 등이 생산성 격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당노동시간의 경우 생산성 격차에서 음의 계수값을 보이는데 이는 남녀의 노동시간 차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길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단위로 분석하면 여성이 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정규교육년수로 인한 차이는 2010년대 이전까지 평균 6~7%가량의 영향을 미쳤는데 2020년에는 3.7%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수준의 성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성이 대학진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졌고, 현재는 남성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다. 때문에 정규교육년수의 남녀 차이가 크게 줄어 이로 인한 생산성 차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Ⅲ-11] 연도별 남녀 임금격차 요인의 설명되지 않는 격차(차별에 의한 격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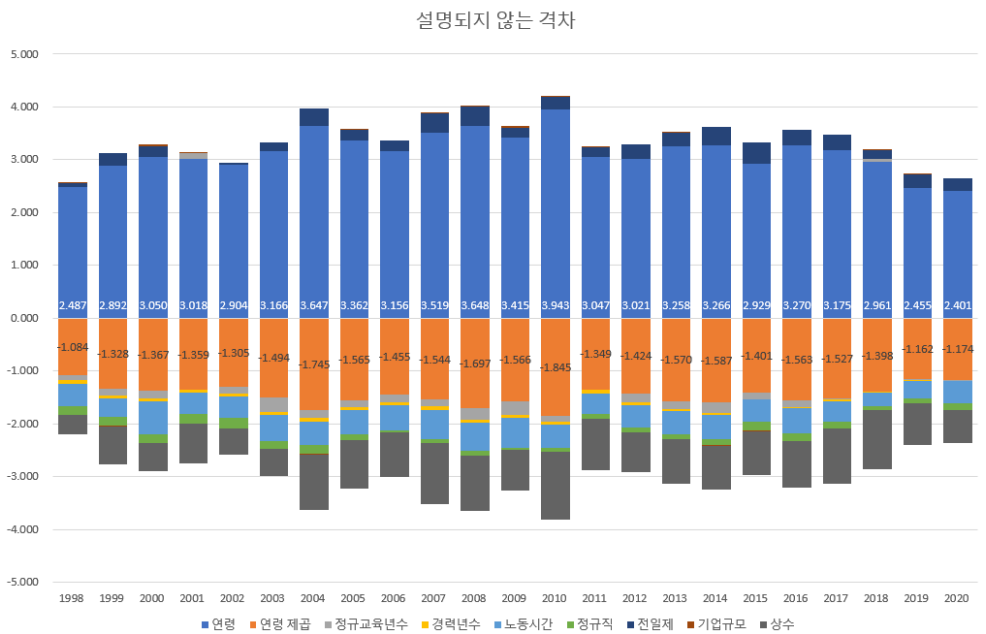


자료: 한국 노동패널 1-23차년도.

반면 경력년수로 인한 차이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1998년 0.065인 경력년수의 생산성 차이는 2020년에도 6.6%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재취업 여성이 늘어났음에도 경력단절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일제의 계수는 최근 들어 커졌는데, 이는 남성-전일제, 여성-시간제의 성별 노동분업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역시도 경력단절 문제가 지난 20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11]은 임금분해의 각 요인에서 설명되지 않는 격차, 즉 차별에 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남녀가 동일한 인적자본 수준일 때 발생하는 차이다. 생산성 차이와 비슷하게 연령이 차지하는 영향이 크지만 연령 외에 대부분의 다른 요인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요인 간 차이도 적다. 또한 정규교육년수와 정규직, 경력년수 모두 작지만 음의 계수값을 갖는데 이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때 남녀가 동일한 교육년수라면, 혹은 남녀 모두 정규직이거나 경력년수가 같다면 여성의 임금이 근소하게 더 높음을 시사한다.[23] 연령으로 인한 차별, 즉 남녀가 동일한 연령이 남성의 평균 임금이 더 높은 것은 지난 20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3) 그러나 앞서 2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정규교육년수를 제외한 정규직 여부와 경력년수의 경우 남성의 평균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는 경력이 긴 일부 여성의 프리미엄으로 제한적인 비중만을 차지할 것이다.

1998년 2.487인 남녀의 연령 차별 계수는 2020년 2.401로 큰 차이가 없으며 199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령 차별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0년대에 들어서 다시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같은 연령대, 가령 40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40대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40대 여성보다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노동패널 1-23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 추세는 2010년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16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효과로 판단된다. 둘째, 남녀의 인적자본 수준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에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재취업 여성의 비중이 늘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취업 여성이 많아진 원인은 대체로 부족한 가구소득을 벌충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경력과 전일제의 남녀 생산성 격차가 유지되거나 커진 점, 연령의 차별 계수가 유지된 것은 재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지난 20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2)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

현재까지의 논의는 ① 출산과 육아를 거치든, 그렇지 않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여성과 ②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 재취업한 여성에 한정된 논의이다. 이를 통해 재취업 여성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고, 이로인해 남녀의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③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는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의 분석 결과와 국내의 주요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대 후반까지 남녀의 인적자본 수준이나 고용상 지위, 임금은 큰 차이가 없으나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사건의 발생으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도 큰 손해이지만, 양질의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저활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다(최민정 2015; 고영우 2016).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총제적으로 조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집단중심추세분석(GBTS)을 적용한 연구 결과가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변화를 파악하는데에는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 주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는 지속에 따른 경로(trajectory)가 아닌 전환(transition)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 방법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분석할 때 출산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에는 적합하지만 이러한 사건 이후 다시 다른 상태로 변화한다던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는데에는 적합하지 않다(Malo 2003). 다른

말로 하면, 사건사 분석은 전환을 설명하는데에는 유용하지만 경로를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김혜연 2010). 따라서 사건으로 인한 경로를 분석하는데 있어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analysis, OMA)과 GBTS가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전자의 경우 유형화 된 경로에 따라 집단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4] 따라서 최근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설명하는데에는 GBTS가 범용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와 같이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유형이라든가, 청년의 취업과정과 노동시장 이행 유형 등이 GBTS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연구주제이다.

Hynes and Clarkberg(2005)는 GBTS를 활용하여 1979년 출생 미국 여성이 두 번의 출산기간 동안 거치는 고용경로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두 자녀를 가진 여성이 재산 이후 거치는 고용경로는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여성의 고용경로는 ⓐ 지속적 고용 유지(31.9%) ⓑ 지속적 퇴장(31.1%) ⓒ 고용지위의 하락(7.0%) ⓓ 출산과 동시에 퇴장(8.4%) ⓔ 출산 후 복귀(9.6%) ⓕ 낮은 간헐적 고용 지속(12.1%)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 출산 후 복귀는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한 후 14개월가량이 지나서야 이전의 고용지위 이상을 회복하는 반면 ⓕ 낮은 간헐적 고용 지속 유형은 출산 이전에도 노동시장 지위가 낮았고, 출산 이후에도 고용 지위가 개선되지 못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tewart(2009)는 OMA를 활용하여 1991-2001년 기간에 마지막 자녀를 출산한 영국 한부모 가정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① 전일제 지속(자녀 연령 3-5세 시기에도 안정적 고용 유지) ② 늦지 않은 복귀(자녀가 3-5세이거나 6-5세인 시기에 안정적인 전일제 고용으로 복귀) ③ 늦은 복귀(자녀가 7세 이상 되어서야 전일제 고용 복귀) ④ 육아-시간제 병행(출산 이후 주 16시간 이하 근로) ⑤ 일 지향(경력단절이 있으나 가장 열심히 일함) ⑥ 진입-퇴장 반복 ⑦ 영구 이탈(출산 이전에는 전일제로 근무했으나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함) ⑧ 간헐적 재가 근무 ⑨ 두문불출형(생애 전체에 노동시장 이력이 없음)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이 중 ⑨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Stewart 2009). 노동시장에 진입한 적이 없는 ⑨번을 제외하면 ② 늦지 않은 복귀와 ③ 늦은 복귀가 각각 분석 대상의 15.1%, 1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근무시간도 불규칙적이었다. 대표적인 두 해외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집단의 설정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않는 여성은 전체의 30% 정도이고 출산 이후 고용지위가 하락하거나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도 30%정도를 차지, 출산과 육아에도

24) OMA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Stewart(2009)를 참조.

불구하고 안정적 고용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25~30%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25)]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김혜연(2010)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45-65세 여성의 고용상태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경로는 크게 5가지 집단으로 분류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자녀의 학령기가 시작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양육 후 노동시장 진입형'(8.8%), 출산 당시 및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인'가사노동 지속형'(49.0%),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가사노동과 자영업, 임시근로를 병행하는 '가사-노동시장 병행형'(23.2%),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되 임금 근로 형태로 일하지만 10년 정도 지나서는 다시 퇴장하는 '진입 후 재퇴장형'(10.4%), 출산 직후부터 빠르게 재진입해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조기 노동시장 진입형' (6.7%)으로 구분된다. 마지막 집단은 주로 전문직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으로 전체 여성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다. 이를 통해 출산 이후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사노동 지속형이 전체 여성의 절반에 가까우며 불안정 노동으로 재취업하는 여성이 전체의 30%를 넘고,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지위를 유지하는 여성은 전체의 15%가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민현주(2012)는 노동패널 1차-10차 조사의 10년간의 자료로 1965-70년 코호트 여성과 1971-79년 코호트 여성의 출산 10개월 전부터 출산 이후 48개월까지 기간의 고용상태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지속이탈형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51.8%를 차지, 첫 출산 8개월 전부터 출산 후 48개월까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있는 유형이다. 이는 김혜연(2010)의 '가사노동 지속형'과 유사하며, 전체에서의 비중도 거의 절반으로 비슷하다. 두 번째는 '출산이탈형'으로 이들은 임신시점을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이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로 전체의 13.2%를 차지한다. 세 번째는'후기이탈형'으로 출산 이후 10개월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다가 이탈하는 경우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네 번째는 '출산 후 진입형'으로 출산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지속참여형'은 출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유형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한다.

민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지위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경제활동의 유지/이탈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민현주(2012), 김혜연(2010)의 연구는 모두 애초에 취업하지 않은 여성을 포함한 분석인데 반해 윤미례(2022)는 출산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만을 한

25) Hynes and Clarkberg(2005)에서 안정적 전일제 고용 유지와 출산 후 복귀 유형은 약 40% 정도인데, Stewart(2009)의 연구에서는 24%정도에 그친다. 이는 분석 대상 국가도 다르지만 후자의 경우 한부모 가정 여성의 소득수준과 고용상지위가 출산 이전부터 열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하여 분석하고, 김혜연(2010)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를 관심을 두면서 분석 범위를 노동패널 1-17차로 넓힌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미례(2022) 역시 GBTS를 적용해 출산 전 2년부터 출산 후 7년까지 약 10년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만 출산 이전부터 노동시장에서 활동한 여성만을 한정하였기에 민현주(2012), 김혜연(2010)에서 정의된 지속이탈형(혹은 가사노동 지속형)은 논의되지 않았다. 즉, 취업여성으로 한정하면 5가지 경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형(15.2%) ② 경력단절 후 복귀(11.0%) ③ 경력단절(37.3%) ④ 지연된 경력단절(5.9%) ⑤ 상용직 유지(30.6%) 이다([그림 Ⅲ-12] 참조). 이 중 ⑤ 상용직 유지형은 출산과 육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유형으로, 미취업 여성까지 고려하면 전체 여성의 15%가량을 차지하며 대졸 이상 학력이 가장 많고, 본인의 출산 전·후 임금도 5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높다. ③ 경력단절은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경우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출산 이전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던 여성을 고려하면 약 18.7%가 이에 해당하며, 5가지 유형 중 가장 많다. ② 경력단절 후 복귀형은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할 즈음부터 노동시장에 천천히 재진입하는 경우로 비교적 출산 이전의 노동시장 지위로 복귀하는데, 비경제 활동 여성까지 고려하면 전체의 6%가량으로 많지 않다. ④ 지연된 경력단절과 ①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형은 출산으로 인해 고용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유형으로 전체 여성의 10%가량을 차지한다.

[그림 Ⅲ-12] 한국 여성의 출산 전후 노동시장 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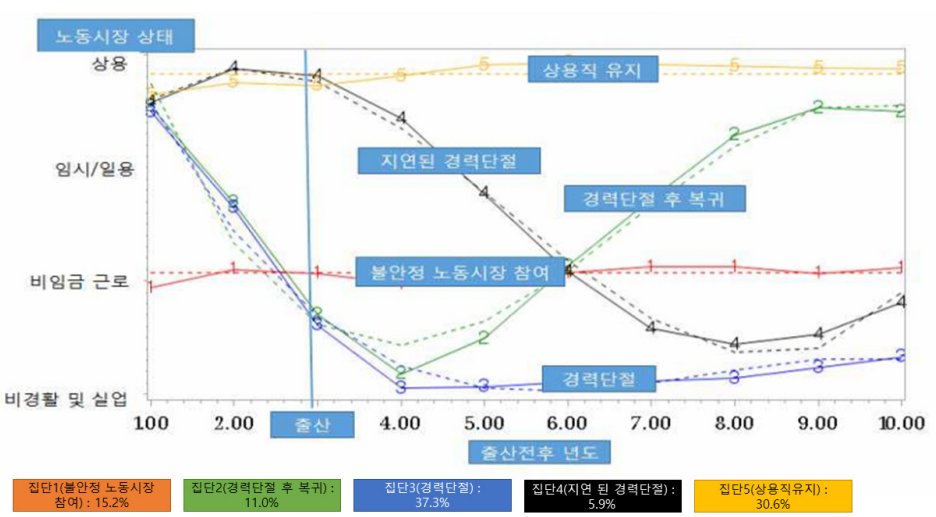


자료: 윤미례 2022, 30.

GBTS를 적용한 국내의 연구를 검토하면 분석자료와 출생시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은 5~6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처음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전체의 절반 정도에 달하며,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두 번째로 많아 출산 전 취업 여성의 30%, 전체 여성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약 35%의 여성만이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데 이 중 출산과 육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고용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13~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20%는 출산 후 불안정 노동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출산 이전의 고용 지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를 앞서 살펴본 해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비교하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출산 전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이 해외에 비해 높다. 거의 절반가량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출산 후 완전히 퇴장하는 여성 비율도 전체의 15% 정도인데 이는 영국 및 미국 여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어림잡아 10%P가량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다소 감소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해외보다 높을 것이다. 이들은 생애시기 소득도 불안정하고, 가구주 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근로시기 노동 이력이 없어 노후 소득 역시 취약한 문제에 직면한다(이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논의한다). 둘째, 안정적인 고용 지위를 유지하는 여성 비율은 절반 수준이다. 국내의 연구에서 안정적 고용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15%내외인데, 영국과 미국은 약 25~30%로 한국보다 상대 비율이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은 해외에 비해 단순하다(민현주 2012). 해외의 유형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출산·가사와 유급 노동을 반복하거나 출산 후 시간제로 전환하는 유형, 집에서 유급노동을 하는 유형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해외에 비해 극히 미비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듯 전일제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으로 고용 형태가 구성되어 있어 일자리가 출산과 가사, 유급노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 들어 선택적 시간제 확대로 이전보다는 여성의 선택권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선택적 시간제 비율은 낮으며,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더욱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 4. 정책개선 방향

### 1) 기존 경력단절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표 Ⅲ-5]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

| 구분 | | 내용 | 비고 |
|---|---|---|---|
| 취업지원 | 직업상담 | 경력단절여성/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
| | 직업교육훈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 159개 새일 센터 운영 |
| | 취업 후 사후관리 | 고용유지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지원 | |
| | 취·창업 연계 |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 |
| | 경력단절예방지원 | 경력단절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 |
| 선택적 시간제 | 신규창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안정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 |
| | 시간선택제 전환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전환장려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비용 등을 지원 | |
| | 근로조건 개선 | 기간제·시간제 일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상승분의 일정 한도를 지원 | |
| 돌봄지원 | 모성보호 육아지원 | 출산 전후,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 지원 | |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
|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하는 서비스 |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대상 출산급여 지원 | |
| | 직장어린이집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 |
| |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설치 |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공공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 |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새일센터 홈페이지, 최민정(2015), 황수경(2015)등을 참조로 작성.

여성의 경력단절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많은 연구와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 이를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대안을 살펴보자. [표 Ⅲ-5]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이다. 주요 정책은 크게 (1)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사업 (2) 선택적 시간제 확대를 위한 정책 (3) 출산·육아 여성에 대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이 중 (1)은 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수행된다.

(1)새일센터를 통해 취·창업한 여성은 2017년 이후 연간 평균 17만 명 이상이고, 2021년

기준 약 18만 명의 여성이 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취·창업한 것으로 보고된다(새일센터 홈페이지). 그런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에 의하면 새일센터를 이용한 취업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66~69%수준으로 낮다. 4대보험 미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고, 평균 고용 유지 기간도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40%에 달한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도 전체 취업 여성의 70%수준이어서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큰 과제이다. 재취업 여성의 취업 일자리 대부분은 미용, 숙박, 음식점, 사무, 회계 관련 산업의 비숙련직인데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기보다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출산 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 매칭하는 것이 필요하다(최민정 2015).[26] 요컨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사업은 구인·구직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을지 몰라도 질적인 내실을 기해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2)선택적 시간제의 경우 기업에서 신규채용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신규형 일자리와 기존 전일제 근무자가 출산, 보육, 퇴직, 간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의 두 가지가 크게 운영된다. 신규형 일자리의 경우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낮은 단기계약근로자 비율이 많고 월평균 임금도 높지 않은 저숙련 직무가 대다수이다. 선택적 시간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고용율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장려, 추진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저임금·단시간 근로를 양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선택적 시간제의 도입 취지는 단시간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근로 옵션을 제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유인을 제공하고,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양질의 시간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김유휘·이승윤 2014; 최민정 2015).

앞서 2절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시간제 비중은 네덜란드에서 높다. 실제로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활성화되고 모범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하면 전일제와 시간제의 시간당 임금은 거의 차이가 없고, 근로형태와 사회보험 가입에도 불이익이 적다(전병유 2011). 네덜란드는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 비중이 낮고 자발적 시간제의 비중 역시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주변화된 일자리가 아니라

26) 현재 새일센터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사무·회계·관리 직종의 프로그램이 20개로 가장 많고, 최근의 산업수요를 고려한 전기·전자 프로그램이 18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10개 등 특정 직종과 산업에 집중되어있거나 제조·생산 분야의 경우 고숙련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전국 159개 세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약 80개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 2~3개월 내 80시간 정도의 교육이수로 그치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배양과 직업훈련에 충실한지 의문이다. 기존의 경력을 이어가려는 여성과 새로운 경력을 만들려는 여성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구성과 규모도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와 출산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Van Oorschot 2004; Yerks and Visser 2006).

시간제 근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간제 전환에 노동자의 개인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시간과 시간제 기간을 노동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심각한 사업상의 근거가 없을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김유휘·이승윤 2014). 반면 한국은 육아, 돌봄, 건강과 같이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야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간 또한 제한되어 있어 선택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둘째, 네덜란드와 독일의 시간제 정책은 시간제 선택을 권리로서 명문화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자 간의 동등 처우를 명시하여 임금, 사회보장, 휴가 및 휴직이 시간에 비례해 제공된다(전병유 2011; Yerks and Visser 2006). 한국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이 12개월로 되어있어 이를 악용한 쪼개기 고용계약이 이미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대상이 대체로 고용주로, 선택적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별도의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시간제를 채택해야 할 유인이 없으면 이러한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3)돌봄지원 정책의 경우 출산 전후의 급여 지원, 인력 서비스 제공, 돌봄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3-5세 유아 돌봄시설의 보급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돌봄정책의 경우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의 집행은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지 않다. 부처별 돌봄 사업 간 연계 강화가 강조되고는 있으나 정책 간 연계가 미약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실적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8.5%(2016년)→12.8%(2017년)→16.3%(2018년)→19.6%(2019년)→22.7%(2020년)로 늘고 있다(통계청 2021). 이는 2017년 이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고, 특히 한국의 기업문화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16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참조하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본다는 응답이 80%로, 여전히 보수적인 기업문화가 육아휴직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정책에 더해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남성육

아휴직할당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대신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윤흥식 2006; 남현주 2020). 이를 처음 도입한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인데 두 국가에서 모두 제도 도입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허민숙 2018).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의 경우 2019년 이후 10일로 주어지고는 있으나 배우자의 보조와 돌봄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아내의 산후조리를 돕고 아빠됨을 경험하기 위해 최소 한달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최새은 외 2019). 이를 반영하여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022.5.30.)이 발의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별개로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존재하는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1회 사용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긴급돌봄 욕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긴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이 필요 없게끔 제도를 변경하고 1회 사용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 2) 선택적 시간제 확대를 위한 복지·조세개혁

앞서 시간제 노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간략히 논하였는데, 선택적 시간제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을 높이고 경력단절기간을 줄이려면 조세와 복지개혁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하는 과정에서 시간제노동자의 한계유효세율을 전일제노동자보다 낮게 매겨 시간제 노동을 유도하였다(Bosch and Klaauw, 2009). 또한 네덜란드의 시간제 확대를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한 루버스 3기 내각(1989~1994)에서 정규직과 임시·시간제 고용 간 차등을 두던 최저임금과 최저휴가수당에 대한 노동시간 기준을 폐지함으로서 시간제 고용을 확대시켰다. 이는 당시 보험급여 수급 범위가 노동시간에 연동되어 전일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복지지출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을 줄이고,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해 주당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법정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치였다(여지영 2002). 노동시간과 임금, 제반 노동조건에서 전일제와 시간제의 차등을 전면 폐지하거나, 시간제 근무가 장점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복지수급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1985년 및 1987년의 연금개혁, 실업보험개혁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가족 단위로 지급되던 연금 권리를 개인 단위로 전환하고 배우자 간

동등하게 50%씩 연금을 수급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이는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적 보험료 지급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실업보험개혁 당시 수급요건의 가계부양자 항목을 폐지하고, 양육기간을 취업기록으로 인정하여 여성의 실업보험급여 이용률을 증가시켰다. 출산휴가에 있어서는 부부 간 양도가 불가능한 개인적 권리로 규정하여 남성의 사용을 유도하면서 출산휴가의 산정 단위를 일이 아닌 시간으로 나누어 탄력적인 출산·양육휴가 사용을 유도하였다(Sainsbury 1993; O'reily et al 2002). 이러한 네덜란드의 사례는 단순히 시간제 도입이 근무형태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복지-재정의 주요 정책이 맞물려 같이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임을 시사하며, 노동시장의 근본 형태를 바꾸는 일임을 보여준다.

최근 주52시간제 손질이 도마에 오르며 다시금 장시간 노동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전일제의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도입 실험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일제 고용을 전제로 한 개혁방안이다.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듯 한국의 전일제 고용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유례없이 높고, 이는 남성 가구주의 생계부양 모델을 전제로 한 사회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시간제 활성화는 전일제 중심의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3) 고용보증수표제 도입[27)]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의 제도화는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18~22년)』에도 명시된 정책 방향이다. 이는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의 유급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이 전담하는 무급돌봄노동을 유급화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고용노동부 2018). 이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사근로자법에서는 가사서비스의 범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가사서비스의 제공,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가사노동자 고용과 가구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령상에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러한 중개형태가 또 다른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사노동의 제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프랑스의 고용보증수표제(Chèque emploi

27) 이 내용은 황덕순 외(2012), 김현경 외(2019)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service universal, CSEU)도 참조해볼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서비스 부문 고용 증가와 고용 공식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프랑스는 1980년 이후 보편 서비스가 아닌 시장화 방식을 통해 서비스가 확장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시장화된 가사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 고용의 비공식화, 노동자 조건 악화, 서비스 제공 업체의 알선 수준으로의 격하 등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일자리 창출과 개인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2005년 개인서비스 육성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본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황덕순 외 2012).

고용보증수표제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청구제도로, 가사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 CSEU 시스템 계정을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며 근로자는 CSEU의 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보증수표제를 통해 세금감면 방식으로 할인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사회보험분담금을 일부 면제한다. 개인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정을 통해 고용계약, 이체, 지불, 급여 자동 지급 등을 하며 지방당국이나 기업이 바우처를 구입, 가구에서 이용하도록 사전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증수표제는 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② 가구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지불수단 ③ 일·가정 양립 지원 수단으로서 일-생활의 균형을 촉진 ④ 가사서비스 고용 증가와 고용 공식화 ⑤ 서비스 거래 기록 및 세금자료 자동처리를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의 목표와 역할을 한다.  고용보증수표제는 모든 가구가 이용가능하지만 특히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자녀가 있는 구직자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공공지원을 하고 있다(김현경 외 2019: 195).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일반적인 가사, 원예 작업, 3살 이상 자녀 돌봄, 홈쇼핑 배달, 이동 약자와의 동행 등 2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 종류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고용하되 알선 전문 기업에 위탁하여 채용하는 방식, 서비스 제공 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방식 등이 있으며, 대체로 위탁 채용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가사근로자법이 목적으로 하는 가사노동자의 고용 창출과 노동조건 향상,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고용보증수표제를 도입한다면 가사서비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 2022
# 민주연구원
# 불평등 보고서

# 제4장

## 노후 시기 소득불평등
## : 근로시기 불평등의 전이

# 제4장 노후 시기 소득불평등: 근로시기 불평등의 전이*

이 장에서는 노후시기의 소득불평등을 다룬다. 제2장에서 살펴본 생애주기의 임금 격차가 경제활동시기에도 문제가 되지만 은퇴 이후의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미쳐 노후의 빈곤과 불평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노후의 소득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의 빈곤 문제를 넘어 주거와 건강의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후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우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과 현재의 문제점을 간략히 논한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적 노후보장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층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가장 높다. 충분하지 못한 소득보장으로 인해 노후시기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러한 노인일자리는 대체로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1절에서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후보장패널 및 노동패널 등의 자료를 활용해 노인소득 실태를 분석한다.

이러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2절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원인을 분석한다. 노동패널자료의 개인용 설문과 직업력 자료를 결합하여 성별, 연령,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분석한다. 노후소득이 낮은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고 성별과 소득수준, 생애시기의 노동이력에 따라 가입기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결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과 다층적 노후보장체계를 조정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 본 장의 내용은 김태일·신영민(2022)과 Kim and Shin(2022)의 연구를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 1. 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상황

### 1) 한국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국제비교

[그림 Ⅳ-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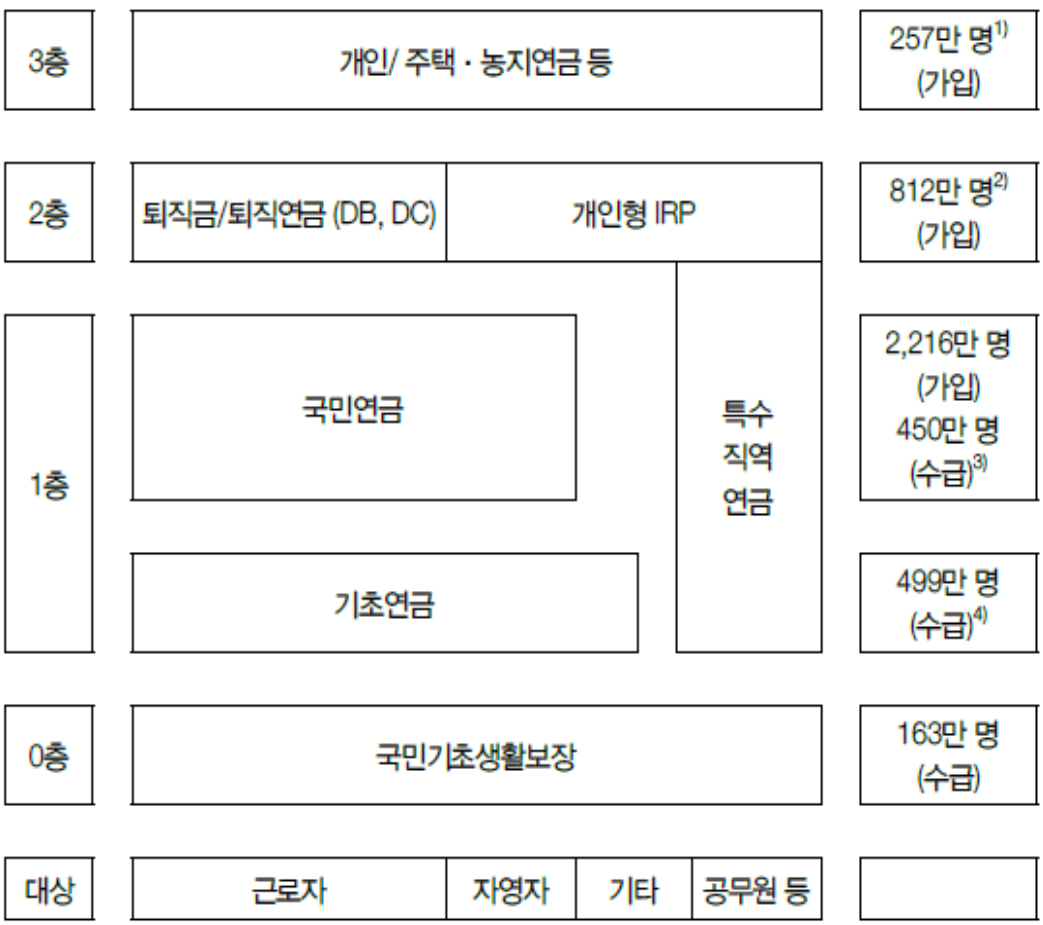


1) 세제 적격 개인연금(2015년) 기준. 2) 2016년 기준 3) 2017년 기준 4) 2018.4. 기준.
자료: 류재린·김준일 2019, 57.

먼저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림 Ⅳ-1]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여준다. 0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비단 노령인구만이 아닌 전체 국민 중 기준 빈곤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현금 또는 현물을 보충급여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빈곤층 중 노인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며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3%가량이 기초생보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기초연금이다.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의 소득보장으로서 빈곤완화와 소득지위 보장이며, 전자의 대표적 형태가 조세나 보험료에 기반한 보편적 기초연금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를 지급하여 현재 약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정액을 감액지급하고 있다. 반면 소득비례방식을 통해 소득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중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한 경우 급여산식에 따라 지급된다. 공적연금이 이러한 기초보장체계를 구성하며, 이러한 기초보장체계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 등 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이 더해져 중층적인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견 이러한 노후보장시스템은 노후의 생활안정과 빈곤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도상으로는 빈곤완화를 목표로 하는 베버리지형 모델과 소득지위 보장을 지향하는 비스마르크 모델이 잘 결합된 형태이다(Hinrichs 2000; Myles and Pierson, 2001).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그림 Ⅳ-2]는 OECD국가의 노후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율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지니 비율(gini rate)은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 지니계수의 상대비로 높을수록 전체 인구의 불평등에 비해 노후의 불평등 수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 50%이하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두 지표 모두 2016~2019년이 기준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지니계수는 0.419로 OECD 37개 국가 중 칠레(0.4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칠레의 경우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가 0.46으로 높아서 높은 노인 소득 불평등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비는 낮은 편이다. 반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가 0.355로 상대비가 1.18이 된다. 이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수준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두 번째로 상대비가 높은 멕시코(1.09)보다도 약 0.9가량이 높다. 한편 노인빈곤율 역시 43.4%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두 번째로 높은 라트비아(38.97%)보다도 약 5%P가량이 높으며, OECD국가 중 유일하게 40%를 넘는다. 즉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한국의 노인세대는 절대적인 빈곤수준이 가장 높고, 상대적인 불평등도 가장 심하다.

[그림 Ⅳ-2] OECD국가의 지니 비율(Gini rate) 및 노인빈곤율(2016-20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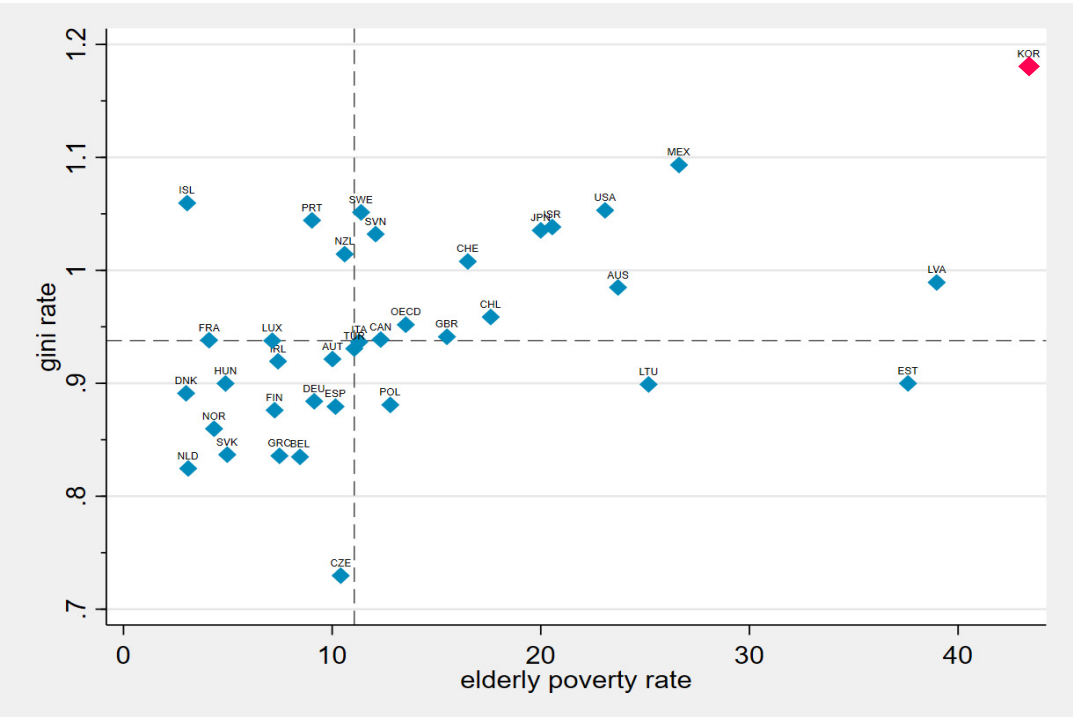


주: 그림의 점선은 비교대상 국가의 중위값(median)임.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doi.org/10.1787/888934042219(검색일: 2022.11.15.); OECD, Pension at a Glance, https://stat.link/ocju6r(검색일: 2022.11.15.).

다음으로 [그림 Ⅳ-3]에서 세로축은 평균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비율이며, 가로축은 65세 이상 노인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에는 우리의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해당하는 공공부조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연금소득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 강제적용 민간퇴직연금 중심 제도이거나 민간연금이 공적연금과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국가는 이를 적용한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28)] 한국은 국민 평균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이 65.8%로 OECD 국가 중 상대 비율이 가장 낮다. 동시에 노인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5.9%로 가장 낮다. 요컨대 노인이 되면서 소득이 급감하고 공적이전을 통한 재분배와 사회보조가 없기에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며, 노후소득을 사적 기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

28) 이에는 호주,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이 해당한다.

[그림 Ⅳ-3] 평균 대비 노인소득의 비중과 노인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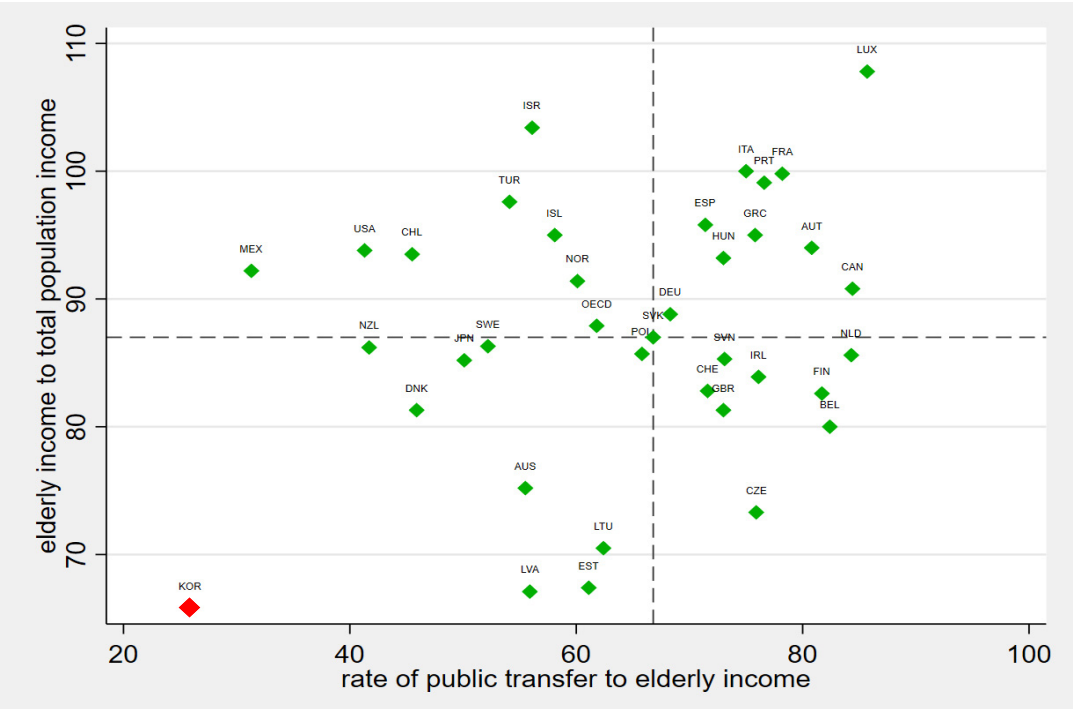


주: 1. 소득 중 공적이전 비중은 강제적용 민간퇴직연금(mandatory private pension)을 포함한 값임.
2. 그림의 점선은 비교대상 국가의 중위값(median)임.

자료: OECD(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p.185.

[그림 Ⅳ-4]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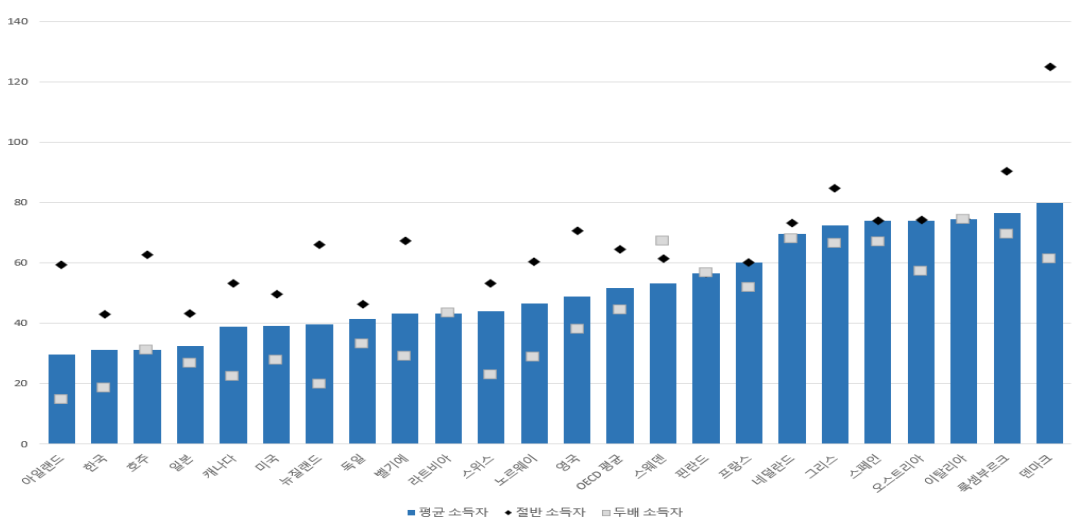


자료: OECD. 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141.

이렇듯 우리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취약한 원인으로 제도적 미성숙을 지적하는 견해 역시 있다.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에 현 노인세대에서는 미수급권자가 많고 수급자여도 기여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수급액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제도적 미성숙이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며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두터워질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정책적 개입이 없어도 충분하다. 적어도 현 노인세대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정책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소득보장체계의 문제는 제도적 미성숙이 원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Ⅲ-4]는 OECD 국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을 보여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급권자가 생애 근로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 산정시에는 22세에 연금에 가입하여 개시연령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가정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제도적 미성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평균소득자와 두배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31.2%, 18.6%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절반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3.1%로 가장 낮다. 이를 202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54만 7천 원~94만 5천 원으로, 노후의 적정소득대체율이 약 62~75%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류건식 외 2009; 최현자 외 2019; 김헌수·석상훈 2013 등), 제도적으로도 보장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한국은 공적연금임에도 기초연금이 제외되어 있다. 우리와 유사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은 기초연금 내지 최저보장연금이 반영되어 있으나 한국은 누락된 것으로, 이는 2008년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에는 점차 축소될 공공부조로 예상하였기에 OECD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외시켰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연금액인 30만원을 OECD 기준 계산에 따라 반영하면 감액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3.9~7.8%P가량 증가하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5.1~39.0%가량이 되기에 제도상으로 낮지 않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 여부와 별개로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4.5%이며 2028년까지 축소되더라도 40%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원인은 가입자가 많지 않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가입자의 가입기간 역시 짧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즉 18-65세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약 40%로 알려져 있으며(유희원 외 2021)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 역시 약 9.5~11.2년으로 길지 않다(구인회 외 2021; 유희원 외 2021). 소득대체율 산정에 고려되는 기간이 22세부터 59세까지 38년임을 감안하면 제도상으로 설계된 기여기간의 29.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29] 유럽 주요 복지국가의 연금 기여자 비율이 100%에 가까우며, 평균 기여기간은 36.3년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수준이다(EC 2022).[30]

물론 이는 연금제도가 성숙한 국가의 경우이므로 OECD 주요 국가의 사각지대 규모와, 제도적으로 가능한 기여기간 대비 실제 기여기간을 비교하여 한국의 사각지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넓고, 기여기간이 짧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Ⅳ-5]는 OECD 주요 국가의 연금 기여자 비율이다. 한국은 15세 이상 인구 중 연금기여자 비율이 53.7%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다. 다만 경제활동인구대비 비율은 77.8%로 낮기는 하지만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보다는 높다. 각각 평균보다 16.2%P, 11.4%P 낮은 수준이다. 전체인구보다 경활인구 대비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은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여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 연금수급률이 낮은 점을 보여준다.

한편 OECD국가의 기여기간과 수급액 통계는 구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의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하여 [그림 Ⅳ-6]는 연금제도상 가능한 기여기간 대비 실제 기여기간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그림 Ⅳ-3]의 평균 대비 노인소득의 비율(a)과 노인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b)을 곱하여 보장성 수준을 계산하고, 계산된 보장성 수준에 [그림 Ⅳ-4]의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c)을 곱해 산출한 것이다. a×b값은'현재의 국민전체의 평균소득 대비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규모'이므로 현재 공적연금의 보장성 수준을 의미한다. 반면 c는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개시연령 직전까지 납입했을 때를 가정해 계산된 것이므로'제도상으로 가능한 공적이전소득 규모'를 의미한다. 따라서 (a×b)/c 값은 '제도상으로 가능한 공적이전소득의 규모 대비 현재의 공적이전소득 규모'를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여기간이 길수록 공적이전소득의 규모도 비례적으로 길어진다는 가정이 필요하다.[31] 물론 기여기간과 공적이전소득의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산 결과는 다양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경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값은 0.35정도로, OECD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절반을 넘지 못한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평균은 대략 0.79이다. 이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제도상으로 가능한 기여기간인 평균 43년의 79%, 약 33.9년가량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한국은 제도상으로 가능한 기여기간의 35%, 평균 13.3년 정도만 기여함으로서 연금수급액이 적을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

29) 소득대체율 산정시 한국은 22세에 가입하여 59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 60세에 연금개시연령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38년이지만 국가별 개시연령에는 차이가 있어 통상 한국보다 5년이 길다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한국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60~64세 기간 5년 동안 추가 납부가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해서 활용이 제한적이다.

30) European Commission 2022에서 기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평균이다.

31) [그림 Ⅳ-3]의 자료는 국민전체의 가구균등화소득(household equivalised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그림 Ⅳ-4]는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이 가구균등화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조정해주어야하며, [그림 Ⅳ-5]는 이러한 차이가 조정된 결과이다.

[그림 Ⅳ-5] 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기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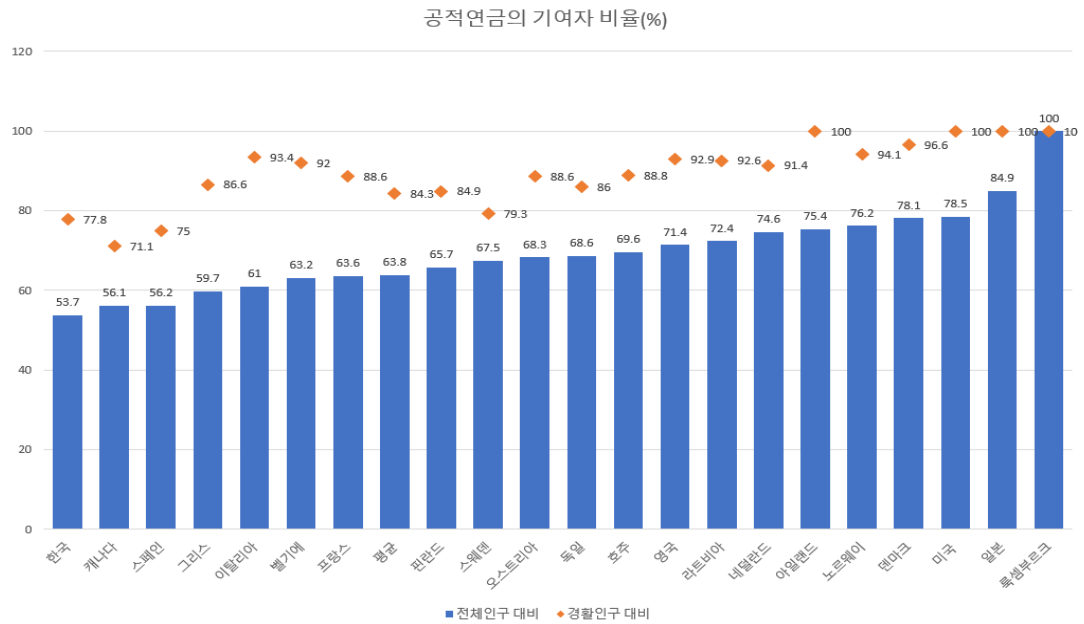


자료: ILO 2018.

[그림 Ⅳ-6] 공적연금의 제도적 기여기간 대비 실제 기여기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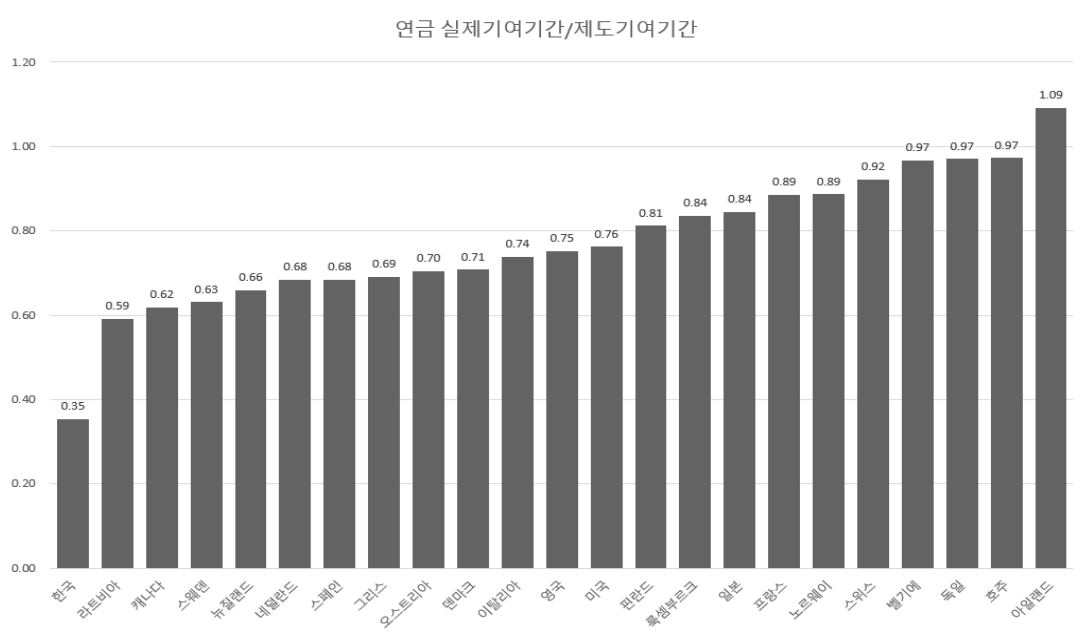


자료: OECD 2021의 자료를 토대로 직접 계산.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후불평등 수준과 절대적인 노인빈곤 수준은 OECD 국가 중 두드러지게 높으며 그 원인은 공적연금의 노후보장수준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미성숙은 이러한 취약한 노후보장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낮은 노후보장수준의 원인은 사각지대가 넓고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내의 연구를 참조하면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18세 이상 전체 인구의 40%가량으로 넓고 ILO(2018)의 국제비교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15세 이상 인구의 67%가량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OECD주요 국가 중 기여자의 비율이 가장 적다. 국내 연구에서 대체로 추정한 평균 기여기간은 약 9.5년~11.2년으로 유럽 주요 국가의 30%수준이고, OECD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경우에도 제도상으로 가능한 기여기간의 35% 정도로 약 13년가량에 그쳐 주요 국가 중 가장 짧은 기여기간을 보여준다.

### 2) 현 노인세대의 노후 소득보장 실태

앞에서는 OECD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국제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살펴보았다. 비교적 최근을 기준으로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장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런데 이는 우리 연금제도의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림 Ⅳ-1]과 같이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중층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보편적인 기초소득 보장과 소득수준에 따른 비례 원리를 모두 갖추고 있다. 소득대체율 역시 40%로 이는 유럽 주요 국가의 소득대체율과 비교할 때 크게 낮지 않다. 문제는 제도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여기간이 짧아 제도적으로 가능한 노후소득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통해 현 노인세대의 평균소득수준과 월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표 Ⅳ-1]은 국민노후보장패널 (KReIS) 8차년도 개인용 조사자료 중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2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과 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 특성, 성별과 교육 수준 등을 정리한 것이다. 8차년도 조사자 중 주요 변수의 응답에 무응답이나 이상치를 제외하고 62세 이상은 4,004명이며 이 중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33.5%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다. 3분의 2는 가입기간조건(10년)을 충족하지 못해 미수급자인 상황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급액은 월평균 33만 8천원정도이다.[32] 이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다.[33] [표 Ⅳ-1]의

32) KReIS 8차 조사가 시행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52만 7천 원으로 조사자료 금액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공표통계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중복급여,

가구원 수를 보면 평균 2명이고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대부분 2명 이하라는 점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노인 1인 내지 부부 가구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급 금액은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물론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다. 개인용 조사자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노인인구의 65.7%가량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며, 국민연금 수급자의 52.13%가 소득 하위 70%에 속해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급 수급자인 경우 월평균 18만 6천 원, 국민연금 미수급자인 경우 19만 6천 원가량이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합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은 52만 4천 원, 미수급자는 19만 6천 원에 그친다. 그럼에도 균등화 월 가구소득은 평균 138만 7천 원 정도이다. 이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현 노인 세대의 대부분이 퇴직 연령이 지났음에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충하고 있다는 점이다.[34]

[표 Ⅳ-1] 현재 노인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특성

| | | 전체 | | 국민연금 수급자 | | 국민연금 미수급자 | |
|---|---|---|---|---|---|---|---|
| | | M | sd | M | sd | M | sd |
| | | Freq. | % | Freq. | % | Freq. | % |
| 국민연금 수급 여부 | | 4,004 | (100.00) | 1,341 | (33.49) | 2,663 | (66.51) |
| 국민연금 월 수급액(천 원) | | - | | 338.82 | (243.91) | - | |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 2,631 | (65.71) | 699 | (52.13) | 1,932 | (72.55) |
| 기초연금 월 수급액(천 원) | | 193.64 | (50.00) | 186.15 | (30.52) | 196.35 | (55.15) |
| 가구균등화소득(월, 천 원) | | 1,386.57 | (1,432.63) | 1,631.87 | (1,602.25) | 1,263.05 | (1,322.3) |
| 연령 | | 74.10 | (7.12) | 71.87 | (5.55) | 75.22 | (7.55) |
| 가구원 수 | | 2.08 | (1.04) | 2.14 | (0.93) | 2.04 | (1.08) |
| | 1명 | 1,060 | (26.47) | 240 | (17.90) | 820 | (30.79) |
| | 2명 | 2,140 | (53.45) | 831 | (61.97) | 1,309 | (49.16) |
| | 3명 이상 | 804 | (20.08) | 270 | (20.13) | 534 | (20.05) |

동순위 조정 전 금액인 반면 KReIS 조사는 응답자의 실수령액을 기입한 것이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인회 외(2021)의 연구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병합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분석하였는데 연령대별 국민연금 수급액을 살펴보면 60대 후반의 월 수급액은 44만 6천원, 70대초반 및 후반은 각각 33만 4천원 및 23만 5천원이라는 점(구인회 외 2021, 59)에서 [표 IV-1]의 분석대상 연령이 74세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97만 2천 원가량이며 김태일·이영빈(2019)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생계 곤란을 벗어나는 소득수준(1인 가구 기준)은 43~61만 원가량이다.

34) 물론 경제활동 외에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으로 얻는 소득도 있다. 다만 가구용 조사자료(8차)의 사적이전소득은 월 19만 5천원 가량으로 큰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연금수급액과 사적이전소득 평균을 고려하면 수급자는 월 평균 90만 원, 미수급자는 86만 원정도를 경제활동으로 얻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1]에서 계속

| | | 전체 | | 국민연금 수급자 | | 국민연금 미수급자 | |
|---|---|---|---|---|---|---|---|
| | | M | sd | M | sd | M | sd |
| | | Freq. | % | Freq. | % | Freq. | % |
| 65세 이상 가구원 수 | | 1.46 | (0.58) | 1.46 | (0.61) | 1.45 | (0.57) |
| | 0명 | 156 | (3.90) | 74 | (5.52) | 82 | (3.08) |
| | 1명 | 1,894 | (47.30) | 577 | (43.03) | 1,317 | (49.46) |
| | 2명 | 1,929 | (48.18) | 685 | (51.08) | 1,244 | (46.71) |
| | 3명 이상 | 25 | (0.62) | 5 | (0.37) | 20 | (0.75) |
| 성별 | 남 | 1,585 | (39.59) | 931 | (69.43) | 654 | (24.56) |
| | 여 | 2,419 | (60.41) | 410 | (30.57) | 2,009 | (75.44) |
| 교육수준 | 중졸이하 | 313 | (75.25) | 851 | (63.46) | 2,162 | (81.19) |
| | 고졸 | 784 | (19.58) | 385 | (28.71) | 399 | (14.98) |
| | 전대졸 | 42 | (1.05) | 21 | (1.57) | 21 | (0.79) |
| | 4년졸 이상 | 165 | (4.12) | 84 | (6.26) | 81 | (3.04) |
| 배우자 | 있음 | 2,561 | (63.96) | 1,304 | (77.11) | 1,527 | (57.34) |
| | 없음 | 1,443 | (36.04) | 307 | (22.89) | 1,136 | (42.66) |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8차 조사.

또한 노인인구 전체 성비는 여성이 60.4%로 많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69.4%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의 75.4%는 미수급권자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에서 수급권자가 근로 시기에 주로 경제활동을 한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현행 국민연금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예를 들어 김연명 2013; 김원섭 외 2016 등).

[표 Ⅳ-2]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여부 별 20-60세 중 근로기간과 근로기간 중 각 노동시장 지위가 차지하는 비율, 생애 일자리의 수, 생애 가장 주된 고용상의 지위를 보여준다. 노후보장패널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근로기간의 차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수급자의 근로기간은 평균 33.5년, 미수급자가 27.5년가량으로 수급자의 근로기간이 평균 6년 정도 길다. 근로기간은 짧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인 세대가 한창 일을 한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가입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

[표 Ⅳ-2] 현재 노인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생애 노동시장 지위 특성

| | | 전체 | | 수급자 | | 미수급자 | |
|---|---|---|---|---|---|---|---|
| | | M | sd | M | sd | M | sd |
| | | Freq. | % | Freq. | % | Freq. | % |
| 20-60세 근로기간(년) | | 29.55 | (14.27) | 33.52 | (12.09) | 27.45 | (14.87) |
| 총 근로기간 중 상용직 비중(%)1) | | 20.66 | (32.72) | 29.99 | (35.64) | 15.95 | (30.06) |
| 총 근로기간 중 임시일용직 비중(%) | | 22.06 | (33.06) | 18.96 | (28.95) | 23.63 | (34.86) |
| 총 근로기간 중 자영업 비중(%) | | 27.19 | (35.86) | 32.68 | (37.02) | 24.41 | (34.94) |
| 직업변동성 (생애 일자리 수) | | 3.02 | (1.82) | 3.50 | (1.85) | 2.78 | (1.76) |
| 생애 주된 고용상 지위 | 상용직 | 814 | (20.33) | 416 | (31.02) | 398 | (14.95) |
| | 임시일용직 | 865 | (21.60) | 233 | (17.38) | 632 | (23.73) |
| | 고용주 | 172 | (4.30) | 69 | (5.15) | 103 | (3.87) |
| | 자영업자 | 1,148 | (28.67) | 481 | (35.87) | 667 | (25.05) |
| | 무급가족 종사자 | 1,005 | (25.10) | 142 | (10.59) | 863 | (32.41) |

주: 근로기간 중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비중 합계는 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100%가 아님.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8차 조사의 개인 및 직업력 병합.

수급자의 경우 생애 근로기간 중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의 30%, 자영업 기간이 32.7%로 상용직과 자영업 근무기간이 길지만 미수급권자의 경우 상용직 근무기간은 수급자의 절반 수준인 16% 정도에 그치고 임시·일용직 근무기간이 23.6%로 수급자보다 5%P 가량 높다. 근로기간 중 가장 주된 일자리의 고용상 지위를 비교하면 수급자와 미수급자 모두 자영업자가 가장 길고, 이를 제외하면 수급자는 상용직이 주된 지위인 경우가 31%, 미수급자는 무급가족종사자(32.4%)이거나 임시일용직(23.7%)인 경우가 가장 많다.

앞서 OECD 국가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서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대상 평균 연령은 74세로 평균 1940년대 중후반 출생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세가량으로 40대 중반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을 시점에 가입하여 60세까지 납부했다면 20년가량 납부가 가능해 어느 정도의 연금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고용상 지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자영업 비중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용직으로 입직하더라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현 노인 세대가 국민연금 도입 후 근로기간 내내 상용직으로만 일했다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겠으나 [표 Ⅳ-2]에서 알 수 있듯 전체 근로기간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가량으로 길지 않다. 수급자도 30% 정도로 기간으로 환산하면 10년 정도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종사상 지위 변화로 수급권자도 가입기간은 10년 내외로 길

지 못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35)]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노인세대의 공적이전소득은 평균 52만 4천원 정도이다. 노후보장패널 외의 행정자료를 검토해도 60만원 내외이다. 이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 때문에 현 노인세대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월 평균 14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노인가구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내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퇴직 후에도 심신이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도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노인일자리 질이 대체로 좋지 않고, 근로시기의 경력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여성의 4분의 3은 미수급권자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설계가 가구를 중심으로 되어있고, 여성이 출산크레딧을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도 보통은 먼저 수급기간을 충족하는 배우자에게 이를 넘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여성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노인 가구 내에서 여성의 지위도 약화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있어 현행 국민연금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셋째, 생애 근로시기에 경험하는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급권과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생애근로시기의 주된 고용상 지위가 상용직이며, 이들은 대체로 상용직(20대 말, 30대 초)→자영업(40대 말, 50대 초)→임시일용직(50대 후반 이후)을 거치며 최소기여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김태일·최영준 2017). 반면 미수급권자는 임시일용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상용직 근무기간이 짧은데 여성의 비율이 적지 않거나, 남성이어도 상용직 근무기간이 짧고, 혹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상용직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 노인세대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고 사각지대가 많아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며, 성별과 생애근로시기의 고용상 지위에 따라 격차가 크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노인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되고 기여기간이 늘어난다면 향후에는 공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두터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근로세대의 사각지대 역시 광범위하고 기여기간 역시 짧기 때문에 미래에 연금제도가 성숙한다하여도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3절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재 근로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실태와 기여기간의 특성을 분석한다.

35) 이에 대해서는 김태일·최영준(2017)을 참조.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50대 후반의 평균 가입기간이 14년 정도이기에 현 노인세대의 평균 가입기간도 10년 내외 정도일 것이다.

## 2. 현재 근로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 1) 소득수준, 성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

기존 연구와 앞 장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우리 노동시장은 다양한 격차요인과 지위로 인해 분절적이며 이에 따른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 입대,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연령은 늦고, 출산과 육아, 중도 퇴직으로 인해 빠르게 이탈한다는 특징이 있다(권해자·장재호 2015; 한신실 2018 등). 이로 인해 생애 노동경력이 짧으며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기간이 적지 않다. 앞서 PIAAC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평균 경력년수는 13.1년, 근속년수는 평균 5.7년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를 살펴보아도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여성의 경우 이르면 30대 중반, 남성은 40대 중반을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이행을 경험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른 퇴직은 당장의 소득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동시에 중고령자가 공적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될 위험성은 증가하고 노후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된다(유호선 외 2015; 지은정 2006). 앞 절에서 분석된 짧은 가입이력이 이러한 이행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면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으로는 가입기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근로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의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성별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입 이력의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동시장 이력과 국민연금 가입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크게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노후보장패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노동패널을 선택하였다. 노동패널은 1998년 1차 조사 이후 현재까지 23차수의 조사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국내에서 가장 긴 시계열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노동시장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36] 분석에 앞서 노동패널 23차 개인용 설문과 직업력 자료를 병합하였다.

[표 Ⅳ-3]은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직업력 자료를 통해 계산된 각 일자리별 재직기간과 해당 일자리에서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통해 계산되었다. 또한 최소가입기간 충족여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일자리의 개인별 총합으로 120개월을 넘을 경

36) 노후보장패널은 노동패널보다 공적이전소득 및 연금가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50대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기에 현 근로세대의 가입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며, 복지패널의 경우 조사 목적상 저소득 분위의 비율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우 충족한 것으로, 넘지 못한 경우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소득변수에는 소득분위와 월 소득의 자연대수값을 활용하였으며,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가입기간 특성 분석에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폈다. 노동시장 특성에 관련된 변수로는 현재의 종사상 지위와 상용직 근로기간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았다. 상용직 근로기간은 일자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개인별 전체 근로기간을 구한 후 이 중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단순 근로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상용직 근로기간 역시 길어지기 때문이다.

[표 Ⅳ-3] 분석 변수의 설명(노동패널 23차년도)

| 구분 | 변수명 | 설명(n=8,795) | | M(sd)/ (Frq.)1) | 비고 |
|---|---|---|---|---|---|
| 연속 | 국민연금 가입기간 | 응답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개월) | | 132.53 (96.94) | |
| 범주 | 최소가입기간 충족 여부 | 응답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을 위한 최소기간(120개월) 충족 여부 | 충족=1 | (47.88) | |
| | | | 미충족=0 | (52.12) | |
| 범주 | 성별 | 응답자 성별 | 남성=1 | (55.95) | |
| | | | 여성=0 | (44.05) | |
| 연속 | 연령 | 응답자 연령(18-59세) | | 40.97 (11.43) | |
| 범주 | 소득분위 | 월평균 임금(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값 | 1분위=1 | (10.56) | 115.58 (46.22) |
| | | | 2분위=2 | (14.57) | 199.47 (16.81) |
| | | | 3분위=3 | (23.21) | 258.57 (18.21) |
| | | | 4분위=4 | (20.93) | 334.56 (27.46) |
| | | | 5분위=5 | (30.73) | 564.82 (836.33) |
| 연속 | 소득 | 월평균 임금(소득)의 자연대수값 | | 5.372 (0.770) | |
| 범주 | 종사상 지위 | 현재의 종사상 지위 | 상용직=1 | (68.01) | |
| | | | 임시·일용직=2 | (12.08) | |
| | | | 비임금=3 | (19.92) | |
| 연속 | 상용직 근로기간 | 생애 근로기간 중 상용직 근로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 | 68.94 (40.12) | |

주: 연속형 변수는 평균 및 표준편차. 범주형 변수는 해당 범주의 비율(%). 소득분위의 비고는 해당 분위 평균 및 표준편차.

먼저 결합된 자료로부터 계산된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기간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Ⅳ-7]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구인회 외(2021) 및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가입률(%) 및 가입기간(개월)을 비교한 결과이다. 구인회 외(2021)의 경우 행정자료를 결합해 추정한 자료로 서베이 조사보다 정확성이 높다. 국민연금통계연보의 자료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로 정확성이 높겠으나 이를 통해서는 연령대별 가입률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7] 노동패널 및 행정자료의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기간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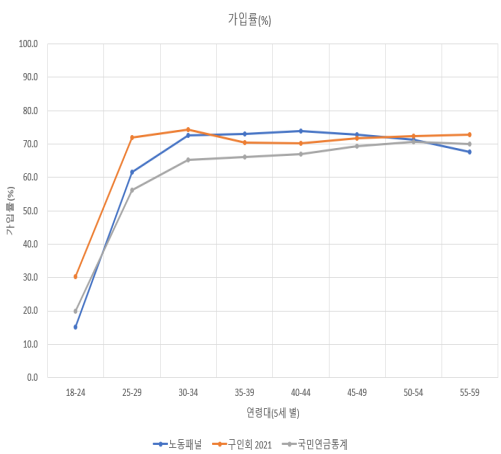


연령대별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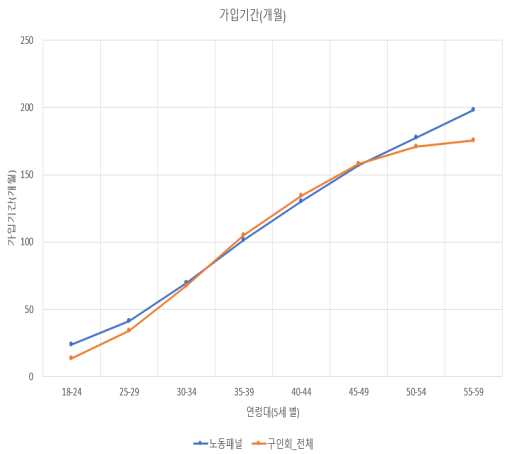


연령대별 가입기간(개월)

자료: 한국노동패널 23차년도 개인용 설문 및 직업력 병합. 구인회 외 2021; 국민연금공단 2021.

세 자료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가입률과 가입기간 추세가 비교적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8~24세 가입률은 노동패널이 15.16%로 구인회 외(2021) 및 국민연금통계보다 근소하게 낮지만 점차로 높아져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거의 비슷한 가입률을 보여준다. 가입개월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와 행정자료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50대 후반의 가입률은 행정자료보다 다소 낮고, 가입 개월은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이 유사하여 병합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는 연령대(5세 단위) 및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개월을 보여준다. 표 마지막 열의 '격차'는 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차이를 의미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가입률과 가입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초반의 가입률은 1분위가 5분위보다 오히려 근소하게 높지만 20대 후반이 되면서 5분위의 가입률은 67.37%로 1분위보다 18.6%P가량 높고 30대에 접어들면 20%P까지 벌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50대 후반이 되면 36%P까지 커져서, 연령대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기간의 경우도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여서 20대 초반 소득 5분위와 1분위의 가입기간 격차는 약 11.4개월로 채 1년이 되지 않지만 30대 후반이 되면 39.9개월로 약 3.3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 직전인 50대 후반에는 69.03개월로 벌어져 약 5.75년의 차이가 난다.

[표 Ⅳ-4] 연령대·소득계층별 국민연금 가입특성

| | 연령대 | 전체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격차 |
|---|---|---|---|---|---|---|---|---|
| 가입률 (%) | 18~24세 | 15.16 | 18.18 | 9.78 | 17.66 | 15.74 | 15.17 | -3.01 |
| | 25~29세 | 61.5 | 48.75 | 43.18 | 61.54 | 69.47 | 67.37 | 18.62 |
| | 30~34세 | 72.63 | 62.03 | 58.06 | 67.15 | 79.48 | 82.05 | 20.02 |
| | 35~39세 | 73.04 | 56.03 | 62.46 | 76.56 | 78.75 | 76.64 | 20.61 |
| | 40~44세 | 73.87 | 55.73 | 64.89 | 75.45 | 80.38 | 77.57 | 21.84 |
| | 45~49세 | 72.86 | 44.1 | 68.93 | 71.46 | 77.57 | 81.93 | 37.83 |
| | 50~54세 | 71.22 | 50.27 | 62.9 | 71.6 | 76.01 | 79.16 | 28.89 |
| | 55~59세 | 67.61 | 40.84 | 56.19 | 67.6 | 74.82 | 77.18 | 36.34 |
| | 전체 | 64.91 | 53.50 | 73.29 | 74.42 | 76.78 | 79.70 | 26.20 |
| 가입 기간 (개월) | 18~24세 | 23.67 | 13.29 | 26.67 | 24.80 | 22.21 | 24.71 | 11.42 |
| | 25~29세 | 41.55 | 24.20 | 42.63 | 40.61 | 46.09 | 41.11 | 16.91 |
| | 30~34세 | 69.79 | 60.29 | 64.62 | 72.15 | 70.52 | 70.61 | 10.32 |
| | 35~39세 | 101.64 | 74.74 | 83.05 | 97.89 | 97.58 | 114.62 | 39.88 |
| | 40~44세 | 130.37 | 83.04 | 102.87 | 124.60 | 128.95 | 145.97 | 62.93 |
| | 45~49세 | 157.10 | 120.00 | 113.39 | 149.14 | 159.01 | 173.16 | 53.16 |
| | 50~54세 | 177.47 | 133.78 | 148.87 | 159.76 | 173.99 | 198.61 | 64.83 |
| | 55~59세 | 197.95 | 154.69 | 164.89 | 180.41 | 187.68 | 223.72 | 69.03 |
| | 전체 | 132.53 | 101.63 | 107.96 | 123.50 | 129.14 | 150.58 | 48.95 |

자료: 한국노동패널 23차년도 개인용 설문 및 직업력 병합.

[표 Ⅳ-4]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특징은 짧은 가입기간이다. 50대 후반이어도 가입률은 67.6%에 머물며 가입률이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도 가입률은 73.87%에 그치기 때문에 30% 이상의 미가입자가 존재한다. 뿐만아니라 50대 후반의 평균 기여기간은 197.95개월(약 16.5년)로 채 20년이 되지 않는다. 앞 절에서 살펴본 실제 기여기간 추정치인 13년보다는 길지만 여전히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며 실질 소득대체율은 20%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1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254만 원)을 고려해 가늠하

면 약 50만 원,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수급액인 42만 원보다는 근소하게 높지만(국민연금공단 2021) 노후소득 보장에는 불충분한 수준이다. 평균소득자가 기초연금을 감액 규정에 따라 받는다고 가정해도 충분하지 못하다. 물론 50대 후반의 경우 남은 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나 50대 후반의 가입기간을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50대 후반이 남은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도 평균 기여기간은 20년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유희원 외 2021).

[표 Ⅳ-5]은 국민연금 가입의 성별 특성을 보여준다. 20대 초반 남녀의 가입률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6%P가량 높으며 20대 후반까지도 여성의 가입률이 높은데 이는 남성보다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남성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30대에 들어서면 남성의 가입률이 10% 높아지며, 30대 후반~40대 초반에서 가입률 격차는 27%P로 가장 큰데 이는 해당 시기에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로인해 30대 이후 여성의 가입률은 남성보다 대체로 20%P가량 낮다. 가입기간에서도 격차가 나타나며 50대 후반 남성의 평균 가입개월이 236.20개월로 약 19.68년인 반면 여성은 150.10개월(약 12.51년)에 그쳐 남성보다 7년가량 짧다. 남성은 40대 초반에 최소기여기간을 달성하지만 여성은 40대 후반에야 122.92개월이 되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게 된다.

[표 Ⅳ-5] 성별·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특성

| 연령대 | 가입률(%) | | | 가입기간(개월) | | |
|---|---|---|---|---|---|---|
| | 남성 | 여성 | 격차 | 남성 | 여성 | 격차 |
| 18~24세 | 12.02 | 18.05 | -6.03 | 22.0 | 24.69 | -2.69 |
| 25~29세 | 54.05 | 69.32 | -15.27 | 35.86 | 46.22 | -10.36 |
| 30~34세 | 78.04 | 67.71 | 10.33 | 66.61 | 73.12 | -6.51 |
| 35~39세 | 87.02 | 59.72 | 27.30 | 110.93 | 88.73 | 22.2 |
| 40~44세 | 87.58 | 60.51 | 27.07 | 144.89 | 109.88 | 35.01 |
| 45~49세 | 84.46 | 60.86 | 23.60 | 180.91 | 122.92 | 57.99 |
| 50~54세 | 84.13 | 58.21 | 25.92 | 212.52 | 126.43 | 86.09 |
| 55~59세 | 79.78 | 56.78 | 23.00 | 236.20 | 150.10 | 86.1 |
| 전체 | 73.88 | 56.24 | 17.64 | 154.81 | 104.23 | 50.58 |

자료: 한국노동패널 23차년도 개인용 설문 및 직업력 병합.

[표 Ⅳ-6]은 연령대 및 종사상 지위별 가입 특성 및 각 연령대의 남녀 상용직 비율(%)을 보여준다. 가입률 및 가입기간 열의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의미한다. 가입률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약 90%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65.3%가량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24%P의 차이가 있다.[37] 앞서 소득수준 및 성별 격차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확대된 반면 고용상 지위에 따른 가입률 차이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다. 20대 초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20대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인데 이는 20대 초반에 구하는 일자리 중 단기 아르바이트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20대 후반 이후의 비정규직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비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은 비정규직보다 높고 가입기간은 상용직보다도 긴 편인데 이는 현재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기간에 가입한 이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Ⅳ-6] 연령대·종사상 지위별 가입특성 및 남녀 상용직 비율(%)

| | 가입률 | | | | 가입기간 | | | | 정규직 비율 | |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임금 | 차이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임금 | 차이 | 남성 | 여성 | 차이 |
| 18~24세 | 90.91 | 31.48 | 0.00 | 59.43 | 23.97 | 22.50 | 0.00 | 1.47 | 59.78 | 58.51 | 1.27 |
| 25~29세 | 89.89 | 59.32 | 55.88 | 30.57 | 44.71 | 39.9 | 35.32 | 4.81 | 75.23 | 80.82 | -5.59 |
| 30~34세 | 87.54 | 75.00 | 69.05 | 12.54 | 76.9 | 56.97 | 59.98 | 19.93 | 80.39 | 75.21 | 5.18 |
| 35~39세 | 88.4 | 73.68 | 76.76 | 14.72 | 113.44 | 73.97 | 98.63 | 39.47 | 79.06 | 68.03 | 11.03 |
| 40~44세 | 89.21 | 71.58 | 85.02 | 17.63 | 144.94 | 101.83 | 127.56 | 43.11 | 74.07 | 61.89 | 12.18 |
| 45~49세 | 89.64 | 69.63 | 82.31 | 20.01 | 176.54 | 102.38 | 158.86 | 74.16 | 67.27 | 55.89 | 11.38 |
| 50~54세 | 89.95 | 69.78 | 79.02 | 20.17 | 197.94 | 112.63 | 195.37 | 85.31 | 56.08 | 48.28 | 7.80 |
| 55~59세 | 90.94 | 62.81 | 80.78 | 28.13 | 212.42 | 136.02 | 238.19 | 76.4 | 45.24 | 41.67 | 3.57 |
| 전체 | 89.36 | 65.31 | 79.66 | 24.05 | 139.17 | 97.09 | 170.98 | 42.08 | 55.26 | 47.86 | 7.40 |

자료: 한국노동패널 23차년도 개인용 설문 및 직업력 병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가입률 차이는 일정한 편이지만 가입기간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50대 후반에 상용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평균 가입기간은 212.42개월로 약 17.7년인 반면 비정규직은 136.02개월(약 11.34년)에 그쳐 최소기여기간을 겨우 충족하며 정규직보다 6년가량 짧다. 따라서 정규직 근무기간은 기여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남녀의 정규직 비율 차이는 성별 기여 기간 차이에

37) [표 Ⅳ-6]의 비정규직 가입률은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인데,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정규직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차이는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다. 통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입률 차이에 관한 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통해 계산되는데 이에 의하면 정규직 가입률은 87.5%, 비정규직은 37.9%(2019년 8월 기준)이다. 그런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포함한 수치로 비정규직 중에는 60세 이상이 많으며 단시간 근로로 활동해 적용제외자도 상당 수 있다. 또한 경활자료는 사업장가입자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지 않은 부분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2019년 8월 기준 정규직 가입률은 94.0%, 비정규직은 63.0%가량이다(노대명 외 2020, 189-191).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대 후반의 남녀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5.6%P가량 높지만 앞서 밝혔듯 출산과 육아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30대가 되면 남녀 정규직 비율 차이는 역전되며, 30대 초반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여성보다 5.16%P가 높다. 30대 후반이 되면 남녀의 정규직 비율 격차는 11%P이상으로 벌어지고 50대가 되어서야 감소하지만 이는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Ⅳ-7] 소득수준·성별·종사상 지위 별 최소기여기간 충족률(%)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차이 | 남성 | 여성 | 차이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임금 | 차이 |
|---|---|---|---|---|---|---|---|---|---|---|---|---|---|
| 40~44세 | 34.62 | 37.60 | 52.25 | 55.14 | 64.05 | 29.43 | 67.14 | 38.91 | 28.23 | 64.53 | 36.03 | 55.33 | 28.50 |
| 45~49세 | 57.89 | 44.59 | 62.34 | 64.96 | 67.19 | 9.30 | 76.12 | 44.34 | 31.78 | 71.76 | 39.60 | 64.80 | 32.16 |
| 50~54세 | 43.90 | 61.22 | 63.22 | 62.53 | 70.93 | 27.03 | 78.99 | 45.60 | 33.39 | 72.79 | 40.13 | 74.01 | 32.66 |
| 55~59세 | 50.00 | 56.43 | 64.82 | 65.76 | 77.12 | 27.12 | 79.67 | 55.00 | 24.67 | 74.46 | 50.75 | 82.35 | 23.71 |
| 전체 | 45.90 | 50.36 | 60.14 | 61.37 | 69.92 | 24.02 | 75.12 | 45.81 | 29.31 | 70.22 | 42.46 | 70.61 | 27.76 |

자료: 한국노동패널 23차년도 개인용 설문 및 직업력 병합.

[표 Ⅳ-7]은 소득수준 및 성별, 종사상 지위별 최소기여기간 충족률(%)을 보여준다. 기여기간이 10년 이기 때문에 40대는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40대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별 수치이다.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50대 후반 소득 5분위, 남성, 정규직은 75%이상의 충족률을 보여주지만 이들 중에서도 25%가량은 기여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50대 후반 소득 1분위, 여성, 비정규직은 기여기간 충족률이 50~55%에 그쳐 절반가량이 수급권을 얻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재 근로세대도 미가입자가 많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소득수준,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입률 및 가입기간, 기여기간 충족여부의 격차가 크다. 현재 근로세대의 사각지대는 약 36%정도이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사각지대 규모와 비슷하다.[38] 또한 50대 후반 남성, 고소득자, 정규직이어도 평균 기여기간은 17년 내외로 20년이 되지 않아 노후소득을 보장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여성, 저소득, 비정규직인 경우는 더욱 상황이 열악하여 50대 후반이어도 절반가량이 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수급권을 갖는 경우도 기여기간은 12년 정도에 그쳐 최소기여기간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다. 기초연금을 고려하여도 이들의 수급액은 월 6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노인빈곤율 역시 가장 높은 원인이다.

38)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약 40%인데 노동패널은 상용직 비율이 다소 높아 차이가 있다.

### 2) 국민연금 가입 특성의 결정요인

[표 Ⅳ-8]은 현재까지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평균가입기간 및 최소가입 충족률에 대한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종사상 지위의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최소기여기간 충족률은 40대가 되어야 의미가 있기에 분석대상은 40-59세로 한정하였다. 연령과 소득수준을 통제할 때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가입기간이 31~63개월(약 2.6~5.3년)이 길며 월 소득이 1% 증가할 때 가입기간은 4.4년가량 증가한다. 현재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보다 기여기간은 37.3~52.9개월 가량이 짧으며, 비임금근로자 역시 정규직에 비해 가입기간이 짧다. 또한 경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평균가입기간 역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최소기여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16~28.7%P가량 높으며, 소득분위가 1분위 높아질 때마다 5.2~5.8%P, 소득이 1%증가할 때마다 기여기간 충족률 역시 17.5~18.9%P가량이 높아진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최소기여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16.4~21.8%P가량 낮다.

[표 Ⅳ-8] 국민연금 가입특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40-59세)

| | | 평균가입기간(개월) | | | | 최소기여기간 충족률(%P)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성별 | | 55.134 | 63.030 | 31.638 | 31.215 | 0.243 | 0.287 | 0.160 | 0.159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연령 | | 5.044 | 5.113 | 5.281 | 5.573 | 0.010 | 0.011 | 0.011 | 0.012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소득분위 | | 15.099 | 16.265 | | | 0.052 | 0.058 | | |
| | | (0.000) | (0.000) | | | (0.000) | (0.000) | | |
| 소득(로그) | | | | 50.628 | 53.464 | | | 0.175 | 0.189 |
| | | | | (0.000) | (0.000) | | | (0.000) | (0.000) |
| 종사상 지위 (기준: 정규직) | 비정규 | -52.945 | | -37.346 | | -0.218 | | -0.164 | |
|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 | 비임금 | -3.817 | | -8.651 | | -0.022 | | -0.036 | |
| | | (0.217) | | (0.006) | | (0.138) | | (0.020) | |
| 상용직 근로기간(%) | | | 0.357 | | 0.353 | | 0.001 | | 0.001 |
| |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상수 | | -162.005 | -209.810 | -387.630 | -447.684 | -0.137 | -0.398 | -0.918 | -1.173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22) | (0.000) | (0.000) | (0.000) |
| Obs | | 5,040 | 5,716 | 4,879 | 4,879 | 5,040 | 5,716 | 4,879 | 4,879 |
| R2 | | 0.217 | 0.219 | 0.261 | 0.268 | 0.123 | 0.134 | 0.147 | 0.150 |
| ad-R2 | | 0.216 | 0.219 | 0.261 | 0.267 | 0.122 | 0.133 | 0.147 | 0.149 |

주: 괄호는 p-value.

[표 Ⅳ-9]는 성별과 소득, 성별과 종사상 지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이다. 성별과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기여기간과 최소기여기간 충족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여성이고 비정규직일수록 기여기간과 최소기여기간 충족가능성은 낮아진다. 표의 모형1과 모형3을 기준으로 같은 연령일 때 상호작용을 고려해 계산하면 소득 5분위 남성은 소득 1분위 여성에 비해 기여기간은 평균 103.92개월(약 8.7년)가량이 길며 최소기여기간 충족 가능성은 평균 43.7%P나 높다. 또한 같은 소득분위, 같은 연령의 정규직 남성은 비정규직 여성에 비해 기여기간은 평균 124.56개월(약 10.38년)이 길고 최소기여기간 충족 가능성은 평균 52.2%P나 높다. 요컨대 저소득 여성 비정규직인 경우 국민연금 기여기간 및 수급권에 있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표 Ⅳ-9] 국민연금 가입특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40-59세), 상호작용항 포함

| | | 평균가입기간(개월) | | 최소기여기간 충족률(%P) | |
|---|---|---|---|---|---|
| | | (1) | (2) | (3) | (4) |
| 성별 | | 9.095 | 63.911 | 0.105 | 0.281 |
| | | (0.034) | (0.000) | (0.031) | (0.000) |
| 연령 | | 4.451 | 5.078 | 0.008 | 0.010 |
| | | (0.000) | (0.000) | (0.000) | (0.000) |
| 소득분위 | | 9.281 | 15.015 | 0.034 | 0.052 |
| | | (0.000) | (0.000) | (0.000) | (0.000) |
| 종사상지위 (기준: 정규직) | 비정규 | | -44.011 | | -0.186 |
| | | | (0.000) | | (0.000) |
| | 비임금 | | 13.470 | | 0.057 |
| | | | (0.014) | | (0.041) |
| 남성×소득분위 | | 14.426 | | 0.049 | |
| | | (0.000) | | (0.000) | |
| 성별×종사상 지위 | 비정규직 | | -16.635 | | -0.055 |
| | | | (0.035) | | (0.019) |
| | 비임금 | | -26.287 | | -0.120 |
| | | | (0.000) | | (0.000) |
| 상수 | | -128.629 | -168.958 | -0.093 | -0.166 |
| | | (0.000) | (0.000) | (0.146) | (0.006) |
| Obs | | 5,716 | 5,040 | 5,716 | 5,040 |
| R2 | | 0.205 | 0.220 | 0.122 | 0.126 |
| ad-R2 | | 0.204 | 0.219 | 0.122 | 0.125 |

주: 괄호는 p-value.

앞서 우리연금제도의 보장성 수준이 낮은 원인이 제도의 미성숙이나 결함이 아닌 가입기간이 짧고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점에서 현재 노인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취약하고 성별과 생애 근로시기의 주된 고용상 지위로 인한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2절에서는 현재 근로세대의 가입기간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수준과 성별, 고용상 지위에 따른 가입기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근로시기의 경력과 관련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 한국 여성의 경력과 근속년수는 남성의 70%수준인데 이는 다른 국가보다 10%P가량 낮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아 수급권을 얻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 Ⅳ-8]은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정리한 것으로, 가입대상자의 40%가량이 사각지대로 분류되며, 이 중 27.4% 정도가 적용제외자인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그림 Ⅳ-8] 국민연금 가입현황 및 사각지대(2020. 12. 기준)

<table>
<tr><td colspan="6">18-59세 총인구 30,875천 명 (100.0%)</td></tr>
<tr><td rowspan="5">비경제<br>활동<br>인구<br>8,461천 명</td><td colspan="5">경제활동인구 22,414천 명 (72.60%)</td></tr>
<tr><td rowspan="4">공적연금<br>비적용자<br>48천 명</td><td colspan="4">공적연금 적용자<br>22,366천 명(72.44%)</td></tr>
<tr><td colspan="3">국민연금 적용대상<br>20,687천 명(67.00%)</td><td rowspan="3">특수직역<br>연금<br>1,679천 명</td></tr>
<tr><td rowspan="2">납부예외자<br>3,098천 명</td><td colspan="2">소득신고자<br>17,589 천명</td></tr>
<tr><td>장기<br>체납자<br>1,023천 명</td><td>보험료 납부자<br>16,566천 명</td></tr>
<tr><td colspan="2">제도 외적 사각지대</td><td colspan="2">제도 내적 사각지대</td><td colspan="2"></td></tr>
<tr><td>27.40 %</td><td>0.16 %</td><td>10.03 %</td><td>3.31 %</td><td>53.66 %</td><td>5.44 %</td></tr>
<tr><td colspan="4">잠재적 사각지대 12,630 천명(40.90%)</td><td colspan="2">잠재적 수급권자<br>(59.10%)</td></tr>
</table>

자료: 국민연금 DB, 유희원 외 2021, 72를 재구성.

사각지대를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하면 [표 Ⅳ-10]과 같다. 표에서 30세 이상 연령대는 10세 단위로 구분했지만 29세 이하는 18-26세와 27-29세, 각각 9년과 3년 기간으로 구분했다. 이는 ① 국민연령 가입기간은 18세부터이며, ② 26세 이하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에 해당하지만 27세 이상은 무소득자라도 배우자가 아니면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27세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 연령대의 기간이 다름에 따른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각 셀의 규모를 %로 나타낼 때는 18-26세와 27-29세의 규모를 10년 기간으로 늘렸을 때의 규모를 괄호로 제시하였다. 즉 괄호 안의 수치는 18-26세 연령대는 원래 수치에 10/9를 곱한 것이며, 27-29세 연령대는 원래 수치에 10/3을 곱한 것이다. 사각지대 규모는 남성 45.8%, 여성 54.2%로 남성보다 여성이 9%P 정도 많다. 이를 다시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18-26세 남녀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30-59세 연령대 여성이 많다. 18-26세 연령대 사각지대는 대부분 학업과 군 복무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 30-59세 연령대 사각지대 규모가 많은 것은 무소득배우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성별·연령별 사각지대를 다시 사유별(적용제외, 납부예외, 장기체납)로 구분한 [표 Ⅳ-11]을 보면 분명하다.

[표 Ⅳ-10] 성별·연령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2020. 12. 기준, 천명)

| 구분 | 계 | 18-26세 | 27-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
| 전체 | 12,630 | 4,070 | 776 | 2,261 | 2,701 | 2,822 |
| | 100.0% | 32.2(35.8)% | 6.1(20.3)% | 17.9% | 21.4% | 22.3% |
| 남성 | 5,782 | 2,232 | 411 | 876 | 1,046 | 1,216 |
| | 45.8% | 17.7(19.7)% | 3.3(11.0)% | 6.9% | 8.3% | 9.6% |
| 여성 | 6,848 | 1,838 | 365 | 1,385 | 1,655 | 1,606 |
| | 54.2% | 14.6(16.2)% | 2.9(9.7)% | 11.0% | 13.1% | 12.7% |

자료: 유희원 외 2021, 73.

각 셀의 값을 보면 18-26세 남녀 적용제외자 규모가 각각 15.5%, 13.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크다. 그다음으로 40-49세, 50-59세, 30-39세의 여성 적용제외자가 7.7%, 9.7%, 8.8%로 크다. 27세 미만 남녀 적용제외자는 학업과 군 복무가 대표적 사례일 것이며, 30세 이상 여성 적용제외자는 무소득배우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사각지대 유형을 보면 적용제외가 67.4%(남성 28.0%, 여성 39.4%)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납부예외 24.5%(남성 13.5%, 여성 11.0)이며, 장기체납은 8.1%(남성 4.2%, 여성 3.9%)로 가장 작다. [그림 Ⅳ-8]에서 확인하였듯 적용제외자가 사각지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대 초반을 제외하면 30대 이상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1] 유형별·성별·연령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2020. 12. 기준, %)

| | 구분 | 계 | 18-26세 | 27-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
| 납부예외 | 남성 | 13.5 | 3.7(4.1) | 1.9(6.2) | 3.2 | 2.6 | 2.2 |
| | 여성 | 11.0 | 2.7(3.0) | 1.3(4.5) | 2.6 | 2.0 | 2.4 |
| 적용제외 | 남성 | 28.0 | 13.9(15.5) | 1.3(4.2) | 3.0 | 4.2 | 5.6 |
| | 여성 | 39.4 | 11.8(13.1) | 1.5(4.9) | 7.7 | 9.7 | 8.8 |
| 장기체납 | 남성 | 4.2 | 0.1(0.1) | 0.1(0.4) | 0.8 | 1.5 | 1.8 |
| | 여성 | 3.9 | 0.1(0.1) | 0.1(0.3) | 0.7 | 1.4 | 1.6 |

자료: 유희원 외외 2021, 74.

[표 Ⅳ-12]는 사각지대 유형별 미납 사유이다. 적용제외 사유 중에는 무소득배우자가 62.4%로 가장 많고, 이어서 27세 미만이 30.8%로 두 번째이다. 두 경우가 전체의 93%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납부예외 사례로는 소득활동중단이 85.4%로 가장 많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대상자의 40%정도로 광범위하다. ② 이러한 사각지대의 2/3 이상은 제도외적 사각지대(적용제외)이다. ③ 적용제외는 대부분 무소득배우자와 27세 미만에 기인한다. ④ 사각지대의 1/4을 점유하는 납부예외는 거의 소득활동중단과 재학에 기인한다. ⑤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속한 경우는 8% 정도로 매우 적다.

[표 Ⅳ-12] 사각지대 유형별 미납 사유(%)

| 적용제외 | 무소득배우자 | 27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 |
|---|---|---|---|---|
| | 62.4 | 30.8 | 6.4 | 0.3 |
| 납부예외 | 소득활동중단 | 재학 | 재해·생활곤란 | 기타 |
| | 85.4 | 9.9 | 2.7 | 0.9 |

## 3. 정책개선 방향

### 1) 근로시기 남녀의 가입기간 격차 해소

분석 결과와 같이 노후시기의 소득불평등은 근로세대보다 크며, 전반적인 노후소득수준도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수급권에 있어서는 남녀의 성별격차가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가입기간이 남성보다 4년 이상 짧고,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50대 후반 남녀격차는 7년 이상이다. 단순히 가입기간의 격차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의 가장 큰 부분은 적용제외자인데, 적용제외의 가장 큰 사유는 여성의 비경제활

동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3장에서 제시했듯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근로시기 여성의 노동이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가사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국면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려야 한다.

한편으로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 출산과 육아라는 점에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예를 들어 유희원 2021; 유호선·김아람 2020; 이윤진 2017 등).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크레딧을 출산에 한정하지 않고 육아기간을 포함한 모성크레딧으로 전환한다. 자녀 별로 출산 및 육아를 포함한 기간을 모두 크레딧으로 인정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의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출산크레딧은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가정이 2명 내외의 자녀를 두는 것을 고려하면 수급권 확보 및 가입기간 연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따라서 첫째아부터 크레딧을 인정하고, 자녀당 24개월 이상의 크레딧을 부여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면 해외에서도 대부분 모성크레딧은 자녀당 3년 이상의 크레딧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출산 동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출산과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보험료 납부 단절 손실을 예방하는 동시에, 출산이 갖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도 하다. 셋째, 단순히 출산·육아크레딧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돌봄크레딧, 장애인돌봄크레딧 등 돌봄 노동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유호선·김아람 2020). 이는 비단 여성의 역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봄은 특히 중증일 때 가족 구성원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이들의 소득활동이 제한되게 된다.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크레딧은 이들의 소득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넷째, 현행 크레딧은 가입자의 출산 직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연령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형태이다. 즉, 출산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장래의 연금수급시점에 가입기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남성 배우자가 먼저 수급시기에 도달하고, 여성은 경력단절로 수급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남성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출산크레딧의 취지를 고려하면 출산의 행위 주체인 여성에게 수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구 주요 국가에서는 크레딧을 출산 직후 적용하며 출산과 모성, 양육 크레딧이 함께 적용되어 크레딧만으로도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도 출산크레딧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모성크레딧을 도입하고,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가입기간을 인정받도록 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성별 가입기간 격차가 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위에서도 밝혔듯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를 가구로 전제하고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남성 전일제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으며, 여성은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는 남성 가구주의 경제활동만으로도 가구를 부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 외환위기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었으며 가족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였고 1인가구 역시 늘었으며, 혼인형태 역시 이전보다 다양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주 소득자인 가구주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입대상을 복잡하게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무소득자라 하여도 미혼인 경우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하며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 국민 수용성 문제, 가입자 관리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정인영·김아람 2018; 유희원 외 2021). 또한 대부분 가구에서 가구주와 수급권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노후 소득에 있어서도 남녀의 격차가 발생하며 노후시기의 가구 내 성역할 분리와 경제활동 격차를 유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구 중심의 가입구조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3장의 선택적 시간제 활성화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네덜란드는 선택적 시간제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연금권리를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였고 미가입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로의 연금 가입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 2)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방안

출산크레딧 확대와 모성크레딧, 돌봄 크레딧 도입, 개인 단위로의 연금가입구조 재편은 근로시기의 성별 가입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대안이다. 한편으로 성별 격차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별, 종사상 지위 별 가입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확대와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분석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짧은 가입기간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기때문에, 기초연금 확대와 소득대체율 조정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한 논의부터 살펴보자. 소득대체율 인상론은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2028년 이후 40년 가입 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40%인 소득대체

율을 45% 혹은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이 미흡한 것은 제도상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수급권자가 많고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바꾸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만 인상하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에 효과적이지 않다. 현행의 가입률 및 가입기간 상황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이 가입기간이 긴 고소득층(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이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강화시켜 노후시기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표 Ⅳ-13]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

(단위: 만원)

| | B값 | A값 | 가입기간(년) | 월 평균 수급액 | | | 차이1 | 차이2 |
|---|---|---|---|---|---|---|---|---|
| | | | | 현행 (40%) | ↑5%P (45%) | ↑10%P (50%) | | |
| | | | | a=1.2 | a=1.35 | a=1.5 | | |
| 저소득 (2분위) | 199.5 | 254 | 14.1 | 32.14 | 36.16 | 40.17 | 4.02 | 8.03 |
| 중간소득 (3분위) | 258.6 | | 18.6 | 47.78 | 53.75 | 59.73 | 5.97 | 11.95 |
| 고소득 (5분위) | 564.8 | | 21.7 | 88.61 | 99.69 | 110.77 | 11.08 | 22.15 |

관련하여 [표 Ⅳ-13]은 소득대체율이 각각 5%P, 10%P 인상시 소득수준별 월평균 연금수급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연금급여액 산식에서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상수값(a)은 1.2가 되며, 소득대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a값은 각각 1.35, 1.5가 된다.[39] 연금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인 A는 2021년 기준 254만원 이며, [표 Ⅳ-4]의 B값(본인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은 3절의 분석을 통해 구한 소득분위별 평균이다. 가입기간 역시 3절의 분석을 통해 구한 값이며 연금제도의 성숙을 가정해 [표 Ⅳ-4]의 40대 후반 가입기간에 예상 추가 가입기간을 더하여 계산했다.[40] '차이1'은 5%P 인상과 현행(소득대체율 40%)의 차이, '차이2'는 10%P 인

39) 잘 알려져 있듯 연금급여 산식은 a*(A+B)*0.05n이다. 여기서 a는 흔히 수익비라 얘기하는 상수값으로 현행 1.2이며 장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A는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으로 흔히 균등부분이라고 한다. B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 월소득으로 비례부분이라고 한다. n는 가입개월 수이다. 따라서 급여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지고, 자신의 소득이 높아질수록(B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A값) 높아진다. 문제는 연금급여 산정에 자신의 기여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비례원칙과, 전체소득자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는 균등원칙이 동시에 있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균등부분으로 인해 내는 것보다 더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40) [표 Ⅳ-2-4]의 45~49세 2, 3, 5분위 가입기간은 9.4, 12.4, 14.4년이다. 59세까지 평균 12년가량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남은 기간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표 Ⅳ-9]의 값보다 실제 가입기간은 늘어날 것이다. 정확히 얼마만큼 늘어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20대 중반 이후 24년간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가입기간)+12년*{(현재 가입기간)/24년}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2분위는[표 Ⅳ-4]에서 9.4년인데

상과 현행(소득대체율 40%)의 차이다. 5%P 인상 시 저소득자의 연금액 증가분은 4.02만 원인데 고소득자의 증가분은 11.08만 원이다. 10%P 인상 시 연금액 증가분은 각각 8.03만 원과 22.15만 원이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 5분위 소득계층의 연금액 증가분은 2분위 소득계층 연금액 증가분의 3배 가까이 된다. 그런데 이는 연금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연금수급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혜택을 볼 수 없다. 연금 미수급권자는 저소득층일수록 많다.[41] 정리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은 고소득 집단에게 집중되며, 노후소득보장이 더 절실한 저소득 집단은 혜택이 약하거나 없다. 앞서 논의했듯, 가입기간 격차는 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매우 크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크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가입기간 확충'이 소득계층 및 성별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된다. 본 연구의 가입기간 확충 방안으로 늘어나는 가입기간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다. 따라서 가입기간 확충에 따른 연금액 상승의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이뤄지려면 현행 대체율일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수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쉽지 않은데, 이에 추가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더더욱 수용성이 약하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강화론을 살펴보자. 기초연금 강화론은 당장 국민연금이 개혁되어도 현 노인세대의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기초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지급산식이 소득비례 부분과 재분배 부분으로 구성되어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높이고 대상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부분만을 남기자고 한다. 즉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와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 지위 보장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 현행 노인세대의 빈곤을 해결하고, 노후보장제도의 제도적 정합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김원섭 외 2016, 유종성 2022, 이용하 2022).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면 기초연금이 노후의 절대빈곤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남녀의 노후소득불평등 감소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최혜은·유종성 2022; 석재은·신동균·이기주 2015; 이채정·탁현우 2018; 김혜연 2017; 허수정·박희란 2018 등). 다만 전반적인 노후불평등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노후불평등 감소에 효과가 있

위와 같이 계산하면 14.1년이 된다.

41) 또한, 이는 현재의 재분배구조(A+B)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향후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재분배구조는 완화된다. 즉 A와 B 값을 1:1로 더하는 것에서 본인 소득인 B값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즉 a값 상향)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연금액 증가분 격차를 앞서의 계산보다 크게 한다.

다는 견해가 많지만 반대로 절대빈곤의 완화효과보다 상대적 빈곤의 완화효과는 크지 않으며 현재의 수준보다 지급액을 더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연명·한신실 2017). 한편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1절과 [표 Ⅳ-13]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연금의 상대빈곤 감소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노후의 소득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최혜은·유종성 2022; 허수정·박희란 2018; 김혜연 2017).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그리고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불평등 강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역진성)은 전반적인 가입기간이 짧고 가입자 내의 가입기간 격차가 크며, 미수급자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짧은 가입기간을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기초연금으로 노후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해도 빈곤과 불평등의 기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의 가입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적연금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기존 연구도 근본적인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수급권 확대와 경제활동의 성별 격차 해소를 지적하고 있다(석재은·신동균·이기주 2015; 김혜연 2017).

한편 향후 기초연금은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월 40만 원이면 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보다 약간 낮다.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규정을 없앤다면 부정수급 문제,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은 그대로 혹은 낮아지는 상태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높아지면, 일종의 소득효과로 인해 현재보다 국민연금 가입 동기는 약화될 것이다. 현재의 기초연금 수준, 혹은 40만원으로 인상될 때 국민연금 가입동기가 약화될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이에 대한 실증도 쉽지 않지만, 만약 40만원을 넘어서 5, 60만원 선까지 확대된다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42)]

물론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채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행 노인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유지하더라도 미래 노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기초연금이 상대빈곤 완화효과를 가지려면 5~60만원 선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현재는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러한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가입동기를 약화시킬 충분한 유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이 비례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으로 우리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제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중층적 노후보장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1층에 위치한 국민연금이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실질적인 1층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현재의 노인만이 아닌 미래의 노인빈곤과 노후불평등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연금 강화는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확대된 공공부조제도는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다. 현재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수준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현재의 노후보장구조에 보충적 소득보장제(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더해 현재의 노인빈곤과 노후불평등에 대응하는 것,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준 보편적 제도인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제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은 수급자와 가입기간을 늘려 중심적 노후보장체계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 수급권 확보를 위한 기여보조제도를 제안한다([그림 Ⅳ-9] 참조).

[그림 Ⅳ-9]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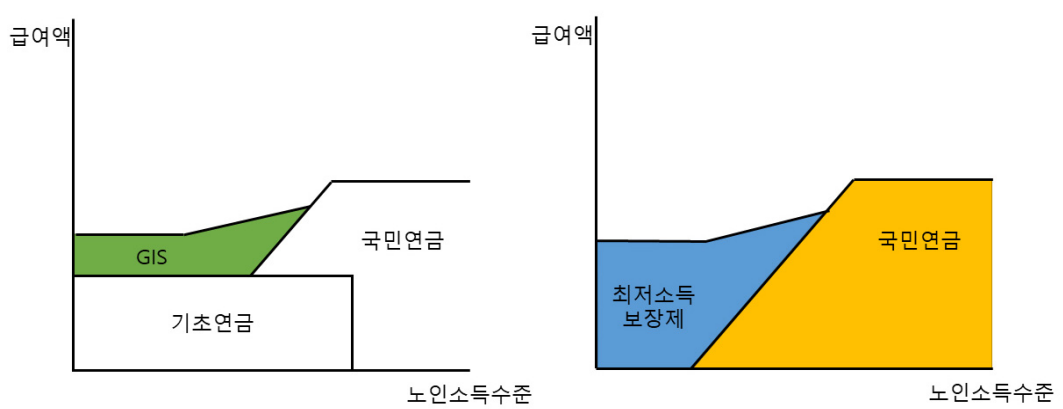


대안1. 보충적 소득보장제(GIS) 도입　　대안2. 기초연금의 최저소득보장제로의 전환

주: 색칠되지 않은 부분은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의미.
자료: 노대명 외 2020, 287; 주은선 2022, 108.

첫 번째 방식에서 보충적 소득보장제란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여 보충적 방식으로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이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주은선 2022, 106). 이는 현행 기초연금을 유지하되 GIS를 추가해 당장의 노인 빈곤에 대응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기초연금을 축소하거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다. 동시에 GIS를 통해서는 절대빈곤선 이하의 노인만 아니라 기초생보 급여보다 상향된 소득수준 기준에 따라 상대빈곤에 처한 노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노대명 외 2020). 또한 빈곤상황, 국민연금 수급률, 급여수준 변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대상 범위와 보장수준, 감액률을 조정하기가 기존의 공적연금제도보다 용이하다. 다만 여기서는 GIS의 상한과 감액률을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수급률 증가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수급률 증가와 가입기간 확대로 중심적 노후보장체계가 되면 GIS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행의 기초연금과 GIS를 최저소득보장제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보장은 최저소득보장제가, 소득에 비례한 국민 다수의 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 맡게끔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중복운영과 복잡성을 간결하게 할 수 있고, 노인빈곤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의 조건이 국민연금의 확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근로소득보장제도 도입이나 근로장려세제의 연계 강화 등도 모색해야 한다.[43]

다만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다. 특히 플랫폼노동 확대와 기술혁신속도의 변화는 소득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작동해도 국민연금 가입률을 낮출 위험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적 요건으로 보편적 기여보장제를 제안한다. 이는 18세에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20대 중반(18~23, 24세), 50대 후반(55~59세)의 두 기간에 보험료 전액 혹은 반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10년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을 대폭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초기(18세-20대 중반)와 말기(50대 중반 이후)는 다른 기간에 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입기간을 확충하자는 것이다.[44] 만약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면 모든 국민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갖는 것이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 앞서 제안한 모성크레딧의 확대 개편까지 이루어진다면 경제활동 없이도 15~16년 정도

43) 이에 대한 논의는 노대명 외(2020)을 참조.

44)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태일·최영준(2017)를 참조.

의 기여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 대안의 시행에는 재원이 소요된다. 현행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이다. 본인소득이 평균수준이라면, 2022년 기준으로 10년 가입하면 월 32만 원을 수급한다. 즉 기초연금 대신 가입기간이 10년 정도 연장되면 연금수급액은 동일하다. 하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수급권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산·양육 크레딧을 받아도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없다. 다른 크레딧도 연금수급권이 확보되어야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가망이 없으면, 무소득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동기가 없다. 하지만 연금 수급권이 있으면 추가되는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수급액이 늘어나므로 가입동기가 커진다.[45]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괄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에 대한 충분한 보장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스스로의 노후 대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한 조건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다쳐서 일하게 되지 못할 때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근시안적 행태로 인해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소비에 치중하거나, 현재의 여건이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너무 어렵기에 저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노후대비를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고, 노인 빈곤이 증가한다. 이는 시장의 실패이고 이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모든 노후소득을 정부가 보장할 수는 없다. 적절한 교정이 필요하다. 적절한 교정은 시장의 실패가 없는 가정적 상황(counterfactual condition)에 도달하게끔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노후소득 보장에 대입하면 모든 개인이 노후에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인지하여 근로시기에 충분히 저축하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취약한 원인은 앞서 분석한 대로 짧은 가입기간과 광범위한 사각지대이다. 그리고 이는 근로시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시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 즉, 근로시기의 불평등이 해결되어야 노후 불평등도 완화된다. 때문에 기초연금은 비록 현재의 노인빈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 재정지출을 피하기 어렵다. '스스로의 노후 대비'를 촉진하지 못하기에 근로시기 불평등을 벗어나는데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45) 보편적 수급권 확보는 일본의 기초연금과 유사하지만 보다 전향적이다. 일본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하며 기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확보한다. 그런데 무소득자 또는 저소득자는 관대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한다.

# 2022
# 민주연구원
# 불평등 보고서

# 제5장

## 자산불평등의 소득불평등 강화 효과

# 제5장 자산불평등의 소득불평등 강화 효과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의 누적된 모습을 보여준다. 자산은 소득의 누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누적된 것이 자산이다. 자산은 소득의 누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산 그 자체에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인 잠재 자본이득은 가구 소득 설문조사 상의 소득에서는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득이고 과세 관련 소득개념으로 논의되는 넓은 의미의 소득인 '포괄소득(Comprehensive Income)'[46]개념을 적용하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과 귀속임대소득[47]도 모두 소득에 포함된다.

부동산 자산가격의 증가는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많은 불로소득을 발생시켰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두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부동산이라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노동소득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자산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또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자산은 가구 경제에서 경제적 완충장치 또는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길 경우 자산이 있는 경우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 등에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은 곧 주거의 질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자산일수록 싼 집을 찾아 출퇴근 시간은 더욱 길어지며 누릴 수 있는 주거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6) 포괄소득은 헤이그사이몬스(Haig-Simons) 소득이라고도 하는데 Haig(1921)는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 경제력의 순증가분을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고 Simons(1938)는 이를 발전시켜 "개인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1) 소비한 것의 시장가치에 (2) 재산가치의 변동분을 더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구찬동·오정일, 2011).

47) 자가 거주자가 임차 거주자에 비해 누리는 경제적 이득을 말하는데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1.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추이

불평등의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 지니계수이다. 0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데이터를의 가용기간인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산지니계수 이외에도 최대한 장기간의 자산불평등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과 대우패널 자료를 사용한 순자산 지니계수도 함께 살펴보았다.

가구 순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상승하다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다시 자산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다(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2021년의 자산 지니계수는 0.602이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불평등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노동패널의 자산 지니계수가 대체로는 비슷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노동패널의 경우 최근 표본추가가 있었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좀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소득불평등도는 자산불평등도와 달리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의 소득은 세후 소득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V-1] 순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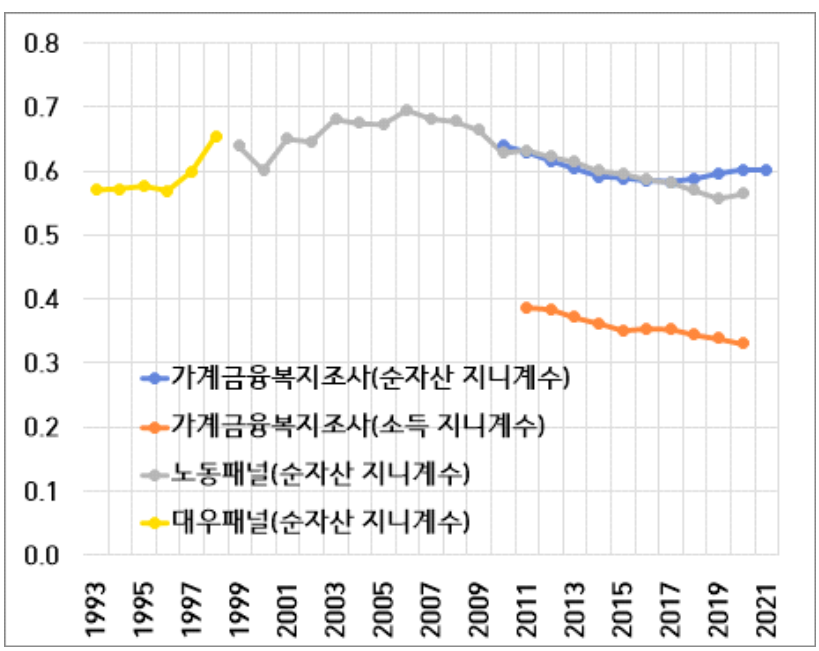


자료: 대우패널은 전병유 외(2016)에서 인용, 그 이외는 직접 계산.

## 2. 자산 유형별 자산불평등 기여도

가구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별로 자산불평등도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해[48] 해보면 상대기여도는 거주주택 자산이 44.7%로 가장 크고 한계효과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금액의 총량이 늘어나면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거주주택 자산은 음의 한계효과를 가져 거주주택 가액 총량의 증가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자산불평등 기여도가 부동산에 비해 매우 작고 대체로 음의 한계효과를 가지나 주식/채권/펀드의 경우 양의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자산유형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

| | 총액 비중 (s) | 지니 상관계수[1] (r) | 개별소득 지니계수[2] (g) | 기여도 | | 상대적 한계효과[5] ([s*g*r/G]-s) |
|---|---|---|---|---|---|---|
| | | | | 절대기여도[3] (s*r*g) | 상대기여도[4] (s*g*r/G) | |
| 자산_실물자산_부동산_거주주택금액 | 0.457 | 0.848 | 0.702 | 0.272 | **0.447** | -0.010 |
| 자산_실물자산_부동산_거주주택이외부동산금액 | 0.264 | 0.875 | 0.882 | 0.204 | **0.335** | 0.071 |
| 자산_금융자산_저축_적립예치식저축_수시적립예치식저축금액 | 0.077 | 0.719 | 0.740 | 0.041 | **0.067** | -0.010 |
| 자산_실물자산_기타실물자산 | 0.046 | 0.636 | 0.751 | 0.022 | **0.036** | -0.010 |
| 자산_금융자산_저축_적립예치식저축_저축성보장성보험금액 | 0.049 | 0.600 | 0.729 | 0.022 | **0.035** | -0.014 |
| 자산_금융자산_저축_적립예치식저축_주식채권펀드금액 | 0.028 | 0.770 | 0.936 | 0.020 | **0.033** | 0.005 |
| 자산_금융자산_현거주지전월세보증금 | 0.064 | 0.347 | 0.895 | 0.020 | **0.032** | -0.031 |
| 자산_실물자산_부동산_계약금중도금납입금액 | 0.009 | 0.579 | 0.985 | 0.005 | **0.008** | -0.001 |
| 자산_금융자산_저축_기타저축금액 | 0.007 | 0.575 | 0.959 | 0.004 | **0.007** | -0.001 |
| **전체** | **1** | **1** | **0.609** | **0.609** | **1** | **0** |

주: 1. 가구의 해당 소득과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의 상관관계.
2. 해당 소득 자체의 지니계수.
3.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수치. 개별 소득의 절대기여도의 합이 총소득(전체) 지니계수.
4. 절대기여도가 전체 지니계수(절대기여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5. 해당 소득의 총량이 변화할 때 지니계수가 변화하는 정도.

48) Lerman & Yitzhaki(1985)의 다음과 같은 분해식을 사용

$$G=\sum_{k=1}^{K}\left[\frac{cov(x_k,F)}{cov(x_k,F_k)}\cdot\frac{2cov(x_k,F_k)}{m_k}\cdot\frac{m_k}{m}\right]=\sum_{k=1}^{K}R_kG_kS_k$$

아래는 자산 유형을 좀더 단순화하여 분해한 것인데 지니 상관계수를 보면 부동산자산이 총자산 순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산총액이 큰 가구가 부동산 자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자산은 총액 비중으로는 73%이지만 자산 지니계수에는 79% 기여하며 다른 자산과 달리 양의 한계효과를 가져 그 양의 증가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표 V-2] 자산유형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 (구분 단순화)

| | 총액 비중 (s) | 지니 상관계수[1] (r) | 개별소득 지니계수[2] (g) | 기여도 | | 상대적 한계효과[5] ([s*g*r/G]-s) |
|---|---|---|---|---|---|---|
| | | | | 절대기여도[3] (s*r*g) | 상대기여도[4] (s*g*r/G) | |
| 자산_실물자산_부동산금액 | 0.730 | 0.962 | 0.684 | 0.481 | **0.790** | 0.060 |
| 자산_실물자산_기타실물자산 | 0.046 | 0.636 | 0.751 | 0.022 | **0.036** | -0.010 |
| 자산_금융자산_저축금액 | 0.161 | 0.790 | 0.680 | 0.087 | **0.142** | -0.019 |
| 자산_금융자산_현거주지전월세보증금 | 0.064 | 0.347 | 0.895 | 0.020 | **0.032** | -0.031 |
| **전체** | **1** | **1** | **0.394** | **0.394** | **1** | |

주: 1. 가구의 해당 소득과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의 상관관계.
2. 해당 소득 자체의 지니계수.
3.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수치. 개별 소득의 절대기여도의 합이 총소득(전체) 지니계수.
4. 절대기여도가 전체 지니계수(절대기여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5. 해당 소득의 총량이 변화할 때 지니계수가 변화하는 정도.

## 3. 분위별 자산 점유율 추이

2010년 이후 분위별 자산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순자산 하위 70% 가구의 점유율은 증가하다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 상위 10%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지니계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산불평등도가 감소하다가 최근 몇 년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은 전년대비 8분위와 9분위에서 자산점유율이 증가하고 최상층인 10분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49]

[표 V-3]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2010-2021)

| 분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추세선 |
|---|---|---|---|---|---|---|---|---|---|---|---|---|---|
| 0-10 | -0.9% | -0.8% | -0.4% | -0.4% | -0.2% | -0.2% | -0.3% | -0.2% | -0.2% | -0.3% | -0.3% | -0.2% | |
| 10-20 | 0.7% | 0.7% | 0.7% | 0.8% | 0.9% | 0.8% | 0.8% | 0.8% | 0.8% | 0.7% | 0.7% | 0.7% | |
| 20-30 | 1.6% | 1.7% | 1.8% | 1.9% | 2.0% | 2.0% | 2.0% | 2.0% | 1.9% | 1.9% | 1.8% | 1.7% | |
| 30-40 | 2.8% | 2.9% | 3.0% | 3.2% | 3.3% | 3.4% | 3.4% | 3.4% | 3.3% | 3.2% | 3.2% | 3.0% | |
| 40-50 | 4.3% | 4.4% | 4.4% | 4.6% | 4.8% | 4.9% | 5.0% | 5.0% | 5.0% | 4.8% | 4.7% | 4.6% | |
| 하위 50% | 8.6% | 8.9% | 9.5% | 10.1% | 10.8% | 10.9% | 10.9% | 11.0% | 10.8% | 10.4% | 10.1% | 9.9% | |
| 50-60 | 6.0% | 6.3% | 6.2% | 6.5% | 6.7% | 6.8% | 7.0% | 7.0% | 6.9% | 6.7% | 6.6% | 6.4% | |
| 60-70 | 8.3% | 8.8% | 8.6% | 8.9% | 9.0% | 9.1% | 9.3% | 9.4% | 9.2% | 9.0% | 9.0% | 9.0% | |
| 70-80 | 11.8% | 12.1% | 11.8% | 12.2% | 12.3% | 12.4% | 12.6% | 12.7% | 12.6% | 12.4% | 12.4% | 12.7% | |
| 80-90 | 18.1% | 17.8% | 17.7% | 17.8% | 17.9% | 17.9% | 18.1% | 18.2% | 18.2% | 18.2% | 18.3% | 18.7% | |
| 90-99 | 33.2% | 32.7% | 32.9% | 32.0% | 31.2% | 31.0% | 30.7% | 31.0% | 31.5% | 31.9% | 32.2% | 32.4% | |
| 99-100 | 14.1% | 13.4% | 13.2% | 12.7% | 12.1% | 11.9% | 11.5% | 10.8% | 10.8% | 11.4% | 11.5% | 10.9% | |
| 90-100 | 47.2% | 46.1% | 46.2% | 44.7% | 43.3% | 42.9% | 42.1% | 41.8% | 42.3% | 43.3% | 43.7% | 43.3% | |
| 상위 30% | 77.1% | 76.0% | 75.7% | 74.6% | 73.6% | 73.2% | 72.8% | 72.7% | 73.1% | 73.9% | 74.4% | 74.7%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49)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표본의 크기가 크긴 하지만 행정자료가 아닌 표본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최상위층의 점유율은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 4. 가계 부채의 분포

전체 가구의 58.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높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비율이 20.6%에 불과하지만 소득 상위 10%의 가구는 78.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이 부족한 생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고소득일수록 대출이 더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4] 소득계층별 부채보유 비율(2021)

| 소득10분위 | 부채 보유 | 부채 미보유 | Total |
|---|---|---|---|
| D01 | 20.56 | 79.44 | 100 |
| D02 | 36.88 | 63.12 | 100 |
| D03 | 51.36 | 48.64 | 100 |
| D04 | 60.20 | 39.80 | 100 |
| D05 | 66.54 | 33.46 | 100 |
| D06 | 68.17 | 31.83 | 100 |
| D07 | 74.48 | 25.52 | 100 |
| D08 | 76.24 | 23.76 | 100 |
| D09 | 76.81 | 23.19 | 100 |
| D10 | 78.75 | 21.25 | 100 |
| Total | 58.27 | 41.73 | 100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한편 부채가 있는 경우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느끼고 있다. 소득 상위 10%의 경우 대출이 있어도 절반 이상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 하위 10%의 경우는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적지만 부채가 있는 경우 76%의 가구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생계부담정도(2021)

| 소득10분위 | 부담이 없음 | 약간 부담 | 매우 부담 | Total |
|---|---|---|---|---|
| D01 | 24.00 | 39.53 | 36.47 | 100 |
| D02 | 24.47 | 44.07 | 31.46 | 100 |
| D03 | 30.27 | 45.12 | 24.6 | 100 |
| D04 | 29.92 | 46.52 | 23.56 | 100 |
| D05 | 30.16 | 49.95 | 19.89 | 100 |

| 소득10분위 | 부담이 없음 | 약간 부담 | 매우 부담 | Total |
|---|---|---|---|---|
| D06 | 33.36 | 49.54 | 17.09 | 100 |
| D07 | 34.77 | 50.59 | 14.64 | 100 |
| D08 | 36.29 | 46.89 | 16.82 | 100 |
| D09 | 42.11 | 45.68 | 12.22 | 100 |
| D10 | 52.05 | 39.64 | 8.31 | 100 |
| Total | 34.77 | 46.34 | 18.89 | 100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도.

부채 상환 원리금으로 가구주 30~60세의 가구에선 평균 1천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같은 연령대에서 상환액 상위 10% 가구의 경우 연간 3천만원 정도를, 상위5% 가구는 6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표 V-6] 가구주 연령대별 원리금 상환액(2021)

(단위: 만원, 연간)

| 연령대 | p10 | p25 | 중위값 | 평균 | p75 | p90 | p95 | p99 |
|---|---|---|---|---|---|---|---|---|
| 30세미만 | 0 | 0 | 50 | 477 | 430 | 1,046 | 1,700 | 8,396 |
| 30~40세 미만 | 0 | 10 | 500 | 1,482 | 1,310 | 3,246 | 6,320 | 18,027 |
| 40~50세 미만 | 0 | 0 | 549 | 1,651 | 1,536 | 3,708 | 6,400 | 19,520 |
| 50~60세 미만 | 0 | 0 | 316 | 1,374 | 1,210 | 2,898 | 5,154 | 18,200 |
| 60세이상 | 0 | 0 | 0 | 493 | 230 | 1,120 | 2,120 | 8,240 |
| Total | 0 | 0 | 64 | 997 | 830 | 2,210 | 4,131 | 14,844 |

주: 분위수는 원리금 상환액 기준임.

## 5.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1)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이며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1-1. 부동산 임대소득

1-2. 자가 거주자의 귀속임대소득

2-1. 실현 자본이득 (양도차익)

2-2. 잠재 자본이득 (미실현 가격상승분)

보통 미시자료의 분석에서는 1-1 또는 2-1의 소득만 부동산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현 경우 부동산소득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현실에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여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소득을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토지가격은 다른 OECD국가의 두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토지총액이 2020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은 1~3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5배에 달했다. 높은 토지가격 수준과 가격 급등의 반복은 주거불안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증가시켜 부동산 소유/미소유자간의 역재분배가 커지게 한다.

[그림 V-2] OECD 국가의 GDP 대비 토지가격 추이(196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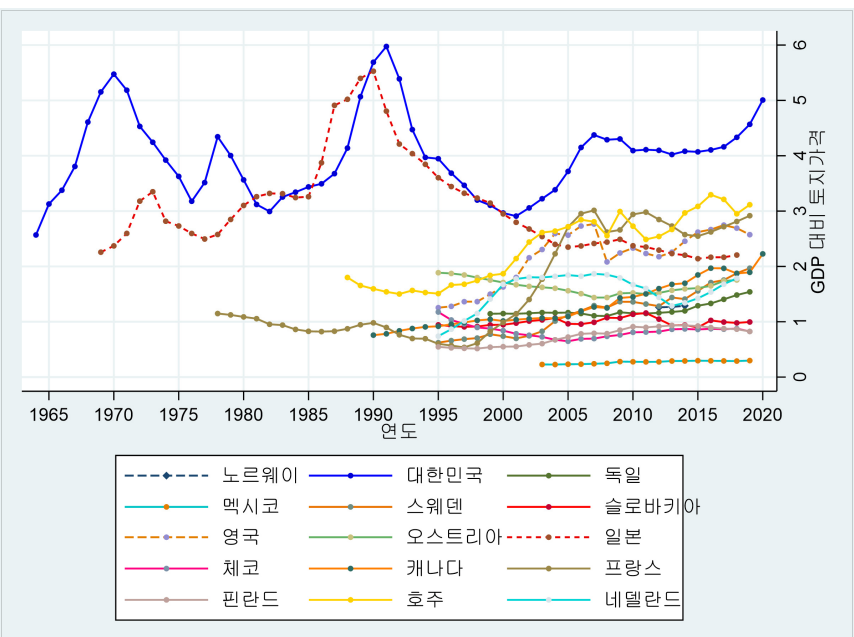


주 1: 한국의 경우 OECD 자료는 2019년까지만 제공되므로 2020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잠정)를 사용함. 1995년 이전 자료는 별도의 추계자료(조태형 외, 2015)[50]를 사용하여 연장하였음.
2: 일본의 경우 94년까지만 OECD 자료가 존재하므로 93년 이전은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의 National Accounts for 1998(68SNA) 중 "Non-reproducible tangible assets"의 가액을 사용하였는데 OECD를 통해 제공하는 94년도 토지가액를 기준으로 비율을 조정(1.04배)하여 사용함.

50) 우리나라의 1995년 이전 토지자산 총액을 추정한 시도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조태형 외(2015)의 연구가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였음. 참고로 김태동 외(1989)의 추산에 의하면 가장 높았던 시기는 GDP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함.

### 3) 분석방법 및 사용 데이터

부동산소득이 다른 여타 소득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하여 Lerman & Yitzhaki(1985)가 제시한 아래와 같은 지니계수 분해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구 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소득유형들이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기여도와 해당소득의 양이 변할 때 불평등도에 미칠 한계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G=\sum_{k=1}^{K}\left[\frac{cov(x_k,F)}{cov(x_k,F_k)}\cdot\frac{2cov(x_k,F_k)}{m_k}\cdot\frac{m_k}{m}\right]=\sum_{k=1}^{K}R_kG_kS_k$$

여기에서 $G$는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낸다. $x_k$는 개별 가구의 k유형 소득, F는 누적분포함수로 소득의 순위를 나타내며 m은 평균(mean)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절대기여도($R_k{*}\,G_k{*}\,S_k$)를 모두 더하면 총 지니계수(G)가 되고 여기서 개별 소득의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기여도이다. $R_k$(corRelation)는 가구의 소득유형 k와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의 지니상관계수[51]로서 소득유형 k가 얼마나 총소득과 비례하는지를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소득 가구일수록 k소득도 많다면 이 값은 1에 가깝게 나올 것이고 저소득 가구일수록 이 소득이 많다면 이 값은 -1에 가깝게 나오게 된다. 만약 이 값이 음수로 나오게 되면 이 소득유형 k의 절대기여도 $R_k{*}\,G_k{*}\,S_k$는 음수가 되어 전체 지니계수(G)를 감소시키는(불평등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G_k$(Gini)는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로서 소득원천 k 자체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S_k$(Share)는 소득원천 k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체 가구소득에서 이 유형의 소득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해당소득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수록(G), 해당소득이 고소득자에게 더 집중되어 있을수록(R), 해당소득의 양이 클수록(S) 크게 나타난다.

지니계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의 유형별 소득액을 알 수 있는 미시자료가 필요한데 우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생산한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구의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동산 유형별[52]로 문항

51) 지니상관계수는 두 연속형 변수의 상관도를 측정하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두 순서형 변수의 상관도를 측정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절충한 방법이다(Schechtman & Yitzhaki, 1999).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선형 관계의 강도에 따라 -1에서 +1사이에 값이 위치한다.

52)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 토지, 건물(상가 및 사무실 등)으로 분류하여 설문 문항이 있고 2011년 이전에는 토지와 건물이 한 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귀속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기 때문이다.

소득은 크게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임금소득은 임금근로자가 응답한 연간 임금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사업순소득을 의미한다. 부동산소득은 자가거주자의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잠재 자본이득의 합이다. 재정패널조사에서 별도의 임대소득 조사 항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선 해당 문항의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별 부동산 자산액에 감정평가협회(2016)가 제공한 기준을 참조하여 임대료율 주택 3%, 일반건축물 3.75%, 토지 0.5%를 적용해서 추산하였다. 잠재 자본이득은 각 가구의 부동산자산 총액에 해당년도 보유손익 비율[53]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잠재 자본이득은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크므로 실제 개별가구에서 발생한 잠재 자본이득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개별가구의 자본이득은 차이가 있다는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지니계수 산출 및 분해에는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가구 균등화 소득을 적용하였다.

### 4) 지니계수 분해 결과(2020년도)

위의 방법을 통해 도출한 2020년도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는 [표 V-7]과 같다. 먼저 가구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0.402이며 이에 대한 임금소득의 기여도(상대기여도)는 35.9%, 임대소득의 기여도는13.1%, 자본이득의 기여도는 40.7%로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합한 부동산소득의 기여도는 53.9%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이 임금소득보다 소득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해당년도 부동산가액 대비 해당년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손익(한국은행 발표)의 비율.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도별 보유손익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4.02%, 2009년도 3.04%, 2010년도 3.20%, 2011년도 3.74%, 2012년도 1.59%, 2013년도 0.98%, 2014년도 3.24%, 2015년도 3.07%, 2016년도 3.55%, 2017년도 4.66%, 2018년도 5.70%, 2019년도 4.30%, 2020년도 8.78%.

[표 Ⅴ-7]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2020)

| | 총액 | | 지니 상관계수[2] | 개별소득 지니계수[3] | 기여도 | | 상대적 한계효과[6] |
|---|---|---|---|---|---|---|---|
| | 총액 (조원) | 총액비중 (s) | (r) | (g) | 절대기여도[4] (s*r*g) | 상대기여도[5] (s*g*r/G) | ([s*g*r/G]-s) |
| 임금소득 | 648 | 0.433 | 0.631 | 0.527 | 0.144 | 0.359 | -0.075 |
| 사업소득 | 222 | 0.133 | 0.323 | 0.810 | 0.035 | 0.086 | -0.046 |
| 임대소득 | 143 | 0.094 | 0.868 | 0.647 | 0.053 | 0.131 | 0.037 |
| 자본이득 | 441 | 0.294 | 0.868 | 0.641 | 0.164 | 0.407 | 0.113 |
| 기타소득 | 74 | 0.045 | 0.178 | 0.833 | 0.007 | 0.017 | -0.028 |
| 전체 | 1527 | 1 | - | 0.402 | 0.402 | 1 | 0 |

주: 1. 패널데이터의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액.
2. 가구의 해당 소득과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의 상관관계.
3. 해당 소득 자체의 지니계수.
4.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수치. 개별 소득의 절대기여도의 합이 총소득(전체) 지니계수.
5. 절대기여도가 전체 지니계수(절대기여도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6. 해당 소득의 총량이 변화할 때 지니계수가 변화하는 정도.

여기서 지니상관계수는 해당 소득이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 얼마나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를 나타내는데[54] 부동산소득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 한계효과는 해당 유형의 소득의 양이 변화할 때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나타낸다. 즉, 해당 소득의 총액이 1% 변화할 때 전체 불평등도(지니계수)가 몇%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동산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0.15로 부동산소득이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15% 증가함을 의미한다. 부동산소득의 한계효과만 양수로, 나머지 소득의 한계효과는 음수로 나타나 다른 소득들은 그 양이 증가할 때 전체 불평등이 감소하지만 부동산소득은 그 양이 증가할 경우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20)

재정패널 데이터가 생산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각 소득유형의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기여도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Ⅴ-8]과 같다.

54) 1에 가까우면 강한 비례관계, 0에 가까우면 관계가 없음, -1에 가까우면 강한 반비례관계를 의미함

[표 Ⅴ-8] 소득원천별 불평등 상대기여도 추이(2008-2020)

| 연도 | 임금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 기타소득 |
|---|---|---|---|---|
| 2008 | 47.2% | 21.2% | 30.4% | 1.3% |
| 2009 | 54.7% | 16.6% | 24.1% | 4.5% |
| 2010 | 54.6% | 18.6% | 24.7% | 2.0% |
| 2011 | 56.1% | 22.7% | 17.3% | 3.9% |
| 2012 | 60.1% | 17.4% | 19.0% | 3.5% |
| 2013 | 61.2% | 20.2% | 15.2% | 3.5% |
| 2014 | 56.4% | 16.4% | 25.5% | 1.8% |
| 2015 | 56.7% | 14.9% | 24.1% | 4.3% |
| 2016 | 56.7% | 12.5% | 27.7% | 3.2% |
| 2017 | 52.5% | 11.6% | 33.2% | 2.7% |
| 2018 | 49.5% | 9.9% | 37.5% | 3.1% |
| 2019 | 51.3% | 13.0% | 33.47% | 2.2% |
| 2020 | 35.9% | 8.6% | 53.85% | 1.7% |
| 평균 | 54.7% | 16.2% | 26.0% | 3.0% |

[그림 Ⅴ-3]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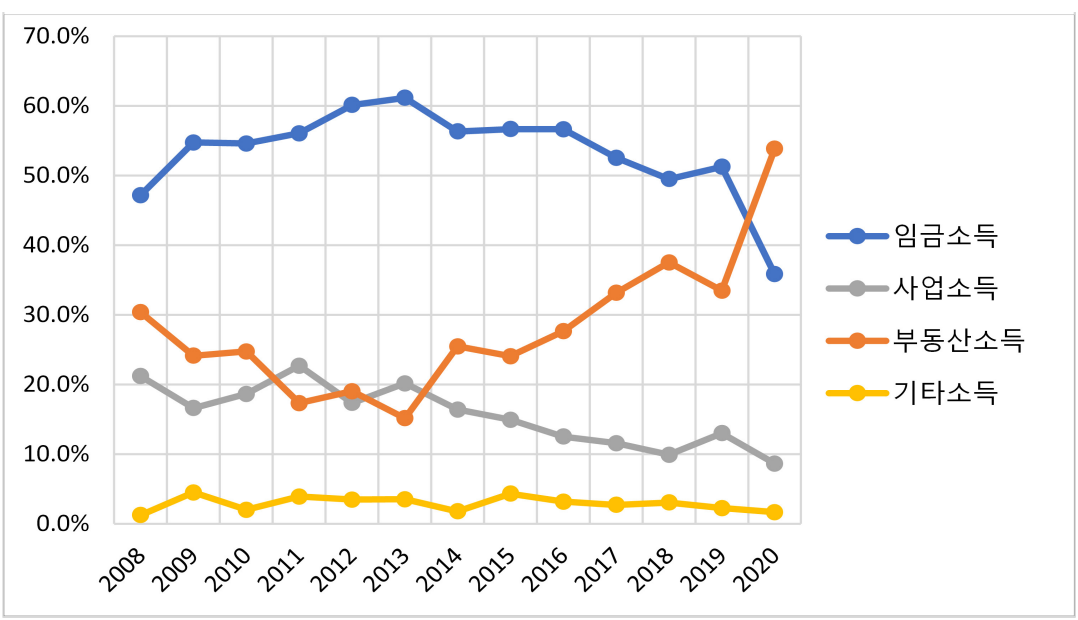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2008년 30.4%에서 2013년 15.2%까지 감소하다가 이후로 계속 상승하여 2020년엔 53.9%로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임금소득의 불평등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림 V-4]는 각 소득원천이 지니계수에 대해 갖는 상대적 한계효과 추이를 나타내는데 부동산소득은 모든 연도에서 양의 한계효과를 가져 부동산소득의 증가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0년도는 0.15로 분석기간 중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임금소득은 연도에 따라 음의 값과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대부분의 기간에 음의 값을 가져 불평등을 낮추는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천별 상대적 한계효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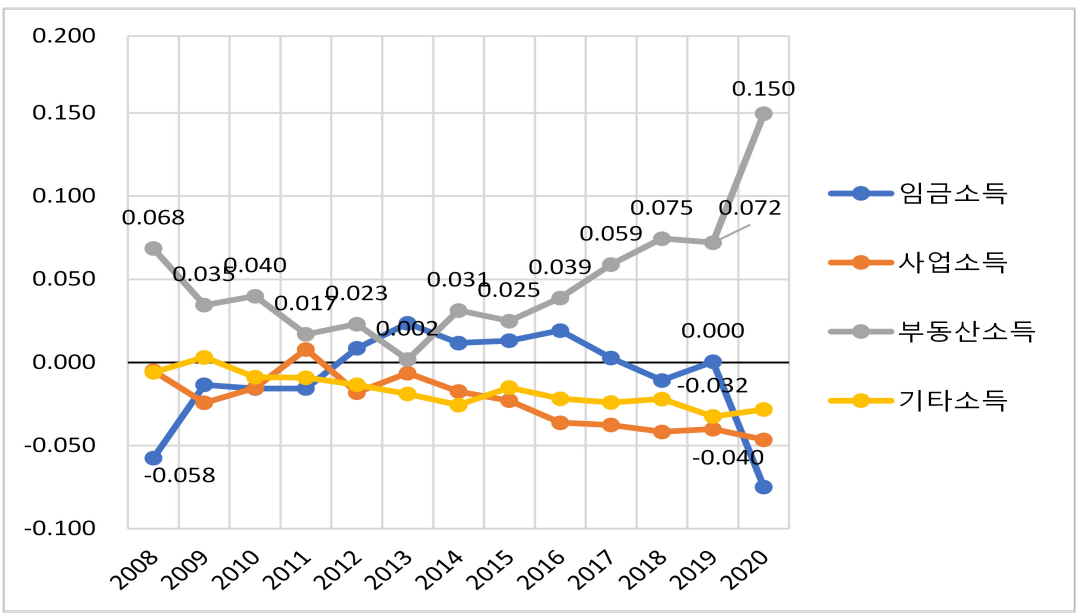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소득은 2008~2020년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에 약 15~54%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정도는 2013년도부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은 분석 기간 중 최고치인 53.9%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 6. 정책개선 방향

자산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보다 그 정도가 크며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2008년경부터 감소하다가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자산불평등의 정도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동반한 자산불평등의 증가는 곧 수도권과 지방간 자산격차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동산 자산은 가구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하였다.

자산불평등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이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 대비 낮은 부동산 보유세 수준과 토지라는 자산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유세 강화를 통한 자산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추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소득 발생 최소화가 필요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기이지만 가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을시 다시금 대내외 조건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불평등을 악화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실수요자 위주의 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유세와 더불어 대출 관리 정책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증가시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주거복지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자산격차가 바로 주거서비스/주거안정성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주택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6장

##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 시간불평등

# 제6장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 시간불평등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는 자연자원이라고 여기기 쉽고, 다른 물질적 재화와 달리 일반적으로 국가가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재화로 여기지 않는다(코헨 2019, 17). 특히 근대국가의 시간체제의 발명은 시간의 표준화와 동질화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체제는 국가에 의한 시간규율을 통해 작업장과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시간자원이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구성원들 간 지위나 계층에 따라 시간자원이 공평하게 활용되지 않아 생기는 시간불평등(temporal inequality) 문제를 야기했다.

사회구성원의 지위와 직업, 그리고 젠더에 따라 일상의 시간경험이 달리 적용되는 시간개념을 사회적 시간이라고 한다. 즉 근대사회의 시간 역시 다른 물리적인 자원과 마찬가지로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로 사회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장시간 노동은 그 만큼 여가를 위한 시간을 향유할 수 없게 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삶의 질 격차는 시간활용의 성격을 달리하게 만든다. 이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소득과 자산은 불평등과 빈곤을 다루는 데 주요하고 실질적인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들 지표들이 실증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라는 점에서 보면, 쉼과 여가, 그리고 일(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대한 스스로의 관리역량의 차이와 격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불평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평등과 빈곤의 다차원성은 그 영역의 중첩성과 교차성뿐만 아니라, 그 양상-박탈, 사회적 배제, 역량, 취약성 등-의 다양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시간불평등은 경제적 부(wealth)에 따른 하나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격차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직업적 특성, 작업장 내 위계관계, 젠더, 가족구성원 간 관계에 의해 개인의 시간통제력은 달리 행사된다. 전문직과 사무직, 생산직에 따라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작업장이라도 위계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시간사용권 행사는 차이가 날 수 있다.[55] 또한 기혼부부의 경우, 남성보다는

55) 크로우슨과 거스텔은 동일 병원종사자들 중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사, 간호보조인을 젠더와 계급(전문직과 노동계급)으로 분류하고 동료와 가족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속에서 예측불가능성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시간통제력의 차이로 설명한다(Clawson and Gerstel 2014).

여성이 무급노동(돌봄이나 가사)에 들이는 시간이 더 많고, 자녀수에 따라서도 자유시간이나 여가의 활용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사용의 격차는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위에 열거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교차하고 중첩되어 나타난다. 반면 시간빈곤은 경제적 빈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자원의 결핍상태를 말하며, 개인 혹은 집단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 장에서는 시간이 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를 제기하고, 시간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과 개인의 재량시간(시간통제권)이 노동시간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1. 개념: 자유시간, 재량시간, 시간주권, 시간빈곤

불평등과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분배정책[56]을 실시하는 것이다. 분배는 일반적으로 화폐를 중심으로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로 조세정책과 공적이전을 통해 실현된다.  하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분배(배분) 혹은 그것의 보장이다.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 즉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시간에 대한 재량권은 분배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다.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은 자유시간(free time)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유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근로시간(유급노동시간), 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무급노동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관리(식사, 목욕, 수면 등)에 쓴 총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재량시간이란 24시간 중 자신이 재량적 통제권을 가진 총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영역에서 필수적인(necessary) 시간[57]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다. 자유시간은 세 가지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실제 사람들은 세 가지 활동영역에서 엄격하게 규정된 필수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점에서 자유시간은 실제 사람들의 재량시간보다는 짧다(Goodin 2009, 3). 즉 자유시간의 길이는 일상생활 속 세 가지 중심활동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만, 재량시간의 여부에 따라서도 자유시간의 활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시간통제에 관한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가족관계, 젠더 등과 같은 사회적 요

56) 분배영역은 크게 1차 분배와 2차 분배, 즉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분배와 노동시장 분배 이후 정부정책에 의한 재분배(조세, 공적이전)로 나누어지지만, 이 장에서는 분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분배와 재분배를 구별하여 쓰지 않는다.

57) 유급노동에서 필수시간은 현재 임금에서 빈곤선까지 임금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Goodin 2009, 2).

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간통제(control over time)에서 개인이 통제의 주체로서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단선적인 이해다. 왜냐하면 시간은 개인의 소유물이기도 하지만, 시간사용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얽혀있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간통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변수-고용자와 피고용자, 동료작업자, 가족 등-간 상호작용을 통해 작업장에서는 노동시간과 작업일정이 협의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Clawson and Gerstel 2014, 8). 또한 노동시간과 작업일정은 가사일의 배분이나 자기시간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기술변화 시대의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과제 중 시간주권(time sovereignty)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ILO 2019). 이 보다는 앞서 유럽연합(EU)은 새로운 사회모델 구상이 담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패러다임과 노동패러다임을 결합하면서 시간주권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간의 주권은 전체 생애과정에 걸쳐, 그리고 생애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의 배열을 규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능력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옵션이라는 관점에서 시간주권은 자기의 욕구에 맞춰 근로시간의 배열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된 전제 하에서 개인의 생애과정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 그리고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윤도현·박경순 2009, 74). 시간주권은 앞에서 서술한 재량시간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노동체제와 복지체제의 성격에 따라, 즉 작업장내 노사관계, 시장체제의 성격(자유시장경제체제 vs. 조정시장경제체제),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재량시간과 시간주권의 행사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 복지국가 유형별 싱글마더(lone mother)와 여성딩크족(DINK) 간 자유시간과 재량시간 간 차이를 연구한 구딘에 의하면,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싱글마더의 자유시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재량시간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돌봄에 관한 정부지원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Goodin 2009, 5-7).

시간빈곤(time poverty)은 사회적 평균보다 자유시간과 재량시간이 상대적 혹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시간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과 재량시간이 적다는 점에서 시간주권의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시간빈곤에 대응한다는 것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확대한다는 일면적인 해결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여가시간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의 지위와 직종에 따른 노동시간의 다양성과 생계수단으로서의 임금문제를 고려한다면, 실질임금과 근로복지를 비롯한 노동조건, 성별 임금격차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노동시간 추세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고, 생활시간조사와 노동패널을 이용한 기존 시간빈곤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시간빈곤의 양상과 그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한국의 노동시간 추이: 고용형태, 직종, 기업규모, 시간당 임금을 중심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 중 하나다. 1984년 연간 2,907시간을 정점으로 점차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2017년 현재는 2,063시간으로 OECD 국가에서는 두 번째,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하면 4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다([그림 Ⅵ-1]). 2017년 현재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30년대 스웨덴,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미국, 그리고 1960년 영국의 노동시간과 비슷하다.

[그림 Ⅵ-1] 주요국가의 연간 1인 노동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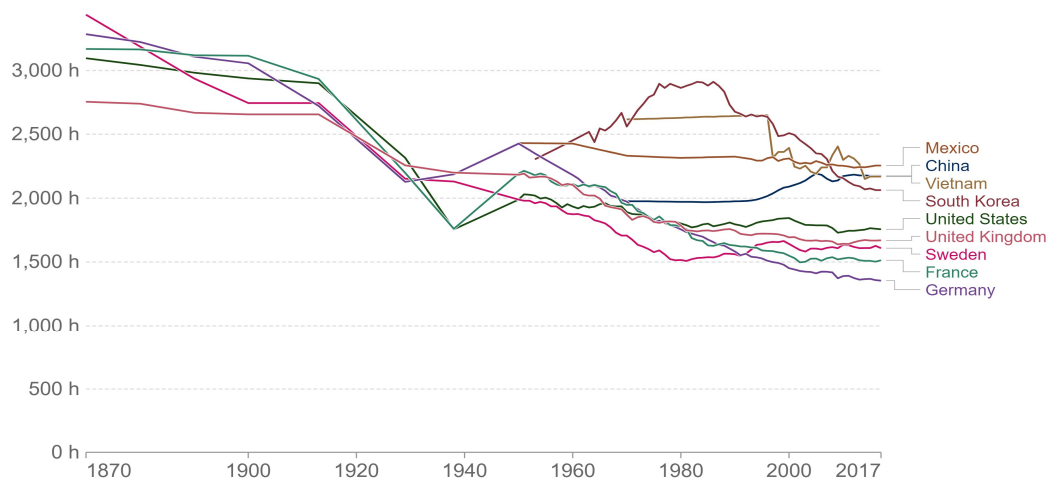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1950년대 이전은 풀타임 생산직 노동자(농업제외).

### 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그럼 고용형태별,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여 노동시간 단축 추세를 비교해보자. [그림 Ⅵ-2]은 최근 16년간 고용형태별 월간 총근로일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06년 월평균 22.8일에서 2021년 20.8일로 2일이 줄어들었다. 정규직이 23.3일에서 22.1일로 1.2일 줄어든데 반해, 비정규직은 21.2일에서 16.9일로 4.3일이 감소했다.

[그림 Ⅵ-2] 고용형태별 월간 총근로일수 추이(200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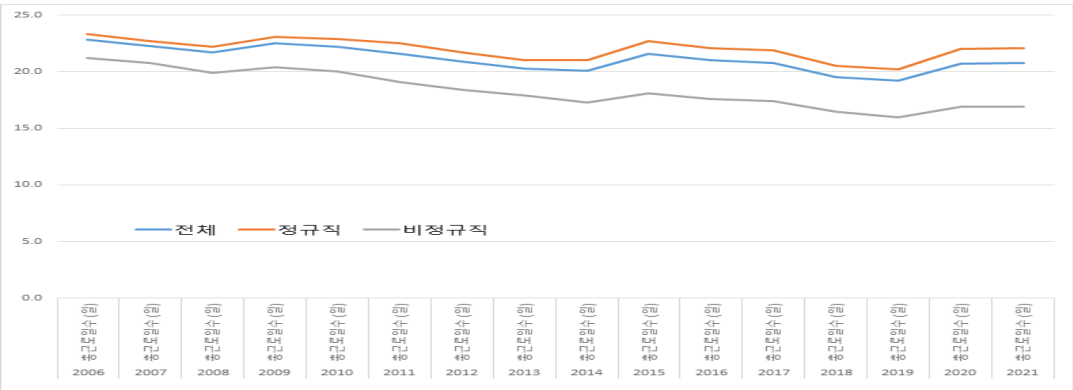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 각 년도.

노동시간 추이를 월간 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2006년 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184.5시간과 14.2시간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72.2시간과 8.0시간으로 각각 12.3시간, 6.2시간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6년 165.4시간과 7.8시간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11.7시간과 3.7시간으로 각각 53.7시간과 4.1시간 감소했 했다. 지난 16년 사이 정규직의 실근로시간은 6.7%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32.5% 줄어든 것이다([그림 Ⅵ-3]). 근로형태별로 본 주당평균취업시간 증감추이에서도 비정규직의 취업시간 감소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그림 Ⅵ-4]. 정규직의 주당평균취업시간은 2004년(8월 기준) 49시간에서 2021년 38.7시간으로 10.3시간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3.1시간에서 30.2시간으로 12.9시간 축소되었다. 지난 17년 동안 정규직의 주당평균취업시간이 21%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29.9% 줄어들었다. 이 세 가지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추세는 비정규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림 Ⅵ-3] 고용형태별 월간 실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추이(200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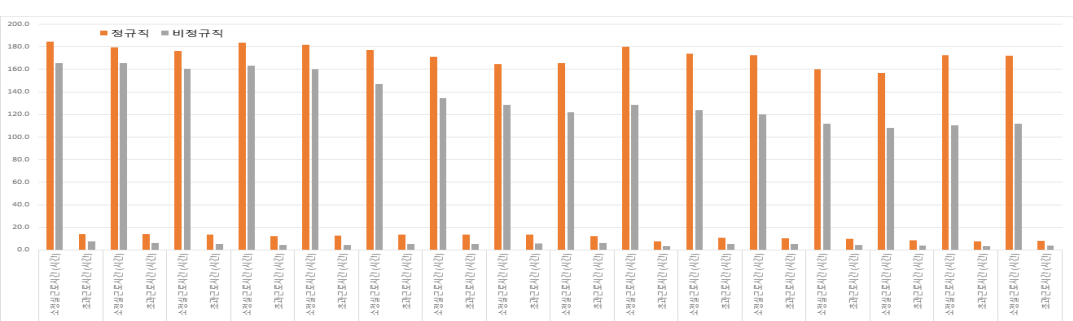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 각 년도.

그럼 비정규직 내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감소는 어떤 추이를 보일까? 통계청에서 규정하는 비정규직은 크게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된다.[58]

한시적 근로자의 2004년(8월 기준)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44.9시간이었고, 2021년은 31.4시간으로 13.0시간 감소(30.1%)했다.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각각 43.7시간에서 34.6시간으로 9.1시간 줄어들었고(20.8%), 시간제 근로자는 23.3시간에서 18.4시간으로 4.9시간 감소(21.3%)했다.

이른바 한국의 전통적인 장시간노동체제에서 평균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자연스럽게 삶의 질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노동시간을 하나의 레짐(regime)으로 보면, 노동시간은 노동시장구조, 노동관련 법률, 노사관계, 그리고 작업장의 문화와 서로 교차하여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Ⅵ-4] 근로형태별/주당평균취업시간 및 증감 추이(200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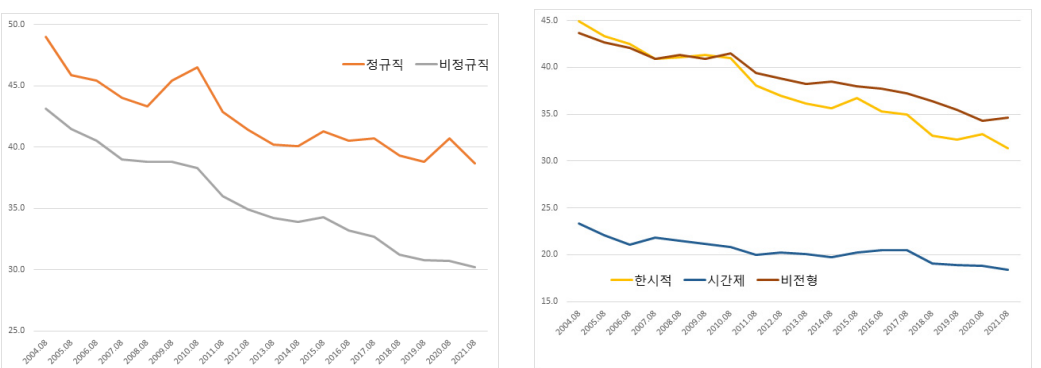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8월.

58)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했거나(기간제근로자) 정하지 않았으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기간제근로자(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로 1주에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일일(단기) 근로자를 총칭한다.

[그림 Ⅵ-5]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임금총액과 시간당정액급여 격차 추이(200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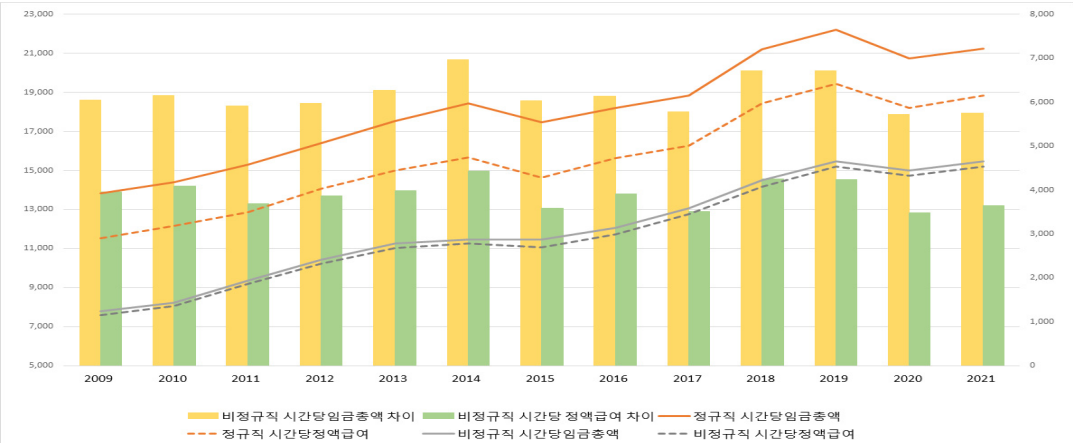


주: 시간당임금총액=월임금총액/총근로시간, 시간당정액급여=월정액급여/소정근로시간.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Ⅵ-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59]는 절대금액면에서 큰 차이없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임금총액의 차이가 6,043원이었고, 2021년은 5,748원이었다. 시간당정액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 3,951원에서 3,647원으로 304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근로조건과 임금격차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법정노동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변경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즉 평균적인 노동시간 감소가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감소에 힘입은 것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완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노동시간 계층화[60]에 따른 정책패키지가 고안되어야 한다.

### 2) 직종-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여기서는 직종-고용현태별 노동시간 추이를 살펴본다. 직종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6차와 7차에 따랐으며, 직종별 고용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표준직업분류 대분류는 관리직, 전문

59) 통계청이 2022년 10월 25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6~8월)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으로 비정규직의 월 평균소득 188만1000원과 159만90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수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5_0002060379&cID=10401&pID=10400

60) 한국의 노동시간이 단시간-저소득형, 장시간-중위소득형, 표준시간- 고소득형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한편,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일자리별로 임금격차와 노동시간의 유형별 크기가 크고, 시간당 임금이 낮은 계층이 장시간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충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신영민·황규성 2016).

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61]로 나뉜다. 직종별 고용형태로 분류한 이유는 앞서 제시한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이 주로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것이라면, 어떤 직종의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감소가 큰 지도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감안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림 Ⅵ-6] 직종별-고용형태별 월간 총 근로일수 추이(2009-2021. 좌: 정규직, 우: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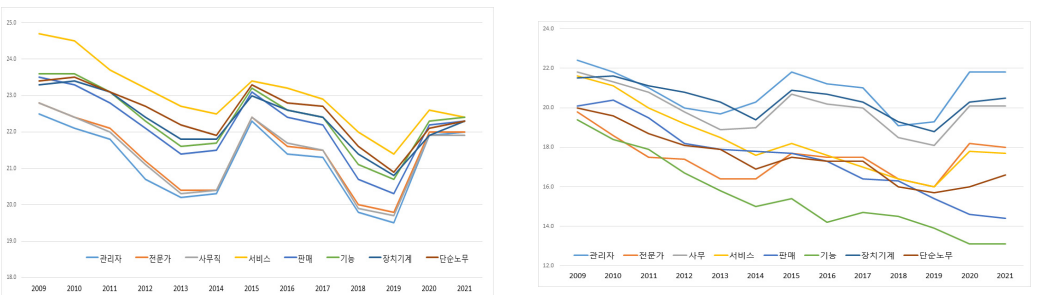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Ⅵ-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의 경우 총 근로일수 추이가 직종에 상관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14년까지 감소하던 근로일수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까지 줄어들더니 2020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에서 가장 근로시간 감소폭이 큰 직종은 서비스, 판매, 기능, 단순노무 순이었다. 비정규직은 직종별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관리자, 장치기계, 사무, 전문가 직종의 근로일수 감소는 미미했던 반면, 기능, 판매, 서비스, 단순노무직의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폭은 매우 높았다. 2009년에 비해 기능직의 경우 6.3일, 판매는 5.7일, 서비스는 3.9일 근로일수가 줄어들었다.

61)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르면, ①관리직은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②전문가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사무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서비스 종사자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⑤판매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매장에서 계산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⑥기능원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⑦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업무는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일로 구성된다.

### 3) 사업체 규모-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사업체 규모를 5인미만,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으로 나누어보면, 노동시간 감소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즉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에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시간 단축 정도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실행되기보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속에서 노동시간 감소 역시 노동시장 이중화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Ⅵ-7] 사업장 규모-고용형태별 근로일수 추이(2009~2021. 좌: 정규직, 우: 비정규직)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4) 노동시간과 생산성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노동생산성도 증가한다. 노동시간과 생산성은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은 아래 노동시간과 생산성 간 상관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노동시간만이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는 아니며, 오히려 노동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시간 정책이 노무관리정책의 일환으로만 진행된다면, 오히려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시간주권 혹은 시간통제 역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생산성 문제에 접근하는데 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자율성 강화가 동반되어야 하고 노동시간은 핵심적인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어야는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림 Ⅵ-8]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변화(1980년 vs.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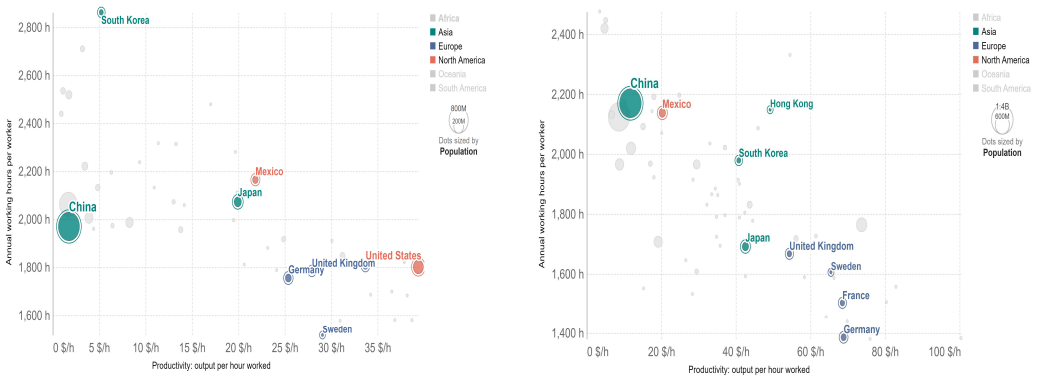


주: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GDP 대비 노동시간으로 측정.
자료: Our World in Data.

### 5) 근로시간 단축의 외국사례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다양하다. 전통적으로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도 하고, 최근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는 건강과 여가활동,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는 사용사측의 생산성 제고 기대와 피고용자측의 일과삶의 균형을 통한 삶의질 향상의 기대가 교차하여 실현되는 경우다. 팬데믹 이후 유럽은 주4일제를 위한 기업별, 산업별 시범사업을 의욕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 (1) 프랑스

프랑스는 1998년에서 2001년까지 1, 2차에 걸쳐 걸쳐 표준노동시간을 주39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오브리(Aubrey)법을 단행했다(쿠트 외 2022, 56-60). 당시 12.5%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나누기를 목적으로 정부가 노사협상을 독려했는데, 2년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게는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기업의 임금부담 우려를 제어하기 위해 임금동결을 노조에 요구했다.

#### (2) 스페인

스페인은 팬데믹 이후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주4일제(32시간)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다(NEF 2021, 11). 200~400개 신청 중소기업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3년 간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코로나 회복기금(5천만 유로)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에

추가고용이나 고용유형 변화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 (3)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삶의 질과 기업내 성별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실행중이다(NEF 2021, 4-5).

사무직을 시작으로 임금삭감은 없으며, 1천만 파운드(약 160억 원) 기금조성으로 비사무직, 파트타임, 교대근무자, 유연근로 노동자까지 확대예정이다.

### (4)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2019~2021년까지 임금삭감 없는 시범사업 실시했다(Lau 2021). 아이슬란드 정부는 2,500명(전체 노동인구의 1%)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생산성은 유지되고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는 '압도적 성공' 평가를 내린바 있다.

### (5) 스웨덴

스웨덴은 단위 사업장 별로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주4일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시 스바르테달렌(Svartedalens)에 위치한 노인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대상 급여삭감 없이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했다(쿠트 외 2022, 61-63). 스웨덴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들 노인돌봄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들은 힘든 교대근무로 건강악화와 성과저하를 호소했는데, 시의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돌봄의 질과 요양보호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결정했던 것이다. 평가자들은 39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던 솔랑겐(Solangen)의 유사한 요양보호시설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건강증진과 함께 스트레스와 결근 횟수 감소, 환자들을 위한 활동량 증가(60%)를 확인했다. 실험은 여러 면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시회의에서 우파연합이 다수가 되면서 철회되었다. 하지만 스웨덴 국립노동연구소의 4개 분야(사회서비스, 기술서비스, 돌봄 및 복지, 콜센터)에 걸쳐 무작위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통제실험에서도 노동자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 (6) 독일

독일은 단위노조별로 주4일제 전환을 위한 임금인상 합의한 바 있다. 2021년 3월 금속노

조(IG Metall)는 2.3% 임금인상 합의했는데, 주4일 선택한 기업이나 사업에서는 임금동결을 약속했다. 2018년 주28시간 노동시간 합의 실패 후,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는 4.3% 임금인상 합의했다(Stronge et. al, 2019, 63). 하지만, 단위사업장에서 28시간 노동시간을 선택할 때에는 주정부가 자녀 혹은 부모돌봄을 위해 추가수당(월 200유로) 지급하고, 건강위험이 높은 교대근무 노동자 휴가 선택 시 연간 750유로 보상하기로 했다.

### (7) 한국

한국은 업무특성상 자율적인 근무가 가능하거나 공간제약성이 낮은 IT업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혹은 유연근로제의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거나 노사협의과정에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 2022년 8월 8일,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주4일제 시범사업 합의했다(권대익 2022).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충원에 합의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총액임금 10%가 삭감된다. 병원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동에서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출퇴근 시간 앞뒤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하루 평균노동시간은 10.6시간이고, 야간근무는 평균 13.1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팬데믹 이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적하에 주4일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노동시간단축은 건강, 여가, 일생활균형과 같은 삶의 질 향상 자체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적정임금 및 젠더균형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동화에 따른 기술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바 있다(Fitzgerald et. al. 2018).

출퇴근시간 감소, 친환경적 이동수단 활용 등에 따른 생태발자국[62]과 탄소발자국[63], 이산화탄소배출량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실험중인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이 없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금삭감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고용형태 간 격차와 차별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2) ecological footprint;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배출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수치.
63) carbon footprint; 인간이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발생량.

## 3. 일과 생활균형 측면의 시간빈곤과 불평등

### 1) 한국인의 시간빈곤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10세 이상)은 필수시간에 11시간 34분, 의무시간에 7시간 38분을 사용하며, 여가시간은 4시간 47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64] 필수시간이란 수면,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의무시간은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 등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 여가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정의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인 54.4%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성별로는 여성(52.3%)보다는 남(56.5%), 연령대 중에서는 30대(75%), 맞벌이 가구는 남성(67.6%)보다는 여성배우자(70.3%)가 높다. 맞벌이 가구 중 줄이고 싶은 일은 남성은 직장일(76.4%)이 가장 높고, 여성은 직장일(57.6%) 다음으로 가사일(22.9%)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남성배우자의 가사일 축소 희망 비율은 2.2%로 가장 낮았다.

시간빈곤은 유급 및 무급 근로시간(학습포함)의 길이에 따른 자유시간 및 여가시간이 줄어든데 기인한다. 그럼 시간빈곤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무엇일까? 먼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취업유무, 건강상태 등에 따른 시간빈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특성 요인, 즉 자녀관련(미취학 여부, 자녀 수 등), 가족구성(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맞벌이 유무 등), 가계소득 수준 등이 자녀양육 및 돌봄시간에 영향을 준다(이경희·김근주 2018, 153-157).

시간빈곤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빈곤 연구에서 빈곤율은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과 같은 비노동시간 중위값의 50%, 60%, 70% 이하 등 연구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의된다. 반면 노동시간과 수면시간 등에도 빈곤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노동시간 빈곤율은 장시간 노동에 처한 노동자들의 비율로, 수면시간 빈곤율은 수면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65]

2019년 생활시간조사 중 20대~80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신영민 2021)에서 시간빈곤율은 19.85%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시간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중위값의 60%). 노동패

64) OECD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 중국을 포함하는 네 번째로 하루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수면시간은 일본에 이어 가장 짧다.

65)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들의 평균수면시간은 초등학생 8.7시간, 중학생 7.1시간, 고등학생 5.8시간으로 2017년에 비해 0.1~0.4시간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미국 수면재단의 연령대별 권고수면은 초등학생 9~11시간, 중학생 8~10시간, 고등학생 7~9시간이다(김경민 2021).

널조사(7차와 17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희·김근주 2018)에서는 전체 표본의 24.6%가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남성은 23.8%, 여성은 25.4%였다. 이 연구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간빈곤은 자유시간 중위값의 70% 이하로 설정했다. 같은 노동패널조사(17차)에서 가구주 대상 중위값 60% 이하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은 19.2%, 여성은 41.5%로 여성가구주가 시간빈곤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혜은 2017). 노동시간 빈곤은 장시간 노동으로 다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자 비율로 봐도 무방하다. 유급근로시간 전체 빈곤율은 6.7%로 20년 전보다 3.3%p 줄었지만,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7%와 3.1%로 3배 격차는 유지되었다. 반면, 무급노동의 경우는 전체가 27.8%로 20년 전에 비해 1.2%p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남성은 7.6%로 1999년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양 시간을 합친 총노동시간 빈곤율은 전체가 11.4%로, 남성은 12.2%, 여성은 10.3%로 나타났다(노혜진·박나리 2022, 315).

### 2) 시간빈곤의 확산과 시간불평등의 심화

시간빈곤은 주로 성별, 학력, 소득별, 그리고 가구특성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돌봄과 가사 등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여성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높다. 이를 연령대와 연결해서 보면, 30~40대의 시간빈곤율이 높은데, 이경희·김근주의 연구에서는 40대(남성 28.7%, 여성 26.6%)가, 특히 맞벌이의 경우 여성이 55.1%, 남성이 30.5%로 조사되어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민의 연구에서는 30대(여성34.38%, 남성 25.63%)가 가장 높았다. 이들 30~40대의 시간빈곤율이 높은 것은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이 집중된 시기, 여성의 경우 육아 및 가사와 노동이 중첩된데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직종별로 살펴보면, 중간학력자(전문대졸)와 서비스/판매 직종이 각각 22.5%와 22.69%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다(신영민 2021).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이 최근 20년 간 노동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성별, 학력, 근로형태, 소득차이에 의한 시간빈곤의 경계가 점점 엷어지고 있으나, 총노동시간의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노혜진·박나리 2022). 첫째, 유급노동시간에서 고소득 분위의 감소경향이 더 뚜렷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길었던 특징이 둔화되고 있고,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가 비임금근로자의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유급노동시간은 비슷해졌는데, 취업자만 놓고 보면 고졸자를 중심으로 엎어진 종모양을 이루고 있다. 중

졸이하와 대학원 이상에서 유급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령대에서는 40대가 가장 높았던 근로시간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 30-50대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취업자 중 성별차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무급노동시간에서 주목할 변수는 학력, 근로형태, 성별, 미취학자녀 여부였다. 고학력 집단의 돌봄시간이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집단의 무급노동시간 증가가 비임금근로자의 감소경향과 맞물려 역전되었다. 즉 임금근로자 집단의 노동시간 단축이 가사와 돌봄노동으로 옮겨간 것이다. 성별격차는 7.5배에서 3.4배로 완화된 반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무급노동 시간이 20년 간 26분 증가했다.

근로시간빈곤문제가 중요한 것은 주중의 근로시간 빈곤문제가 주말과 야간근무로 이어지는 빈곤시간의 연속성에 있다. 시간빈곤 상태에서 있는 집단의 노동시간은 주중에는 1.37배, 주말에는 1.57배 비빈곤상태에 있는 집단보다 높다. 요컨대 남성 시간빈곤의 원인은 주로 장시간 노동에서, 여성 시간빈곤은 유급노동시간에 더해 무급노동시간(가사/돌봄시간)에 기인하며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주중·주간 노동시간보다 주말 및 야간노동시간에서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신영민 2021).

시간빈곤뿐만 아니라, 시간의 분배상태를 의미하는 시간불평등 역시 근로시간 및 자유시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근로시간 불평등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다(노혜진·박나리 2022, 317-318).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시간의 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모든 계층과 집단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남성의 돌봄과 가사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무급노동시간의 불평등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니계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이서 돌봄과 가사노동의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제도운영이 요구된다.

### 3) 삶의 질과 시간역량

삶의 질 향상을 다양한 사회보장의 제도적 조건속에서 개인의 시간활용도를 높이는 시간역량(time-capacity)의 강화가 요구된다. 앞서 서술한 근로시간 단축, 시간주권, 시간통제 역량, 시간빈곤 등 직장과 집,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속에서 자유시간 및 재량시간의 확대를 통해 증대된 개인역량은 다시 사회로 환원되어 정책적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 건강, 가족, 노후생활보장 등의 사회보장정책의 구성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주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예방적 목적의 사회정책을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개인의 삶의 질, 행복

한 개인, 그러한 개인과 개인의 연대체로서의 공동체 지향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과 행복, 만족은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한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다.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일수록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있어 체감도가 높고(Haller and Hadler 2006; Pacek and Radcliff 2008), 탈상품화(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복지국가의 제도변수로 놓고, 이는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와 역량강화(노동시장 등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제도의 존재와 사회적 투자)로 연결(유정민·최영준 2020)된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은 경제적 빈곤을 넘어 개인이 사회속에서 시간활용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준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4. 정책개선 방향: 쉼과 여가, 시간역량 강화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자유시간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근로형태, 기업규모, 기업문화에 따라 동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는 점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임금근로자에게는 휴식과 휴가제도를, 비임금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패키지가 실시되어야 한다.[66]

### 1) 휴식과 충전을 위한 개인휴가제도 도입

자유시간과 재량시간의 물리적인 확보를 위해 시간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개인휴가제 도입을 제안한다. 프랑스는 이미 직업교육을 위한 개인휴가제도(CIF)를 시행중이다. 2004년 개인훈련권리(DIF)와 개인휴가제도(CIF)를 입법했는데, DIF는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을 할당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위한 휴직권리보장한다. 교육기간동안 교육비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의 80~90% 지급한다. 2015년 신직업교육법 개정으로 개인교육계정(CPF) 도입했고, CIF를 확대했다. CIF는 한 해 40,000~45,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혜자의 60%가 저숙련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평생학습계좌제가 KDI, KEDI, KRIVET(직능원)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었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일배움카드제가 평생학습과 직업교육계

66) 성별 시간빈곤의 격차가 큰 이유는 돌봄과 가사노동의 비대칭문제가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3장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좌의 유사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생계비 지급이 없고(소규모 예산), 취업 및 자격제도 획득에 한정되어 있고, 실업자나 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시행되고 이는 내일배움카드의 취지를 개선하여, 7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6개월의 유급휴가 제공하는 재충전 개인휴가제의 도입을 통해 쉼과 스스로의 역량 제고를 위한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제공하고 재교육기관에는 학습바우처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생계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재직기간 7년은 이직기간 포함(현재 직장 재직 3년 이상)하고  비정규직 포함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실시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과 제도안착을 위한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표준계약서: 장시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제

장시간노동의 대표적인 업종인 택배, 라이더 등을 포함한 특수고용형태(특고)근로자들의 경우,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측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2019년부터 휴식권 보장,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고용노동부는 적극 검토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는데,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을 위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오지혜 2022). 택배, 라이더 등 과로사가 가장 많은 업종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에게는 특히 과도한 근로시간을 표준노동시간에 근접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67]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고뿐만 아니라 시간빈곤률이 증가하는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에서는 상점의 영업시간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세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법적 규제에 관한 필요성에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자영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 간 불공정 관행과 장시간 운영의 폐해를 막는 표준계약서의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이경희·김근주 2018, 269-240).

67)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근로자 사망자는 연평균 약 2명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명, 6명으로 늘었다. 산재 신청은 2016년 4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470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승인 건수는 2016년 31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늘었다(권성진 2022).

### 3) 휴가저축제도

휴가저축제도란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으로 쓰지 않은 연차휴가를 장기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유연근로시간제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아우르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 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6개월까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당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속 휴식시간 부여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로제도는 노사합의(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노조조직율과 기업문화를 감안하면 노동자의 근로시간재량권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연차휴가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휴가저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는 근로시간 연장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 69시간까지 늘어난 연장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능성여부를 떠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뿐이라는 점에서 휴가저축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정책구상이다. 현재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권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68]

68) 2017년 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임금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월)차 휴가일수는 평균 14.8일이었고, 이중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는 평균 9.2일로 연가소진율은 평균 64.7%, 주어진 연가를 모두 사용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77.8%, 2년 미만 경력자는 61.7%에 그쳤다. 사용가능한 연(월)차 휴가가 없는 임금근로자도 전체 30%를 넘었다(이경희·김근주 2018, 228).

# 결론

## 정치의 쓸모, 문제는 정치다

# 결론: 정치의 쓸모, 문제는 정치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 이슈와 쟁점을 다루면서 몇 가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좀 더 윤택한 시민의 삶을 위해 정책의 외연을 넓히며 숙의와 토론을 통해 벼려내야 할 부분이다.

성별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선택적 시간제, 돌봄지원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선택시간제에 대해 근로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의 전환, 남성육아휴직의 의무사용과 각종 돌봄휴직제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가사서비스 청구제도로서 프랑스의 고용보증수표제를 소개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 국민연금의 다양한 크레딧을 인정하고 보충적 소득보장제와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편적 기여보장제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간불평등 문제는 주로 노동시간과 연계된 쉼과 여가의 확보 및 시간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재직자 대상의 개인휴가제도, 장시간 비임금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근로시간 연장없는 휴가저축제도가 그것이다.

87년 민주화를 통해 우리는 오랜 독재체제의 종결과 함께 정기적인 선거를 대표자 선출의 유일한 게임규칙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형식)을 갖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규칙뿐만 아니라 시민의 경제적 삶을 포함하는 내포와 외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과정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의 안정화를 그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다. 이른바 신생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과 함께 정치학을 풍미했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에 관한 논의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최소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결국 시민권의 평등을 약화시킨다는 불평등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Brinks and Botero 2014)으로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복지국가와 불평등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Esping-Andersen 1990; Acemoglu and Robinson 2006; 피케티 2014). 시장은 가치가 교환되는 경제활동의 장이며, 그 안에서 노동과 복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사회적 기본재로 작동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와 구조

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것, 각자도생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간 나누고(분배) 서로 의존(연대)하며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자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이 야기한 거대한 균열은 결국 정치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불평등 악화가 자본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훌쩍 넘긴데 있다고 말한 피케티도 결국 자기 책의 상당부분을 사회국가의 필요성에 할애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지역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현황, 그리고 임금격차, 노후 시기 소득격차, 부동산불평등, 시간불평등을 이슈와 쟁점으로 다루었지만, 불평등 영역은 기후와 재난, 건강, 교육, 디지털 전환 등 생활세계의 부문과 경계를 허무는 복합성과 그 중층화와 맞물려 오히려 그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의 후퇴를 마감하고 정치의 귀환을 선도하며 환골탈태하는 것으로 정치의 쓸모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쓸모도 거기에 달려있다.

# 참고문헌

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기준위원회. 2016.『평가실무매뉴얼(임대료감정평가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2016 임금보고서 – 임금체계 개편의 대안 모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고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성고용 지원정책 현황.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do(검색일: 2022.12.08.)

고용노동부(2018).『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700648.

공주·신광영. 2022.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김윤태 엮음.『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구인회 외. 2021.『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심층분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해근. 2022.『특권 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파주: 창비.

국민연금공단. 2021.『2021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보고서.

권대익. 2022. "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시범 사업…의료계 주 4일제 시대 열리나"〈한국일보〉. 08/09.

권성진. 2022. ""6년간 20여명 사망"…명절 특수에도, 택배기사 파업 '현재진행형'".〈아주경제〉 01/31.

권해자·장재호. 2015.『중고령자의 일자리 상실과 재취업』.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금재호. 2011. "성별 임금 격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국제경제학연구』. 18(3). 177-180.

금재호·최재문. 2021.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추세와 원인에 대한 분석".『한국경제연구』. 39(1). 103-135.

김경민. 2021. "적정 수면시간 7~9시간? 나이마다 다르다".〈주간조선〉. 07/29.

김복순. 2017.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월간 노동리뷰』, 1월호. 91-101.

김연명·한신실. 2017.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한국사회정책』. 24(4). 89-112.

김원섭·강성호·김형수·이용하. 2016.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

안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 32(4). 1-29.

김유선. 2009. “한국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 OLS 분석과 분위회귀분석”.『산업관계연구』. 19(2). 1-31.

김유선. 201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이슈페이퍼』. 103. 1-11.

김유휘·이승윤. 2019.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 : 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한국사회정책』. 21(3). 93-128.

김창환. 2022.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김윤태 엮음.『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태동·이근식. 1989.『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비봉출판사.

김태일·신영민. 202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 가입기간 확충”. 2022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김태일·최영준. 2017 “노동시장의 변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한국정책학회보』. 26(2). 395-418.

김태홍. 2013.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 분해”.『여성연구』. 84(1). 31-61.

김헌수·석상훈. 2013. “중고령자의 은퇴리스크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사회보장연구』. 29(2). 135-165.

김현경·노대명·송지원·양정승·엄형식·정성미·최요한. 2019.『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혜연. 2010.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경로 유형화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 26(1). 233-259.

김혜연. 2017.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비판사회정책』. 54. 120-159.

남현주. 2020. “복지국가의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인문사회 21』. 11(2). 871-884.

노대명 외. 2020.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제도간 연계·조정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류건식·이봉주·김동겸. 2009.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보험

학회보』.83(8). 93-122.

류재린·김준일. 2019.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현안과 구조개혁-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107. 54-89.

문지선. 2020.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상승 효과”. 『경제와사회』. 통권 제 128호. 266-307.

민현주. 2012. “자녀 출산과 양육시기 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의 적용”. 『한국사회학』. 46(2). 61-87.

박나리·김교성. 2022. “문재인 정부 시기의 노동정책 변화와 임금 불평등 분해”. 『비판사회정책』. 제 75호. 33-59.

박미희·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석재은·신동균·이기주. 2015.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페미니즘연구』. 15(2). 205-236.

신광영.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97-127.

신광영. 2022. “소득분포 분석의 네 가지 개념: 불평등, 격차, 집중, 양극화” 김윤태 엮음.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신영민. 2021. “시간빈곤인의 노동시간 특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2), 37~68.

신영민. 2022. “남녀의 수리적 역량 및 임금격차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2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3137-3164.

신영민·김태일. 2021. “PIAAC 역량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임금 결정요인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8(4). 71-96.

신영민 · 황규성. 2016. “한국의 노동시간 계층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3(3), 17-47.

신진욱. 2013.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41-70.

심상정의원 보도자료, “상위 0.1%가 배당소득 52% 싹쓸이…근로소득 격차 1000배”, 2018.9.2.

앳킨슨, 앤서니 B. 장경덕 옮김. 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파주: 글항아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https://saeil.mogef.go.kr/hom/

HOM_Main.do. (검색일: 2022.12.08.).

여지영. 2002. “네덜란드의 복지국가개혁과 남성부양자 모델의 약화”. 『국제·지역연구』. 11(2). 77-102.

오지혜. 2022.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집중...근로복지 대상, 근로자→노무제공자 확대”. 〈한국일보〉. 10/26.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왈쩌, 마이클. 정원섭 외 옮김.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서울: 철학과현실사.

용혜인의원 보도자료, “상위 0.1% 소득 집중 심화‥자산 격차가 원인 추정”, 2021.2.26.

유호선, 김아람. 2020. 『국민연금의 돌봄크레딧 도입 타당성 검토.』.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박주완·유현경. 2015.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 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류재린·김혜진·김아람. 2021.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윤덕룡·이동은·이진희. 2019.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09.

윤미례. 2022. “선택? 강요!: 엄마됨의 대가 – 한국 기혼 여성의 노동 행태에 관한 연구 -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윤종성. 2022. “복지국가다운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경험과 과제”. 『월간복지동향 2022』.

윤홍식 편. 2020.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윤홍식. 2006.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도입의 원칙과 방향”. 『노동리뷰』. 23. 63-68.

이용하. 202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관계정립방안:통합·일원화를 중심으로』. 정책기획위원회 발표자료,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 (2). 29-59.

이우진·최은영. 2020. “한국의 임금격차와 요인별 기여”. 『경제발전연구』. 26(2). 87-125.

이윤진. 2017.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한국형 육아크레딧 도입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7(2). 83-119.

이정우·이성림. 2001.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39-51.

이채정·탁현우. 2018.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2). 25-52.

장수명. 2002. “대학교육의 경제학”.『노동정책연구』. 2(1). 47-79.

장지연·전병유·정준호·강병익·황규성. 2016.『한국의 불평등 2016』. 서울 : 페이퍼로드.

장하성. 2014.『한국 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성남: 헤이북스.

전병유. 2011. “기획연구: 외국의 시간제 근로 – 네덜란드에서의 시간제근로의 현황과 정책”. 『산업노동연구』. 17(1). 265-292.

전병유. 2019.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 『보건복지포럼』. 270. 43-55.

전병유·신진욱 편. 2016.『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서울: 페이퍼로드.

전병유·장지연·황규성·정준호·강병익. 2016.『한국의 불평등 2016』. 페이퍼로드.

정인영·김아람. 2018.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선방안 연구: 개인단위 연금체계로의 개편을 중심으로”.『보건사회연구』. 38(2). 191-226.

정인영·유희원·한신실. 2016.『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정준호·전병유·장지연. 2017. “임금 격차 변화의 요인분해: 2006-2015년”.『산업노동연구』. 23(2). 47-77.

정준호·전병유·장지연. 2022.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윤태 엮음.『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태형·최병오·장경철·김은우. 2015.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한국은행 경제리뷰』. 한국은행.

주은선. 2022.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정립”. 『사회복지정책』. 49(3). 87-119.

지은정. 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한국사회복지학』. 58(3). 135-168.

최강식·정진호. 2002. “한국의 학력 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국제경제연구』. 9(3). 183-208.

최민정. 2015.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건복지포럼』. No. 227.62-73.

최새은·정은희·최슬기. 2019.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보건사회연구』. 39(4). 280-319.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 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소비자학연구』. 20(3). 189-214.

최혜은·유종성. 2022.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연금연구』. 12(1). 21-50.

코헨, 엘리자베스 F. 최이현 옮김.『정치는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는가?』. 서울: 바다출판사.

쿠트, 안나, 에이단 하퍼, 알피 스털링. 이성철·장현정 옮김. 2020.『주4일 노동이 답이다』. 부산: 호밀밭.

테르보른, 예란. 이경남 옮김. 2014.『불평등의 킬링필드』. 서울: 문예춘추사.

통계청. 2020년 육아휴직 통계. https://kosis.go.kr. (검색일: 2022.12.05.).

피케티, 토마. 장경덕 외 옮김. 2014.『21세기 자본』. 파주: 글항아리.

한국노동연구원. 2015.『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고용노동부 수탁연구과제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각 년도. “노동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 년도. “재정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신실. 2018. “이행노동시장과 중고령자의 노동경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411-432.

허민숙. 2018.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지표로 보는 이슈』. 제122호. 국회입법조사처.

허수정·박희란. 2018.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3). 179-200.

황덕순·윤자영·윤정향·Rostgaard, T., Letablier, M. T., Bothfeld, S., Rubery, J. 2012.『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황수경. 2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시간선택제 2년의 평과와 향후과제 심포지엄 발표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성고용 지원정책 현황.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do.

국세청.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국토교통부. 2022. “2021년 토지소유현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검색일: 2022.12.08.).

통계청. 2020년 육아휴직 통계. https://kosis.go.kr. (검색일: 2022.12.05.).

통계청. 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각 년도. “노동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 년도. “재정패널조사”.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2006.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amendi, Pablo and Christopher J. Anderson. 2008. “Income Inequality and Democratic Representation”, Pablo Beramendi and Christopher J. Anderson. eds. *Democracy, Inequality, and Represent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3-24. New York: The Russell Sage Foundation.

Borgonovi, F., Pokropek, A. and Britta Gauly. 2017.“Youth in Transition: How do Some of the Cohorts Participating in PISA Fare in PIAAC?”.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15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1479ec2-en.

Bosch, N and Bas van der Klaauw, 2009. “Analyzing Female Labor Supply: Evidence from a Dutch Tax Reform,” *IZA Discussion Paper* No. 4238.

Brinks, Daniel M. and Botero, Sandra. 2014. “Inequality and the Rule of Law.” Daniel Brinks, Marcelo Leiras, and Scott Mainwaring. eds. *Reflections on Uneven Democracies: the Legacy of Guillermo O’Donnel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lawson, Dan and Gerstel, Naomi. 2014. *Unequal Time: Gender, Class, and Family in Employment Schedu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Dahl, Robert A. 1998. *On Democrac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østa. 1990. *Unequal Time: Gender, Class, and Family in Employment Schedu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urostat. 2021. “Regional household income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Regional_household_income_statistics#Components_of_primary_income

Fitzgerald, Jared. et. al., 2018. “Working Hours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2007–2013”, *Social Forces* 96(4).

Franzini, Maurizio and Pianta, Mario. 2016. *Explaining Inequality.* Abingdon: Routledge.

Galbraith, James K. 2016. *Inequalit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oodin, Robert E.. 2009. “Temporal Justice”. *Journal of Social Policy.* 39(1), 1-16.

Hall, Peter and David Sosckice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nushek, E. A., Schwerdt, G., Wiederhold, S. & Woessmann, L. (2015). “Returns to skill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PIAAC”. *European Economic Review.* 73. 103-130.

Hinrichs. K. 2000. “Elephants on the Move: Patterns of Public Pension Reform in OEC D Countries”. *European Review.* 8(3). 353-378.

Hynes. K. and M. Clarkberg. 2005. “Womens Employment Patterns during early Parent hood;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222-239.

Jann, B. 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4). 453-479.

ILO. 2019. *Work for a Brighter Futur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Jones, B., D. Nagin, and K. Roeder.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 (3). 374-393.

Karakoç, Ekrem. 2018. *Inequality After the Transition: Political Parties, Party Systems, and Social Policy in Southern and Postcommunist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m, Taeil and Youngmin Shin. 2022. “National Pension Reform Alternatives to Streng then Retirement Income Security”. Paper Presented at 2022 SWESD.

Lerman, R. I., &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51-156.

Lerman, R. I., & Yitzhaki, S.. 1984. "A note on the calcu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Gini index". *Economics letters.* 15 (3-4). 363-68.

Meltzer, Allan H. and Scott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 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Milanovic, Branko. 2013. “Global Income Inequality by the Numbers: In History and Now”. *Global Policy.* 42, 198-208.

Myles, J. and Paul Pierson. 2001.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f orm”. in Paul Pierson(ed).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05-333.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emiparametric, Groupbas 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 139-177.

NEF. 2021. “Achieving a Shorter Working Week Across Europe”, *Newsletter Issue* 9(Nov.).

O’Reily, J. et al. 2002. *Working-Time Changes: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 al Labour Markets*. Cheltenham: Edward Elgar.

Oaxaca, R.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693–709.

OECD 2013. “Skills matter: additional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 PIAAC round 3 international launch Webinar. https://www.oecd.org/skills/piaac/.

OECD 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Paris: OECD.

Paccagnella, M. 2017. “Age, Ageing and Skills: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No. 13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 i.org/10.1787/5jm0q1n38lvc-en.

Sainsbury, Diane, 1993. “Dual Welfare and Sex Segregation of Accesses to Social Bene

fit: Income Maintenance Policies in the UK, the US, the Netherlands and Sweden," *Journal of Social Policy*, 22(1), 69-98.

Stewart, Kitty. 2009. "Employment and Wage Trajectories for Mothers Entering Low-sk illed Work: Evidence from the British Lone Parent Cohort".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3(5). 483-507.

Temin, Peter. 2017. The Vanishing Middle Class: Prejudice and Power in a Dual Econo my. Cambridge. MA: MIT Press

U.S. Census Bureau, Gini index as tabulated in the 2019 using American Community Survey Data

Van Oorschot, W. 2004. "Balancing work and welfare: activation and flexicurity polici es in the Netherlands, 1980-2000".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3(1), 15-27.

Yerkes, M. and Visser, J. 2006. "Woman's preferences or delineated policies? The development of part-time work in the Netherlad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n Boulin et al., eds. 『*Decent Working Time*』. Geneva: ILO.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doi.org/10.1787/888934042219(검색일: 2022.11.15.)

OECD, Income inequality DataBase

OECD, Pension at a Glance, https://stat.link/ocju6r(검색일: 2022.11.15.)

OECD. 2022a. Labour Force Statistics.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검색일: 2022.10.28.)

OECD. 2022b. Income Equality(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검색일: 2022.10.27.)

OECD. 2022c. Gender wage gap (indicator). doi: 10.1787/7cee77aa-en (검색일: 2022.10.28.)

# 부 록

## I-1.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 편차(2020)

(단위: 명, 만원, 위)

| | 기초 자치단체 | 노동자 인원수 | 평균 근로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서울 25개 | 강남구 | 210,941 | 7,469 | 1 | 1 | 3,620 | 3,069 |
| | 강동구 | 189,102 | 4,160 | 29 | 13 | 311 | -241 |
| | 강북구 | 105,321 | 2,953 | 216 | 25 | -896 | -1,447 |
| | 강서구 | 247,909 | 3,747 | 62 | 17 | -102 | -654 |
| | 관악구 | 217,065 | 3,207 | 155 | 22 | -641 | -1,193 |
| | 광진구 | 146,304 | 3,848 | 49 | 15 | -1 | -552 |
| | 구로구 | 171,669 | 3,541 | 86 | 19 | -307 | -859 |
| | 금천구 | 100,692 | 3,082 | 193 | 24 | -766 | -1,318 |
| | 노원구 | 191,648 | 3,842 | 51 | 16 | -6 | -558 |
| | 도봉구 | 117,979 | 3,242 | 142 | 21 | -607 | -1,159 |
| | 동대문구 | 126,064 | 3,570 | 82 | 18 | -279 | -830 |
| | 동작구 | 164,005 | 4,179 | 27 | 12 | 330 | -222 |
| | 마포구 | 157,918 | 4,801 | 9 | 7 | 952 | 401 |
| | 서대문구 | 121,720 | 4,217 | 26 | 11 | 369 | -183 |
| | 서초구 | 167,853 | 7,441 | 2 | 2 | 3,592 | 3,040 |
| | 성동구 | 117,169 | 4,817 | 8 | 6 | 968 | 417 |
| | 성북구 | 157,525 | 4,051 | 36 | 14 | 203 | -349 |
| | 송파구 | 280,206 | 5,209 | 5 | 4 | 1,360 | 808 |
| | 양천구 | 176,637 | 4,683 | 13 | 9 | 835 | 283 |
| | 영등포구 | 175,969 | 4,447 | 22 | 10 | 598 | 46 |
| | 용산구 | 94,304 | 6,492 | 3 | 3 | 2,644 | 2,092 |
| | 은평구 | 185,630 | 3,507 | 91 | 20 | -341 | -893 |
| | 종로구 | 53,596 | 4,905 | 7 | 5 | 1,057 | 505 |
| | 중구 | 48,476 | 4,732 | 10 | 8 | 883 | 331 |
| | 중랑구 | 146,187 | 3,120 | 179 | 23 | -729 | -1,280 |
| 인천 10개 | 강화군 | 18,824 | 3,252 | 137 | 6 | -596 | -180 |
| | 계양구 | 115,800 | 3,031 | 208 | 9 | -818 | -402 |
| | 미추홀구 | 154,167 | 2,939 | 219 | 10 | -909 | -493 |
| | 남동구 | 204,733 | 3,318 | 126 | 5 | -530 | -114 |
| | 동구 | 22,654 | 3,034 | 207 | 8 | -815 | -399 |
| | 부평구 | 189,788 | 3,223 | 150 | 7 | -626 | -210 |
| | 서구 | 225,801 | 3,498 | 93 | 3 | -351 | 66 |
| | 연수구 | 162,901 | 4,543 | 17 | 1 | 694 | 1,110 |
| | 옹진군 | 6,904 | 3,813 | 54 | 2 | -36 | 380 |
| | 중구 | 60,637 | 3,430 | 104 | 4 | -418 | -2 |

| | 기초 자치단체 | 노동자 인원수 | 평균 근로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경기도 31개 | 가평군 | 19,142 | 3,210 | 154 | 26 | -638 | -693 |
| | 고양시 | 421,837 | 3,954 | 40 | 9 | 105 | 51 |
| | 과천시 | 28,598 | 6,131 | 4 | 1 | 2,283 | 2,228 |
| | 광명시 | 118,528 | 3,923 | 41 | 10 | 74 | 20 |
| | 광주시 | 159,753 | 3,256 | 135 | 24 | -592 | -647 |
| | 구리시 | 72,157 | 3,601 | 77 | 16 | -248 | -302 |
| | 군포시 | 114,195 | 3,799 | 57 | 12 | -50 | -104 |
| | 김포시 | 201,303 | 3,654 | 70 | 13 | -194 | -249 |
| | 남양주시 | 259,854 | 3,438 | 103 | 19 | -410 | -465 |
| | 동두천시 | 32,765 | 2,813 | 227 | 31 | -1,035 | -1,090 |
| | 부천시 | 324,484 | 3,338 | 120 | 20 | -510 | -565 |
| | 성남시 | 390,050 | 5,019 | 6 | 2 | 1,170 | 1,116 |
| | 수원시 | 502,780 | 4,314 | 23 | 5 | 466 | 411 |
| | 시흥시 | 228,522 | 3,277 | 132 | 22 | -572 | -626 |
| | 안산시 | 276,152 | 3,258 | 134 | 23 | -590 | -645 |
| | 안성시 | 77,883 | 3,278 | 131 | 21 | -570 | -625 |
| | 안양시 | 227,781 | 4,094 | 32 | 7 | 246 | 191 |
| | 양주시 | 89,383 | 3,018 | 210 | 29 | -831 | -885 |
| | 양평군 | 34,458 | 3,651 | 71 | 14 | -198 | -252 |
| | 여주시 | 38,527 | 3,230 | 149 | 25 | -619 | -673 |
| | 연천군 | 14,289 | 3,149 | 171 | 27 | -699 | -754 |
| | 오산시 | 100,168 | 3,547 | 85 | 17 | -301 | -356 |
| | 용인시 | 432,868 | 4,698 | 12 | 3 | 850 | 795 |
| | 의왕시 | 68,389 | 4,168 | 28 | 6 | 319 | 265 |
| | 의정부시 | 169,990 | 3,095 | 190 | 28 | -754 | -808 |
| | 이천시 | 94,320 | 3,911 | 43 | 11 | 63 | 8 |
| | 파주시 | 190,174 | 3,476 | 96 | 18 | -373 | -427 |
| | 평택시 | 231,232 | 3,640 | 72 | 15 | -208 | -263 |
| | 포천시 | 61,698 | 2,843 | 226 | 30 | -1,005 | -1,060 |
| | 하남시 | 129,963 | 4,086 | 33 | 8 | 238 | 183 |
| | 화성시 | 401,794 | 4,538 | 19 | 4 | 690 | 635 |
| 강원도 18개 | 강릉시 | 71,391 | 3,397 | 108 | 11 | -451 | -61 |
| | 고성군 | 8,118 | 3,171 | 166 | 15 | -678 | -287 |
| | 동해시 | 29,672 | 3,681 | 67 | 1 | -168 | 223 |
| | 삼척시 | 19,399 | 3,611 | 75 | 3 | -237 | 153 |
| | 속초시 | 27,811 | 3,205 | 156 | 13 | -643 | -253 |
| | 양구군 | 7,187 | 3,526 | 89 | 6 | -322 | 68 |
| | 양양군 | 7,911 | 3,171 | 167 | 16 | -678 | -287 |
| | 영월군 | 10,614 | 3,525 | 90 | 7 | -324 | 67 |
| | 원주시 | 131,668 | 3,507 | 92 | 8 | -341 | 49 |

| | 기초 자치단체 | 노동자 인원수 | 평균 근로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인제군 | 11,225 | 3,576 | 80 | 4 | -272 | 118 |
| | 정선군 | 10,747 | 3,302 | 128 | 12 | -546 | -156 |
| | 철원군 | 13,221 | 3,468 | 98 | 10 | -381 | 10 |
| | 춘천시 | 103,358 | 3,557 | 84 | 5 | -292 | 99 |
| | 태백시 | 14,090 | 3,614 | 74 | 2 | -234 | 156 |
| | 평창군 | 10,939 | 3,138 | 175 | 17 | -711 | -320 |
| | 홍천군 | 19,941 | 3,195 | 160 | 14 | -653 | -263 |
| | 화천군 | 8,536 | 3,486 | 95 | 9 | -363 | 28 |
| | 횡성군 | 12,816 | 3,070 | 198 | 18 | -779 | -388 |
| 대전 5개 | 대덕구 | 65,908 | 3,183 | 163 | 4 | -665 | -552 |
| | 동구 | 76,205 | 3,046 | 205 | 5 | -803 | -689 |
| | 서구 | 182,982 | 3,673 | 68 | 2 | -176 | -62 |
| | 유성구 | 145,761 | 4,653 | 14 | 1 | 804 | 918 |
| | 중구 | 80,877 | 3,319 | 125 | 3 | -529 | -416 |
| 충청북도 11개 | 괴산군 | 10,209 | 3,051 | 204 | 11 | -798 | -543 |
| | 단양군 | 8,127 | 3,163 | 169 | 8 | -685 | -430 |
| | 보은군 | 8,109 | 3,177 | 165 | 7 | -672 | -417 |
| | 영동군 | 12,134 | 3,157 | 170 | 9 | -692 | -437 |
| | 옥천군 | 14,860 | 3,093 | 191 | 10 | -755 | -501 |
| | 음성군 | 41,090 | 3,197 | 159 | 6 | -652 | -397 |
| | 제천시 | 42,842 | 3,355 | 116 | 4 | -494 | -239 |
| | 증평군 | 14,476 | 3,342 | 118 | 5 | -506 | -252 |
| | 진천군 | 39,777 | 3,380 | 111 | 2 | -469 | -214 |
| | 청주시 | 345,730 | 3,825 | 52 | 1 | -23 | 231 |
| | 충주시 | 74,567 | 3,377 | 112 | 3 | -472 | -217 |
| 충청남도 15개 | 계룡시 | 16,072 | 4,504 | 20 | 1 | 656 | 760 |
| | 공주시 | 33,089 | 3,204 | 157 | 10 | -644 | -540 |
| | 금산군 | 13,103 | 3,116 | 181 | 12 | -732 | -628 |
| | 논산시 | 34,385 | 3,113 | 182 | 13 | -735 | -631 |
| | 당진시 | 62,375 | 3,788 | 58 | 5 | -60 | 44 |
| | 보령시 | 31,258 | 3,339 | 119 | 8 | -510 | -405 |
| | 부여군 | 16,463 | 2,985 | 215 | 15 | -863 | -759 |
| | 서산시 | 62,732 | 4,112 | 30 | 2 | 263 | 367 |
| | 서천군 | 12,808 | 3,231 | 148 | 9 | -617 | -513 |
| | 아산시 | 135,691 | 4,024 | 38 | 3 | 176 | 280 |
| | 예산군 | 23,324 | 3,075 | 197 | 14 | -773 | -669 |
| | 천안시 | 276,582 | 3,884 | 45 | 4 | 36 | 140 |
| | 청양군 | 7,781 | 3,144 | 174 | 11 | -705 | -601 |
| | 태안군 | 15,702 | 3,368 | 115 | 7 | -480 | -376 |
| | 홍성군 | 32,353 | 3,465 | 99 | 6 | -383 | -279 |

| | 기초 자치단체 | 노동자 인원수 | 평균 근로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세종시 | | 세종 | 4,550 | 16 | 1 | 701 | 0 |
| 광주 5개 | 광산구 | 159,796 | 3,583 | 79 | 4 | -265 | -30 |
| | 남구 | 74,567 | 3,803 | 56 | 1 | -45 | 190 |
| | 동구 | 36,542 | 3,718 | 63 | 3 | -130 | 105 |
| | 북구 | 153,001 | 3,414 | 106 | 5 | -434 | -199 |
| | 서구 | 109,103 | 3,770 | 59 | 2 | -79 | 157 |
| 전라북도 14개 | 고창군 | 12,175 | 3,233 | 146 | 6 | -615 | -181 |
| | 군산시 | 88,289 | 3,464 | 100 | 2 | -385 | 50 |
| | 김제시 | 22,550 | 2,918 | 222 | 13 | -931 | -496 |
| | 남원시 | 21,872 | 3,055 | 202 | 12 | -794 | -359 |
| | 무주군 | 6,071 | 3,102 | 186 | 9 | -746 | -312 |
| | 부안군 | 12,791 | 2,871 | 224 | 14 | -978 | -543 |
| | 순창군 | 6,493 | 3,282 | 130 | 4 | -567 | -132 |
| | 완주군 | 29,138 | 3,351 | 117 | 3 | -497 | -63 |
| | 익산시 | 92,943 | 3,247 | 140 | 5 | -601 | -167 |
| | 임실군 | 6,637 | 3,192 | 161 | 7 | -657 | -222 |
| | 장수군 | 5,231 | 3,103 | 184 | 8 | -745 | -311 |
| | 전주시 | 239,207 | 3,664 | 69 | 1 | -184 | 250 |
| | 정읍시 | 30,892 | 3,066 | 199 | 11 | -783 | -348 |
| | 진안군 | 6,315 | 3,090 | 192 | 10 | -758 | -324 |
| 전라남도 22개 | 강진군 | 8,242 | 3,183 | 164 | 13 | -666 | -425 |
| | 고흥군 | 12,401 | 3,053 | 203 | 20 | -795 | -554 |
| | 곡성군 | 7,001 | 3,370 | 113 | 8 | -479 | -238 |
| | 광양시 | 53,552 | 4,254 | 25 | 1 | 405 | 646 |
| | 구례군 | 6,427 | 3,055 | 201 | 19 | -793 | -552 |
| | 나주시 | 40,252 | 3,471 | 97 | 6 | -377 | -136 |
| | 담양군 | 13,676 | 3,338 | 121 | 10 | -511 | -270 |
| | 목포시 | 69,092 | 3,170 | 168 | 14 | -678 | -438 |
| | 무안군 | 29,323 | 3,751 | 61 | 4 | -98 | 143 |
| | 보성군 | 8,623 | 3,061 | 200 | 18 | -788 | -547 |
| | 순천시 | 96,218 | 3,876 | 47 | 3 | 28 | 269 |
| | 신안군 | 7,561 | 3,380 | 110 | 7 | -468 | -227 |
| | 여수시 | 90,887 | 4,098 | 31 | 2 | 249 | 490 |
| | 영광군 | 14,096 | 3,563 | 83 | 5 | -286 | -45 |
| | 영암군 | 18,026 | 3,022 | 209 | 21 | -827 | -586 |
| | 완도군 | 10,222 | 3,123 | 177 | 16 | -725 | -484 |
| | 장성군 | 12,912 | 3,370 | 114 | 9 | -479 | -238 |
| | 장흥군 | 8,643 | 3,242 | 141 | 11 | -606 | -365 |
| | 진도군 | 6,180 | 3,221 | 151 | 12 | -627 | -387 |
| | 함평군 | 7,690 | 3,129 | 176 | 15 | -720 | -479 |

| | 기초 자치단체 | 노동자 인원수 | 평균 근로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해남군 | 15,594 | 2,999 | 213 | 22 | -849 | -608 |
| | 화순군 | 19,342 | 3,103 | 185 | 17 | -746 | -505 |
| 대구 8개 | 남구 | 43,974 | 2,878 | 223 | 7 | -970 | -638 |
| | 달서구 | 197,244 | 3,489 | 94 | 3 | -360 | -28 |
| | 달성군 | 99,265 | 3,329 | 122 | 4 | -520 | -188 |
| | 동구 | 115,012 | 3,274 | 133 | 5 | -574 | -243 |
| | 북구 | 151,991 | 3,236 | 144 | 6 | -612 | -281 |
| | 서구 | 51,515 | 2,611 | 228 | 8 | -1,238 | -906 |
| | 수성구 | 138,660 | 4,722 | 11 | 1 | 874 | 1,206 |
| | 중구 | 24,905 | 3,607 | 76 | 2 | -241 | 91 |
| 경상북도 23개 | 경산시 | 94,770 | 3,119 | 180 | 16 | -729 | -461 |
| | 경주시 | 86,672 | 3,595 | 78 | 6 | -254 | 15 |
| | 고령군 | 8,808 | 3,015 | 211 | 19 | -833 | -565 |
| | 구미시 | 157,303 | 3,907 | 44 | 3 | 58 | 327 |
| | 군위군 | 5,568 | 3,241 | 143 | 11 | -608 | -339 |
| | 김천시 | 44,325 | 3,575 | 81 | 7 | -273 | -5 |
| | 문경시 | 19,749 | 3,102 | 187 | 18 | -747 | -478 |
| | 봉화군 | 6,545 | 3,183 | 162 | 13 | -665 | -397 |
| | 상주시 | 23,813 | 3,148 | 172 | 14 | -701 | -433 |
| | 성주군 | 10,804 | 2,943 | 218 | 21 | -906 | -637 |
| | 안동시 | 46,746 | 3,454 | 102 | 8 | -394 | -126 |
| | 영덕군 | 7,646 | 2,923 | 220 | 22 | -926 | -657 |
| | 영양군 | 3,526 | 3,232 | 147 | 12 | -617 | -349 |
| | 영주시 | 28,159 | 3,424 | 105 | 9 | -424 | -156 |
| | 영천시 | 30,277 | 3,145 | 173 | 15 | -703 | -435 |
| | 예천군 | 14,942 | 3,682 | 66 | 5 | -166 | 102 |
| | 울릉군 | 2,880 | 3,880 | 46 | 4 | 31 | 299 |
| | 울진군 | 13,499 | 3,959 | 39 | 2 | 111 | 379 |
| | 의성군 | 11,095 | 2,843 | 225 | 23 | -1,005 | -737 |
| | 청도군 | 10,063 | 3,104 | 183 | 17 | -745 | -476 |
| | 청송군 | 5,512 | 2,996 | 214 | 20 | -853 | -584 |
| | 칠곡군 | 40,676 | 3,253 | 136 | 10 | -595 | -327 |
| | 포항시 | 167,685 | 4,051 | 35 | 1 | 203 | 471 |
| 부산 16개 | 강서구 | 58,119 | 3,912 | 42 | 2 | 63 | 355 |
| | 금정구 | 77,220 | 3,691 | 65 | 6 | -157 | 134 |
| | 기장군 | 60,724 | 3,537 | 87 | 7 | -311 | -20 |
| | 남구 | 88,118 | 3,819 | 53 | 3 | -29 | 262 |
| | 동구 | 29,725 | 2,950 | 217 | 14 | -898 | -607 |
| | 동래구 | 93,226 | 3,810 | 55 | 4 | -39 | 253 |
| | 부산진구 | 125,012 | 3,292 | 129 | 11 | -557 | -265 |

| | 기초 자치단체 | 노동자 인원수 | 평균 근로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북구 | 101,899 | 3,386 | 109 | 9 | -462 | -171 |
| | 사상구 | 77,129 | 2,918 | 221 | 15 | -930 | -639 |
| | 사하구 | 112,918 | 3,123 | 178 | 12 | -726 | -434 |
| | 서구 | 33,999 | 3,323 | 124 | 10 | -525 | -234 |
| | 수영구 | 62,027 | 3,534 | 88 | 8 | -314 | -22 |
| | 연제구 | 71,974 | 3,703 | 64 | 5 | -145 | 146 |
| | 영도구 | 35,180 | 3,008 | 212 | 13 | -840 | -549 |
| | 중구 | 14,070 | 2,581 | 229 | 16 | -1,267 | -976 |
| | 해운대구 | 137,018 | 4,449 | 21 | 1 | 601 | 892 |
| 울산 5개 | 남구 | 119,765 | 4,608 | 15 | 1 | 759 | 252 |
| | 동구 | 60,041 | 4,082 | 34 | 4 | 234 | -273 |
| | 북구 | 88,753 | 4,540 | 18 | 2 | 692 | 185 |
| | 울주군 | 82,570 | 4,029 | 37 | 5 | 181 | -326 |
| | 중구 | 76,665 | 4,314 | 24 | 3 | 465 | -42 |
| 경상남도 18개 | 거제시 | 89,597 | 3,844 | 50 | 2 | -4 | 241 |
| | 거창군 | 16,008 | 3,324 | 123 | 7 | -525 | -280 |
| | 고성군 | 12,948 | 3,037 | 206 | 18 | -811 | -566 |
| | 김해시 | 209,400 | 3,462 | 101 | 5 | -386 | -141 |
| | 남해군 | 9,754 | 3,076 | 196 | 17 | -773 | -527 |
| | 밀양시 | 30,956 | 3,101 | 188 | 13 | -747 | -502 |
| | 사천시 | 36,703 | 3,633 | 73 | 4 | -216 | 29 |
| | 산청군 | 8,187 | 3,078 | 194 | 15 | -770 | -525 |
| | 양산시 | 131,194 | 3,403 | 107 | 6 | -445 | -200 |
| | 의령군 | 6,744 | 3,250 | 138 | 8 | -599 | -354 |
| | 진주시 | 119,900 | 3,752 | 60 | 3 | -97 | 149 |
| | 창녕군 | 17,322 | 3,077 | 195 | 16 | -771 | -526 |
| | 창원시 | 390,167 | 3,860 | 48 | 1 | 11 | 256 |
| | 통영시 | 34,777 | 3,095 | 189 | 14 | -753 | -508 |
| | 하동군 | 9,654 | 3,212 | 153 | 11 | -637 | -391 |
| | 함안군 | 21,447 | 3,234 | 145 | 10 | -614 | -369 |
| | 함양군 | 9,374 | 3,202 | 158 | 12 | -647 | -401 |
| | 합천군 | 9,322 | 3,248 | 139 | 9 | -601 | -355 |
| 제주 | 제주시 | 173,124 | 3,310 | 127 | 1 | -538 | 23 |
| | 서귀포시 | 55,593 | 3,215 | 152 | 2 | -633 | -72 |
| 기타 | | 5,126 | 1,722 | - | 1 | -2,126 | - |

주: 1. 근로소득자 주거지 기준으로 230개 지역으로 분류하되 기타는 순위에서 제외.
2. 기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주민등록번호 신고분, 외국인 등) 기타로 구분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2. 기초자치단체별 종합소득 편차(2020)

(단위: 명, 만원, 위)

| | 기초 자치단체 |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 평균 종합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서울 25개 | 강남구 | 130,702 | 11,286 | 2 | 2 | 8,117 | 6,879 |
| | 강동구 | 80,457 | 2,998 | 40 | 15 | -171 | -1,410 |
| | 강북구 | 49,833 | 1,795 | 227 | 25 | -1,374 | -2,612 |
| | 강서구 | 101,124 | 2,626 | 70 | 16 | -543 | -1,782 |
| | 관악구 | 93,467 | 2,041 | 189 | 22 | -1,128 | -2,366 |
| | 광진구 | 68,627 | 3,118 | 32 | 12 | -51 | -1,289 |
| | 구로구 | 72,565 | 2,402 | 109 | 18 | -767 | -2,005 |
| | 금천구 | 43,260 | 1,947 | 208 | 23 | -1,222 | -2,460 |
| | 노원구 | 79,811 | 2,443 | 100 | 17 | -726 | -1,964 |
| | 도봉구 | 53,471 | 2,140 | 171 | 21 | -1,029 | -2,267 |
| | 동대문구 | 61,691 | 2,381 | 114 | 19 | -788 | -2,026 |
| | 동작구 | 71,605 | 3,057 | 34 | 13 | -113 | -1,351 |
| | 마포구 | 74,386 | 3,744 | 16 | 9 | 575 | -663 |
| | 서대문구 | 55,629 | 3,032 | 36 | 14 | -137 | -1,375 |
| | 서초구 | 98,820 | 10,617 | 3 | 3 | 7,448 | 6,209 |
| | 성동구 | 58,067 | 4,556 | 11 | 7 | 1,387 | 149 |
| | 성북구 | 77,127 | 3,632 | 18 | 11 | 463 | -775 |
| | 송파구 | 131,836 | 5,012 | 8 | 5 | 1,843 | 605 |
| | 양천구 | 82,170 | 4,374 | 12 | 8 | 1,205 | -33 |
| | 영등포구 | 75,044 | 3,693 | 17 | 10 | 524 | -714 |
| | 용산구 | 50,245 | 12,561 | 1 | 1 | 9,392 | 8,154 |
| | 은평구 | 80,820 | 2,286 | 137 | 20 | -883 | -2,121 |
| | 종로구 | 30,390 | 6,052 | 6 | 4 | 2,883 | 1,645 |
| | 중구 | 26,259 | 4,751 | 10 | 6 | 1,582 | 344 |
| | 중랑구 | 68,553 | 1,906 | 215 | 24 | -1,263 | -2,501 |
| 인천 10개 | 강화군 | 9,666 | 2,388 | 113 | 3 | -781 | -126 |
| | 계양구 | 49,837 | 1,958 | 204 | 8 | -1,211 | -556 |
| | 미추홀구 | 63,543 | 1,869 | 222 | 9 | -1,300 | -644 |
| | 남동구 | 85,456 | 2,377 | 115 | 4 | -792 | -136 |
| | 동구 | 8,259 | 1,738 | 229 | 10 | -1,431 | -776 |
| | 부평구 | 81,692 | 2,082 | 184 | 7 | -1,088 | -432 |
| | 서구 | 91,879 | 2,545 | 80 | 2 | -624 | 31 |
| | 연수구 | 70,011 | 4,316 | 13 | 1 | 1,147 | 1,802 |
| | 옹진군 | 2,750 | 2,328 | 121 | 5 | -841 | -185 |
| | 중구 | 21,996 | 2,271 | 145 | 6 | -898 | -242 |
| 경기도 31개 | 가평군 | 9,330 | 2,470 | 93 | 16 | -699 | -395 |
| | 고양시 | 198,896 | 2,849 | 48 | 10 | -320 | -16 |

| | 기초 자치단체 |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 평균 종합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과천시 | 12,406 | 6,621 | 4 | 1 | 3,452 | 3,756 |
| | 광명시 | 50,938 | 2,805 | 55 | 11 | -364 | -59 |
| | 광주시 | 71,178 | 2,545 | 79 | 14 | -624 | -319 |
| | 구리시 | 35,438 | 2,398 | 111 | 21 | -771 | -466 |
| | 군포시 | 45,471 | 2,713 | 59 | 12 | -456 | -152 |
| | 김포시 | 86,634 | 2,690 | 63 | 13 | -479 | -175 |
| | 남양주시 | 131,469 | 2,495 | 87 | 15 | -674 | -370 |
| | 동두천시 | 12,997 | 1,846 | 225 | 31 | -1,323 | -1,019 |
| | 부천시 | 146,335 | 2,468 | 94 | 17 | -701 | -396 |
| | 성남시 | 164,663 | 4,904 | 9 | 2 | 1,735 | 2,040 |
| | 수원시 | 194,073 | 2,861 | 46 | 9 | -308 | -4 |
| | 시흥시 | 91,205 | 2,322 | 123 | 23 | -847 | -542 |
| | 안산시 | 114,349 | 2,273 | 143 | 26 | -896 | -591 |
| | 안성시 | 27,613 | 2,449 | 99 | 18 | -720 | -415 |
| | 안양시 | 94,118 | 2,901 | 43 | 7 | -268 | 36 |
| | 양주시 | 37,465 | 2,143 | 169 | 28 | -1,026 | -721 |
| | 양평군 | 19,268 | 3,150 | 29 | 6 | -19 | 285 |
| | 여주시 | 15,512 | 2,282 | 139 | 25 | -887 | -582 |
| | 연천군 | 4,970 | 1,949 | 206 | 30 | -1,220 | -916 |
| | 오산시 | 37,142 | 2,185 | 158 | 27 | -984 | -679 |
| | 용인시 | 178,450 | 3,520 | 21 | 3 | 351 | 656 |
| | 의왕시 | 29,049 | 3,229 | 26 | 4 | 60 | 364 |
| | 의정부시 | 76,763 | 1,977 | 200 | 29 | -1,192 | -888 |
| | 이천시 | 30,951 | 2,442 | 101 | 19 | -727 | -422 |
| | 파주시 | 77,266 | 2,322 | 126 | 24 | -847 | -542 |
| | 평택시 | 83,341 | 2,349 | 119 | 22 | -820 | -516 |
| | 포천시 | 23,158 | 2,439 | 103 | 20 | -730 | -425 |
| | 하남시 | 56,924 | 2,882 | 45 | 8 | -287 | 18 |
| | 화성시 | 133,879 | 3,178 | 27 | 5 | 9 | 314 |
| 강원도 18개 | 강릉시 | 28,907 | 2,656 | 65 | 3 | -513 | 202 |
| | 고성군 | 3,430 | 2,621 | 71 | 4 | -548 | 167 |
| | 동해시 | 10,265 | 2,365 | 116 | 9 | -805 | -89 |
| | 삼척시 | 6,463 | 2,299 | 130 | 10 | -870 | -155 |
| | 속초시 | 11,546 | 2,783 | 56 | 1 | -386 | 329 |
| | 양구군 | 2,230 | 2,097 | 176 | 15 | -1,072 | -357 |
| | 양양군 | 3,610 | 2,190 | 156 | 11 | -980 | -264 |
| | 영월군 | 4,161 | 2,500 | 86 | 7 | -669 | 46 |
| | 원주시 | 48,504 | 2,457 | 97 | 8 | -712 | 3 |
| | 인제군 | 3,696 | 2,125 | 173 | 14 | -1,044 | -329 |
| | 정선군 | 3,706 | 1,889 | 217 | 18 | -1,281 | -565 |

| | 기초 자치단체 |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 평균 종합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철원군 | 4,440 | 1,910 | 214 | 17 | -1,259 | -544 |
| | 춘천시 | 36,622 | 2,528 | 82 | 6 | -641 | 74 |
| | 태백시 | 4,099 | 2,672 | 64 | 2 | -497 | 218 |
| | 평창군 | 5,297 | 2,581 | 74 | 5 | -589 | 127 |
| | 홍천군 | 8,236 | 2,143 | 170 | 13 | -1,026 | -311 |
| | 화천군 | 2,507 | 1,924 | 212 | 16 | -1,245 | -530 |
| | 횡성군 | 5,239 | 2,156 | 163 | 12 | -1,013 | -297 |
| 대전 5개 | 대덕구 | 23,873 | 2,068 | 185 | 4 | -1,102 | -823 |
| | 동구 | 27,737 | 2,035 | 190 | 5 | -1,134 | -856 |
| | 서구 | 69,192 | 2,845 | 49 | 2 | -324 | -46 |
| | 유성구 | 55,098 | 3,966 | 14 | 1 | 797 | 1,075 |
| | 중구 | 31,796 | 2,493 | 88 | 3 | -676 | -398 |
| 충청북도 11개 | 괴산군 | 3,893 | 2,022 | 193 | 10 | -1,147 | -569 |
| | 단양군 | 2,892 | 1,884 | 219 | 11 | -1,285 | -707 |
| | 보은군 | 2,992 | 2,096 | 177 | 8 | -1,073 | -495 |
| | 영동군 | 4,253 | 2,152 | 166 | 7 | -1,018 | -440 |
| | 옥천군 | 5,441 | 2,180 | 159 | 6 | -989 | -411 |
| | 음성군 | 11,916 | 2,453 | 98 | 2 | -716 | -138 |
| | 제천시 | 16,017 | 2,307 | 128 | 5 | -862 | -284 |
| | 증평군 | 4,319 | 2,058 | 186 | 9 | -1,111 | -533 |
| | 진천군 | 11,105 | 2,411 | 107 | 4 | -758 | -180 |
| | 청주시 | 112,399 | 2,808 | 54 | 1 | -361 | 217 |
| | 충주시 | 26,195 | 2,436 | 105 | 3 | -733 | -156 |
| 충청남도 15개 | 계룡시 | 4,799 | 2,855 | 47 | 1 | -314 | 381 |
| | 공주시 | 12,097 | 2,316 | 127 | 7 | -853 | -158 |
| | 금산군 | 5,386 | 2,110 | 174 | 12 | -1,059 | -364 |
| | 논산시 | 12,013 | 2,083 | 183 | 13 | -1,086 | -391 |
| | 당진시 | 20,877 | 2,287 | 136 | 9 | -882 | -187 |
| | 보령시 | 11,792 | 2,299 | 131 | 8 | -870 | -175 |
| | 부여군 | 6,046 | 2,030 | 191 | 14 | -1,139 | -445 |
| | 서산시 | 20,092 | 2,522 | 83 | 3 | -647 | 48 |
| | 서천군 | 5,072 | 2,402 | 110 | 5 | -767 | -73 |
| | 아산시 | 44,795 | 2,408 | 108 | 4 | -761 | -66 |
| | 예산군 | 8,972 | 2,165 | 161 | 10 | -1,004 | -309 |
| | 천안시 | 100,230 | 2,731 | 58 | 2 | -438 | 257 |
| | 청양군 | 2,889 | 2,001 | 198 | 15 | -1,168 | -474 |
| | 태안군 | 7,706 | 2,155 | 165 | 11 | -1,014 | -320 |
| | 홍성군 | 12,063 | 2,363 | 117 | 6 | -806 | -112 |
| 세종시 | | 47,366 | 3,140 | 31 | 1 | -29 | 0 |

| | 기초 자치단체 |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 평균 종합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광주 5개 | 광산구 | 54,307 | 2,608 | 73 | 4 | -561 | -385 |
| | 남구 | 27,480 | 3,792 | 15 | 1 | 623 | 799 |
| | 동구 | 14,405 | 3,108 | 33 | 3 | -61 | 115 |
| | 북구 | 56,966 | 2,577 | 75 | 5 | -592 | -416 |
| | 서구 | 42,579 | 3,487 | 22 | 2 | 317 | 494 |
| 전라북도 14개 | 고창군 | 4,776 | 2,101 | 175 | 5 | -1,068 | -379 |
| | 군산시 | 31,765 | 2,295 | 134 | 3 | -874 | -185 |
| | 김제시 | 8,027 | 2,085 | 182 | 7 | -1,084 | -395 |
| | 남원시 | 8,185 | 2,090 | 179 | 6 | -1,079 | -390 |
| | 무주군 | 2,236 | 1,870 | 221 | 12 | -1,299 | -610 |
| | 부안군 | 5,157 | 1,974 | 201 | 9 | -1,195 | -506 |
| | 순창군 | 2,331 | 1,862 | 224 | 13 | -1,307 | -618 |
| | 완주군 | 10,134 | 2,005 | 196 | 8 | -1,164 | -475 |
| | 익산시 | 32,729 | 2,355 | 118 | 2 | -814 | -125 |
| | 임실군 | 2,387 | 1,962 | 203 | 10 | -1,207 | -518 |
| | 장수군 | 1,679 | 1,820 | 226 | 14 | -1,349 | -660 |
| | 전주시 | 88,187 | 2,883 | 44 | 1 | -286 | 403 |
| | 정읍시 | 11,101 | 2,151 | 167 | 4 | -1,018 | -329 |
| | 진안군 | 2,238 | 1,940 | 211 | 11 | -1,229 | -540 |
| 전라남도 22개 | 강진군 | 3,124 | 2,048 | 188 | 13 | -1,121 | -419 |
| | 고흥군 | 5,173 | 2,014 | 194 | 14 | -1,156 | -454 |
| | 곡성군 | 2,539 | 1,995 | 199 | 16 | -1,174 | -472 |
| | 광양시 | 17,240 | 2,543 | 81 | 3 | -626 | 75 |
| | 구례군 | 2,304 | 1,882 | 220 | 21 | -1,287 | -585 |
| | 나주시 | 12,420 | 2,155 | 164 | 11 | -1,014 | -313 |
| | 담양군 | 5,064 | 2,327 | 122 | 5 | -842 | -141 |
| | 목포시 | 26,115 | 2,296 | 133 | 6 | -873 | -172 |
| | 무안군 | 9,261 | 2,491 | 89 | 4 | -678 | 24 |
| | 보성군 | 3,546 | 1,942 | 210 | 18 | -1,227 | -526 |
| | 순천시 | 35,095 | 2,838 | 51 | 2 | -331 | 370 |
| | 신안군 | 3,456 | 1,906 | 216 | 20 | -1,263 | -562 |
| | 여수시 | 32,296 | 3,049 | 35 | 1 | -120 | 581 |
| | 영광군 | 5,141 | 2,277 | 141 | 7 | -892 | -191 |
| | 영암군 | 5,245 | 1,944 | 209 | 17 | -1,225 | -524 |
| | 완도군 | 4,457 | 1,921 | 213 | 19 | -1,248 | -546 |
| | 장성군 | 4,628 | 2,187 | 157 | 10 | -982 | -281 |
| | 장흥군 | 3,170 | 2,005 | 195 | 15 | -1,164 | -462 |
| | 진도군 | 2,500 | 1,863 | 223 | 22 | -1,306 | -605 |
| | 함평군 | 2,691 | 2,096 | 178 | 12 | -1,074 | -372 |
| | 해남군 | 6,088 | 2,271 | 144 | 8 | -898 | -196 |

| | 기초 자치단체 |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 평균 종합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화순군 | 6,621 | 2,235 | 151 | 9 | -934 | -232 |
| 대구 8개 | 남구 | 18,173 | 2,285 | 138 | 7 | -884 | -1,116 |
| | 달서구 | 73,968 | 3,171 | 28 | 2 | 1 | -230 |
| | 달성군 | 33,097 | 2,571 | 76 | 5 | -598 | -829 |
| | 동구 | 41,822 | 2,483 | 91 | 6 | -686 | -918 |
| | 북구 | 60,356 | 2,655 | 66 | 4 | -514 | -745 |
| | 서구 | 18,494 | 2,026 | 192 | 8 | -1,143 | -1,374 |
| | 수성구 | 65,872 | 6,081 | 5 | 1 | 2,911 | 2,680 |
| | 중구 | 11,848 | 3,146 | 30 | 3 | -23 | -255 |
| 경상북도 23개 | 경산시 | 32,445 | 2,242 | 150 | 17 | -927 | -207 |
| | 경주시 | 30,038 | 2,468 | 95 | 7 | -701 | 19 |
| | 고령군 | 3,379 | 2,651 | 67 | 3 | -518 | 203 |
| | 구미시 | 48,904 | 2,704 | 60 | 2 | -465 | 256 |
| | 군위군 | 2,136 | 2,436 | 104 | 9 | -733 | -13 |
| | 김천시 | 13,976 | 2,263 | 146 | 14 | -907 | -186 |
| | 문경시 | 7,182 | 2,322 | 124 | 11 | -847 | -126 |
| | 봉화군 | 2,437 | 2,087 | 181 | 21 | -1,082 | -362 |
| | 상주시 | 9,109 | 2,256 | 149 | 16 | -914 | -193 |
| | 성주군 | 4,180 | 2,732 | 57 | 1 | -437 | 283 |
| | 안동시 | 16,807 | 2,518 | 84 | 6 | -651 | 69 |
| | 영덕군 | 3,567 | 1,948 | 207 | 22 | -1,221 | -501 |
| | 영양군 | 1,149 | 2,146 | 168 | 18 | -1,023 | -303 |
| | 영주시 | 10,376 | 2,457 | 96 | 8 | -712 | 9 |
| | 영천시 | 10,134 | 2,301 | 129 | 12 | -868 | -148 |
| | 예천군 | 4,969 | 2,277 | 140 | 13 | -892 | -171 |
| | 울릉군 | 990 | 2,132 | 172 | 19 | -1,037 | -317 |
| | 울진군 | 4,753 | 2,418 | 106 | 10 | -751 | -31 |
| | 의성군 | 3,958 | 2,088 | 180 | 20 | -1,081 | -361 |
| | 청도군 | 3,737 | 2,565 | 77 | 4 | -604 | 116 |
| | 청송군 | 2,026 | 1,758 | 228 | 23 | -1,412 | -691 |
| | 칠곡군 | 13,939 | 2,260 | 148 | 15 | -909 | -188 |
| | 포항시 | 60,029 | 2,560 | 78 | 5 | -609 | 111 |
| 부산 16개 | 강서구 | 20,995 | 3,550 | 20 | 3 | 381 | 347 |
| | 금정구 | 33,374 | 3,377 | 23 | 4 | 208 | 174 |
| | 기장군 | 22,493 | 2,395 | 112 | 11 | -774 | -808 |
| | 남구 | 38,756 | 3,577 | 19 | 2 | 408 | 374 |
| | 동구 | 10,787 | 2,227 | 152 | 13 | -942 | -976 |
| | 동래구 | 39,381 | 3,344 | 25 | 5 | 175 | 141 |
| | 부산진구 | 50,828 | 2,611 | 72 | 10 | -558 | -592 |
| | 북구 | 37,336 | 2,704 | 61 | 9 | -465 | -499 |

| | 기초 자치단체 |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 평균 종합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사상구 | 27,120 | 2,222 | 153 | 14 | -947 | -981 |
| | 사하구 | 38,125 | 2,322 | 125 | 12 | -847 | -881 |
| | 서구 | 13,333 | 2,836 | 52 | 8 | -333 | -367 |
| | 수영구 | 27,998 | 2,993 | 41 | 7 | -176 | -210 |
| | 연제구 | 29,591 | 3,007 | 39 | 6 | -163 | -196 |
| | 영도구 | 13,104 | 2,191 | 155 | 15 | -978 | -1,012 |
| | 중구 | 5,498 | 1,885 | 218 | 16 | -1,284 | -1,318 |
| | 해운대구 | 62,115 | 5,482 | 7 | 1 | 2,312 | 2,279 |
| 울산 5개 | 남구 | 44,262 | 3,370 | 24 | 1 | 201 | 499 |
| | 동구 | 16,197 | 2,299 | 132 | 5 | -870 | -572 |
| | 북구 | 23,994 | 2,697 | 62 | 3 | -472 | -175 |
| | 울주군 | 28,436 | 2,627 | 69 | 4 | -542 | -244 |
| | 중구 | 27,251 | 2,810 | 53 | 2 | -359 | -61 |
| 경상남도 18개 | 거제시 | 30,776 | 2,275 | 142 | 10 | -894 | -352 |
| | 거창군 | 5,994 | 2,440 | 102 | 7 | -729 | -187 |
| | 고성군 | 5,201 | 1,952 | 205 | 18 | -1,217 | -675 |
| | 김해시 | 75,115 | 2,638 | 68 | 3 | -531 | 11 |
| | 남해군 | 4,279 | 2,344 | 120 | 8 | -825 | -283 |
| | 밀양시 | 10,750 | 2,219 | 154 | 12 | -950 | -409 |
| | 사천시 | 11,688 | 2,509 | 85 | 4 | -660 | -118 |
| | 산청군 | 3,241 | 2,056 | 187 | 15 | -1,113 | -571 |
| | 양산시 | 47,894 | 2,290 | 135 | 9 | -879 | -337 |
| | 의령군 | 2,237 | 2,002 | 197 | 16 | -1,167 | -625 |
| | 진주시 | 42,185 | 3,015 | 38 | 1 | -155 | 387 |
| | 창녕군 | 5,752 | 2,159 | 162 | 14 | -1,011 | -469 |
| | 창원시 | 133,538 | 2,929 | 42 | 2 | -240 | 302 |
| | 통영시 | 16,525 | 2,179 | 160 | 13 | -990 | -448 |
| | 하동군 | 4,207 | 1,971 | 202 | 17 | -1,198 | -656 |
| | 함안군 | 7,140 | 2,485 | 90 | 5 | -684 | -142 |
| | 함양군 | 3,492 | 2,261 | 147 | 11 | -908 | -366 |
| | 합천군 | 3,420 | 2,478 | 92 | 6 | -691 | -149 |
| 제주 | 제주시 | 23,938 | 3,028 | 37 | 1 | -141 | 139 |
| | 서귀포시 | 67,304 | 2,840 | 50 | 2 | -329 | -49 |

주: 종합소득세 신고자 주거지 기준으로 229개 지역으로 분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4-2-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3. 기초자치단체별 양도소득 편차(2020)

(단위: 건, 만원, 위)

| | 기초 자치단체 |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 평균 양도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서울 25개 | 강남구 | 25,723 | 43,007 | 2 | 2 | 30,077 | 20,245 |
| | 강동구 | 9,700 | 15,098 | 27 | 13 | 2,169 | -7,664 |
| | 강북구 | 3,325 | 11,673 | 51 | 22 | -1,256 | -11,089 |
| | 강서구 | 9,200 | 12,063 | 48 | 21 | -866 | -10,698 |
| | 관악구 | 6,320 | 12,663 | 40 | 17 | -267 | -10,099 |
| | 광진구 | 6,273 | 20,880 | 11 | 8 | 7,950 | -1,882 |
| | 구로구 | 6,103 | 12,638 | 42 | 18 | -291 | -10,124 |
| | 금천구 | 2,671 | 10,743 | 66 | 25 | -2,187 | -12,019 |
| | 노원구 | 7,386 | 10,825 | 63 | 24 | -2,104 | -11,936 |
| | 도봉구 | 4,116 | 11,671 | 52 | 23 | -1,258 | -11,091 |
| | 동대문구 | 5,230 | 14,155 | 32 | 16 | 1,226 | -8,607 |
| | 동작구 | 8,090 | 16,184 | 21 | 12 | 3,255 | -6,578 |
| | 마포구 | 8,947 | 18,350 | 14 | 10 | 5,421 | -4,412 |
| | 서대문구 | 6,149 | 14,620 | 29 | 14 | 1,691 | -8,142 |
| | 서초구 | 19,938 | 34,398 | 3 | 3 | 21,469 | 11,636 |
| | 성동구 | 7,386 | 23,174 | 8 | 6 | 10,245 | 412 |
| | 성북구 | 7,116 | 24,195 | 7 | 5 | 11,266 | 1,434 |
| | 송파구 | 20,145 | 21,918 | 10 | 7 | 8,989 | -844 |
| | 양천구 | 10,325 | 14,377 | 30 | 15 | 1,448 | -8,385 |
| | 영등포구 | 9,339 | 17,639 | 17 | 11 | 4,710 | -5,122 |
| | 용산구 | 8,562 | 47,608 | 1 | 1 | 34,678 | 24,846 |
| | 은평구 | 7,084 | 12,382 | 46 | 19 | -547 | -10,380 |
| | 종로구 | 4,140 | 25,391 | 6 | 4 | 12,461 | 2,629 |
| | 중구 | 4,812 | 18,698 | 13 | 9 | 5,769 | -4,064 |
| | 중랑구 | 4,160 | 12,091 | 47 | 20 | -839 | -10,671 |
| 인천 10개 | 강화군 | 2,570 | 10,796 | 65 | 1 | -2,133 | 2,338 |
| | 계양구 | 3,867 | 9,096 | 92 | 4 | -3,833 | 638 |
| | 미추홀구 | 7,198 | 7,761 | 126 | 7 | -5,168 | -697 |
| | 남동구 | 723 | 5,380 | 207 | 10 | -7,549 | -3,078 |
| | 동구 | 5,035 | 7,653 | 129 | 8 | -5,276 | -805 |
| | 부평구 | 7,129 | 7,114 | 151 | 9 | -5,815 | -1,344 |
| | 서구 | 8,549 | 8,500 | 106 | 6 | -4,429 | 42 |
| | 연수구 | 9,502 | 9,588 | 76 | 3 | -3,342 | 1,130 |
| | 옹진군 | 393 | 9,604 | 75 | 2 | -3,325 | 1,146 |
| | 중구 | 2,562 | 8,792 | 96 | 5 | -4,137 | 334 |
| 경기도 31개 | 가평군 | 1,551 | 15,274 | 25 | 9 | 2,345 | 1,278 |
| | 고양시 | 19,451 | 13,844 | 33 | 11 | 915 | -152 |
| | 과천시 | 2,829 | 30,566 | 5 | 2 | 17,637 | 16,570 |

| | 기초 자치단체 |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 평균 양도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광명시 | 5,876 | 12,758 | 38 | 16 | -171 | -1,238 |
| | 광주시 | 6,365 | 17,233 | 18 | 5 | 4,304 | 3,237 |
| | 구리시 | 3,263 | 17,836 | 16 | 4 | 4,906 | 3,839 |
| | 군포시 | 4,856 | 11,493 | 55 | 22 | -1,437 | -2,504 |
| | 김포시 | 11,065 | 12,928 | 37 | 15 | -1 | -1,068 |
| | 남양주시 | 12,078 | 16,444 | 20 | 6 | 3,514 | 2,447 |
| | 동두천시 | 1,023 | 11,495 | 54 | 21 | -1,434 | -2,501 |
| | 부천시 | 11,936 | 9,493 | 80 | 29 | -3,436 | -4,503 |
| | 성남시 | 26,111 | 20,659 | 12 | 3 | 7,730 | 6,663 |
| | 수원시 | 21,957 | 10,207 | 70 | 27 | -2,722 | -3,789 |
| | 시흥시 | 7,034 | 9,509 | 78 | 28 | -3,421 | -4,488 |
| | 안산시 | 9,743 | 7,776 | 125 | 31 | -5,153 | -6,220 |
| | 안성시 | 3,835 | 13,820 | 34 | 12 | 891 | -176 |
| | 안양시 | 10,913 | 11,270 | 57 | 23 | -1,659 | -2,726 |
| | 양주시 | 3,536 | 12,503 | 44 | 18 | -426 | -1,493 |
| | 양평군 | 3,967 | 15,334 | 24 | 8 | 2,405 | 1,338 |
| | 여주시 | 2,404 | 11,641 | 53 | 20 | -1,288 | -2,355 |
| | 연천군 | 897 | 9,382 | 86 | 30 | -3,547 | -4,614 |
| | 오산시 | 2,820 | 11,728 | 50 | 19 | -1,201 | -2,268 |
| | 용인시 | 25,264 | 15,365 | 23 | 7 | 2,435 | 1,368 |
| | 의왕시 | 3,987 | 13,258 | 36 | 14 | 329 | -738 |
| | 의정부시 | 6,002 | 10,343 | 69 | 26 | -2,586 | -3,653 |
| | 이천시 | 4,120 | 13,512 | 35 | 13 | 583 | -484 |
| | 파주시 | 6,858 | 12,592 | 43 | 17 | -337 | -1,404 |
| | 평택시 | 8,817 | 10,809 | 64 | 24 | -2,121 | -3,188 |
| | 포천시 | 2,755 | 15,177 | 26 | 10 | 2,248 | 1,181 |
| | 하남시 | 6,635 | 31,455 | 4 | 1 | 18,526 | 17,459 |
| | 화성시 | 17,208 | 10,386 | 68 | 25 | -2,543 | -3,610 |
| 강원도 18개 | 강릉시 | 4,034 | 8,908 | 95 | 4 | -4,022 | 1,193 |
| | 고성군 | 578 | 7,865 | 120 | 6 | -5,064 | 151 |
| | 동해시 | 1,156 | 5,951 | 197 | 16 | -6,978 | -1,763 |
| | 삼척시 | 743 | 5,919 | 198 | 17 | -7,010 | -1,795 |
| | 속초시 | 1,926 | 8,335 | 108 | 5 | -4,594 | 621 |
| | 양구군 | 368 | 7,833 | 121 | 7 | -5,096 | 118 |
| | 양양군 | 731 | 9,431 | 83 | 3 | -3,498 | 1,717 |
| | 영월군 | 800 | 5,968 | 196 | 15 | -6,961 | -1,746 |
| | 원주시 | 6,310 | 7,564 | 137 | 9 | -5,365 | -151 |
| | 인제군 | 661 | 7,607 | 131 | 8 | -5,322 | -108 |
| | 정선군 | 601 | 6,613 | 164 | 13 | -6,316 | -1,101 |
| | 철원군 | 696 | 9,692 | 74 | 1 | -3,237 | 1,977 |

| | 기초 자치단체 |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 평균 양도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춘천시 | 5,489 | 7,440 | 146 | 12 | -5,489 | -274 |
| | 태백시 | 466 | 4,205 | 229 | 18 | -8,724 | -3,509 |
| | 평창군 | 1,184 | 9,471 | 81 | 2 | -3,458 | 1,757 |
| | 홍천군 | 1,719 | 7,474 | 143 | 11 | -5,455 | -241 |
| | 화천군 | 450 | 6,368 | 173 | 14 | -6,561 | -1,346 |
| | 횡성군 | 1,286 | 7,529 | 141 | 10 | -5,401 | -186 |
| 대전 5개 | 대덕구 | 2,521 | 7,913 | 119 | 3 | -5,016 | -1,272 |
| | 동구 | 3,561 | 6,963 | 158 | 5 | -5,966 | -2,222 |
| | 서구 | 9,465 | 7,594 | 134 | 4 | -5,335 | -1,591 |
| | 유성구 | 8,986 | 12,400 | 45 | 1 | -529 | 3,215 |
| | 중구 | 4,092 | 8,523 | 104 | 2 | -4,406 | -662 |
| 충청북도 11개 | 괴산군 | 1,035 | 7,046 | 154 | 5 | -5,883 | -967 |
| | 단양군 | 579 | 4,869 | 221 | 11 | -8,060 | -3,144 |
| | 보은군 | 737 | 5,278 | 213 | 9 | -7,651 | -2,735 |
| | 영동군 | 1,072 | 5,207 | 216 | 10 | -7,723 | -2,806 |
| | 옥천군 | 1,198 | 6,146 | 183 | 8 | -6,783 | -1,866 |
| | 음성군 | 1,829 | 7,946 | 117 | 3 | -4,984 | -67 |
| | 제천시 | 2,321 | 6,289 | 177 | 7 | -6,640 | -1,724 |
| | 증평군 | 569 | 6,385 | 172 | 6 | -6,544 | -1,628 |
| | 진천군 | 1,411 | 8,527 | 103 | 2 | -4,403 | 514 |
| | 청주시 | 16,381 | 9,058 | 93 | 1 | -3,871 | 1,045 |
| | 충주시 | 3,679 | 7,275 | 148 | 4 | -5,654 | -738 |
| 충청남도 15개 | 계룡시 | 793 | 6,297 | 175 | 11 | -6,632 | -1,805 |
| | 공주시 | 2,224 | 8,788 | 97 | 3 | -4,141 | 686 |
| | 금산군 | 1,352 | 6,342 | 174 | 10 | -6,587 | -1,760 |
| | 논산시 | 2,071 | 5,626 | 202 | 15 | -7,304 | -2,476 |
| | 당진시 | 2,778 | 8,305 | 111 | 5 | -4,624 | 203 |
| | 보령시 | 1,866 | 6,875 | 159 | 8 | -6,054 | -1,227 |
| | 부여군 | 1,461 | 6,230 | 180 | 12 | -6,699 | -1,872 |
| | 서산시 | 2,920 | 7,586 | 136 | 6 | -5,343 | -515 |
| | 서천군 | 1,033 | 5,705 | 200 | 14 | -7,224 | -2,397 |
| | 아산시 | 6,046 | 8,767 | 98 | 4 | -4,163 | 665 |
| | 예산군 | 1,661 | 7,551 | 138 | 7 | -5,378 | -551 |
| | 천안시 | 13,092 | 9,199 | 90 | 2 | -3,730 | 1,097 |
| | 청양군 | 814 | 6,615 | 163 | 9 | -6,314 | -1,486 |
| | 태안군 | 1,421 | 10,149 | 71 | 1 | -2,780 | 2,047 |
| | 홍성군 | 1,719 | 6,173 | 182 | 13 | -6,756 | -1,929 |
| 세종시 | | 9,302 | 10,076 | 72 | 1 | -2,853 | 0 |
| 광주 5개 | 광산구 | 7,535 | 7,596 | 133 | 4 | -5,333 | -457 |
| | 남구 | 4,714 | 7,825 | 123 | 3 | -5,104 | -229 |

| | 기초 자치단체 |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 평균 양도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동구 | 2,539 | 8,551 | 102 | 2 | -4,379 | 497 |
| | 북구 | 7,920 | 7,444 | 145 | 5 | -5,485 | -610 |
| | 서구 | 6,731 | 9,256 | 88 | 1 | -3,673 | 1,202 |
| 전라북도 14개 | 고창군 | 1,190 | 6,421 | 169 | 5 | -6,508 | 261 |
| | 군산시 | 3,692 | 6,028 | 191 | 7 | -6,902 | -133 |
| | 김제시 | 1,887 | 6,481 | 168 | 4 | -6,448 | 321 |
| | 남원시 | 1,638 | 4,657 | 225 | 13 | -8,272 | -1,503 |
| | 무주군 | 510 | 6,018 | 193 | 8 | -6,911 | -142 |
| | 부안군 | 1,290 | 7,450 | 144 | 1 | -5,479 | 1,290 |
| | 순창군 | 673 | 5,641 | 201 | 9 | -7,288 | -519 |
| | 완주군 | 1,921 | 6,549 | 165 | 3 | -6,381 | 388 |
| | 익산시 | 4,964 | 7,102 | 152 | 2 | -5,827 | 942 |
| | 임실군 | 581 | 5,271 | 214 | 12 | -7,658 | -889 |
| | 장수군 | 507 | 5,352 | 209 | 11 | -7,577 | -808 |
| | 전주시 | 13,155 | 6,042 | 188 | 6 | -6,888 | -119 |
| | 정읍시 | 1,997 | 5,625 | 203 | 10 | -7,304 | -535 |
| | 진안군 | 586 | 4,339 | 228 | 14 | -8,591 | -1,822 |
| 전라남도 22개 | 강진군 | 720 | 6,015 | 194 | 12 | -6,914 | -640 |
| | 고흥군 | 1,189 | 4,595 | 226 | 22 | -8,335 | -2,060 |
| | 곡성군 | 653 | 5,346 | 210 | 15 | -7,583 | -1,309 |
| | 광양시 | 3,765 | 6,057 | 186 | 10 | -6,873 | -599 |
| | 구례군 | 644 | 6,387 | 171 | 8 | -6,542 | -268 |
| | 나주시 | 2,508 | 8,033 | 116 | 4 | -4,896 | 1,378 |
| | 담양군 | 1,479 | 9,141 | 91 | 3 | -3,788 | 2,486 |
| | 목포시 | 2,493 | 5,270 | 215 | 17 | -7,659 | -1,385 |
| | 무안군 | 1,827 | 5,370 | 208 | 14 | -7,560 | -1,286 |
| | 보성군 | 881 | 4,878 | 220 | 19 | -8,051 | -1,777 |
| | 순천시 | 7,545 | 6,395 | 170 | 7 | -6,535 | -261 |
| | 신안군 | 868 | 11,053 | 59 | 1 | -1,877 | 4,397 |
| | 여수시 | 6,369 | 7,929 | 118 | 5 | -5,000 | 1,274 |
| | 영광군 | 1,010 | 5,333 | 211 | 16 | -7,596 | -1,322 |
| | 영암군 | 1,063 | 5,178 | 217 | 18 | -7,751 | -1,477 |
| | 완도군 | 696 | 6,002 | 195 | 13 | -6,927 | -653 |
| | 장성군 | 1,208 | 9,224 | 89 | 2 | -3,706 | 2,568 |
| | 장흥군 | 629 | 6,033 | 189 | 11 | -6,896 | -622 |
| | 진도군 | 435 | 4,858 | 223 | 20 | -8,072 | -1,798 |
| | 함평군 | 800 | 4,817 | 224 | 21 | -8,113 | -1,838 |
| | 해남군 | 1,093 | 6,282 | 178 | 9 | -6,648 | -374 |
| | 화순군 | 1,554 | 6,510 | 167 | 6 | -6,419 | -145 |
| 대구 | 남구 | 2,498 | 11,193 | 58 | 3 | -1,736 | 76 |

| | 기초 자치단체 |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 평균 양도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8개 | 달서구 | 11,272 | 10,980 | 61 | 4 | -1,949 | -137 |
| | 달성군 | 5,282 | 8,683 | 99 | 6 | -4,246 | -2,433 |
| | 동구 | 6,189 | 8,946 | 94 | 5 | -3,983 | -2,170 |
| | 북구 | 7,816 | 8,619 | 100 | 7 | -4,310 | -2,497 |
| | 서구 | 2,118 | 8,564 | 101 | 8 | -4,365 | -2,553 |
| | 수성구 | 13,663 | 14,321 | 31 | 2 | 1,391 | 3,204 |
| | 중구 | 2,007 | 15,496 | 22 | 1 | 2,567 | 4,380 |
| 경상북도 23개 | 경산시 | 4,984 | 12,683 | 39 | 1 | -247 | 5,377 |
| | 경주시 | 4,505 | 7,590 | 135 | 9 | -5,339 | 284 |
| | 고령군 | 703 | 7,615 | 130 | 8 | -5,315 | 309 |
| | 구미시 | 6,388 | 5,447 | 206 | 21 | -7,482 | -1,859 |
| | 군위군 | 694 | 7,266 | 149 | 11 | -5,664 | -40 |
| | 김천시 | 2,546 | 6,029 | 190 | 19 | -6,900 | -1,277 |
| | 문경시 | 1,109 | 7,823 | 124 | 7 | -5,106 | 517 |
| | 봉화군 | 647 | 6,765 | 160 | 14 | -6,164 | -540 |
| | 상주시 | 2,153 | 6,055 | 187 | 18 | -6,874 | -1,251 |
| | 성주군 | 1,154 | 7,831 | 122 | 6 | -5,098 | 526 |
| | 안동시 | 2,528 | 6,290 | 176 | 15 | -6,640 | -1,016 |
| | 영덕군 | 780 | 7,397 | 147 | 10 | -5,532 | 91 |
| | 영양군 | 340 | 4,377 | 227 | 23 | -8,553 | -2,929 |
| | 영주시 | 1,607 | 7,029 | 155 | 12 | -5,900 | -277 |
| | 영천시 | 2,207 | 8,508 | 105 | 4 | -4,421 | 1,203 |
| | 예천군 | 1,013 | 6,976 | 157 | 13 | -5,953 | -329 |
| | 울릉군 | 162 | 11,007 | 60 | 2 | -1,922 | 3,701 |
| | 울진군 | 818 | 5,107 | 218 | 22 | -7,823 | -2,199 |
| | 의성군 | 1,329 | 6,067 | 185 | 17 | -6,862 | -1,239 |
| | 청도군 | 1,393 | 9,309 | 87 | 3 | -3,621 | 2,003 |
| | 청송군 | 718 | 5,727 | 199 | 20 | -7,202 | -1,579 |
| | 칠곡군 | 1,671 | 8,186 | 112 | 5 | -4,744 | 880 |
| | 포항시 | 8,479 | 6,133 | 184 | 16 | -6,797 | -1,173 |
| 부산 16개 | 강서구 | 3,253 | 10,544 | 67 | 7 | -2,385 | -23 |
| | 금정구 | 5,026 | 9,933 | 73 | 8 | -2,996 | -634 |
| | 기장군 | 3,245 | 8,417 | 107 | 12 | -4,513 | -2,151 |
| | 남구 | 5,823 | 10,863 | 62 | 6 | -2,066 | 296 |
| | 동구 | 1,289 | 8,314 | 110 | 13 | -4,615 | -2,253 |
| | 동래구 | 6,142 | 9,494 | 79 | 9 | -3,435 | -1,073 |
| | 부산진구 | 6,038 | 9,469 | 82 | 10 | -3,460 | -1,098 |
| | 북구 | 4,599 | 11,834 | 49 | 4 | -1,096 | 1,267 |
| | 사상구 | 2,412 | 7,144 | 150 | 16 | -5,785 | -3,423 |
| | 사하구 | 4,017 | 8,148 | 113 | 14 | -4,781 | -2,419 |

| | 기초 자치단체 |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 평균 양도소득 | 전국순위 (총 229개) | 지역내 순위 | 전국평균대비 소득격차 | 광역평균대비 소득격차 |
|---|---|---|---|---|---|---|---|
| | 서구 | 1,671 | 16,965 | 19 | 2 | 4,035 | 6,397 |
| | 수영구 | 4,518 | 11,373 | 56 | 5 | -1,556 | 806 |
| | 연제구 | 4,274 | 9,398 | 85 | 11 | -3,531 | -1,169 |
| | 영도구 | 1,342 | 7,528 | 142 | 15 | -5,401 | -3,039 |
| | 중구 | 499 | 22,801 | 9 | 1 | 9,872 | 12,234 |
| | 해운대구 | 12,255 | 12,642 | 41 | 3 | -287 | 2,075 |
| 울산 5개 | 남구 | 6,522 | 8,317 | 109 | 3 | -4,612 | 54 |
| | 동구 | 2,036 | 5,311 | 212 | 5 | -7,619 | -2,953 |
| | 북구 | 2,866 | 6,991 | 156 | 4 | -5,938 | -1,273 |
| | 울주군 | 4,112 | 9,561 | 77 | 1 | -3,368 | 1,297 |
| | 중구 | 3,466 | 9,410 | 84 | 2 | -3,519 | 1,146 |
| 경상남도 18개 | 거제시 | 3,508 | 6,627 | 162 | 10 | -6,303 | -584 |
| | 거창군 | 1,229 | 7,536 | 140 | 7 | -5,393 | 325 |
| | 고성군 | 1,172 | 5,570 | 204 | 15 | -7,359 | -1,641 |
| | 김해시 | 7,715 | 8,110 | 114 | 1 | -4,819 | 900 |
| | 남해군 | 830 | 7,669 | 128 | 4 | -5,260 | 459 |
| | 밀양시 | 2,321 | 7,688 | 127 | 3 | -5,241 | 477 |
| | 사천시 | 1,613 | 7,550 | 139 | 6 | -5,379 | 339 |
| | 산청군 | 914 | 5,547 | 205 | 16 | -7,382 | -1,664 |
| | 양산시 | 5,637 | 7,048 | 153 | 8 | -5,881 | -162 |
| | 의령군 | 563 | 5,101 | 219 | 17 | -7,828 | -2,109 |
| | 진주시 | 5,664 | 6,688 | 161 | 9 | -6,241 | -523 |
| | 창녕군 | 1,283 | 6,023 | 192 | 14 | -6,906 | -1,188 |
| | 창원시 | 16,101 | 7,605 | 132 | 5 | -5,324 | 395 |
| | 통영시 | 1,655 | 8,072 | 115 | 2 | -4,857 | 861 |
| | 하동군 | 879 | 6,257 | 179 | 12 | -6,672 | -954 |
| | 함안군 | 1,138 | 6,526 | 166 | 11 | -6,403 | -685 |
| | 함양군 | 771 | 6,175 | 181 | 13 | -6,755 | -1,036 |
| | 합천군 | 1,135 | 4,868 | 222 | 18 | -8,061 | -2,343 |
| 제주 | 제주시 | 7,345 | 14,915 | 28 | 2 | 1,986 | -1,018 |
| | 서귀포시 | 3,223 | 18,254 | 15 | 1 | 5,325 | 2,321 |

주: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납세지 기준으로 229개 지역으로 분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5-1-2-2, 5-2-4-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4. 기초자치단체별·자산종류별 양도소득 편차(2020)

(단위: 만원, 위)

| | 기초 자치단체 | 주식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파생상품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금융 외 양도소득 | 전국순위 |
|---|---|---|---|---|---|---|---|
| 서울 25개 | 강남구 | 21,893 | 7 | 44,036 | 3 | 87,618 | 2 |
| | 강동구 | 5,589 | 36 | 22,088 | 10 | 18,715 | 30 |
| | 강북구 | 3,812 | 62 | 7,491 | 57 | 13,178 | 65 |
| | 강서구 | 3,174 | 78 | 5,864 | 77 | 15,529 | 44 |
| | 관악구 | 2,908 | 89 | 33,825 | 4 | 23,289 | 21 |
| | 광진구 | 7,147 | 24 | 4,022 | 119 | 31,204 | 11 |
| | 구로구 | 10,992 | 16 | 7,420 | 60 | 13,363 | 64 |
| | 금천구 | 2,256 | 113 | 3,654 | 126 | 13,716 | 59 |
| | 노원구 | 2,270 | 111 | 3,972 | 120 | 14,236 | 53 |
| | 도봉구 | 2,822 | 94 | 2,712 | 154 | 14,606 | 47 |
| | 동대문구 | 4,156 | 58 | 7,958 | 45 | 17,773 | 34 |
| | 동작구 | 3,403 | 69 | 6,787 | 67 | 22,349 | 22 |
| | 마포구 | 6,620 | 29 | 9,359 | 36 | 28,373 | 15 |
| | 서대문구 | 4,864 | 48 | 5,570 | 83 | 19,590 | 27 |
| | 서초구 | 12,613 | 12 | 22,223 | 9 | 78,980 | 3 |
| | 성동구 | 9,971 | 18 | 17,318 | 15 | 35,059 | 9 |
| | 성북구 | 18,461 | 9 | 6,109 | 72 | 28,425 | 14 |
| | 송파구 | 7,944 | 20 | 19,351 | 14 | 35,601 | 8 |
| | 양천구 | 4,439 | 56 | 11,601 | 26 | 20,963 | 24 |
| | 영등포구 | 6,336 | 33 | 10,348 | 30 | 27,102 | 17 |
| | 용산구 | 36,108 | 3 | 21,613 | 12 | 56,947 | 5 |
| | 은평구 | 3,046 | 82 | 5,131 | 89 | 15,835 | 42 |
| | 종로구 | 6,759 | 28 | 10,023 | 32 | 74,799 | 4 |
| | 중구 | 11,226 | 15 | 5,983 | 75 | 37,835 | 7 |
| | 중랑구 | 3,575 | 67 | 6,421 | 69 | 14,247 | 52 |
| 인천 10개 | 강화군 | 4,886 | 45 | 5,529 | 84 | 11,288 | 94 |
| | 계양구 | 3,038 | 84 | 2,891 | 149 | 9,696 | 121 |
| | 미추홀구 | 3,597 | 65 | 8,700 | 42 | 8,702 | 147 |
| | 남동구 | 1,096 | 172 | 3,200 | 138 | 5,840 | 213 |
| | 동구 | 2,491 | 103 | 3,110 | 143 | 8,887 | 143 |
| | 부평구 | 1,749 | 142 | 8,761 | 40 | 8,574 | 153 |
| | 서구 | 3,349 | 71 | 7,524 | 55 | 10,385 | 106 |
| | 연수구 | 16,193 | 10 | - | - | 9,075 | 141 |
| | 옹진군 | 1,844 | 134 | 4,753 | 99 | -54,655 | 229 |
| | 중구 | 1,208 | 165 | 3,200 | 138 | 11,303 | 92 |
| 경기도 31개 | 가평군 | 3,091 | 80 | 4,175 | 113 | 16,299 | 39 |
| | 고양시 | 3,058 | 81 | 6,797 | 66 | 19,263 | 28 |

| | 기초 자치단체 | 주식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파생상품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금융 외 양도소득 | 전국순위 |
|---|---|---|---|---|---|---|---|
| | 과천시 | 32,601 | 4 | 8,344 | 43 | 29,989 | 12 |
| | 광명시 | 7,798 | 21 | 7,187 | 64 | 13,699 | 61 |
| | 광주시 | 6,594 | 31 | 5,485 | 85 | 20,442 | 25 |
| | 구리시 | 1,691 | 145 | 7,281 | 62 | 26,162 | 18 |
| | 군포시 | 7,591 | 22 | 5,964 | 76 | 12,382 | 79 |
| | 김포시 | 5,112 | 42 | 11,968 | 23 | 14,440 | 49 |
| | 남양주시 | 5,583 | 39 | 92,551 | 1 | 18,222 | 32 |
| | 동두천시 | 11,951 | 14 | 1,433 | 183 | 11,422 | 91 |
| | 부천시 | 2,663 | 97 | 7,941 | 46 | 12,601 | 74 |
| | 성남시 | 10,131 | 17 | 13,357 | 18 | 31,440 | 10 |
| | 수원시 | 3,852 | 61 | 7,749 | 52 | 12,425 | 78 |
| | 시흥시 | 2,515 | 102 | 7,676 | 53 | 10,789 | 102 |
| | 안산시 | 1,936 | 129 | 5,023 | 92 | 9,295 | 134 |
| | 안성시 | 3,857 | 60 | 2,057 | 166 | 14,551 | 48 |
| | 안양시 | 5,584 | 37 | 13,267 | 19 | 12,716 | 70 |
| | 양주시 | 2,209 | 116 | 29,993 | 5 | 13,161 | 66 |
| | 양평군 | 6,874 | 26 | 11,809 | 25 | 16,686 | 35 |
| | 여주시 | 2,037 | 125 | 2,671 | 158 | 12,482 | 77 |
| | 연천군 | 1,538 | 152 | 3,500 | 129 | 10,003 | 116 |
| | 오산시 | 7,380 | 23 | 4,742 | 100 | 12,837 | 68 |
| | 용인시 | 4,883 | 46 | 8,752 | 41 | 21,736 | 23 |
| | 의왕시 | 4,798 | 50 | 2,825 | 152 | 15,651 | 43 |
| | 의정부시 | 5,583 | 38 | 2,850 | 151 | 11,109 | 98 |
| | 이천시 | 1,652 | 147 | 9,015 | 39 | 16,480 | 37 |
| | 파주시 | 4,984 | 44 | 4,706 | 101 | 13,837 | 58 |
| | 평택시 | 3,298 | 75 | 3,958 | 121 | 12,222 | 82 |
| | 포천시 | 4,313 | 57 | - | - | 15,910 | 41 |
| | 하남시 | 6,410 | 32 | 7,912 | 48 | 38,681 | 6 |
| | 화성시 | 3,576 | 66 | 4,778 | 97 | 12,619 | 73 |
| 강원도 18개 | 강릉시 | 6,784 | 27 | 3,555 | 128 | 9,302 | 133 |
| | 고성군 | 2,038 | 124 | | - | 8,299 | 161 |
| | 동해시 | 1,185 | 166 | 7,800 | 51 | 7,971 | 168 |
| | 삼척시 | 2,333 | 109 | 29,767 | 6 | 6,164 | 206 |
| | 속초시 | 1,671 | 146 | 2,410 | 160 | 10,229 | 109 |
| | 양구군 | 2,374 | 105 | - | - | 8,480 | 156 |
| | 양양군 | 1,241 | 162 | 400 | 201 | 10,555 | 104 |
| | 영월군 | 1,959 | 128 | 1,200 | 186 | 6,291 | 205 |
| | 원주시 | 868 | 184 | 11,252 | 28 | 12,118 | 85 |
| | 인제군 | 330 | 214 | 4,500 | 106 | 14,220 | 54 |
| | 정선군 | 2,867 | 92 | 1,100 | 189 | 7,063 | 185 |

| | 기초 자치단체 | 주식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파생상품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금융 외 양도소득 | 전국순위 |
|---|---|---|---|---|---|---|---|
| | 철원군 | 21,629 | 8 | 2,900 | 148 | 9,164 | 138 |
| | 춘천시 | 847 | 186 | 3,277 | 135 | 10,215 | 110 |
| | 태백시 | 487 | 206 | - | - | 5,953 | 211 |
| | 평창군 | 2,165 | 120 | - | - | 10,029 | 115 |
| | 홍천군 | 1,396 | 156 | 1,233 | 185 | 8,682 | 148 |
| | 화천군 | 884 | 183 | 4,400 | 109 | 6,631 | 197 |
| | 횡성군 | 2,017 | 126 | 2,200 | 164 | 7,968 | 169 |
| 대전 5개 | 대덕구 | 7,067 | 25 | 1,923 | 169 | 8,071 | 167 |
| | 동구 | 1,087 | 174 | 2,965 | 146 | 9,636 | 125 |
| | 서구 | 2,253 | 114 | 4,259 | 110 | 9,287 | 135 |
| | 유성구 | 12,235 | 13 | 6,877 | 65 | 12,528 | 76 |
| | 중구 | 1,870 | 131 | 4,894 | 95 | 11,993 | 88 |
| 충청북도 11개 | 괴산군 | 3,302 | 74 | 2,400 | 161 | 7,218 | 183 |
| | 단양군 | 691 | 194 | - | - | 5,325 | 222 |
| | 보은군 | 1,861 | 133 | 4,600 | 105 | 5,440 | 220 |
| | 영동군 | 377 | 209 | 2,700 | 155 | 5,732 | 216 |
| | 옥천군 | 1,066 | 175 | 1,133 | 187 | 6,701 | 192 |
| | 음성군 | 663 | 196 | 5,100 | 90 | 9,972 | 117 |
| | 제천시 | 1,453 | 154 | 6,629 | 68 | 7,313 | 180 |
| | 증평군 | 3,151 | 79 | - | - | 6,649 | 196 |
| | 진천군 | 242 | 222 | 3,014 | 145 | 24,915 | 19 |
| | 청주시 | 1,864 | 132 | 5,763 | 80 | 12,828 | 69 |
| | 충주시 | 1,168 | 168 | 1,650 | 176 | 14,343 | 50 |
| 충청남도 15개 | 계룡시 | 680 | 195 | 7,200 | 63 | 8,538 | 155 |
| | 공주시 | 326 | 215 | 1,722 | 174 | 10,356 | 107 |
| | 금산군 | 4,548 | 55 | 1,500 | 178 | 6,431 | 200 |
| | 논산시 | 1,576 | 149 | 600 | 196 | 6,083 | 208 |
| | 당진시 | 210 | 224 | 1,267 | 184 | 152,093 | 1 |
| | 보령시 | 503 | 205 | 1,125 | 188 | 28,944 | 13 |
| | 부여군 | 896 | 182 | 2,025 | 167 | 6,687 | 193 |
| | 서산시 | 1,361 | 158 | 6,077 | 73 | 9,745 | 120 |
| | 서천군 | 134 | 227 | 700 | 194 | 14,033 | 56 |
| | 아산시 | 2,413 | 104 | 7,876 | 50 | 9,815 | 119 |
| | 예산군 | 1,208 | 164 | 650 | 195 | 8,163 | 163 |
| | 천안시 | 5,461 | 40 | 9,622 | 34 | 10,204 | 111 |
| | 청양군 | 1,240 | 163 | 300 | 202 | 6,976 | 186 |
| | 태안군 | 3,202 | 77 | 1,950 | 168 | 11,289 | 93 |
| | 홍성군 | 802 | 190 | 4,771 | 98 | 7,949 | 170 |
| 세종시 | | 3,042 | 83 | 5,060 | 91 | 12,662 | 71 |
| 광주 | 광산구 | 1,811 | 139 | 2,872 | 150 | 9,480 | 129 |

| | 기초 자치단체 | 주식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파생상품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금융 외 양도소득 | 전국순위 |
|---|---|---|---|---|---|---|---|
| 5개 | 남구 | 1,560 | 150 | 4,214 | 111 | 18,395 | 31 |
| | 동구 | 2,525 | 101 | 3,150 | 141 | 16,579 | 36 |
| | 북구 | 2,615 | 98 | 6,203 | 71 | 9,419 | 132 |
| | 서구 | 3,438 | 68 | 5,843 | 78 | 14,790 | 46 |
| 전라북도 14개 | 고창군 | 474 | 207 | 4,925 | 93 | 9,678 | 123 |
| | 군산시 | 1,539 | 151 | 24,538 | 8 | 7,295 | 181 |
| | 김제시 | 1,691 | 144 | 2,350 | 162 | 7,514 | 176 |
| | 남원시 | 697 | 193 | 9,475 | 35 | 5,171 | 225 |
| | 무주군 | 601 | 200 | 500 | 197 | 8,089 | 165 |
| | 부안군 | 650 | 199 | 1,800 | 171 | 8,350 | 159 |
| | 순창군 | 1,823 | 138 | 2,700 | 155 | 5,775 | 214 |
| | 완주군 | 660 | 197 | 5,600 | 82 | 8,657 | 150 |
| | 익산시 | 2,257 | 112 | 73,545 | 2 | 7,401 | 178 |
| | 임실군 | 5,262 | 41 | 1,000 | 191 | 5,280 | 224 |
| | 장수군 | 283 | 218 | - | - | 5,882 | 212 |
| | 전주시 | 977 | 179 | 7,458 | 59 | 9,507 | 128 |
| | 정읍시 | 1,010 | 176 | 3,850 | 122 | 6,728 | 191 |
| | 진안군 | 220 | 223 | 300 | 202 | 5,410 | 221 |
| 전라남도 22개 | 강진군 | 448 | 208 | - | - | 6,605 | 198 |
| | 고흥군 | 747 | 191 | 750 | 193 | 5,019 | 227 |
| | 곡성군 | 128 | 228 | - | - | 10,877 | 101 |
| | 광양시 | 995 | 178 | 1,500 | 178 | 9,211 | 136 |
| | 구례군 | 1,500 | 153 | 3,800 | 123 | 6,672 | 194 |
| | 나주시 | 1,984 | 127 | 7,886 | 49 | 16,097 | 40 |
| | 담양군 | 1,242 | 161 | 1,500 | 178 | 9,658 | 124 |
| | 목포시 | 838 | 188 | 9,271 | 37 | 7,239 | 182 |
| | 무안군 | 820 | 189 | 7,467 | 58 | 6,378 | 203 |
| | 보성군 | 3,343 | 73 | - | - | 5,040 | 226 |
| | 순천시 | 2,338 | 108 | 2,275 | 163 | 7,317 | 179 |
| | 신안군 | 100,576 | 2 | - | - | 6,501 | 199 |
| | 여수시 | 1,810 | 140 | 3,133 | 142 | 9,528 | 127 |
| | 영광군 | 652 | 198 | 1,700 | 175 | 6,046 | 209 |
| | 영암군 | 246 | 221 | 11,950 | 24 | 9,451 | 131 |
| | 완도군 | 575 | 201 | - | - | 6,913 | 188 |
| | 장성군 | 6,179 | 34 | 9,260 | 38 | 9,461 | 130 |
| | 장흥군 | 189 | 225 | 27,200 | 7 | 15,331 | 45 |
| | 진도군 | 357 | 211 | 500 | 197 | 7,662 | 175 |
| | 함평군 | 838 | 187 | - | - | 5,296 | 223 |
| | 해남군 | 121 | 229 | 8,300 | 44 | 9,185 | 137 |
| | 화순군 | 248 | 220 | 1,467 | 182 | 12,110 | 86 |

| | 기초 자치단체 | 주식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파생상품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금융 외 양도소득 | 전국순위 |
|---|---|---|---|---|---|---|---|
| 대구 8개 | 남구 | 2,330 | 110 | 7,922 | 47 | 13,538 | 62 |
| | 달서구 | 3,375 | 70 | 5,768 | 79 | 13,939 | 57 |
| | 달성군 | 1,431 | 155 | 9,625 | 33 | 9,933 | 118 |
| | 동구 | 2,161 | 121 | 4,682 | 103 | 10,610 | 103 |
| | 북구 | 2,920 | 88 | 5,659 | 81 | 10,257 | 108 |
| | 서구 | 1,094 | 173 | 7,367 | 61 | 10,185 | 112 |
| | 수성구 | 4,153 | 59 | 4,924 | 94 | 17,948 | 33 |
| | 중구 | 2,217 | 115 | 1,060 | 190 | 19,089 | 29 |
| 경상북도 23개 | 경산시 | 4,638 | 53 | 3,393 | 134 | 16,329 | 38 |
| | 경주시 | 1,835 | 136 | 2,119 | 165 | 10,084 | 114 |
| | 고령군 | 1,772 | 141 | - | - | 7,866 | 172 |
| | 구미시 | 4,623 | 54 | 7,577 | 54 | 5,586 | 218 |
| | 군위군 | 1,120 | 171 | - | - | 7,448 | 177 |
| | 김천시 | 1,140 | 170 | 7,522 | 56 | 6,651 | 195 |
| | 문경시 | 1,313 | 159 | 5,250 | 87 | 9,135 | 139 |
| | 봉화군 | 4,833 | 49 | - | - | 6,913 | 187 |
| | 상주시 | 284 | 217 | 1,760 | 173 | 7,073 | 184 |
| | 성주군 | 2,569 | 100 | 3,200 | 138 | 8,325 | 160 |
| | 안동시 | 1,580 | 148 | 4,167 | 114 | 8,906 | 142 |
| | 영덕군 | 1,271 | 160 | 10,400 | 29 | 8,077 | 166 |
| | 영양군 | 955 | 180 | - | - | 4,953 | 228 |
| | 영주시 | 375 | 210 | 11,350 | 27 | 12,024 | 87 |
| | 영천시 | 349 | 213 | 500 | 197 | 10,477 | 105 |
| | 예천군 | 1,695 | 143 | 4,033 | 118 | 12,172 | 83 |
| | 울릉군 | 176 | 226 | - | - | 14,326 | 51 |
| | 울진군 | 560 | 202 | 21,950 | 11 | 12,306 | 80 |
| | 의성군 | 5,050 | 43 | - | - | 6,089 | 207 |
| | 청도군 | 14,223 | 11 | 1,850 | 170 | 8,628 | 151 |
| | 청송군 | 549 | 203 | 5,367 | 86 | 6,335 | 204 |
| | 칠곡군 | 3,695 | 63 | 13,213 | 20 | 8,562 | 154 |
| | 포항시 | 2,927 | 87 | 3,222 | 137 | 6,870 | 189 |
| 부산 16개 | 강서구 | 2,044 | 123 | 3,646 | 127 | 12,638 | 72 |
| | 금정구 | 2,058 | 122 | 14,465 | 17 | 12,573 | 75 |
| | 기장군 | 2,369 | 107 | 4,700 | 102 | 9,116 | 140 |
| | 남구 | 6,016 | 35 | 6,059 | 74 | 12,290 | 81 |
| | 동구 | 2,584 | 99 | 2,813 | 153 | 9,557 | 126 |
| | 동래구 | 2,880 | 90 | 2,932 | 147 | 11,152 | 97 |
| | 부산진구 | 2,869 | 91 | 3,686 | 125 | 11,157 | 96 |
| | 북구 | 25,022 | 6 | 4,107 | 115 | 8,827 | 144 |
| | 사상구 | 2,173 | 118 | 2,700 | 155 | 7,943 | 171 |

| | 기초 자치단체 | 주식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파생상품 양도소득 | 전국 순위 | 금융 외 양도소득 | 전국순위 |
|---|---|---|---|---|---|---|---|
| | 사하구 | 2,166 | 119 | 4,433 | 108 | 9,681 | 122 |
| | 서구 | 27,695 | 5 | 3,457 | 131 | 13,710 | 60 |
| | 수영구 | 3,243 | 76 | 3,089 | 144 | 13,147 | 67 |
| | 연제구 | 1,832 | 137 | 4,459 | 107 | 10,898 | 100 |
| | 영도구 | 3,676 | 64 | 3,400 | 133 | 8,658 | 149 |
| | 중구 | 118,241 | 1 | 12,600 | 21 | 8,732 | 146 |
| | 해운대구 | 6,605 | 30 | 6,309 | 70 | 14,178 | 55 |
| 울산 5개 | 남구 | 3,010 | 85 | 3,774 | 124 | 11,921 | 89 |
| | 동구 | 931 | 181 | 3,478 | 130 | 6,394 | 201 |
| | 북구 | 1,892 | 130 | 4,827 | 96 | 8,455 | 157 |
| | 울주군 | 2,988 | 86 | 4,100 | 116 | 11,754 | 90 |
| | 중구 | 4,661 | 52 | 11,979 | 22 | 11,231 | 95 |
| 경상남도 18개 | 거제시 | 1,838 | 135 | 1,792 | 172 | 8,352 | 158 |
| | 거창군 | 4,877 | 47 | - | - | 8,119 | 164 |
| | 고성군 | 1,001 | 177 | 1,000 | 191 | 6,039 | 210 |
| | 김해시 | 2,665 | 96 | 2,578 | 159 | 10,134 | 113 |
| | 남해군 | 262 | 219 | 3,250 | 136 | 12,130 | 84 |
| | 밀양시 | 2,830 | 93 | 20,300 | 13 | 8,258 | 162 |
| | 사천시 | 525 | 204 | 1,600 | 177 | 13,441 | 63 |
| | 산청군 | 2,676 | 95 | - | - | 5,741 | 215 |
| | 양산시 | 2,176 | 117 | 3,419 | 132 | 7,840 | 173 |
| | 의령군 | 850 | 185 | - | - | 5,571 | 219 |
| | 진주시 | 1,150 | 169 | 5,206 | 88 | 8,762 | 145 |
| | 창녕군 | 1,367 | 157 | - | - | 6,391 | 202 |
| | 창원시 | 4,786 | 51 | 4,658 | 104 | 8,586 | 152 |
| | 통영시 | 2,374 | 106 | 4,200 | 112 | 11,020 | 99 |
| | 하동군 | 316 | 216 | 300 | 202 | 23,839 | 20 |
| | 함안군 | 1,170 | 167 | 4,100 | 116 | 7,768 | 174 |
| | 함양군 | 352 | 212 | 1,475 | 181 | 6,750 | 190 |
| | 합천군 | 699 | 192 | 500 | 197 | 5,639 | 217 |
| 제주 | 제주시 | 3,346 | 72 | 16,894 | 16 | 28,054 | 16 |
| | 서귀포시 | 8,793 | 19 | 10,142 | 31 | 20,373 | 26 |

주: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납세지 기준으로 229개 지역으로 분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5-1-2-2, 5-2-4-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I-1. 토지소유현황 관련 전체 시군구 통계(2021)

| 시도 | 시군구 | 소유세대 비율 | 토지소유 인구비율 | 외지인 토지가액 비율 | 관외소유 가액비율 | 인구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총토지가액 (조원) | 소유자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50억이상 토지소유 세대 비율 |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54.5% | 36.5% | 53.4% | 49.4% | 5.7 | 82.7 | 5.29 | 1.44% |
| 서울특별시 | 중구 | 47.2% | 31.9% | 71.2% | 48.2% | 8.1 | 99.7 | 3.94 | 2.15%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51.5% | 34.6% | 46.8% | 51.5% | 4.5 | 100.4 | 7.00 | 1.87% |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53.1% | 33.8% | 46.0% | 50.8% | 2.0 | 57.3 | 3.82 | 0.31% |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47.2% | 31.0% | 34.3% | 43.4% | 1.5 | 51.7 | 3.69 | 0.24% |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50.5% | 32.6% | 40.3% | 38.8% | 1.4 | 46.7 | 2.59 | 0.12% |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49.7% | 29.9% | 31.6% | 33.2% | 0.9 | 34.6 | 2.16 | 0.17% |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54.8% | 32.4% | 34.3% | 43.6% | 1.3 | 54.3 | 2.80 | 0.39% |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51.5% | 30.7% | 37.5% | 34.3% | 0.9 | 28.3 | 2.00 | 0.10% |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64.4% | 35.8% | 33.0% | 42.4% | 0.8 | 26.5 | 1.89 | 0.10% |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60.8% | 33.7% | 44.3% | 38.5% | 1.0 | 49.6 | 2.10 | 0.15% |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56.0% | 32.2% | 30.5% | 36.1% | 1.0 | 47.3 | 2.43 | 0.14%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53.1% | 33.0% | 38.1% | 50.4% | 1.6 | 48.3 | 2.61 | 0.43%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50.5% | 32.9% | 44.7% | 37.5% | 2.5 | 92.6 | 3.97 | 0.39% |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63.1% | 35.3% | 31.5% | 43.5% | 1.3 | 59.5 | 3.49 | 0.22% |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49.0% | 29.7% | 37.5% | 40.7% | 1.1 | 65.3 | 2.44 | 0.12% |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56.0% | 32.9% | 42.2% | 39.4% | 1.2 | 46.5 | 2.15 | 0.09% |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47.7% | 30.7% | 47.2% | 35.6% | 1.3 | 29.2 | 1.96 | 0.07% |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50.0% | 33.3% | 45.9% | 45.3% | 2.5 | 93.9 | 3.53 | 0.36% |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51.5% | 33.0% | 35.8% | 45.7% | 1.5 | 56.2 | 3.30 | 0.20% |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39.2% | 28.3% | 35.2% | 34.4% | 1.1 | 53.4 | 2.64 | 0.09%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63.1% | 38.8% | 40.4% | 44.0% | 5.2 | 213.7 | 8.99 | 1.56%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58.2% | 37.9% | 43.4% | 37.2% | 5.9 | 316.1 | 10.40 | 2.49%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56.6% | 34.4% | 36.2% | 38.3% | 2.8 | 183.2 | 5.70 | 0.51% |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53.7% | 31.8% | 35.2% | 32.9% | 1.6 | 71.9 | 3.64 | 0.18% |
| 부산광역시 | 중구 | 50.5% | 34.8% | 68.5% | 35.9% | 1.9 | 7.9 | 1.28 | 0.13% |
| 부산광역시 | 서구 | 58.4% | 36.0% | 36.3% | 52.4% | 0.7 | 7.5 | 1.24 | 0.06% |
| 부산광역시 | 동구 | 55.9% | 35.2% | 49.1% | 46.3% | 1.2 | 10.8 | 1.01 | 0.17% |
| 부산광역시 | 영도구 | 60.1% | 35.5% | 33.1% | 35.7% | 0.7 | 7.9 | 0.92 | 0.03% |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58.5% | 36.0% | 45.1% | 44.7% | 0.9 | 31.1 | 1.28 | 0.05% |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67.5% | 38.2% | 35.0% | 48.8% | 0.7 | 19.6 | 1.60 | 0.06% |
| 부산광역시 | 남구 | 66.4% | 38.4% | 34.3% | 50.7% | 0.9 | 22.6 | 1.51 | 0.07% |
| 부산광역시 | 북구 | 67.1% | 37.6% | 29.9% | 54.5% | 0.5 | 13.1 | 1.16 | 0.03%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67.8% | 39.4% | 32.6% | 53.7% | 1.0 | 40.1 | 2.15 | 0.14% |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64.0% | 36.0% | 37.3% | 39.3% | 0.7 | 20.1 | 0.99 | 0.03% |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63.1% | 38.6% | 34.4% | 47.1% | 0.9 | 19.4 | 1.71 | 0.06%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60.4% | 33.8% | 56.0% | 29.9% | 2.8 | 39.8 | 2.32 | 0.08% |

| 시도 | 시군구 | 소유세대 비율 | 토지소유 인구비율 | 외지인 토지가액 비율 | 관외소유 가액비율 | 인구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총토지가액 (조원) | 소유자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50억이상 토지소유 세대 비율 |
|---|---|---|---|---|---|---|---|---|---|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65.0% | 38.2% | 40.0% | 48.5% | 0.8 | 16.0 | 1.45 | 0.05% |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59.7% | 37.7% | 39.6% | 49.4% | 0.8 | 14.5 | 1.80 | 0.11% |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60.2% | 35.3% | 56.4% | 39.3% | 1.0 | 21.1 | 1.13 | 0.04% |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60.4% | 33.5% | 47.3% | 29.2% | 1.5 | 26.4 | 1.67 | 0.04% |
| 대구광역시 | 중구 | 54.7% | 35.6% | 63.5% | 50.6% | 1.6 | 12.3 | 1.89 | 0.14% |
| 대구광역시 | 동구 | 61.5% | 35.4% | 38.8% | 38.3% | 0.8 | 28.0 | 1.38 | 0.04% |
| 대구광역시 | 서구 | 57.2% | 34.1% | 51.0% | 39.9% | 0.7 | 11.9 | 1.10 | 0.02% |
| 대구광역시 | 남구 | 50.9% | 32.8% | 38.3% | 46.1% | 0.7 | 9.8 | 1.55 | 0.05% |
| 대구광역시 | 북구 | 63.5% | 34.8% | 36.0% | 38.5% | 0.7 | 29.8 | 1.31 | 0.03%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69.2% | 38.7% | 25.1% | 48.3% | 1.0 | 41.9 | 2.65 | 0.16% |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62.0% | 34.4% | 30.2% | 42.7% | 0.7 | 39.8 | 1.63 | 0.05% |
| 대구광역시 | 달성군 | 67.9% | 36.4% | 45.2% | 31.0% | 1.0 | 26.7 | 1.45 | 0.04% |
| 인천광역시 | 중구 | 48.4% | 29.5% | 57.6% | 44.5% | 3.3 | 48.0 | 2.01 | 0.27% |
| 인천광역시 | 동구 | 66.4% | 36.7% | 49.1% | 46.3% | 1.0 | 6.0 | 0.94 | 0.06% |
| 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 53.3% | 30.2% | 42.4% | 42.5% | 0.7 | 27.7 | 1.18 | 0.05%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62.6% | 33.6% | 32.2% | 53.5% | 1.6 | 61.0 | 2.31 | 0.16% |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57.4% | 31.5% | 42.5% | 34.2% | 0.9 | 46.5 | 1.62 | 0.09% |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61.4% | 33.4% | 39.4% | 42.2% | 0.7 | 35.2 | 1.30 | 0.15%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63.3% | 33.4% | 44.5% | 43.0% | 0.7 | 19.7 | 1.17 | 0.07% |
| 인천광역시 | 서구 | 52.7% | 27.1% | 43.7% | 38.8% | 1.0 | 56.6 | 1.83 | 0.17%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79.8% | 50.3% | 43.4% | 28.9% | 2.0 | 14.0 | 2.46 | 0.17% |
| 인천광역시 | 옹진군 | 63.7% | 45.7% | 60.4% | 39.4% | 2.1 | 4.3 | 1.91 | 0.09% |
| 광주광역시 | 동구 | 62.6% | 39.8% | 43.4% | 49.6% | 0.8 | 8.4 | 1.29 | 0.06% |
| 광주광역시 | 서구 | 63.8% | 37.8% | 35.3% | 49.5% | 0.6 | 18.0 | 1.20 | 0.05% |
| 광주광역시 | 남구 | 65.6% | 37.1% | 34.9% | 47.0% | 0.6 | 12.8 | 1.20 | 0.03% |
| 광주광역시 | 북구 | 63.9% | 36.7% | 34.1% | 44.6% | 0.5 | 22.2 | 0.91 | 0.02% |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63.1% | 33.5% | 38.1% | 33.6% | 0.7 | 30.3 | 1.05 | 0.03% |
| 대전광역시 | 동구 | 55.8% | 33.0% | 39.2% | 37.2% | 0.5 | 12.1 | 1.05 | 0.03% |
| 대전광역시 | 중구 | 60.9% | 35.6% | 35.8% | 46.2% | 0.6 | 12.9 | 1.19 | 0.04% |
| 대전광역시 | 서구 | 55.6% | 32.4% | 37.2% | 48.9% | 0.6 | 27.8 | 1.31 | 0.04% |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56.3% | 33.6% | 37.9% | 49.8% | 1.0 | 35.0 | 1.90 | 0.08% |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59.2% | 33.1% | 45.2% | 42.6% | 0.8 | 13.2 | 1.00 | 0.02% |
| 울산광역시 | 중구 | 67.0% | 38.7% | 28.6% | 43.8% | 0.7 | 14.0 | 1.55 | 0.05% |
| 울산광역시 | 남구 | 65.0% | 38.7% | 27.1% | 40.3% | 1.0 | 32.9 | 1.76 | 0.06% |
| 울산광역시 | 동구 | 67.0% | 37.6% | 23.9% | 41.0% | 0.6 | 8.6 | 0.98 | 0.02% |
| 울산광역시 | 북구 | 67.6% | 34.9% | 37.7% | 36.9% | 0.8 | 16.5 | 1.20 | 0.02%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68.8% | 39.4% | 44.0% | 27.1% | 1.6 | 35.4 | 1.75 | 0.06%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52.1% | 27.7% | 42.3% | 39.8% | 1.3 | 49.5 | 2.15 | 0.15% |
| 경기도 | 수원시 장안구 | 61.3% | 34.6% | 30.4% | 50.7% | 0.6 | 17.0 | 1.56 | 0.07% |

| 시도 | 시군구 | 소유세대 비율 | 토지소유 인구비율 | 외지인 토지가액 비율 | 관외소유 가액비율 | 인구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총토지가액 (조원) | 소유자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50억이상 토지소유 세대 비율 |
|---|---|---|---|---|---|---|---|---|---|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57.1% | 31.4% | 40.5% | 42.0% | 0.9 | 33.6 | 1.76 | 0.07% |
| 경기도 | 수원시 팔달구 | 48.2% | 30.3% | 50.8% | 52.1% | 1.0 | 18.1 | 1.93 | 0.11% |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57.5% | 32.9% | 37.8% | 51.9% | 1.0 | 37.3 | 2.45 | 0.11% |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47.3% | 29.7% | 43.1% | 45.5% | 1.5 | 35.2 | 2.86 | 0.16% |
| 경기도 | 성남시 중원구 | 50.3% | 29.8% | 42.2% | 36.8% | 0.9 | 20.0 | 1.77 | 0.06% |
|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 65.7% | 38.5% | 36.4% | 49.3% | 2.1 | 101.8 | 4.69 | 0.45% |
| 경기도 | 의정부시 | 54.6% | 30.0% | 35.4% | 44.2% | 0.6 | 29.6 | 1.39 | 0.07% |
| 경기도 | 안양시 만안구 | 62.5% | 35.0% | 38.7% | 44.6% | 0.8 | 20.1 | 1.62 | 0.08% |
| 경기도 | 안양시 동안구 | 70.7% | 38.2% | 42.5% | 43.8% | 1.2 | 37.0 | 2.23 | 0.12% |
| 경기도 | 부천시 | 61.3% | 33.5% | 34.2% | 34.0% | 0.9 | 73.1 | 1.72 | 0.09% |
| 경기도 | 광명시 | 64.9% | 35.3% | 39.8% | 34.7% | 1.3 | 37.3 | 2.19 | 0.09% |
| 경기도 | 평택시 | 54.2% | 31.6% | 39.6% | 26.0% | 1.5 | 86.1 | 2.10 | 0.14% |
| 경기도 | 동두천시 | 57.7% | 32.5% | 44.0% | 36.4% | 0.7 | 6.7 | 1.14 | 0.06% |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 | 49.8% | 27.6% | 38.7% | 46.1% | 0.7 | 23.4 | 1.66 | 0.08% |
| 경기도 | 안산시 단원구 | 52.7% | 29.6% | 47.6% | 40.3% | 1.4 | 41.1 | 1.61 | 0.08% |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 56.2% | 31.2% | 38.9% | 40.2% | 1.1 | 51.5 | 2.11 | 0.15% |
| 경기도 | 고양시 일산동구 | 59.0% | 33.7% | 41.6% | 52.1% | 1.2 | 36.8 | 2.89 | 0.25% |
| 경기도 | 고양시 일산서구 | 67.4% | 35.0% | 43.7% | 50.6% | 1.0 | 28.8 | 2.21 | 0.10% |
| 경기도 | 과천시 | 65.9% | 36.8% | 38.2% | 45.7% | 2.8 | 20.8 | 4.99 | 0.66% |
| 경기도 | 구리시 | 59.8% | 32.8% | 41.7% | 43.3% | 1.1 | 20.8 | 2.10 | 0.14% |
| 경기도 | 남양주시 | 60.5% | 31.5% | 33.0% | 38.7% | 1.0 | 76.1 | 2.17 | 0.21% |
| 경기도 | 오산시 | 54.5% | 30.5% | 41.2% | 42.3% | 0.9 | 20.9 | 1.54 | 0.08% |
| 경기도 | 시흥시 | 52.6% | 28.2% | 47.4% | 36.0% | 1.0 | 51.2 | 1.61 | 0.09% |
| 경기도 | 군포시 | 61.9% | 34.2% | 38.5% | 43.3% | 0.9 | 24.1 | 1.87 | 0.13% |
| 경기도 | 의왕시 | 62.5% | 33.8% | 40.9% | 48.2% | 1.3 | 21.1 | 2.52 | 0.21% |
| 경기도 | 하남시 | 51.3% | 29.7% | 37.9% | 40.0% | 1.5 | 49.4 | 3.27 | 0.21% |
| 경기도 | 용인시 처인구 | 62.9% | 35.1% | 50.0% | 32.4% | 1.8 | 47.6 | 2.16 | 0.19% |
| 경기도 | 용인시 기흥구 | 63.8% | 33.8% | 36.1% | 52.9% | 1.1 | 50.4 | 2.78 | 0.36% |
| 경기도 | 용인시 수지구 | 66.9% | 35.4% | 35.6% | 59.8% | 0.9 | 34.8 | 3.32 | 0.35% |
| 경기도 | 파주시 | 54.8% | 30.2% | 42.7% | 31.5% | 1.3 | 63.1 | 1.93 | 0.17% |
| 경기도 | 이천시 | 62.9% | 36.5% | 43.2% | 28.2% | 1.4 | 31.2 | 1.79 | 0.11% |
| 경기도 | 안성시 | 64.6% | 38.0% | 42.4% | 30.0% | 1.5 | 28.4 | 1.89 | 0.12% |
| 경기도 | 김포시 | 57.7% | 30.6% | 35.8% | 32.6% | 1.3 | 62.5 | 2.39 | 0.09% |
| 경기도 | 화성시 | 55.1% | 30.2% | 41.2% | 31.4% | 1.4 | 125.8 | 2.29 | 0.82% |
| 경기도 | 광주시 | 66.1% | 35.8% | 38.9% | 37.4% | 1.2 | 45.0 | 1.97 | 0.15% |
| 경기도 | 양주시 | 57.8% | 31.0% | 44.4% | 29.4% | 1.4 | 33.4 | 1.89 | 0.11% |
| 경기도 | 포천시 | 58.6% | 35.4% | 46.4% | 27.2% | 1.7 | 26.0 | 2.22 | 0.14% |

| 시도 | 시군구 | 소유세대 비율 | 토지소유 인구비율 | 외지인 토지가액 비율 | 관외소유 가액비율 | 인구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총토지가액 (조원) | 소유자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50억이상 토지소유 세대 비율 |
|---|---|---|---|---|---|---|---|---|---|
| 경기도 | 여주시 | 67.9% | 40.3% | 48.6% | 31.5% | 1.8 | 20.5 | 1.93 | 0.19% |
| 경기도 | 연천군 | 62.4% | 39.8% | 54.7% | 29.2% | 2.0 | 8.5 | 1.89 | 0.25% |
| 경기도 | 가평군 | 64.9% | 41.0% | 51.1% | 41.0% | 2.1 | 13.0 | 2.47 | 0.29% |
| 경기도 | 양평군 | 73.2% | 45.5% | 43.6% | 44.5% | 2.1 | 25.1 | 3.14 | 0.40% |
| 강원도 | 춘천시 | 60.8% | 35.6% | 26.0% | 25.0% | 0.9 | 26.9 | 1.39 | 0.05% |
| 강원도 | 원주시 | 60.8% | 35.5% | 30.8% | 56.0% | 0.3 | 9.0 | 0.64 | 0.02% |
| 강원도 | 강릉시 | 63.3% | 37.9% | 25.1% | 26.0% | 0.8 | 16.0 | 1.17 | 0.04% |
| 강원도 | 동해시 | 62.5% | 36.2% | 32.5% | 35.9% | 0.5 | 4.1 | 0.65 | 0.009% |
| 강원도 | 태백시 | 63.2% | 38.4% | 30.0% | 39.1% | 0.4 | 1.8 | 0.61 | 0.02% |
| 강원도 | 속초시 | 61.7% | 37.5% | 34.9% | 41.1% | 0.7 | 5.9 | 1.12 | 0.07% |
| 강원도 | 삼척시 | 64.8% | 40.6% | 36.3% | 30.5% | 0.7 | 4.6 | 0.70 | 0.012% |
| 강원도 | 홍천군 | 72.1% | 45.0% | 43.9% | 30.8% | 1.6 | 11.1 | 1.73 | 0.09% |
| 강원도 | 횡성군 | 75.4% | 47.8% | 47.3% | 33.4% | 1.5 | 7.2 | 1.63 | 0.07% |
| 강원도 | 영월군 | 70.1% | 47.3% | 42.8% | 39.5% | 1.0 | 3.9 | 1.08 | 0.07% |
| 강원도 | 평창군 | 72.5% | 47.1% | 50.0% | 31.1% | 2.4 | 9.7 | 2.05 | 0.14% |
| 강원도 | 정선군 | 65.9% | 43.6% | 42.7% | 28.6% | 1.2 | 4.4 | 0.96 | 0.03% |
| 강원도 | 철원군 | 64.6% | 39.3% | 37.7% | 20.7% | 1.4 | 5.9 | 1.67 | 0.16% |
| 강원도 | 화천군 | 58.0% | 37.5% | 44.4% | 50.1% | 0.9 | 2.1 | 1.19 | 0.07% |
| 강원도 | 양구군 | 62.3% | 38.2% | 35.2% | 33.5% | 0.9 | 1.9 | 1.11 | 0.03% |
| 강원도 | 인제군 | 60.9% | 38.1% | 38.2% | 42.0% | 1.2 | 3.8 | 1.38 | 0.05% |
| 강원도 | 고성군 | 68.3% | 45.4% | 52.9% | 33.4% | 1.4 | 3.9 | 1.17 | 0.07% |
| 강원도 | 양양군 | 72.4% | 47.5% | 47.6% | 37.7% | 1.7 | 4.8 | 1.45 | 0.12% |
| 충청북도 | 청주시상당구 | 63.1% | 34.0% | 39.3% | 47.0% | 0.6 | 11.7 | 1.15 | 0.07% |
| 충청북도 | 청주시서원구 | 59.7% | 34.8% | 43.2% | 46.5% | 0.7 | 12.9 | 1.26 | 0.03% |
| 충청북도 | 청주시흥덕구 | 58.4% | 34.4% | 38.7% | 42.5% | 0.8 | 22.6 | 1.38 | 0.04% |
| 충청북도 | 청주시청원구 | 58.8% | 33.7% | 43.7% | 40.0% | 0.8 | 14.8 | 1.15 | 0.04% |
| 충청북도 | 충주시 | 68.6% | 40.7% | 31.3% | 25.4% | 0.9 | 17.8 | 1.10 | 0.04% |
| 충청북도 | 제천시 | 67.2% | 40.7% | 31.1% | 29.0% | 0.7 | 9.0 | 0.97 | 0.03% |
| 충청북도 | 보은군 | 85.5% | 55.1% | 42.9% | 31.6% | 1.1 | 3.4 | 0.99 | 0.03% |
| 충청북도 | 옥천군 | 83.7% | 51.2% | 42.9% | 35.3% | 0.9 | 4.3 | 0.92 | 0.07% |
| 충청북도 | 영동군 | 83.1% | 52.7% | 39.1% | 38.9% | 0.7 | 3.3 | 0.82 | 0.04% |
| 충청북도 | 증평군 | 55.6% | 33.1% | 45.6% | 41.0% | 0.7 | 2.7 | 1.13 | 0.04% |
| 충청북도 | 진천군 | 60.0% | 35.8% | 44.9% | 34.9% | 1.2 | 10.4 | 1.42 | 0.07% |
| 충청북도 | 괴산군 | 77.3% | 53.5% | 49.7% | 38.2% | 1.4 | 5.4 | 1.31 | 0.05% |
| 충청북도 | 음성군 | 63.2% | 39.8% | 47.1% | 30.1% | 1.5 | 13.9 | 1.53 | 0.08% |
| 충청북도 | 단양군 | 78.9% | 50.5% | 46.2% | 37.4% | 1.0 | 2.8 | 0.92 | 0.03% |
| 충청남도 | 천안시동남구 | 63.2% | 36.4% | 43.5% | 38.5% | 1.0 | 25.1 | 1.45 | 0.07% |
| 충청남도 | 천안시서북구 | 57.3% | 33.1% | 39.2% | 42.3% | 0.8 | 31.8 | 1.53 | 0.06% |
| 충청남도 | 공주시 | 72.2% | 44.4% | 44.2% | 28.3% | 1.4 | 14.0 | 1.41 | 0.11% |

| 시도 | 시군구 | 소유세대 비율 | 토지소유 인구비율 | 외지인 토지가액 비율 | 관외소유 가액비율 | 인구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총토지가액 (조원) | 소유자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50억이상 토지소유 세대 비율 |
|---|---|---|---|---|---|---|---|---|---|
| 충청남도 | 보령시 | 71.4% | 44.4% | 35.9% | 24.6% | 1.1 | 10.4 | 1.14 | 0.02% |
| 충청남도 | 아산시 | 60.4% | 34.1% | 42.8% | 30.9% | 1.1 | 36.3 | 1.50 | 0.06% |
| 충청남도 | 서산시 | 70.6% | 41.1% | 38.2% | 25.0% | 1.2 | 20.7 | 1.43 | 0.06% |
| 충청남도 | 논산시 | 69.6% | 42.7% | 39.7% | 27.1% | 0.9 | 10.0 | 1.09 | 0.04% |
| 충청남도 | 계룡시 | 64.8% | 33.3% | 47.4% | 63.5% | 0.8 | 3.3 | 1.13 | 0.04% |
| 충청남도 | 당진시 | 66.9% | 39.8% | 45.0% | 20.0% | 1.8 | 30.4 | 1.81 | 0.10% |
| 충청남도 | 금산군 | 83.9% | 52.3% | 43.7% | 26.7% | 1.2 | 6.2 | 1.12 | 0.02% |
| 충청남도 | 부여군 | 82.1% | 52.1% | 35.0% | 24.8% | 1.1 | 6.9 | 1.07 | 0.012% |
| 충청남도 | 서천군 | 83.7% | 54.0% | 38.9% | 26.6% | 1.0 | 5.3 | 1.01 | 0.09% |
| 충청남도 | 청양군 | 79.9% | 52.2% | 45.7% | 31.4% | 1.1 | 3.4 | 1.04 | 0.02% |
| 충청남도 | 홍성군 | 69.4% | 40.2% | 36.6% | 31.9% | 1.1 | 10.6 | 1.46 | 0.05% |
| 충청남도 | 예산군 | 77.7% | 48.4% | 40.2% | 24.4% | 1.4 | 10.5 | 1.45 | 0.04% |
| 충청남도 | 태안군 | 74.8% | 48.9% | 46.6% | 27.2% | 1.8 | 11.0 | 1.60 | 0.11% |
| 전라북도 | 전주시완산구 | 63.2% | 36.4% | 29.8% | 44.2% | 0.5 | 16.5 | 1.11 | 0.03% |
| 전라북도 | 전주시덕진구 | 66.3% | 36.9% | 35.2% | 41.5% | 0.5 | 17.5 | 0.97 | 0.01% |
| 전라북도 | 군산시 | 66.0% | 37.9% | 30.1% | 23.1% | 0.7 | 17.5 | 0.92 | 0.03% |
| 전라북도 | 익산시 | 67.7% | 39.3% | 25.3% | 29.2% | 0.5 | 15.1 | 0.93 | 0.03% |
| 전라북도 | 정읍시 | 81.6% | 49.9% | 33.9% | 26.6% | 0.6 | 6.5 | 0.77 | 0.03% |
| 전라북도 | 남원시 | 81.9% | 49.9% | 30.7% | 25.3% | 0.6 | 5.1 | 0.80 | 0.02% |
| 전라북도 | 김제시 | 82.4% | 52.3% | 39.5% | 22.9% | 0.9 | 7.6 | 1.02 | 0.03% |
| 전라북도 | 완주군 | 74.1% | 44.1% | 50.6% | 35.4% | 1.1 | 9.6 | 1.07 | 0.03% |
| 전라북도 | 진안군 | 93.0% | 61.1% | 47.0% | 52.1% | 0.8 | 2.0 | 0.92 | 0.02% |
| 전라북도 | 무주군 | 86.5% | 55.9% | 44.0% | 30.0% | 1.1 | 2.6 | 0.85 | 0.02% |
| 전라북도 | 장수군 | 93.1% | 60.3% | 40.3% | 35.6% | 0.7 | 1.6 | 0.70 | 0.03% |
| 전라북도 | 임실군 | 87.1% | 58.1% | 50.0% | 39.9% | 0.9 | 2.4 | 0.71 | 0.013% |
| 전라북도 | 순창군 | 100.0% | 63.3% | 39.4% | 35.0% | 0.6 | 1.7 | 0.70 | 0.01% |
| 전라북도 | 고창군 | 94.1% | 60.3% | 35.0% | 33.7% | 0.8 | 4.1 | 0.88 | 0.03% |
| 전라북도 | 부안군 | 83.7% | 54.9% | 41.3% | 20.3% | 1.2 | 6.2 | 1.16 | 0.04% |
| 전라남도 | 목포시 | 62.6% | 35.7% | 31.6% | 40.2% | 0.4 | 8.7 | 0.65 | 0.010% |
| 전라남도 | 여수시 | 66.9% | 38.5% | 20.9% | 20.6% | 0.8 | 22.1 | 0.93 | 0.02% |
| 전라남도 | 순천시 | 72.4% | 40.3% | 22.3% | 26.9% | 0.6 | 15.5 | 0.91 | 0.02% |
| 전라남도 | 나주시 | 75.2% | 46.2% | 42.9% | 29.2% | 1.2 | 13.5 | 1.10 | 0.02% |
| 전라남도 | 광양시 | 69.2% | 38.9% | 32.6% | 31.5% | 1.0 | 15.5 | 0.95 | 0.02% |
| 전라남도 | 담양군 | 82.5% | 54.6% | 45.3% | 27.1% | 1.3 | 6.2 | 1.26 | 0.03% |
| 전라남도 | 곡성군 | 93.8% | 63.5% | 41.6% | 34.5% | 0.8 | 2.1 | 0.68 | 0.013% |
| 전라남도 | 구례군 | 90.1% | 58.5% | 37.8% | 30.1% | 0.8 | 2.0 | 0.86 | 0.03% |
| 전라남도 | 고흥군 | 94.7% | 62.1% | 39.2% | 29.6% | 0.6 | 3.5 | 0.53 | 0.011% |
| 전라남도 | 보성군 | 94.2% | 63.2% | 39.9% | 30.5% | 0.7 | 2.7 | 0.67 | 0.03% |
| 전라남도 | 화순군 | 80.8% | 49.6% | 42.3% | 32.4% | 0.8 | 5.0 | 0.85 | 0.02% |

| 시도 | 시군구 | 소유세대 비율 | 토지소유 인구비율 | 외지인 토지가액 비율 | 관외소유 가액비율 | 인구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총토지가액 (조원) | 소유자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50억이상 토지소유 세대 비율 |
|---|---|---|---|---|---|---|---|---|---|
| 전라남도 | 장흥군 | 91.8% | 60.0% | 34.1% | 28.6% | 0.7 | 2.6 | 0.67 | 0.02% |
| 전라남도 | 강진군 | 95.4% | 63.0% | 32.1% | 30.6% | 0.7 | 2.5 | 0.75 | 0.02% |
| 전라남도 | 해남군 | 91.7% | 57.3% | 38.3% | 21.3% | 1.0 | 6.9 | 0.79 | 0.03% |
| 전라남도 | 영암군 | 82.2% | 52.8% | 43.6% | 25.4% | 1.3 | 7.0 | 0.91 | 0.03% |
| 전라남도 | 무안군 | 75.6% | 43.9% | 47.3% | 31.4% | 0.9 | 8.1 | 0.93 | 0.03% |
| 전라남도 | 함평군 | 88.6% | 60.9% | 43.2% | 35.9% | 0.8 | 2.5 | 0.76 | 0.03% |
| 전라남도 | 영광군 | 83.5% | 52.5% | 34.5% | 34.0% | 0.7 | 3.6 | 0.73 | 0.02% |
| 전라남도 | 장성군 | 79.6% | 51.9% | 48.6% | 34.0% | 1.3 | 5.6 | 1.23 | 0.02% |
| 전라남도 | 완도군 | 84.9% | 53.5% | 33.1% | 38.9% | 0.4 | 1.7 | 0.48 | 0.03% |
| 전라남도 | 진도군 | 92.1% | 59.6% | 33.7% | 30.8% | 0.5 | 1.4 | 0.51 | 0.02% |
| 전라남도 | 신안군 | 91.8% | 62.7% | 48.7% | 33.1% | 0.7 | 2.8 | 0.67 | 0.03% |
|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 | 63.8% | 38.0% | 37.1% | 40.5% | 0.8 | 18.7 | 1.10 | 0.04% |
| 경상북도 | 포항시 북구 | 66.7% | 38.0% | 35.1% | 30.3% | 0.7 | 19.8 | 1.16 | 0.04% |
| 경상북도 | 경주시 | 71.8% | 43.7% | 32.9% | 21.2% | 1.1 | 28.5 | 1.36 | 0.03% |
| 경상북도 | 김천시 | 77.1% | 46.9% | 31.1% | 23.9% | 0.8 | 11.5 | 1.06 | 0.04% |
| 경상북도 | 안동시 | 72.5% | 43.9% | 32.4% | 23.0% | 0.8 | 11.9 | 1.01 | 0.02% |
| 경상북도 | 구미시 | 61.2% | 34.2% | 29.2% | 27.8% | 0.6 | 24.7 | 1.09 | 0.02% |
| 경상북도 | 영주시 | 74.0% | 45.0% | 26.5% | 24.4% | 0.7 | 6.8 | 1.06 | 0.02% |
| 경상북도 | 영천시 | 74.7% | 48.4% | 41.0% | 21.5% | 1.2 | 12.4 | 1.37 | 0.03% |
| 경상북도 | 상주시 | 83.3% | 52.2% | 34.7% | 24.8% | 0.8 | 8.0 | 1.04 | 0.04% |
| 경상북도 | 문경시 | 75.3% | 48.0% | 33.5% | 34.2% | 0.8 | 5.5 | 1.18 | 0.06% |
| 경상북도 | 경산시 | 64.6% | 37.3% | 41.0% | 28.0% | 0.9 | 23.8 | 1.32 | 0.02% |
| 경상북도 | 군위군 | 90.2% | 62.5% | 46.5% | 30.9% | 1.5 | 3.6 | 1.37 | 0.05% |
| 경상북도 | 의성군 | 93.9% | 63.2% | 39.6% | 28.8% | 0.9 | 4.5 | 0.91 | 0.007% |
| 경상북도 | 청송군 | 85.2% | 58.0% | 39.4% | 31.6% | 0.8 | 2.0 | 0.86 | 0.014% |
| 경상북도 | 영양군 | 86.2% | 56.7% | 43.3% | 32.1% | 0.7 | 1.2 | 0.72 | 0.011% |
| 경상북도 | 영덕군 | 81.6% | 53.9% | 43.0% | 24.7% | 1.0 | 3.6 | 0.91 | 0.07% |
| 경상북도 | 청도군 | 84.6% | 57.4% | 44.8% | 30.4% | 1.4 | 5.9 | 1.40 | 0.04% |
| 경상북도 | 고령군 | 79.4% | 51.8% | 50.5% | 25.4% | 1.6 | 5.0 | 1.55 | 0.04% |
| 경상북도 | 성주군 | 81.8% | 54.9% | 44.9% | 29.6% | 1.4 | 6.0 | 1.48 | 0.03% |
| 경상북도 | 칠곡군 | 63.3% | 36.7% | 52.3% | 28.8% | 1.1 | 12.7 | 1.35 | 0.03% |
| 경상북도 | 예천군 | 85.2% | 51.9% | 45.8% | 31.2% | 1.0 | 5.6 | 1.10 | 0.02% |
| 경상북도 | 봉화군 | 79.1% | 51.8% | 43.3% | 35.6% | 0.8 | 2.4 | 0.88 | 0.02% |
| 경상북도 | 울진군 | 73.6% | 46.8% | 38.5% | 37.6% | 0.8 | 3.7 | 0.77 | 0.04% |
| 경상북도 | 울릉군 | 55.6% | 40.6% | 34.8% | 29.4% | 1.2 | 1.1 | 1.68 | 0.02% |
| 경상남도 | 창원시 의창구 | 61.6% | 35.5% | 37.5% | 32.4% | 0.9 | 20.3 | 1.60 | 0.03% |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64.9% | 36.9% | 30.0% | 55.7% | 0.9 | 21.8 | 1.25 | 0.05% |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합포구 | 67.7% | 39.3% | 34.4% | 35.5% | 0.7 | 12.6 | 1.09 | 0.02% |

| 시도 | 시군구 | 소유세대 비율 | 토지소유 인구비율 | 외지인 토지가액 비율 | 관외소유 가액비율 | 인구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총토지가액 (조원) | 소유자 1인당 토지가액 (억원) | 50억이상 토지소유 세대 비율 |
|---|---|---|---|---|---|---|---|---|---|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회원구 | 68.1% | 38.0% | 35.3% | 45.2% | 0.5 | 10.1 | 0.99 | 0.02%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해구 | 60.4% | 33.1% | 34.5% | 33.2% | 0.9 | 17.9 | 0.99 | 0.02% |
| 경상남도 | 진주시 | 68.3% | 39.5% | 20.6% | 22.4% | 0.8 | 26.1 | 1.30 | 0.15% |
| 경상남도 | 통영시 | 71.3% | 41.7% | 25.7% | 24.7% | 0.6 | 7.7 | 0.91 | 0.02% |
| 경상남도 | 사천시 | 72.1% | 43.4% | 39.1% | 23.0% | 1.1 | 12.3 | 1.17 | 0.02% |
| 경상남도 | 김해시 | 66.0% | 35.5% | 34.2% | 25.1% | 1.0 | 52.7 | 1.41 | 0.03% |
| 경상남도 | 밀양시 | 78.7% | 49.7% | 38.1% | 18.2% | 1.6 | 16.5 | 1.65 | 0.04% |
| 경상남도 | 거제시 | 70.5% | 39.2% | 24.6% | 22.8% | 0.6 | 15.6 | 1.06 | 0.03% |
| 경상남도 | 양산시 | 64.3% | 35.2% | 39.6% | 32.2% | 0.8 | 28.2 | 1.14 | 0.03% |
| 경상남도 | 의령군 | 90.8% | 60.6% | 46.1% | 34.8% | 1.0 | 2.6 | 0.88 | 0.04% |
| 경상남도 | 함안군 | 78.1% | 47.1% | 50.3% | 21.1% | 1.6 | 10.3 | 1.30 | 0.04% |
| 경상남도 | 창녕군 | 80.8% | 52.9% | 43.8% | 27.2% | 1.2 | 7.4 | 1.22 | 0.04% |
| 경상남도 | 고성군 | 84.6% | 53.2% | 42.4% | 21.2% | 1.3 | 6.6 | 1.11 | 0.03% |
| 경상남도 | 남해군 | 91.8% | 58.6% | 42.3% | 22.7% | 1.0 | 4.1 | 0.90 | 0.04% |
| 경상남도 | 하동군 | 88.4% | 58.0% | 40.3% | 28.1% | 1.1 | 4.7 | 1.04 | 0.03% |
| 경상남도 | 산청군 | 87.1% | 58.9% | 44.8% | 38.6% | 1.2 | 4.3 | 1.25 | 0.07% |
| 경상남도 | 함양군 | 86.7% | 57.2% | 37.6% | 28.1% | 0.9 | 3.5 | 0.92 | 0.03% |
| 경상남도 | 거창군 | 86.7% | 52.6% | 28.5% | 26.7% | 0.7 | 4.2 | 0.87 | 0.02% |
| 경상남도 | 합천군 | 93.8% | 62.5% | 41.6% | 33.8% | 0.9 | 3.7 | 0.89 | 0.05%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62.3% | 36.7% | 21.7% | 22.0% | 1.2 | 61.5 | 2.31 | 0.20% |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64.8% | 39.4% | 37.5% | 26.3% | 2.1 | 38.8 | 3.10 | 0.26% |

## II-2. 토지 및 주택소유 현황 전체 시군구 통계(2021)

| 시도 | 시군구 | 20대 미만 토지가액 비율 | 20대 비율 | 30대 비율 | 40대 비율 | 50대 비율 | 60대 이상 비율 |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2022.10 기준, 억원) | 무주택 가구 비율 | 1주택 가구 비율 | 다주택 가구 비율 |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0.46% | 1.39% | 5.2% | 14.3% | 22.8% | 55.9% | 4.52 | 50.8% | 34.3% | 14.9% |
| 서울특별시 | 중구 | 0.42% | 1.57% | 6.0% | 14.6% | 23.0% | 54.5% | 4.80 | 58.0% | 30.2% | 11.8%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0.39% | 1.74% | 7.9% | 17.3% | 25.4% | 47.3% | 9.12 | 55.0% | 31.8% | 13.2% |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0.30% | 1.27% | 9.9% | 19.9% | 23.8% | 44.9% | 8.36 | 51.6% | 35.6% | 12.8% |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0.26% | 1.17% | 5.8% | 16.0% | 22.0% | 54.7% | 5.49 | 57.9% | 31.5% | 10.5% |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0.19% | 1.11% | 7.5% | 16.5% | 22.3% | 52.4% | 4.49 | 54.7% | 34.2% | 11.1% |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0.19% | 1.01% | 6.9% | 14.3% | 21.8% | 55.8% | 3.20 | 52.8% | 37.2% | 10.0% |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0.20% | 1.14% | 7.5% | 17.6% | 24.7% | 48.8% | 3.95 | 48.3% | 38.9% | 12.8% |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0.18% | 1.18% | 5.7% | 14.1% | 25.1% | 53.7% | 3.23 | 50.2% | 39.4% | 10.3% |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0.10% | 1.14% | 6.0% | 14.1% | 23.4% | 55.2% | 3.34 | 38.6% | 47.6% | 13.8% |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0.12% | 1.22% | 8.2% | 17.7% | 23.9% | 48.9% | 3.68 | 43.3% | 43.0% | 13.7% |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0.22% | 1.30% | 8.4% | 17.3% | 23.5% | 49.4% | 3.89 | 46.4% | 41.1% | 12.4%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0.35% | 1.57% | 11.0% | 21.4% | 26.3% | 39.3% | 4.99 | 50.4% | 36.8% | 12.8%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0.31% | 1.29% | 7.7% | 18.1% | 24.8% | 47.9% | 5.74 | 54.8% | 33.0% | 12.2% |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0.18% | 0.99% | 7.6% | 19.5% | 25.6% | 46.2% | 5.62 | 42.0% | 42.8% | 15.2% |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0.16% | 1.13% | 8.7% | 17.9% | 22.5% | 49.6% | 3.95 | 54.1% | 35.1% | 10.8% |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0.13% | 1.10% | 8.0% | 16.5% | 21.5% | 52.7% | 2.86 | 46.4% | 41.1% | 12.5% |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0.15% | 1.38% | 6.1% | 14.8% | 24.3% | 53.3% | 3.15 | 55.8% | 34.4% | 9.7% |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0.29% | 1.10% | 7.6% | 16.0% | 22.4% | 52.6% | 5.91 | 54.3% | 34.2% | 11.5% |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0.21% | 1.28% | 8.0% | 17.5% | 22.2% | 50.8% | 5.49 | 52.5% | 35.3% | 12.1% |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0.23% | 0.99% | 5.9% | 15.0% | 20.2% | 57.7% | 3.20 | 64.7% | 27.1% | 8.2%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0.43% | 1.28% | 6.9% | 20.2% | 24.8% | 46.4% | 9.20 | 46.2% | 37.2% | 16.6%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0.43% | 1.44% | 5.6% | 17.2% | 24.1% | 51.3% | 11.24 | 50.3% | 33.9% | 15.8%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0.27% | 1.72% | 7.6% | 17.7% | 23.2% | 49.5% | 7.58 | 50.0% | 35.9% | 14.1% |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0.20% | 0.97% | 9.0% | 20.0% | 21.9% | 47.9% | 4.80 | 51.2% | 37.1% | 11.7% |
| 부산광역시 | 중구 | 0.65% | 1.49% | 4.4% | 12.1% | 19.0% | 62.3% | 0.42 | 54.0% | 33.3% | 12.7% |
| 부산광역시 | 서구 | 0.11% | 1.14% | 5.5% | 13.2% | 21.8% | 58.2% | 0.96 | 48.2% | 37.3% | 14.5% |
| 부산광역시 | 동구 | 0.09% | 1.09% | 5.0% | 12.6% | 21.7% | 59.5% | 0.70 | 49.9% | 37.3% | 12.9% |
| 부산광역시 | 영도구 | 0.17% | 1.12% | 4.4% | 12.1% | 21.6% | 60.7% | 0.40 | 43.4% | 43.4% | 13.2% |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0.22% | 1.45% | 6.7% | 15.8% | 23.8% | 52.1% | 1.04 | 46.2% | 40.2% | 13.6% |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0.25% | 1.06% | 6.9% | 17.9% | 22.1% | 51.9% | 2.01 | 37.7% | 45.5% | 16.8% |
| 부산광역시 | 남구 | 0.19% | 1.06% | 6.7% | 17.0% | 22.2% | 52.8% | 1.88 | 38.6% | 44.5% | 16.9% |
| 부산광역시 | 북구 | 0.17% | 0.96% | 6.8% | 16.5% | 25.6% | 50.0% | 1.20 | 35.9% | 48.2% | 15.9%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0.20% | 1.14% | 7.6% | 19.9% | 26.7% | 44.4% | 4.05 | 37.4% | 44.1% | 18.5% |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0.16% | 0.96% | 5.7% | 15.3% | 23.6% | 54.2% | 0.51 | 39.7% | 45.6% | 14.7% |

| 시도 | 시군구 | 20대 미만 토지가액 비율 | 20대 비율 | 30대 비율 | 40대 비율 | 50대 비율 | 60대 이상 비율 |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2022.10 기준, 억원) | 무주택 가구 비율 | 1주택 가구 비율 | 다주택 가구 비율 |
|---|---|---|---|---|---|---|---|---|---|---|---|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0.23% | 0.96% | 5.6% | 15.3% | 24.0% | 53.9% | 1.36 | 43.4% | 41.5% | 15.2%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0.10% | 0.68% | 6.1% | 14.5% | 24.4% | 54.2% | 1.43 | 47.1% | 37.9% | 15.1% |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0.21% | 1.26% | 7.3% | 17.9% | 23.6% | 49.8% | 1.65 | 38.7% | 45.2% | 16.1% |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0.13% | 1.17% | 7.3% | 16.4% | 22.4% | 52.6% | 3.63 | 44.7% | 40.1% | 15.2% |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0.21% | 0.95% | 4.8% | 12.4% | 25.6% | 56.0% | 0.42 | 44.0% | 42.7% | 13.3% |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0.19% | 0.96% | 6.7% | 17.1% | 24.4% | 50.7% | 1.19 | 59.0% | 29.4% | 11.6% |
| 대구광역시 | 중구 | 0.19% | 1.01% | 6.5% | 15.5% | 24.8% | 52.0% | 1.82 | 50.5% | 37.1% | 12.4% |
| 대구광역시 | 동구 | 0.19% | 1.00% | 6.5% | 16.8% | 24.7% | 50.9% | 0.61 | 44.1% | 42.4% | 13.5% |
| 대구광역시 | 서구 | 0.23% | 1.14% | 4.8% | 12.1% | 25.1% | 56.6% | 0.94 | 46.4% | 43.1% | 10.5% |
| 대구광역시 | 남구 | 0.11% | 1.16% | 5.3% | 13.8% | 23.0% | 56.6% | 1.16 | 55.2% | 34.9% | 9.9% |
| 대구광역시 | 북구 | 0.15% | 0.95% | 6.5% | 17.2% | 27.3% | 47.9% | 0.59 | 41.5% | 45.1% | 13.4%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0.23% | 1.00% | 6.6% | 20.1% | 25.9% | 46.2% | 2.68 | 36.7% | 44.3% | 18.9% |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0.18% | 0.84% | 6.3% | 17.4% | 28.1% | 47.2% | 1.05 | 40.6% | 45.5% | 13.9% |
| 대구광역시 | 달성군 | 0.16% | 0.93% | 5.8% | 15.0% | 27.2% | 51.0% | 0.75 | 37.3% | 47.8% | 15.0% |
| 인천광역시 | 중구 | 0.21% | 1.02% | 5.7% | 15.6% | 24.2% | 53.3% | 1.20 | 53.1% | 34.5% | 12.4% |
| 인천광역시 | 동구 | 0.04% | 1.29% | 5.9% | 15.5% | 23.7% | 53.5% | 0.42 | 35.2% | 50.5% | 14.2% |
| 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 0.10% | 1.05% | 6.2% | 16.1% | 22.7% | 53.7% |  | 50.5% | 39.1% | 10.4%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0.11% | 1.45% | 11.3% | 24.2% | 28.7% | 34.3% | 3.28 | 37.1% | 46.6% | 16.4% |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0.17% | 1.03% | 7.1% | 19.2% | 25.7% | 46.8% | 1.39 | 44.6% | 42.8% | 12.6% |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0.13% | 1.56% | 7.3% | 17.6% | 25.2% | 48.2% | 1.54 | 43.0% | 44.1% | 12.9%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0.12% | 1.47% | 6.5% | 15.0% | 27.3% | 49.7% | 1.13 | 37.4% | 48.9% | 13.7% |
| 인천광역시 | 서구 | 0.18% | 1.33% | 9.5% | 21.3% | 28.3% | 39.3% | 2.15 | 41.0% | 45.1% | 13.9%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0.09% | 0.71% | 2.9% | 9.9% | 23.3% | 63.1% |  | 28.8% | 48.3% | 23.0% |
| 인천광역시 | 옹진군 | 0.11% | 0.84% | 2.9% | 10.5% | 24.4% | 61.2% |  | 41.8% | 35.2% | 23.0% |
| 광주광역시 | 동구 | 0.13% | 1.22% | 6.7% | 16.4% | 23.9% | 51.7% | 1.57 | 47.3% | 38.8% | 13.9% |
| 광주광역시 | 서구 | 0.11% | 1.22% | 6.8% | 18.3% | 28.4% | 45.2% | 0.96 | 41.7% | 43.4% | 14.9% |
| 광주광역시 | 남구 | 0.13% | 1.11% | 7.2% | 19.0% | 25.3% | 47.3% | 1.64 | 39.8% | 44.9% | 15.3% |
| 광주광역시 | 북구 | 0.15% | 1.23% | 7.3% | 17.6% | 27.0% | 46.7% | 0.74 | 42.6% | 44.5% | 12.9% |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0.13% | 1.22% | 7.3% | 21.2% | 30.6% | 39.7% | 1.03 | 42.4% | 44.4% | 13.2% |
| 대전광역시 | 동구 | 0.10% | 1.14% | 6.0% | 15.7% | 24.0% | 53.1% | 1.06 | 49.8% | 38.8% | 11.4% |
| 대전광역시 | 중구 | 0.13% | 1.07% | 5.5% | 16.4% | 24.9% | 52.1% | 1.56 | 42.7% | 43.1% | 14.2% |
| 대전광역시 | 서구 | 0.09% | 1.05% | 6.9% | 17.7% | 25.5% | 48.8% | 1.87 | 47.9% | 38.7% | 13.4% |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0.12% | 1.02% | 7.7% | 18.4% | 28.6% | 44.2% | 2.35 | 49.7% | 35.9% | 14.4% |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0.16% | 1.02% | 4.8% | 12.8% | 27.9% | 53.3% | 0.85 | 42.3% | 44.2% | 13.4% |
| 울산광역시 | 중구 | 0.12% | 0.82% | 7.5% | 18.4% | 27.0% | 46.1% | 0.33 | 38.3% | 46.5% | 15.2% |
| 울산광역시 | 남구 | 0.21% | 1.84% | 7.0% | 17.4% | 28.6% | 45.0% | 1.71 | 38.5% | 44.9% | 16.7% |
| 울산광역시 | 동구 | 0.18% | 0.82% | 7.0% | 16.3% | 24.6% | 51.1% | 0.31 | 35.3% | 47.2% | 17.5% |

| 시도 | 시군구 | 20대 미만 토지가액 비율 | 20대 비율 | 30대 비율 | 40대 비율 | 50대 비율 | 60대 이상 비율 |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2022.10 기준, 억원) | 무주택 가구 비율 | 1주택 가구 비율 | 다주택 가구 비율 |
|---|---|---|---|---|---|---|---|---|---|---|---|
| 울산광역시 | 북구 | 0.15% | 0.91% | 7.9% | 18.5% | 28.7% | 43.8% | 0.83 | 30.1% | 52.5% | 17.4%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0.14% | 0.82% | 4.3% | 13.3% | 28.1% | 53.4% | 0.70 | 35.0% | 46.4% | 18.6%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0.11% | 0.79% | 7.7% | 21.0% | 26.4% | 44.0% | 3.80 | 46.6% | 38.0% | 15.4% |
| 경기도 | 수원시 장안구 | 0.19% | 1.35% | 6.9% | 18.8% | 27.9% | 44.8% | 2.69 | 43.9% | 42.5% | 13.6% |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0.16% | 1.16% | 9.0% | 19.9% | 27.0% | 42.8% | 2.32 | 48.1% | 40.2% | 11.7% |
| 경기도 | 수원시 팔달구 | 0.19% | 1.33% | 7.0% | 16.9% | 24.0% | 50.6% | 2.65 | 52.3% | 36.7% | 10.9% |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0.17% | 1.70% | 11.4% | 26.0% | 30.0% | 30.8% | 3.99 | 43.5% | 42.1% | 14.4% |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0.19% | 1.34% | 8.7% | 20.2% | 24.6% | 45.0% | 5.59 | 60.5% | 30.2% | 9.3% |
| 경기도 | 성남시 중원구 | 0.20% | 1.59% | 7.7% | 18.3% | 23.6% | 48.6% | 4.24 | 54.4% | 35.8% | 9.7% |
|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 0.15% | 0.83% | 7.6% | 19.4% | 27.6% | 44.5% | 7.36 | 42.5% | 41.6% | 15.9% |
| 경기도 | 의정부시 | 0.23% | 1.21% | 6.8% | 16.8% | 25.8% | 49.1% | 1.66 | 45.1% | 42.8% | 12.1% |
| 경기도 | 안양시 만안구 | 0.21% | 1.61% | 7.3% | 14.8% | 23.7% | 52.4% | 2.45 | 42.3% | 43.7% | 14.0% |
| 경기도 | 안양시 동안구 | 0.14% | 1.38% | 8.9% | 18.6% | 26.3% | 44.6% | 4.00 | 37.0% | 46.9% | 16.1% |
| 경기도 | 부천시 | 0.21% | 1.34% | 7.4% | 17.0% | 25.5% | 48.5% | 2.66 | 41.0% | 45.5% | 13.4% |
| 경기도 | 광명시 | 0.16% | 1.53% | 8.8% | 19.2% | 26.6% | 43.6% | 3.94 | 41.3% | 44.3% | 14.4% |
| 경기도 | 평택시 | 0.16% | 1.12% | 5.2% | 14.8% | 26.4% | 52.2% | 1.18 | 47.2% | 38.6% | 14.1% |
| 경기도 | 동두천시 | 0.18% | 0.96% | 5.0% | 14.3% | 25.3% | 54.2% | 0.77 | 43.9% | 43.5% | 12.6% |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 | 0.13% | 1.14% | 5.5% | 14.9% | 27.4% | 51.0% | 1.84 | 48.3% | 39.8% | 11.9% |
| 경기도 | 안산시 단원구 | 0.16% | 1.27% | 6.5% | 16.6% | 28.7% | 46.8% | 2.25 | 45.3% | 41.4% | 13.3% |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 0.16% | 1.23% | 7.2% | 18.1% | 26.5% | 46.8% | 2.97 | 45.2% | 42.5% | 12.3% |
| 경기도 | 고양시 일산동구 | 0.14% | 1.17% | 5.5% | 16.7% | 27.8% | 48.7% | 3.26 | 51.0% | 35.9% | 13.1% |
| 경기도 | 고양시 일산서구 | 0.14% | 1.28% | 6.2% | 16.5% | 28.6% | 47.3% | 2.46 | 34.4% | 49.1% | 16.5% |
| 경기도 | 과천시 | 0.19% | 1.04% | 8.2% | 17.8% | 26.3% | 46.5% | 8.37 | 43.7% | 39.4% | 16.8% |
| 경기도 | 구리시 | 0.22% | 1.37% | 7.5% | 18.6% | 25.3% | 47.1% | 3.65 | 42.1% | 44.8% | 13.1% |
| 경기도 | 남양주시 | 0.15% | 1.06% | 7.0% | 20.0% | 27.0% | 44.8% | 2.93 | 41.6% | 43.9% | 14.6% |
| 경기도 | 오산시 | 0.17% | 1.31% | 7.6% | 21.9% | 26.0% | 43.0% | 1.64 | 48.3% | 40.4% | 11.3% |

| 시도 | 시군구 | 20대 미만 토지가액 비율 | 20대 비율 | 30대 비율 | 40대 비율 | 50대 비율 | 60대 이상 비율 |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2022.10 기준, 억원) | 무주택 가구 비율 | 1주택 가구 비율 | 다주택 가구 비율 |
|---|---|---|---|---|---|---|---|---|---|---|---|
| 경기도 | 시흥시 | 0.13% | 1.27% | 6.7% | 16.5% | 29.0% | 46.4% | 2.02 | 47.6% | 40.1% | 12.3% |
| 경기도 | 군포시 | 0.16% | 1.39% | 7.1% | 18.5% | 25.6% | 47.3% | 2.59 | 39.6% | 45.9% | 14.5% |
| 경기도 | 의왕시 | 0.19% | 1.21% | 8.2% | 18.8% | 27.9% | 43.6% | 3.97 | 41.9% | 43.0% | 15.1% |
| 경기도 | 하남시 | 0.17% | 0.98% | 8.8% | 22.9% | 26.5% | 40.7% | 5.72 | 54.6% | 36.0% | 9.4% |
| 경기도 | 용인시 처인구 | 0.16% | 1.17% | 5.1% | 14.4% | 25.6% | 53.6% | 1.50 | 42.1% | 43.3% | 14.6% |
| 경기도 | 용인시 기흥구 | 0.17% | 1.29% | 8.2% | 23.1% | 27.4% | 39.8% | 3.17 | 38.1% | 46.0% | 15.9% |
| 경기도 | 용인시 수지구 | 0.14% | 0.87% | 9.1% | 23.7% | 25.7% | 40.4% | 4.52 | 31.7% | 48.5% | 19.7% |
| 경기도 | 파주시 | 0.12% | 1.12% | 6.3% | 16.3% | 26.8% | 49.3% | 1.40 | 50.2% | 37.2% | 12.6% |
| 경기도 | 이천시 | 0.14% | 0.98% | 4.7% | 12.9% | 25.4% | 56.0% | 0.89 | 40.5% | 43.4% | 16.1% |
| 경기도 | 안성시 | 0.20% | 0.96% | 4.6% | 13.5% | 25.4% | 55.4% | 0.54 | 42.8% | 41.3% | 15.8% |
| 경기도 | 김포시 | 0.13% | 1.07% | 8.4% | 19.1% | 25.4% | 46.0% | 2.22 | 40.3% | 44.8% | 14.9% |
| 경기도 | 화성시 | 0.14% | 1.28% | 9.0% | 21.5% | 27.0% | 41.1% | 2.83 | 46.0% | 40.4% | 13.6% |
| 경기도 | 광주시 | 0.19% | 1.25% | 6.8% | 16.6% | 25.6% | 49.6% | 2.12 | 34.8% | 50.5% | 14.8% |
| 경기도 | 양주시 | 0.14% | 1.01% | 5.2% | 14.0% | 25.2% | 54.5% | 1.29 | 44.5% | 42.9% | 12.6% |
| 경기도 | 포천시 | 0.14% | 0.95% | 3.7% | 11.3% | 26.5% | 57.4% | 0.45 | 44.9% | 40.7% | 14.4% |
| 경기도 | 여주시 | 0.10% | 0.90% | 3.9% | 11.4% | 25.6% | 58.2% | 0.11 | 38.6% | 42.9% | 18.5% |
| 경기도 | 연천군 | 0.18% | 0.90% | 3.3% | 10.8% | 25.2% | 59.7% |  | 45.5% | 39.0% | 15.5% |
| 경기도 | 가평군 | 0.13% | 0.96% | 3.6% | 10.9% | 24.7% | 59.8% |  | 40.5% | 41.0% | 18.5% |
| 경기도 | 양평군 | 0.16% | 0.96% | 3.9% | 12.0% | 24.7% | 58.3% |  | 35.2% | 43.9% | 20.9% |
| 강원도 | 춘천시 | 0.12% | 0.85% | 4.6% | 13.5% | 26.1% | 54.8% | 0.72 | 43.7% | 42.2% | 14.2% |
| 강원도 | 원주시 | 0.14% | 1.07% | 5.4% | 12.5% | 26.8% | 54.2% | 0.60 | 44.7% | 41.0% | 14.2% |
| 강원도 | 강릉시 | 0.11% | 0.82% | 4.4% | 13.7% | 24.1% | 56.8% | 0.84 | 44.4% | 41.2% | 14.4% |
| 강원도 | 동해시 | 0.10% | 0.90% | 4.6% | 13.5% | 24.8% | 56.1% | 0.15 | 40.5% | 44.3% | 15.2% |
| 강원도 | 태백시 | 0.12% | 1.08% | 4.6% | 14.3% | 27.0% | 52.8% | 0.23 | 37.8% | 45.1% | 17.1% |
| 강원도 | 속초시 | 0.13% | 1.01% | 5.4% | 13.3% | 26.7% | 53.5% | 0.93 | 40.2% | 43.2% | 16.6% |
| 강원도 | 삼척시 | 0.10% | 0.76% | 3.5% | 12.6% | 24.7% | 58.4% | 0.19 | 42.7% | 40.3% | 16.9% |
| 강원도 | 홍천군 | 0.11% | 0.67% | 3.3% | 10.4% | 25.9% | 59.7% |  | 35.6% | 43.8% | 20.6% |
| 강원도 | 횡성군 | 0.11% | 0.68% | 3.0% | 10.0% | 25.1% | 61.0% |  | 34.3% | 42.6% | 23.0% |
| 강원도 | 영월군 | 0.10% | 0.74% | 3.3% | 11.0% | 26.8% | 58.3% |  | 35.6% | 43.8% | 20.5% |
| 강원도 | 평창군 | 0.11% | 0.73% | 3.6% | 11.8% | 25.1% | 58.6% |  | 36.2% | 44.1% | 19.6% |
| 강원도 | 정선군 | 0.05% | 0.75% | 3.1% | 11.6% | 25.4% | 59.2% |  | 40.5% | 41.3% | 18.1% |
| 강원도 | 철원군 | 0.14% | 0.86% | 3.2% | 11.0% | 25.3% | 59.5% |  | 41.3% | 43.3% | 15.4% |
| 강원도 | 화천군 | 0.00% | 0.93% | 3.0% | 9.8% | 26.8% | 59.4% |  | 46.9% | 36.1% | 17.0% |
| 강원도 | 양구군 | 0.00% | 0.95% | 3.7% | 10.6% | 27.3% | 57.4% |  | 43.4% | 40.6% | 16.1% |
| 강원도 | 인제군 | 0.19% | 0.82% | 3.0% | 10.7% | 26.1% | 59.3% |  | 42.3% | 39.6% | 18.1% |

| 시도 | 시군구 | 20대 미만 토지가액 비율 | 20대 비율 | 30대 비율 | 40대 비율 | 50대 비율 | 60대 이상 비율 |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2022.10 기준, 억원) | 무주택 가구 비율 | 1주택 가구 비율 | 다주택 가구 비율 |
|---|---|---|---|---|---|---|---|---|---|---|---|
| 강원도 | 고성군 | 0.15% | 1.12% | 4.9% | 12.1% | 24.5% | 57.3% | | 36.6% | 42.7% | 20.7% |
| 강원도 | 양양군 | 0.13% | 1.00% | 3.8% | 12.6% | 24.8% | 57.9% | | 34.6% | 43.6% | 21.8% |
|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 0.09% | 0.88% | 4.8% | 14.1% | 25.6% | 54.5% | 0.55 | 35.4% | 49.3% | 15.3% |
| 충청북도 | 청주시 서원구 | 0.09% | 0.95% | 5.2% | 15.5% | 28.0% | 50.3% | 0.27 | 43.4% | 42.9% | 13.6% |
| 충청북도 | 청주시 흥덕구 | 0.15% | 1.07% | 6.8% | 16.0% | 26.3% | 49.7% | 1.11 | 45.3% | 41.0% | 13.6% |
| 충청북도 | 청주시 청원구 | 0.09% | 0.82% | 6.0% | 16.1% | 25.6% | 51.3% | 0.77 | 45.1% | 41.7% | 13.2% |
| 충청북도 | 충주시 | 0.07% | 0.86% | 4.1% | 12.3% | 25.1% | 57.6% | 0.73 | 40.4% | 43.6% | 15.9% |
| 충청북도 | 제천시 | 0.09% | 0.80% | 3.7% | 12.2% | 26.2% | 57.0% | 0.52 | 40.2% | 45.2% | 14.6% |
| 충청북도 | 보은군 | 0.05% | 0.82% | 2.9% | 9.2% | 24.0% | 63.0% | | 34.4% | 41.5% | 24.2% |
| 충청북도 | 옥천군 | 0.07% | 0.82% | 3.3% | 11.3% | 24.8% | 59.7% | | 30.6% | 48.2% | 21.2% |
| 충청북도 | 영동군 | 0.05% | 0.65% | 2.8% | 9.9% | 23.8% | 62.8% | | 36.1% | 44.3% | 19.6% |
| 충청북도 | 증평군 | 0.07% | 0.68% | 4.2% | 11.8% | 24.4% | 59.0% | | 48.3% | 38.2% | 13.4% |
| 충청북도 | 진천군 | 0.22% | 1.04% | 4.1% | 12.4% | 25.6% | 56.6% | | 46.9% | 37.4% | 15.6% |
| 충청북도 | 괴산군 | 0.09% | 0.61% | 2.9% | 9.6% | 24.4% | 62.4% | | 38.3% | 41.2% | 20.5% |
| 충청북도 | 음성군 | 0.07% | 0.74% | 3.7% | 11.9% | 25.9% | 57.7% | 0.51 | 45.8% | 38.0% | 16.2% |
| 충청북도 | 단양군 | 0.13% | 0.59% | 3.1% | 9.9% | 25.7% | 60.6% | | 32.8% | 46.1% | 21.1% |
| 충청남도 | 천안시 동남구 | 0.28% | 1.01% | 5.6% | 15.3% | 26.2% | 51.6% | 0.61 | 44.3% | 40.8% | 14.9% |
| 충청남도 | 천안시 서북구 | 0.14% | 1.20% | 9.3% | 19.5% | 26.5% | 43.4% | 1.07 | 47.1% | 38.8% | 14.1% |
| 충청남도 | 공주시 | 0.12% | 0.89% | 3.7% | 11.1% | 24.4% | 59.8% | 0.47 | 42.0% | 39.3% | 18.7% |
| 충청남도 | 보령시 | 0.12% | 1.01% | 4.0% | 12.4% | 23.7% | 58.8% | 0.45 | 38.8% | 43.1% | 18.2% |
| 충청남도 | 아산시 | 0.10% | 1.06% | 5.8% | 15.3% | 26.5% | 51.2% | 0.78 | 44.6% | 40.4% | 15.0% |
| 충청남도 | 서산시 | 0.16% | 0.78% | 3.9% | 12.8% | 24.8% | 57.5% | 0.30 | 38.4% | 44.6% | 17.1% |
| 충청남도 | 논산시 | 0.08% | 0.68% | 3.6% | 10.2% | 22.8% | 62.8% | 0.47 | 44.0% | 39.4% | 16.6% |
| 충청남도 | 계룡시 | 0.09% | 0.80% | 5.1% | 15.0% | 27.2% | 51.8% | 0.76 | 40.6% | 41.8% | 17.6% |
| 충청남도 | 당진시 | 0.12% | 0.74% | 3.9% | 12.2% | 23.5% | 59.5% | 0.13 | 41.5% | 40.2% | 18.3% |
| 충청남도 | 금산군 | 0.13% | 0.75% | 3.2% | 11.1% | 24.0% | 60.9% | | 37.5% | 43.6% | 18.9% |
| 충청남도 | 부여군 | 0.10% | 0.75% | 3.3% | 9.5% | 20.8% | 65.6% | | 35.1% | 42.3% | 22.5% |
| 충청남도 | 서천군 | 0.06% | 0.72% | 3.2% | 10.1% | 21.2% | 64.7% | | 37.2% | 38.6% | 24.1% |
| 충청남도 | 청양군 | 0.14% | 0.86% | 3.4% | 11.2% | 24.8% | 59.7% | | 34.1% | 42.9% | 23.0% |
| 충청남도 | 홍성군 | 0.10% | 0.81% | 3.5% | 11.2% | 23.7% | 60.7% | 0.82 | 41.1% | 41.1% | 17.8% |
| 충청남도 | 예산군 | 0.06% | 0.63% | 3.1% | 10.6% | 22.2% | 63.5% | 0.28 | 34.5% | 42.2% | 23.3% |
| 충청남도 | 태안군 | 0.20% | 0.70% | 2.9% | 10.8% | 22.4% | 62.9% | | 37.6% | 41.6% | 20.9% |
| 전라북도 | 전주시 | 0.09% | 1.00% | 6.4% | 16.7% | 27.6% | 48.2% | 0.48 | 43.8% | 42.4% | 13.9% |

| 시도 | 시군구 | 20대 미만 토지가액 비율 | 20대 비율 | 30대 비율 | 40대 비율 | 50대 비율 | 60대 이상 비율 |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2022.10 기준, 억원) | 무주택 가구 비율 | 1주택 가구 비율 | 다주택 가구 비율 |
|---|---|---|---|---|---|---|---|---|---|---|---|
| | 완산구 | | | | | | | | | | |
| 전라북도 | 전주시 덕진구 | 0.11% | 1.11% | 7.6% | 18.6% | 27.9% | 44.7% | 0.96 | 40.6% | 45.2% | 14.2% |
| 전라북도 | 군산시 | 0.12% | 0.85% | 4.6% | 14.3% | 25.2% | 55.0% | 0.53 | 41.7% | 42.8% | 15.5% |
| 전라북도 | 익산시 | 0.07% | 0.93% | 4.2% | 13.1% | 25.2% | 56.5% | 0.61 | 41.7% | 42.6% | 15.8% |
| 전라북도 | 정읍시 | 0.11% | 0.83% | 3.7% | 12.2% | 24.1% | 59.2% | 0.43 | 39.3% | 44.2% | 16.5% |
| 전라북도 | 남원시 | 0.09% | 0.70% | 3.2% | 11.7% | 24.0% | 60.2% | 0.46 | 37.3% | 45.3% | 17.4% |
| 전라북도 | 김제시 | 0.09% | 0.77% | 3.6% | 11.1% | 22.2% | 62.2% | 0.40 | 38.9% | 44.1% | 17.0% |
| 전라북도 | 완주군 | 0.09% | 0.89% | 3.8% | 13.2% | 26.0% | 56.0% | | 41.6% | 41.2% | 17.1% |
| 전라북도 | 진안군 | 0.08% | 0.87% | 2.9% | 10.7% | 23.9% | 61.6% | | 30.8% | 46.3% | 22.9% |
| 전라북도 | 무주군 | 0.14% | 0.71% | 3.3% | 12.6% | 25.5% | 57.7% | | 34.9% | 45.3% | 19.8% |
| 전라북도 | 장수군 | 0.10% | 0.80% | 3.4% | 11.1% | 23.4% | 61.2% | | 32.6% | 47.2% | 20.2% |
| 전라북도 | 임실군 | 0.15% | 0.98% | 3.5% | 11.3% | 24.4% | 59.8% | | 40.9% | 38.8% | 20.4% |
| 전라북도 | 순창군 | 0.08% | 0.55% | 2.8% | 10.8% | 22.1% | 63.6% | | 32.4% | 44.3% | 23.3% |
| 전라북도 | 고창군 | 0.07% | 0.69% | 3.0% | 10.2% | 21.7% | 64.3% | | 41.8% | 36.8% | 21.5% |
| 전라북도 | 부안군 | 0.09% | 0.94% | 3.8% | 11.7% | 23.0% | 60.5% | | 34.4% | 45.6% | 20.0% |
| 전라남도 | 목포시 | 0.13% | 0.99% | 6.4% | 17.6% | 26.9% | 48.0% | 0.20 | 42.4% | 44.7% | 12.9% |
| 전라남도 | 여수시 | 0.08% | 0.92% | 5.4% | 14.7% | 27.0% | 51.9% | 1.01 | 39.4% | 44.5% | 16.1% |
| 전라남도 | 순천시 | 0.10% | 0.97% | 5.6% | 14.9% | 27.7% | 50.7% | 1.01 | 37.4% | 46.3% | 16.3% |
| 전라남도 | 나주시 | 0.09% | 1.10% | 5.6% | 15.0% | 25.3% | 52.9% | 0.98 | 41.9% | 40.3% | 17.8% |
| 전라남도 | 광양시 | 0.12% | 0.98% | 4.4% | 13.9% | 29.5% | 51.0% | 0.21 | 38.7% | 44.1% | 17.2% |
| 전라남도 | 담양군 | 0.09% | 0.80% | 3.5% | 11.9% | 25.7% | 58.2% | | 32.2% | 46.4% | 21.4% |
| 전라남도 | 곡성군 | 0.08% | 0.83% | 3.2% | 10.5% | 23.4% | 62.0% | | 32.5% | 46.8% | 20.7% |
| 전라남도 | 구례군 | 0.00% | 0.70% | 3.0% | 10.9% | 24.9% | 60.3% | | 30.4% | 48.8% | 20.8% |
| 전라남도 | 고흥군 | 0.08% | 0.80% | 2.9% | 10.6% | 21.4% | 64.2% | | 39.8% | 39.9% | 20.3% |
| 전라남도 | 보성군 | 0.05% | 0.62% | 3.2% | 10.0% | 22.2% | 63.8% | | 35.1% | 42.9% | 22.1% |
| 전라남도 | 화순군 | 0.06% | 0.94% | 3.7% | 11.4% | 26.3% | 57.6% | | 38.8% | 43.2% | 18.0% |
| 전라남도 | 장흥군 | 0.06% | 0.75% | 3.5% | 10.4% | 22.6% | 62.7% | | 35.4% | 42.7% | 22.0% |
| 전라남도 | 강진군 | 0.06% | 0.67% | 3.1% | 10.4% | 21.4% | 64.3% | | 29.2% | 46.9% | 23.9% |
| 전라남도 | 해남군 | 0.10% | 0.75% | 3.6% | 11.3% | 22.7% | 61.6% | | 36.7% | 42.6% | 20.7% |
| 전라남도 | 영암군 | 0.12% | 0.80% | 3.9% | 11.3% | 23.5% | 60.5% | | 40.8% | 40.6% | 18.6% |
| 전라남도 | 무안군 | 0.25% | 1.12% | 6.2% | 15.6% | 25.2% | 51.6% | 0.14 | 39.5% | 42.4% | 18.2% |
| 전라남도 | 함평군 | 0.06% | 0.97% | 3.3% | 11.6% | 24.5% | 59.7% | | 38.9% | 39.0% | 22.0% |
| 전라남도 | 영광군 | 0.05% | 0.90% | 3.4% | 11.3% | 22.5% | 62.0% | | 42.1% | 36.1% | 21.9% |
| 전라남도 | 장성군 | 0.11% | 0.96% | 3.3% | 12.4% | 25.5% | 57.8% | | 36.9% | 44.1% | 19.0% |
| 전라남도 | 완도군 | 0.09% | 1.05% | 5.2% | 13.7% | 24.8% | 55.2% | | 40.4% | 39.9% | 19.7% |
| 전라남도 | 진도군 | 0.00% | 0.94% | 3.9% | 12.0% | 23.6% | 59.8% | | 37.3% | 40.8% | 22.0% |
| 전라남도 | 신안군 | 0.14% | 0.86% | 3.4% | 10.5% | 23.4% | 61.7% | | 35.4% | 41.1% | 23.5% |

| 시도 | 시군구 | 20대 미만 토지가액 비율 | 20대 비율 | 30대 비율 | 40대 비율 | 50대 비율 | 60대 이상 비율 |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2022.10 기준, 억원) | 무주택 가구 비율 | 1주택 가구 비율 | 다주택 가구 비율 |
|---|---|---|---|---|---|---|---|---|---|---|---|
|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 | 0.14% | 0.80% | 5.6% | 14.7% | 26.0% | 52.7% | 0.53 | 38.5% | 44.5% | 17.0% |
| 경상북도 | 포항시 북구 | 0.12% | 0.84% | 5.3% | 14.7% | 26.5% | 52.6% | 0.36 | 39.2% | 42.9% | 17.9% |
| 경상북도 | 경주시 | 0.09% | 0.72% | 3.6% | 12.1% | 25.5% | 58.0% | 0.25 | 39.4% | 43.4% | 17.2% |
| 경상북도 | 김천시 | 0.08% | 0.74% | 4.6% | 13.1% | 25.8% | 55.8% | 0.49 | 38.7% | 43.7% | 17.5% |
| 경상북도 | 안동시 | 0.11% | 0.73% | 3.8% | 12.5% | 24.7% | 58.1% | 0.44 | 40.0% | 43.7% | 16.3% |
| 경상북도 | 구미시 | 0.09% | 0.91% | 6.8% | 16.5% | 28.3% | 47.4% | 0.43 | 41.2% | 43.7% | 15.1% |
| 경상북도 | 영주시 | 0.08% | 0.60% | 3.2% | 11.3% | 23.8% | 60.9% | 0.22 | 37.2% | 46.5% | 16.2% |
| 경상북도 | 영천시 | 0.09% | 0.67% | 3.4% | 11.3% | 25.2% | 59.3% | 0.00 | 37.8% | 43.1% | 19.1% |
| 경상북도 | 상주시 | 0.05% | 0.57% | 3.1% | 10.6% | 24.2% | 61.4% | 0.39 | 34.1% | 46.2% | 19.7% |
| 경상북도 | 문경시 | 0.13% | 0.70% | 3.2% | 11.9% | 23.7% | 60.5% | 0.47 | 35.0% | 46.9% | 18.0% |
| 경상북도 | 경산시 | 0.13% | 0.92% | 5.5% | 15.1% | 25.8% | 52.5% | 0.29 | 42.9% | 42.8% | 14.3% |
| 경상북도 | 군위군 | 0.16% | 0.79% | 3.0% | 10.3% | 24.4% | 61.4% |  | 33.5% | 43.9% | 22.6% |
| 경상북도 | 의성군 | 0.09% | 0.64% | 2.7% | 9.0% | 22.2% | 65.5% |  | 31.7% | 45.8% | 22.5% |
| 경상북도 | 청송군 | 0.14% | 0.79% | 2.9% | 10.2% | 24.2% | 61.8% |  | 36.1% | 44.6% | 19.4% |
| 경상북도 | 영양군 | 0.13% | 0.63% | 3.0% | 11.3% | 24.8% | 60.3% |  | 33.5% | 45.1% | 21.4% |
| 경상북도 | 영덕군 | 0.04% | 0.79% | 3.1% | 11.5% | 24.1% | 60.5% |  | 36.4% | 44.7% | 18.9% |
| 경상북도 | 청도군 | 0.09% | 0.66% | 3.2% | 10.9% | 26.0% | 59.1% |  | 29.4% | 46.1% | 24.5% |
| 경상북도 | 고령군 | 0.05% | 0.86% | 3.2% | 10.6% | 26.2% | 59.1% |  | 38.9% | 41.0% | 20.1% |
| 경상북도 | 성주군 | 0.09% | 0.65% | 3.5% | 10.7% | 25.8% | 59.3% |  | 34.6% | 42.8% | 22.5% |
| 경상북도 | 칠곡군 | 0.12% | 0.77% | 4.4% | 12.9% | 27.8% | 54.1% | 0.19 | 39.5% | 45.1% | 15.4% |
| 경상북도 | 예천군 | 0.05% | 0.89% | 4.4% | 13.2% | 24.1% | 57.4% |  | 33.8% | 45.2% | 21.0% |
| 경상북도 | 봉화군 | 0.13% | 0.69% | 2.7% | 10.3% | 24.7% | 61.6% |  | 34.1% | 45.6% | 20.3% |
| 경상북도 | 울진군 | 0.17% | 0.92% | 3.4% | 11.9% | 23.8% | 59.9% |  | 41.8% | 40.5% | 17.8% |
| 경상북도 | 울릉군 | 0.00% | 0.61% | 4.1% | 11.0% | 22.4% | 62.1% |  | 48.4% | 30.9% | 20.7% |
| 경상남도 | 창원시 의창구 | 0.10% | 0.71% | 4.8% | 13.2% | 27.1% | 54.0% | 1.19 | 42.9% | 40.9% | 16.1% |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0.07% | 0.95% | 7.1% | 21.4% | 28.7% | 41.7% | 1.16 | 37.2% | 44.2% | 18.5% |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합포구 | 0.07% | 0.89% | 6.0% | 14.4% | 23.2% | 55.4% | 0.37 | 37.5% | 45.0% | 17.5% |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회원구 | 0.08% | 0.74% | 4.8% | 14.9% | 25.2% | 54.4% | 0.27 | 34.8% | 48.4% | 16.8%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해구 | 0.08% | 0.94% | 6.7% | 17.3% | 24.7% | 50.3% | 0.25 | 43.3% | 42.2% | 14.5% |
| 경상남도 | 진주시 | 0.11% | 0.87% | 6.2% | 16.9% | 25.1% | 50.8% | 0.49 | 39.5% | 44.3% | 16.2% |
| 경상남도 | 통영시 | 0.04% | 0.73% | 4.6% | 15.6% | 25.3% | 53.6% | 0.27 | 35.5% | 48.0% | 16.5% |
| 경상남도 | 사천시 | 0.11% | 0.83% | 4.0% | 13.1% | 25.1% | 56.9% | -0.08 | 36.0% | 46.7% | 17.3% |
| 경상남도 | 김해시 | 0.13% | 0.87% | 5.4% | 16.5% | 28.3% | 48.8% | 0.46 | 36.7% | 46.7% | 16.6% |
| 경상남도 | 밀양시 | 0.09% | 0.69% | 3.1% | 10.9% | 24.1% | 61.1% | 0.49 | 35.2% | 45.0% | 19.8% |

| 시도 | 시군구 | 20대 미만 토지가액 비율 | 20대 비율 | 30대 비율 | 40대 비율 | 50대 비율 | 60대 이상 비율 |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2022.10 기준, 억원) | 무주택 가구 비율 | 1주택 가구 비율 | 다주택 가구 비율 |
|---|---|---|---|---|---|---|---|---|---|---|---|
| 경상남도 | 거제시 | 0.12% | 0.80% | 6.6% | 17.4% | 26.5% | 48.6% | 0.02 | 33.7% | 46.9% | 19.5% |
| 경상남도 | 양산시 | 0.22% | 1.04% | 7.2% | 17.6% | 26.7% | 47.2% | 0.77 | 37.5% | 47.0% | 15.5% |
| 경상남도 | 의령군 | 0.12% | 0.70% | 3.0% | 10.4% | 24.9% | 61.0% | | 36.0% | 43.1% | 20.9% |
| 경상남도 | 함안군 | 0.07% | 0.54% | 2.9% | 10.7% | 24.8% | 61.1% | | 34.3% | 46.1% | 19.5% |
| 경상남도 | 창녕군 | 0.06% | 0.64% | 3.3% | 10.3% | 25.2% | 60.5% | | 35.6% | 42.6% | 21.8% |
| 경상남도 | 고성군 | 0.05% | 0.69% | 3.1% | 10.8% | 23.6% | 61.8% | | 32.9% | 47.2% | 19.9% |
| 경상남도 | 남해군 | 0.03% | 0.70% | 2.9% | 10.9% | 24.1% | 61.3% | | 30.2% | 49.5% | 20.3% |
| 경상남도 | 하동군 | 0.10% | 0.76% | 2.7% | 10.2% | 24.1% | 62.2% | | 32.9% | 46.1% | 21.1% |
| 경상남도 | 산청군 | 0.07% | 0.75% | 3.1% | 11.1% | 25.6% | 59.4% | | 33.2% | 43.6% | 23.2% |
| 경상남도 | 함양군 | 0.09% | 0.60% | 2.6% | 10.6% | 25.3% | 60.9% | | 33.1% | 44.3% | 22.6% |
| 경상남도 | 거창군 | 0.07% | 0.63% | 3.5% | 11.9% | 24.4% | 59.4% | | 33.2% | 44.8% | 22.0% |
| 경상남도 | 합천군 | 0.11% | 0.81% | 3.4% | 10.8% | 23.7% | 61.2% | | 33.5% | 42.4% | 24.1%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0.25% | 1.11% | 5.0% | 17.3% | 28.7% | 47.7% | 1.02 | 45.3% | 36.8% | 17.9% |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0.25% | 0.99% | 3.9% | 15.6% | 27.4% | 51.8% | 0.60 | 43.9% | 37.4% | 18.6% |

## [Ⅲ-1] 비교대상 국가의 시간당 임금 추정(OLS)

| |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페인 | 영국 | Pool |
|---|---|---|---|---|---|---|---|---|---|---|---|---|
| 역량 | | 0.001*** | 0.002*** | 0.001*** | 0.001** | 0.002*** | 0.001** | 0.002*** | 0.002*** | 0.001*** | 0.003*** | 0.002***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남성 | | 0.101*** | 0.188*** | 0.145*** | 0.184*** | 0.287*** | 0.329*** | 0.070** | 0.154*** | 0.195*** | 0.129*** | 0.237*** |
| | | (0.015) | (0.012) | (0.015) | (0.024) | (0.025) | (0.023) | (0.023) | (0.016) | (0.022) | (0.022) | (0.010) |
| 연령 | | 0.057*** | 0.030*** | 0.033*** | 0.019* | 0.035*** | 0.050*** | 0.066*** | 0.041*** | 0.019* | 0.057*** | 0.041*** |
| | | (0.005) | (0.004) | (0.005) | (0.008) | (0.006) | (0.007) | (0.007) | (0.004) | (0.008) | (0.005) | (0.003) |
| 연령2 | | -0.001*** | -0.000*** | -0.000*** | -0.000* | -0.000*** | -0.001*** | -0.001*** | -0.000*** | -0.000* | -0.001*** | -0.000***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학력 | | 0.047*** | 0.050*** | 0.046*** | 0.039*** | 0.054*** | 0.057*** | 0.053*** | 0.038*** | 0.052*** | 0.054*** | 0.051*** |
| | | (0.003) | (0.003) | (0.002) | (0.004) | (0.006) | (0.005) | (0.006) | (0.004) | (0.003) | (0.005) | (0.002) |
| 근속 | | 0.003*** | 0.001 | 0.005*** | 0.005** | 0.011*** | 0.016*** | 0.002 | 0.001 | 0.009*** | 0.009*** | 0.010*** |
| | | (0.001) | (0.001) | (0.001) | (0.002) | (0.002) | (0.002) | (0.002) | (0.001) | (0.001) | (0.001) | (0.001) |
| 경력 | | 0.006*** | 0.008*** | 0.005*** | 0.008*** | 0.013*** | 0.013*** | 0.009*** | 0.005*** | 0.005** | 0.004* | 0.008*** |
| | | (0.001) | (0.002) | (0.001) | (0.002) | (0.002) | (0.002) | (0.002) | (0.001) | (0.002) | (0.002) | (0.001) |
| 노동 시간 | | -0.004** | -0.004** | -0.006*** | -0.016*** | -0.016*** | -0.023*** | -0.002 | -0.003** | -0.015*** | -0.000 | -0.012*** |
| | | (0.001) | (0.001) | (0.001) | (0.002) | (0.001) | (0.001) | (0.002) | (0.001) | (0.002) | (0.002) | (0.001) |
| 정규직 | | 0.120*** | 0.068*** | 0.140*** | 0.204*** | 0.155*** | 0.180*** | 0.189*** | 0.172*** | 0.124*** | 0.044 | 0.141*** |
| | | (0.025) | (0.019) | (0.022) | (0.030) | (0.030) | (0.022) | (0.034) | (0.033) | (0.025) | (0.028) | (0.012) |
| 전일제 | | 0.033 | 0.015 | 0.002 | 0.033 | 0.326*** | -0.067 | 0.028 | 0.012 | 0.110* | 0.064 | 0.124*** |
| | | (0.022) | (0.023) | (0.026) | (0.049) | (0.042) | (0.052) | (0.033) | (0.028) | (0.043) | (0.035) | (0.016) |
| 기업규모 (ref.〈10) | 11 -50 | 0.024 | 0.090*** | 0.059*** | 0.118*** | 0.087* | 0.072** | 0.025 | 0.036 | 0.089*** | 0.087** | 0.072*** |
| | | (0.020) | (0.015) | (0.018) | (0.030) | (0.035) | (0.027) | (0.036) | (0.023) | (0.022) | (0.029) | (0.014) |
| | 50 -200 | 0.024 | 0.140*** | 0.084*** | 0.197*** | 0.185*** | 0.119*** | 0.103** | 0.091*** | 0.228*** | 0.119*** | 0.147*** |
| | | (0.022) | (0.016) | (0.018) | (0.033) | (0.032) | (0.030) | (0.035) | (0.025) | (0.039) | (0.029) | (0.014) |
| | 200〉 | 0.143*** | 0.212*** | 0.146*** | 0.229*** | 0.308*** | 0.256*** | 0.170*** | 0.154*** | 0.264*** | 0.264*** | 0.236*** |
| | | (0.023) | (0.018) | (0.020) | (0.038) | (0.038) | (0.031) | (0.038) | (0.026) | (0.032) | (0.029) | (0.015) |
| cons | | 0.423*** | 0.853*** | 0.650*** | 1.333*** | 0.355* | 0.922*** | -0.301* | 0.729*** | 0.855*** | -0.759*** | 0.193** |
| | | (0.081) | (0.095) | (0.099) | (0.188) | (0.141) | (0.179) | (0.118) | (0.084) | (0.153) | (0.124) | (0.059) |
| R2 | | 0.329 | 0.411 | 0.358 | 0.360 | 0.277 | 0.506 | 0.329 | 0.312 | 0.387 | 0.383 | 0.312 |
| $\overline{R^2}$ | | 0.327 | 0.408 | 0.356 | 0.356 | 0.274 | 0.504 | 0.326 | 0.310 | 0.383 | 0.381 | 0.311 |

## [Ⅲ-2] 비교대상 국가의 성별 시간당 임금 추정(OLS)

| | | 덴마크 | | 핀란드 | | 프랑스 | | 이탈리아 | | 일본 | | 한국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역량 | | 0.002*** | 0.001*** | 0.001*** | 0.002*** | 0.002*** | 0.001*** | 0.001 | 0.001* | 0.003*** | 0.002** | 0.002*** | -0.000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1) | (0.001) | (0.000) | (0.001) |
| 연령 | | 0.057*** | 0.059*** | 0.028*** | 0.030*** | 0.043*** | 0.021** | 0.036*** | -0.001 | 0.074*** | 0.008 | 0.097*** | 0.011 |
| | | (0.008) | (0.005) | (0.007) | (0.006) | (0.007) | (0.007) | (0.010) | (0.014) | (0.011) | (0.007) | (0.010) | (0.011) |
| 연령2 | | -0.001*** | -0.001***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1*** | -0.000 | -0.001*** | -0.000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학력 | | 0.048*** | 0.048*** | 0.046*** | 0.053*** | 0.037*** | 0.056*** | 0.038*** | 0.042*** | 0.049*** | 0.053*** | 0.047*** | 0.070*** |
| | | (0.004) | (0.004) | (0.004) | (0.003) | (0.003) | (0.004) | (0.006) | (0.005) | (0.008) | (0.009) | (0.005) | (0.008) |
| 근속 | | 0.004** | 0.002* | 0.003** | -0.000 | 0.005*** | 0.006*** | 0.002 | 0.008** | 0.011*** | 0.008* | 0.013*** | 0.023*** |
| |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2) | (0.003) | (0.002) | (0.003) | (0.002) | (0.003) |
| 경력 | | 0.007*** | 0.005*** | 0.008** | 0.007*** | 0.004 | 0.004** | 0.011** | 0.004 | 0.008 | 0.013*** | 0.009*** | 0.010*** |
| | | (0.002) | (0.002) | (0.003) | (0.002) | (0.003) | (0.002) | (0.004) | (0.002) | (0.004) | (0.003) | (0.002) | (0.003) |
| 노동 시간 | | -0.001 | -0.007*** | -0.001 | -0.007*** | -0.003 | -0.010*** | -0.012*** | -0.021*** | -0.015*** | -0.015*** | -0.022*** | -0.022*** |
| | | (0.002) | (0.002) | (0.002) | (0.002) | (0.002) | (0.002) | (0.003) | (0.004) | (0.002) | (0.003) | (0.001) | (0.003) |
| 정규직 | | 0.134*** | 0.111*** | 0.087** | 0.061* | 0.112** | 0.164*** | 0.246*** | 0.170*** | 0.158*** | 0.140*** | 0.141*** | 0.206*** |
| | | (0.041) | (0.027) | (0.028) | (0.024) | (0.036) | (0.026) | (0.041) | (0.045) | (0.046) | (0.039) | (0.029) | (0.034) |
| 전일제 | | -0.007 | 0.077** | 0.000 | 0.048 | 0.037 | 0.012 | -0.063 | 0.122 | 0.122 | 0.379*** | -0.269*** | 0.031 |
| | | (0.043) | (0.025) | (0.043) | (0.029) | (0.070) | (0.028) | (0.073) | (0.068) | (0.091) | (0.054) | (0.076) | (0.078) |
| 기업규모 (ref.〈10) | 11 -50 | 0.036 | 0.013 | 0.071** | 0.107*** | 0.038 | 0.087*** | 0.075* | 0.181*** | 0.071 | 0.091* | 0.088** | 0.072 |
| | | (0.033) | (0.023) | (0.022) | (0.020) | (0.029) | (0.022) | (0.037) | (0.049) | (0.056) | (0.041) | (0.034) | (0.043) |
| | 50 -200 | 0.018 | 0.033 | 0.133*** | 0.149*** | 0.087** | 0.080*** | 0.191*** | 0.179*** | 0.218*** | 0.122** | 0.112** | 0.153** |
| | | (0.035) | (0.025) | (0.024) | (0.022) | (0.028) | (0.023) | (0.043) | (0.050) | (0.050) | (0.040) | (0.037) | (0.049) |
| | 200〉 | 0.161*** | 0.127*** | 0.222*** | 0.201*** | 0.144*** | 0.156*** | 0.228*** | 0.245*** | 0.294*** | 0.299*** | 0.261*** | 0.285*** |
| | | (0.038) | (0.027) | (0.027) | (0.025) | (0.030) | (0.029) | (0.052) | (0.055) | (0.057) | (0.049) | (0.039) | (0.051) |
| cons | | 0.332** | 0.625*** | 1.031*** | 0.866*** | 0.494** | 0.945*** | 1.152*** | 1.823*** | -0.027 | 1.029*** | 0.386 | 1.703*** |
| | | (0.116) | (0.098) | (0.161) | (0.115) | (0.153) | (0.132) | (0.211) | (0.331) | (0.220) | (0.161) | (0.234) | (0.286) |
| R2 | | 0.296 | 0.399 | 0.394 | 0.395 | 0.342 | 0.379 | 0.394 | 0.343 | 0.252 | 0.173 | 0.573 | 0.400 |
| $\overline{R^2}$ | | 0.292 | 0.396 | 0.390 | 0.391 | 0.337 | 0.374 | 0.386 | 0.333 | 0.247 | 0.167 | 0.570 | 0.395 |

괄호는 표준오차. 별표는 유의수준. *〈.05, **〈.01, ***〈.001.

## [Ⅲ-2] 비교대상 국가의 성별 시간당 임금 추정(OLS)(이전 페이지에 이어 계속)

| | | 네덜란드 | | 노르웨이 | | 스페인 | | 영국 | | POOL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역량 | | 0.002*** | 0.002*** | 0.002*** | 0.002*** | 0.001** | 0.002*** | 0.004*** | 0.003*** | 0.003*** | 0.002***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연령 | | 0.076*** | 0.060*** | 0.047*** | 0.035*** | 0.029** | 0.007 | 0.073*** | 0.045*** | 0.063*** | 0.023*** |
| | | (0.010) | (0.010) | (0.007) | (0.005) | (0.010) | (0.011) | (0.009) | (0.007) | (0.004) | (0.004) |
| 연령2 | | -0.001*** | -0.001*** | -0.001*** | -0.000*** | -0.000** | -0.000 | -0.001*** | -0.001*** | -0.001*** | -0.000*** |
|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학력 | | 0.052*** | 0.051*** | 0.041*** | 0.037*** | 0.050*** | 0.054*** | 0.048*** | 0.058*** | 0.047*** | 0.053*** |
| | | (0.007) | (0.010) | (0.005) | (0.006) | (0.004) | (0.006) | (0.008) | (0.006) | (0.002) | (0.002) |
| 근속 | | 0.002 | 0.000 | 0.002 | 0.000 | 0.008*** | 0.010*** | 0.007*** | 0.012*** | 0.010*** | 0.009*** |
| | | (0.002) | (0.003) | (0.002) | (0.001) | (0.002) | (0.002) | (0.002) | (0.002) | (0.001) | (0.001) |
| 경력 | | 0.005 | 0.011** | 0.007* | 0.005** | 0.004 | 0.006** | 0.003 | 0.004 | 0.005*** | 0.009*** |
| | | (0.004) | (0.004) | (0.003) | (0.002) | (0.003) | (0.002) | (0.003) | (0.002) | (0.001) | (0.001) |
| 노동 시간 | | -0.004* | 0.001 | -0.002 | -0.005** | -0.014*** | -0.016*** | 0.001 | -0.001 | -0.011*** | -0.013*** |
| | | (0.002) | (0.003) | (0.002) | (0.002) | (0.002) | (0.004) | (0.002) | (0.002) | (0.001) | (0.001) |
| 정규직 | | 0.174*** | 0.213*** | 0.143*** | 0.200*** | 0.164*** | 0.091* | 0.039 | 0.056 | 0.138*** | 0.147*** |
| | | (0.044) | (0.053) | (0.041) | (0.051) | (0.038) | (0.035) | (0.043) | (0.037) | (0.017) | (0.017) |
| 전일제 | | 0.015 | 0.031 | -0.032 | 0.052 | 0.106 | 0.117 | -0.051 | 0.109* | 0.003 | 0.179*** |
| | | (0.046) | (0.054) | (0.055) | (0.032) | (0.064) | (0.072) | (0.064) | (0.048) | (0.032) | (0.022) |
| 기업규모 (ref.〈10) | 11 -50 | 0.049 | -0.001 | -0.001 | 0.076 | 0.051 | 0.132*** | 0.103* | 0.077* | 0.054* | 0.096*** |
| | | (0.044) | (0.056) | (0.025) | (0.042) | (0.031) | (0.032) | (0.050) | (0.033) | (0.022) | (0.017) |
| | 50 -200 | 0.115** | 0.085 | 0.086** | 0.102* | 0.235*** | 0.225*** | 0.157*** | 0.091** | 0.157*** | 0.132*** |
| | | (0.042) | (0.055) | (0.029) | (0.044) | (0.061) | (0.046) | (0.047) | (0.035) | (0.020) | (0.017) |
| | 200〉 | 0.183*** | 0.147** | 0.149*** | 0.156*** | 0.260*** | 0.266*** | 0.318*** | 0.218*** | 0.238*** | 0.227*** |
| | | (0.049) | (0.054) | (0.029) | (0.047) | (0.045) | (0.046) | (0.046) | (0.037) | (0.022) | (0.019) |
| cons | | -0.351 | -0.180 | 0.761*** | 0.852*** | 0.921*** | 1.014*** | -0.981*** | -0.422** | -0.034 | 0.697*** |
| | | (0.182) | (0.161) | (0.122) | (0.122) | (0.223) | (0.212) | (0.192) | (0.150) | (0.088) | (0.075) |
| R2 | | 0.348 | 0.301 | 0.301 | 0.287 | 0.369 | 0.394 | 0.396 | 0.347 | 0.318 | 0.252 |
| $\overline{R^2}$ | | 0.343 | 0.296 | 0.297 | 0.282 | 0.363 | 0.388 | 0.392 | 0.344 | 0.317 | 0.252 |

괄호는 표준오차. 별표는 유의수준. *〈.05, **〈.01, ***〈.001.

# 색 인

(ㄱ)
가계 부채 ····· 162
가계금융복지조사 ····· 7, 13, 20-22, 158, 161
가입기간 ····· 13, 121, 123, 126, 129, 132-153
개인휴가제도 ····· 188, 193
경력단절 ····· 12, 81, 91, 98-100, 106, 108-113, 115-116, 146-147, 193
국민연금 ····· 13, 121, 123, 126-127, 129-145, 147-153, 193
국세통계연보 ····· 10, 21-22, 38, 42, 47-48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12, 82, 85
귀속임대소득 ····· 13, 157, 163, 166
근로소득 ····· 5, 10-11, 20-27, 29-30, 32-35, 38-39, 42, 47
근로시간 단축 ····· 112, 179, 182-184, 187

(ㄴ)
노동시간 ····· 13, 44, 46, 83-84, 87, 91-92, 94, 98, 102, 105, 114-116, 173-182, 184-187, 190, 193

(ㅁ)
미시조사자료 ····· 22, 48

(ㅂ)
보편적 기여보장제 ····· 152, 193
부동산소득 ····· 13, 38-39, 71, 164-169

(ㅅ)
사각지대 ····· 13, 126-127, 129, 133, 140, 143-147, 150-153, 189
성별 임금격차 ····· 12, 81, 83-85, 87, 92, 98, 102
시간불평등 ····· 10, 13, 173, 186-187, 193-194
시간빈곤 ····· 174-176, 185-188
시간역량 ····· 187-188, 193
시간제 일자리 ····· 12, 91, 112-115, 146
시간주권 ····· 174-175, 181, 187

(ㅇ)
양도소득 ····· 10, 20, 35-36, 48, 217-228
원천지 ····· 28
임금분해 ····· 99-102, 106

(ㅈ)
자본이득 ····· 13, 157, 163, 166, 170
자산불평등 ····· 9-11, 13, 49, 157-159, 161, 170, 194
자산소득 ····· 48, 170
자유시간 ····· 174-175, 185-188
재량시간 ····· 13, 174-175, 187-188
종합소득 ····· 10, 20-21, 29-35, 211-216
주식 양도소득(세) ····· 22, 223-228
지니계수 분해 ····· 11, 13, 165-167
지디피(GDP) 대비 토지가격 ····· 164

(ㅊ)
최저소득보장제 ····· 13, 152, 193

(ㅌ)
토지소유현황 ····· 11, 57, 61, 65

(ㅍ)
파생금융상품 ····· 10, 21-22, 35-36
평균근로시간 ····· 44-45
평균자산 ····· 52, 55-56
포괄소득(헤이그-사이몬스 소득) ··· 157
표준계약서 ····· 189, 193

(ㅎ)
휴가저축제도 ····· 190, 193

##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연 구 진 : 강병익·채은동·이진수·신영민
발 행 인 : 정태호(민주연구원장)
발 행 처 : (재)민주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더불어민주당사 10층)
전 화 : 02) 2630-0131
팩 스 : 02) 2630-0141
홈 페 이 지 : https://idp.theminjoo.kr
편집·디자인·인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발 행 일 : 2023년 1월 25일

ISBN 979-11-5698-386-6(933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보고서가 지역별 불평등, 성별 불평등, 연령별 불평등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의 출발이 되고 불평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발간사 중에서

"불평등 정책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 쉽지 않은 일이다.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용기와 열정을 필요로 하는데, 불평등에 대한 민주연구원 연구진들의 진솔한 연구에 박수를 보낸다."

–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불평등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꼭 보아야 할 귀중한 보고서이다."

– **유종성**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겸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장

"책임있는 국민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이다. 민주연구원이 정성을 다해 연구한 이번 불평등 보고서가 민주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할 기초자료로 되길 희망한다."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셜 코리아 편집인

비매품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9 791156 983866 93300
ISBN 979-11-5698-386-6